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373호
2016. 10. 6.(목)

함께
서울



목 차

◆ 고 시

제2016-276호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고시	4
제2016-301호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 고시	4
제2016-302호 초안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4
제2016-303호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65
제2016-304호 행정용어 순화어 고시	66
제2016-305호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변경 고시	67
제2016-306호 천마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70
제2016-307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80
제2016-308호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지정 고시	88
제2016-309호 경복궁 서측 특별건축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91
제2016-310호 을지로3가 도시환경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95

◆ 공 고

제2016-1948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113
제2016-1961호 차량의 운행제한 변경 공고	114
제2016-1967호 환경건설탕회사 등록취소 공고	116
제2016-1969호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1~2공구) 계획 승인을 위한 열람 공고	116
제2016-1975호 종합공사시공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117
제2016-1985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17
제2016-1988호 유물 구입 공고	119
제2016-1989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보완 공고	121
제2016-1990호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보완 공고	144
제2016-1992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174
제2016-1993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174
제2016-1997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계획 공고	175
제2016-1998호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지정 계획 공고	183
제2016-1999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91
제2016-2000호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198
제2016-2004호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 공고 ...	199
제2016-2005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199
제2016-2006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 공시송달 공고	201
제2016-2007호 2016년도 제16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203

제2016-2008호 2016년도 제17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204
제2016-2013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 열람 공고(한국체육대학교)	206

◆ 구 고 시

제2016-52호 도시계획시설사업(봉화산근린공원 조성-화랑마을뒤)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중랑구)	207
제2016-53호 도시계획시설사업(봉화산근린공원 조성-구청사뒤)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중랑구)	210
제2016-145호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강북구)	212
제2016-12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일부폐지)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봉구)	216
제2016-90호 전통사찰 등록 고시(노원구)	218
제2016-91호 도시계획시설(마을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노원구)	218
제2016-83호 도시관리계획(독바위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은평구)	224
제2016-84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강서구)	225
제2016-153호 도시계획시설사업(은수도시자연공원-벽산지구)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구로구)	227
제2016-94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서초구)	229
제2016-95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작성고시(서초구)	230
제2016-13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남구)	232
제2016-107호 도시관리계획(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송파구)	238

◆ 구 공 고

제2016-856호 도시관리계획(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열람 공고(종로구)	240
제2016-785호 시관리계획(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2 세부 개발계획)(안) 재 열람공고(성동구)	241
제2016-786호 도시관리계획(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안) 재 열람공고(성동구)	247
제2016-942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변경(안) 열람공고(도봉구)	252
제2016-78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노원구)	263

제2016-78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초안산 근린공원내 사적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구역내 사유지 토지보상)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노원구)	265
제2016-787호 도시계획시설사업(광장 조성) 실시계획 인가 추진 위한 열람 공고(노원구)	267
제2016-1053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를 위한 열람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양천구)	274
제2016-1214호 천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구로구)	282
제2016-85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동작구)	286

◆ 사업소고시

제2016-19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88
제2016-23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88
제2016-23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89
제2016-23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89

◆ 기 타

제2016-347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90
--	-----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76호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고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목 적 :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정기 실시하여,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발생을 예방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지 역 : 서울특별시 전역
3. 대 상 : 서울시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모든 개, 고양이
4. 기 간 : 2016. 10. 10 ~ 10. 24일까지
5. 접종장소 : 자치구 지정 동물병원(구청 홈페이지 참조)
6. 문 의 처
가. 각 자치구 동물병원 담당부서 : 자치구 홈페이지 이용
나.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 ☎ 2133-7652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01호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 고시

「도로명주소 시행령」 제11조14에 따라 국가지점번호 활용을 위한 지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 설정 현황 : 붙임1
2. 표기지역 내 지점번호 현황 : 붙임2
3. 연락처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1) 전화 : 02-2133-5841(FAX : 02-768-8889)
2)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자치행정과 7층
3) 서울시도로명주소 홈페이지 : <http://juso.seoul.go.kr>

1.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변경
표기대상지역 면적정정

1.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설정 현황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용산구
현행			
변경(안)			
전체 지역면적	21.898 km ²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변경전 면적	3.535 km ²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변경 면적(안)	0.057 km ²

※ 본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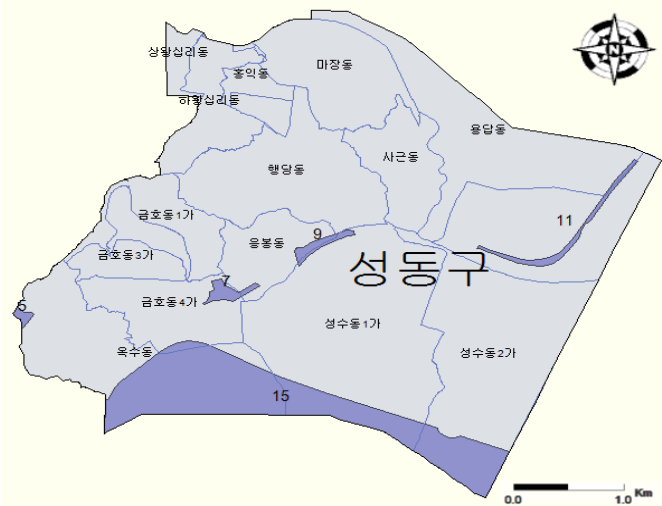
2. 표기 대상지역 내 지점번호 현황(2016년 9월 6일 현재)

	ID	시군구	읍면동	리	지점번호 (1km)	표기대상 지역 명	변경전면적 km ²	변경후면적 km ²
변경사유	7	용산구	한남동		다사5649	응봉공원	0.074	0.057

※ 행정구역 명칭(시군구,읍면동,리)은 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내 대표 명칭입니다.

도로구간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축소

1.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설정 현황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성동구
현 행			
변경(안)			
전체지역면적	16.801 km ²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변경전 면적	1.734 km ²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변경 면적(안)	0.015 km ²

※ 본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표기 대상지역 내 지점번호 현황(2016년 9월 6일 현재)

	ID	시군구	읍면동	리	지점번호 (1km)	표기대상 지역 명	변경전면 적 ^{km²}	변경후면적 ^{km²}
변경사유	7	성동구	응봉동		다사5849	응봉산 공원	0.05	0.015

※ 행정구역 명칭(시군구,읍면동,리)은 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내 대표 명칭입니다.

면적변경

1.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설정 현황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성북구
현행			
변경(안)			
전체 지역면적	24.593 km ²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변경전 면적	4.178 km ²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변경 면적(안)	3.452 km ²

※ 본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표기 대상지역 내 지점번호 현황(2016년 9월 6일 현재)

	ID	시군구	읍면동	리	지점번호 (1km)	표기대상 지역 명	변경전 면적 ^{km²}	변경후면적 ^{km²}
변경 사유	2	성북구	정릉동		다사5358, 다사5359, 다사5457, 다사5458, 다사5459, 다사5557, 다사5558, 다사5559, 다사5658	북한산	3.204	2.483
건물 생성	3	성북구	안암동5 가		다사5854, 다사5855	개운산	0.079	0.078
면적 변경	8	성북구	하월곡 동		다사5955, 다사6055, 다사6056	천장산	0.174	0.178
면적 변경	9	성북구	정릉동		다사5556	북한산	0.011	0.011
건물 생성	10	성북구	성북동		다사5355, 다사5454, 다사5455, 다사5456	북악산	0.566	0.562
면적 변경	13	성북구	정릉동		다사5456, 다사5556	북한산	0.129	0.126
건물 생성 등	14	성북구	석관동		다사6256, 다사6257	중랑천	0.015	0.014

※ 행정구역 명칭(시군구,읍면동,리)은 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내 대표 명칭입니다.

표기대상지역 변경으로 면적감소

1.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설정 현황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강북구
현 행			
변경(안)			
전체 지역면적	23.618 km ²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변경전 면적	9.072 km ²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변경 면적(안)	8.26 km ²

※ 본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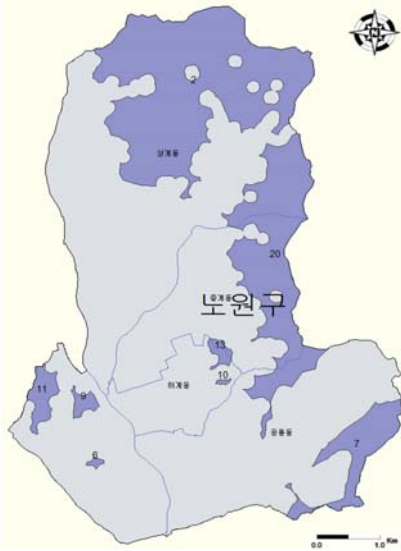
2. 표기 대상지역 내 지점번호 현황(2016년 9월 6일 현재)

	ID	시군구	읍면동	리	지점번호 (1km)	표기대상 지역 명	변경전 면적 km ²	변경후면적 km ²
변경사 유	4	강북구	우이동		다사5459, 다사5460, 다사5461, 다사5462, 다사5558, 다사5559, 다사5560, 다사5561, 다사5562, 다사5563, 다사5564, 다사5565, 다사5657, 다사5658, 다사5659, 다사5660, 다사5661, 다사5662, 다사5663, 다사5664, 다사5665, 다사5762, 다사5763, 다사5764	북한산국 립공원	9.072	8.26

※ 행정구역 명칭(시군구,읍면동,리)은 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내 대표 명칭입니다.

건물신축에 따른 건물번호부여

1.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설정 현황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노원구
현황			
변경(안)			
전체 지역면적	35.58 km ²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변경전 면적	10.851 km ²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변경 면적(안)	7.042 km ²

※ 본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표기 대상지역 내 지점번호 현황(2016년 9월 6일 현재)

	ID	시군구	읍면동	리	지점번호 (1km)	표기대상 지역 명	변경전 면적 ^{km²}	변경후면적 ^{km²}
변경사유	2	노원구	상계동		다사6165, 다사6166, 다사6264, 다사6265, 다사6266, 다사6364, 다사6365, 다사6366, 다사6464, 다사6465	수락산	6.202	3.091
건물신축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	7	노원구	공릉동		다사6458, 다사6459, 다사6558, 다사6559	육군사관 학교	0.957	0.569
현장확인후 표기대상지 역 정정	9	노원구	월계동		다사6059, 다사6159	초안산근린 공원(인덕 대학부근)	0.118	0.116
건물신축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	10	노원구	하계동		다사6259, 다사6260, 다사6359, 다사6360	수락산자연 공원(공릉 터널부근)	0.014	0.013
건물신축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	11	노원구	월계동		다사5959, 다사5960, 다사6059, 다사6060	초안산근린 공원	0.31	0.306
건물 신축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	13	노원구	하계동		다사6260, 다사6360	충숙근린 공원	0.109	0.102
건물신축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	20	노원구	중계동		다사6262, 다사6359, 다사6360, 다사6361, 다사6362, 다사6363, 다사6459, 다사6460, 다사6461, 다사6462, 다사6463	수락산자연 공원	3.114	2.845

※ 행정구역 명칭(시군구,읍면동,리)은 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내 대표 명칭입니다.

버퍼생성

1.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설정 현황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은평구
현행			
변경(안)			
전체 지역면적	29.772 km ²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변경전 면적	8.54 km ²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변경 면적(안)	7.479 km ²

※ 본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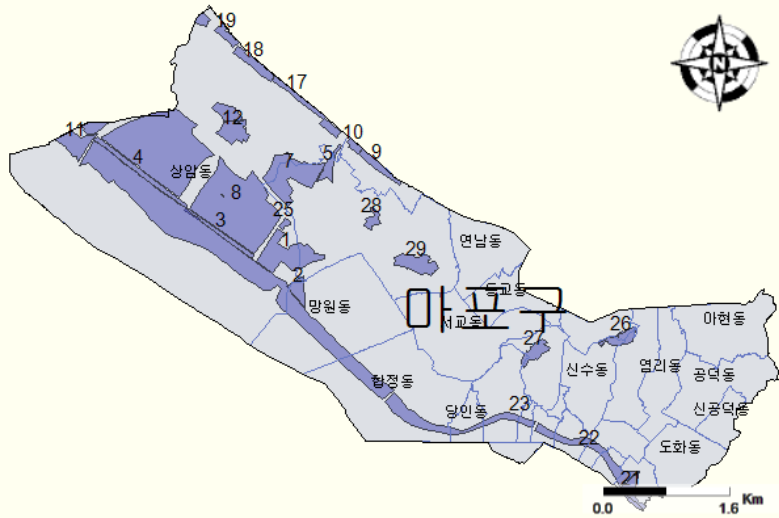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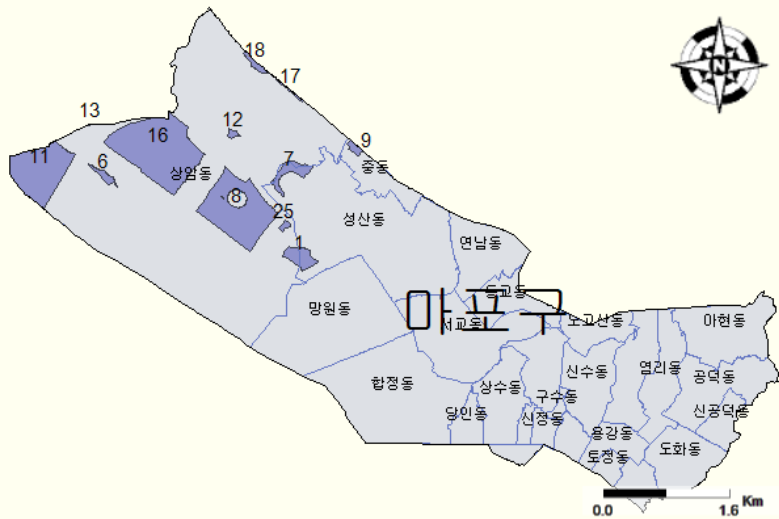
2. 표기 대상지역 내 지점번호 현황(2016년 9월 6일 현재)

	ID	시군구	읍면동	리	지점번호 (1km)	표기대상 지역 명	변경전 면적 km ²	변경후면적 km ²
변경사유	8	은평구	응암동		다사4954, 다사4955	백련산	0.131	0.117
배드민턴장 및 초등학교 건립에 따른 변경	10	은평구	수색동		다사4654, 다사4655, 다사4754, 다사4755, 다사4756	봉산	0.295	0.289
주차장 건립에 따른 변경	12	은평구	구산동		다사4756, 다사4757	봉산	0.268	0.266
폐합	23	은평구	진관동		다사4757, 다사4758, 다사4759, 다사4760, 다사4858, 다사4859, 다사4860	탐골생태 공원	0.793	0.781
폐합	26	은평구	진관동		다사4959, 다사5056, 다사5057, 다사5058, 다사5059, 다사5060, 다사5061, 다사5062, 다사5156, 다사5157, 다사5158, 다사5159, 다사5160, 다사5161, 다사5258, 다사5259, 다사5260, 다사5261	북한산	6.122	6.026

※ 행정구역 명칭(시군구,읍면동,리)은 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내 대표 명칭입니다.

위치조정

1.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설정 현황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마포구
현행			
변경(안)			
전체지역면적	23.846 km ²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변경전 면적	4.524 km ²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변경 면적(안)	1.86 km ²

※ 본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표기 대상지역 내 지점번호 현황(2016년 9월 6일 현재)

	ID	시군구	읍면동	리	지점번호 (1km)	표기대상 지역 명	변경전 면적 ^{km²}	변경후면적 ^{km²}
변경사유	1	마포구	성산동		다사4651	월드컵공원 (평화의공원)	0.216	0.075
위치수정	6	마포구	상암동		다사4352, 다사4452	한강공원 (난지)	1.187	0.025
위치상이	7	마포구	성산동		다사4652	매봉산근린 공원	0.246	0.069
위치조정	8	마포구	상암동		다사4551, 다사4552, 다사4651, 다사4652	월드컵공원 (하늘공원)	0.711	0.512
위치수정	9	마포구	중동		다사4752	철도부지	0.049	0.001
위치상이	10	마포구	중동		다사4752, 다사4753	철도부지	0.017	0.017
위치상이	11	마포구	상암동		다사4252, 다사4352, 다사4353	난지국공장	0.09	0.402
위치상이	12	마포구	상암동		다사4553	상암근린공원 (DMC)	0.083	0.01
위치상이	13	마포구	상암동		다사4353, 다사4453	맹지	0.032	0.001
위치상이	16	마포구	상암동		다사4452, 다사4453, 다사4552, 다사4553	월드컵공원 (노을공원)	0.809	0.703
위치수정	17	마포구	상암동		다사4653	철도부지	0.047	0.01
위치상이	18	마포구	상암동		다사4554, 다사4653, 다사4654	철도부지	0.059	0.025
위치상이	25	마포구	상암동		다사4651, 다사4652	월드컵공원	0.01	0.01

※ 행정구역 명칭(시군구,읍면동,리)은 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내 대표 명칭입니다.

주변 건물등으로부터 일정거리 유지

1.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설정 현황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강서구
현 행			
변경(안)			
전체지역면적	41.422 km ²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변경전 면적	6.581 km ²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변경 면적(안)	0.081 km ²

※ 본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표기 대상지역 내 지점번호 현황(2016년 9월 6일 현재)

	ID	시군구	읍면동	리	지점번호 (1km)	표기대상 지역 명	변경전 면적 ^{km²}	변경후면적 ^{km²}
변경 사유	3	강서구	등촌동		다사4248, 다사4249, 다사4349	봉제산 지역	0.081	0.081

※ 행정구역 명칭(시군구,읍면동,리)은 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내 대표 명칭입니다.

표기대상지역면적정정

1.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설정 현황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금천구
현 행			
변경(안)			
전체지역면적	13.006 km ²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변경전 면적	1.389 km ²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변경 면적(안)	1.323 km ²

※ 본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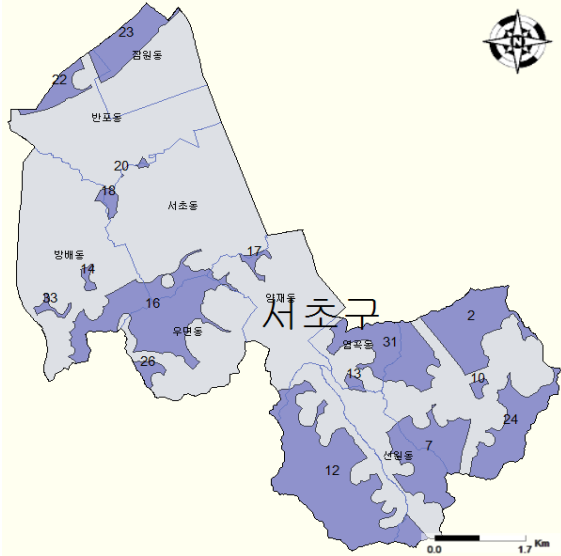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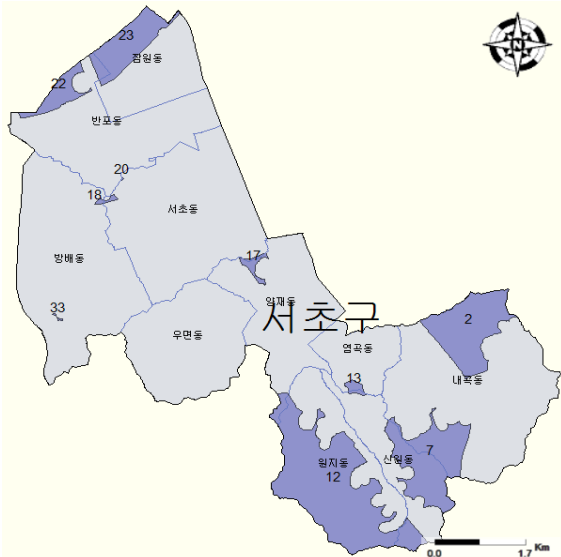
2. 표기 대상지역 내 지점번호 현황(2016년 9월 6일 현재)

	ID	시군구	읍면동	리	지점번호 (1km)	표기대상 지역 명	변경전 면적 ^{km²}	변경후면적 ^{km²}
변경사유	1	금천구	시흥동		다사4838, 다사4839, 다사4938, 다사4939	호암사인근 임야지역	0.563	0.5
표기대상 지역면적 정정	7	금천구	독산동		다사4740, 다사4741, 다사4840	문교초등 학교인근 임야지역	0.036	0.039
표기대상 지역면적 정정	9	금천구	독산동		다사4741	금천체육 공원 인근 임야지역	0.014	0.012
표기대상 지역면적 정정	11	금천구	독산동		다사4741	금천체육 공원 인근 임야지역	0.024	0.024
선형변경	14	금천구	시흥동		다사4737, 다사4738, 다사4837, 다사4838	서울국악예 술고 인근 임야지역	0.602	0.599
표기대상 지역면적 정정	16	금천구	시흥동		다사4839	삼복터널 인근 임야지역	0.15	0.149

※ 행정구역 명칭(시군구,읍면동,리)은 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내 대표 명칭입니다.

표기대상지역 면적변경

1.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설정 현황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서초구
현행			
변경(안)			
전체지역면적	46.856 km ²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변경전 면적	14.734 km ²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변경 면적(안)	8.352 km ²

※ 본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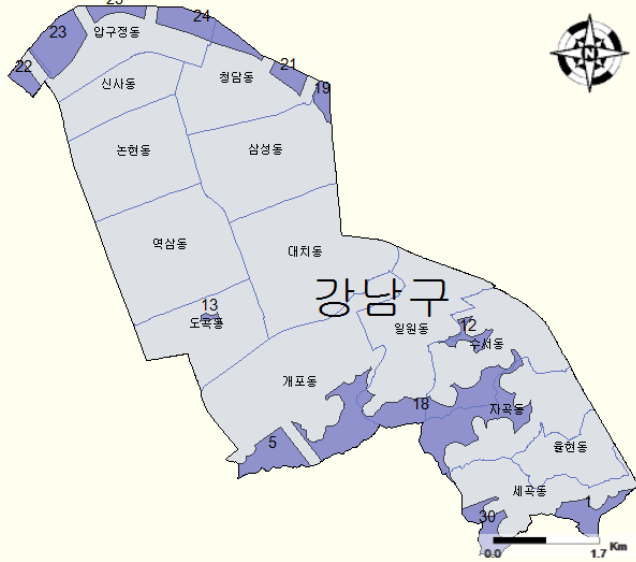
2. 표기 대상지역 내 지점번호 현황(2016년 9월 6일 현재)

	ID	시군구	읍면동	리	지점번호 (1km)	표기대상 지역 명	변경전 면적 ^{km²}	변경후면적 ^{km²}
변경사유	2	서초구	내곡동		다사6140, 다사6141, 다사6240, 다사6241, 다사6341	대모산도 시공원내	1.597	1.514
표기대상 지역 면적변경	7	서초구	신원동		다사6039, 다사6137, 다사6138, 다사6139, 다사6237, 다사6238, 다사6239	내곡보금 자리 인근	1.741	1.622
표기대상 지역 면적변경	12	서초구	원지동		다사5837, 다사5838, 다사5839, 다사5936, 다사5937, 다사5938, 다사5939, 다사6036, 다사6037, 다사6038, 다사6039, 다사6136, 다사6137	청계산 도시자연 공원	3.802	3.695
표기대상 지역 면적변경	13	서초구	염곡동		다사6039, 다사6040	탐성마을 서측	0.078	0.071
표기대상 지역 면적변경	17	서초구	양재동		다사5841, 다사5842	말죽거리 공원	0.106	0.095
표기대상 지역 면적변경	18	서초구	방배동		다사5543, 다사5643	서리풀공 원내	0.14	0.031
표기대상 지역 면적변경	20	서초구	서초동		다사5644	몽마르뜨 공원	0.002	0.001
표기대상 지역 면적변경	22	서초구	반포동		다사5445, 다사5446, 다사5545, 다사5546	한강공원 반포지구	0.378	0.376
표기대상 지역 면적변경	23	서초구	잠원동		다사5545, 다사5546, 다사5646, 다사5647, 다사5747	한강공원 잠원지구	0.944	0.942
표기대상 지역 면적변경	33	서초구	방배동		다사5441, 다사5541	우면산도 시공원내	0.087	0.005

※ 행정구역 명칭(시군구,읍면동,리)은 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내 대표 명칭입니다.

개발사업지

1.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설정 현황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강남구
현 행			
변경(안)			
전체지역면적	39.493 km ²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변경전 면적	5.312 km ²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변경 면적(안)	1.771 km ²

※ 본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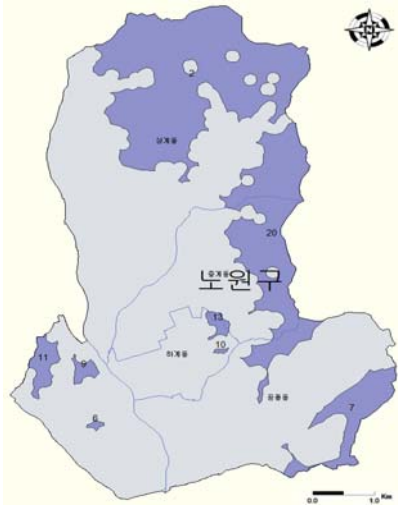
2. 표기 대상지역 내 지점번호 현황(2016년 9월 6일 현재)

	ID	시군구	읍면동	리	지점번호 (1km)	표기대상 지역 명	변경전 면적 km ²	변경후면적 km ²
변경 사유	18	강남구	일원동		다사6141, 다사6142, 다사6241, 다사6242, 다사6341, 다사6342, 다사6441, 다사6442, 다사6443, 다사6542	대모산	2.344	1.771

※ 행정구역 명칭(시군구,읍면동,리)은 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내 대표 명칭입니다.

2.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생성
도로개설에 따른 표기대상지역 정정

1.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설정 현황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노원구
현 행			
생성(안)			
전체지역면적	35.58 km ²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전체 면적	10.851 km ²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생성 면적(안)	2.385 km ²

※ 본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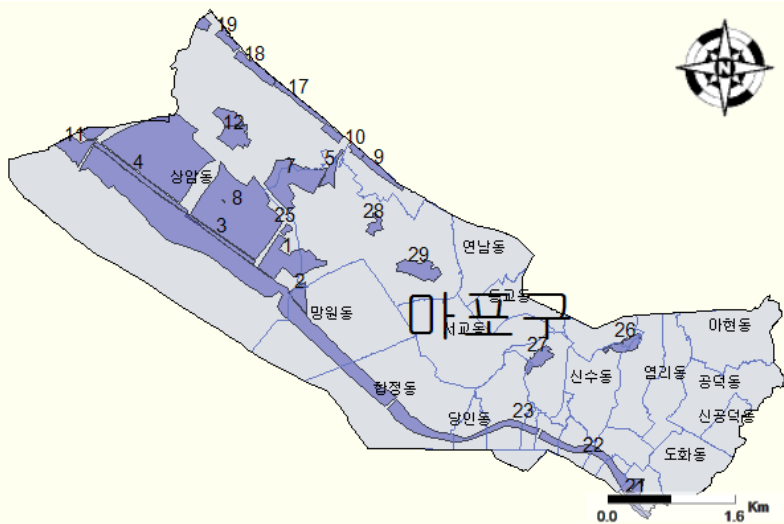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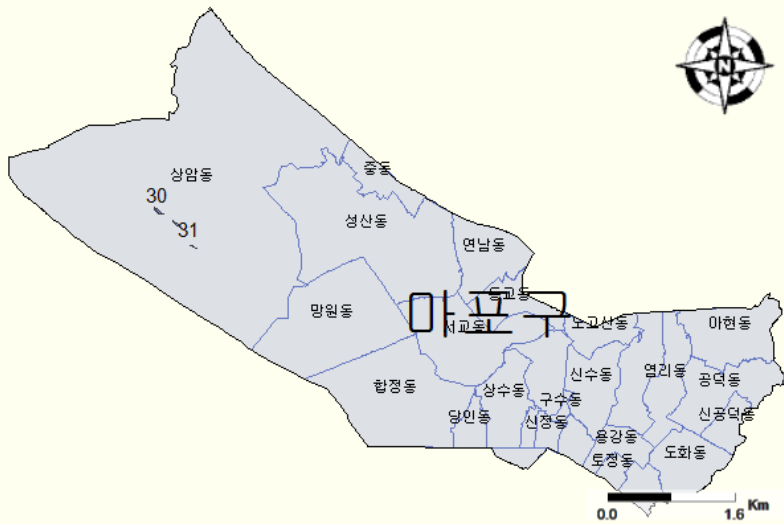
2. 표기 대상지역 내 지점번호 현황(2016년 9월 6일 현재)

	ID	시군구	읍면동	리	지점번호 (1km)	표기대상 지역 명	변경전 면적 km ²	변경후면적 km ²
변경 사유	23	노원구	공릉동		다사6357, 다사6358, 다사6457, 다사6458	육군사관 학교-2	0	0.069
현장확 인후 표기대 상지역 정정	34	노원구	상계동		다사6065, 다사6163, 다사6164, 다사6165, 다사6263, 다사6264, 다사6265	수락산-5	0	2.259
건물신 축에 따른 건물번 호 부여	36	노원구	공릉동		다사6359	수락산자 연공원	0	0.03
건물신 축에 따른 건물번 호 부여	37	노원구	상계동		다사6463, 다사6464	수락산자 연공원	0	0.027

※ 행정구역 명칭(시군구,읍면동,리)은 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내 대표 명칭입니다.

위치상이

1.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설정 현황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마포구
현 행			
생성(안)			
전체 지역면적	23.846 km ²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전체 면적	4.524 km ²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생성 면적(안)	0.004 km ²

※ 본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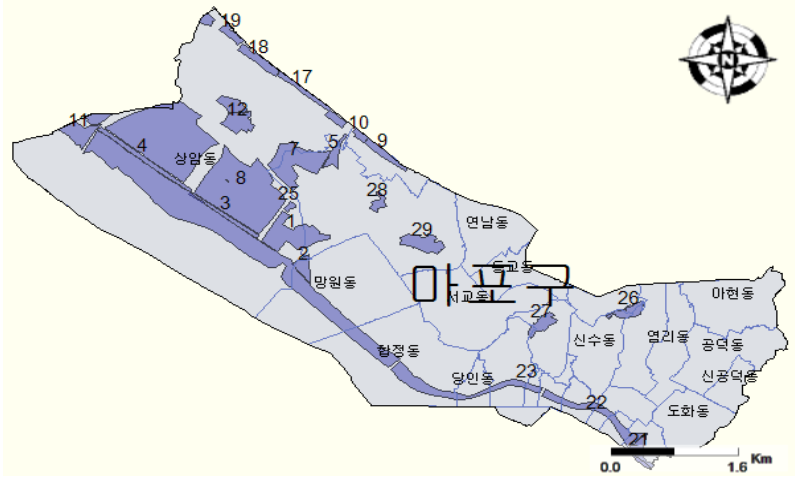
2. 표기 대상지역 내 지점번호 현황(2016년 9월 6일 현재)

	ID	시군구	읍면동	리	지점번호 (1km)	표기대상 지역 명	변경전 면적 ^{km²}	변경후면적 ^{km²}
변경 사유	30	마포구	상암동		다사4452	한강공원 (난지)	0	0.002
위치 상이	31	마포구	상암동		다사4551	한강공원 (난지)	0	0.001
위치 상이	32	마포구	상암동		다사4452, 다사4552	한강공원 (난지)	0	0.001

※ 행정구역 명칭(시군구,읍면동,리)은 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내 대표 명칭입니다.

3.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폐지
위치수정

1.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설정 현황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마포구
현행			
폐지(안)			
전체 지역면적	23.846 km ²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전체 면적	4.524 km ²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폐지 면적(안)	0.122 km ²

※ 본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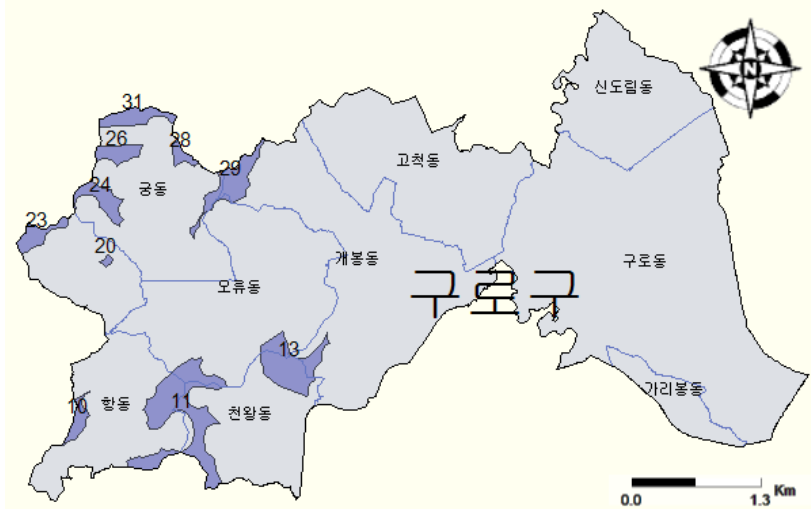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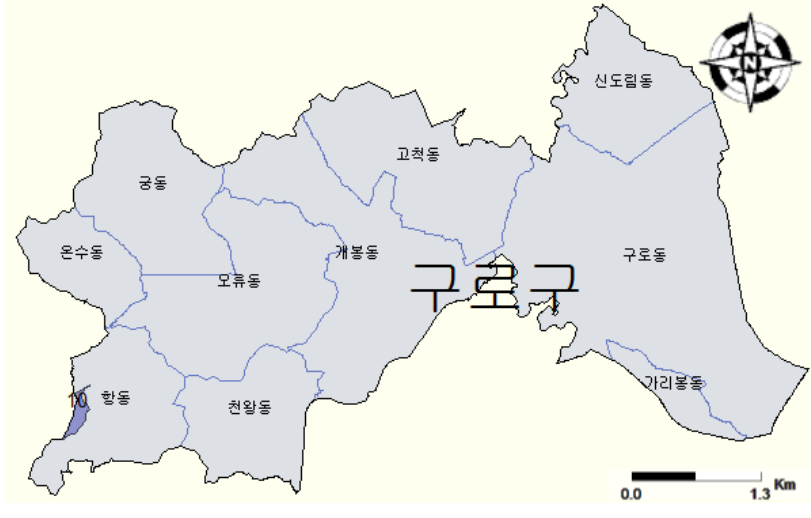
2. 표기 대상지역 내 지점번호 현황(2016년 9월 6일 현재)

	ID	시군구	읍면동	리	지점번호 (1km)	표기대상 지역 명	변경전 면적 ^{km²}	변경후면적 ^{km²}
변경사 유	4	마포구	상암동		다사4353, 다사4452, 다사4453, 다사4552	강변북로 (노을공원)	0.08	0
위치수 정	5	마포구	성산동		다사4652, 다사4752, 다사4753	중암교 일대	0.042	0

※ 행정구역 명칭(시군구,읍면동,리)은 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내 대표 명칭입니다.

개발지역

1.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설정 현황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구로구
현 행			
폐지(안)			
전체지역면적	20.075 km ²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전체 면적	1.19 km ²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폐지 면적(안)	0.05 km ²

※ 본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표기 대상지역 내 지점번호 현황(2016년 9월 6일 현재)

	ID	시군구	읍면동	리	지점번호 (1km)	표기대상 지역 명	변경전 면적 ^{km²}	변경후면적 ^{km²}
변경 사유	10	구로구	항동		다사3942, 다사4042	항동 산56-1	0.05	0

※ 행정구역 명칭(시군구,읍면동,리)은 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내 대표 명칭입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02호

초안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51호(2014.2.1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초안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초안산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오래된 경작지 및 훼손지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고, 자연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족캠핑장을 조성하여 공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3-1번지 일대

3. 면 적 : 1,615,546m²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2133-2070) 및 노원구 공원녹지과 (☎2116-3946)에서 관련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조안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노원구 월계동 산1번지 일대)

구 분	변			전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부지면적(㎡)	시설면적(㎡)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시 설 면 적	계	1,615,546.00	139,847.34	20동	6,424.02	11,829.17	805	1,615,546.00	150,749.58	28동	6,793.41	12,198.56	745
	기	99,984.91	52,794.91				2	101,012.17	53,822.17				2
	반	90,728.20	43,538.20					93,128.13	45,938.13				
	시	9,256.70	9,256.71				(2)	7,884.04	7,884.04				(2)
	설	20,086.31	11,995.7				61	18,707.35	11,770.74				59
	조경시설	8,355.96	6,775.26	7동	331.00	529.00	402	17,168.92	15,553.22	10동	380.14	578.14	373
	휴양시설						1						4
면 적	유원시설												중) 3개소
	운동시설	56,409.5	51,355.5	5동	4,405.33	7,571.40	50	56,409.50	51,355.50	5동	4,405.33	7,571.40	43
	교양시설	10,807.48	9,187.48	1동	1,134.58	3,111.46	1	10,807.48	9,187.48	1동	1,134.58	3,111.46	1
	편익시설	7,646.63	7,376.63	5동	255.41	255.41	12	8,539.13	8,265.13	7동	445.43	445.43	25
	관리시설	554.00	361.86	2동	297.70	361.90	277	983.48	791.34	5동	427.93	492.13	299
녹지 · 기타		1,411,701.21						1,401,917.97					
공 원 시 설 율 (법정40%)		(139,847.34㎡ / 1,615,546㎡) x 100% = 8.65%			(150,749.58㎡ / 1,615,546㎡) x 100% = 9.33%								
공 원 건 폐 율 (법정 20%)		(6,424.02㎡ / 1,615,546㎡) x 100% = 0.40%			(6,793.41㎡ / 1,615,546㎡) x 100% = 0.42%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기	계			1,615,546.0	139,847.34	20동	6,424.02	11,829.17	805						1,615,546.0	150,749.58			6,793.41	12,198.56	796	증)10,898.24	
		소	계		99,984.91	52,794.91				2					101,012.17	53,822.17					2	증) 1,027.26	
	도	로			90,728.20	43,538.20							93,128.13	45,938.13								증) 2,399.93	
						(47,190)	()	도시계획도로						(47,190)	()	도시계획도로							
	진입광장	가	10개소	2,999.7	2,999.7					가	10개소	3,168.46	3,168.46										증) 168.76
		가-1	월계 산62-4	(155.0)	(155.0)					가-1	월계 산62-4	(155.0)	(155.0)										
		가-2	월계 산62-4	(122.0)	(122.0)					가-2	월계 산62-4	(122.0)	(122.0)										
		가-3	창동 산353-2전 외	(586.4)	(586.4)					가-3	창동 산353-2전 외	(586.4)	(586.4)										
		가-5	창동 산200-1임	(349.6)	(349.6)					가-5	창동 산200-1임	(349.6)	(349.6)										
		가-6	창동 107-3임	(174.0)	(174.0)					가-6	창동 107-3임	(174.0)	(174.0)										
		가-7	월계 산749-2전	(190.0)	(190.0)					가-7	월계 산749-2전	(358.76)	(358.76)										증) 168.76
가-8		월계 산17-1임 외	(176.0)	(176.0)					가-8	월계 산17-1임 외	(176.0)	(176.0)											
가-9		월계 산64-5임	(210.0)	(210.0)					가-9	월계 산64-5임	(210.0)	(210.0)											
가-10	창동 산 48-4임	(601.7)	(601.7)					가-10	창동 산 48-4임	(601.7)	(601.7)												
가-11	창동 산 137-1	(435)	(435)					가-11	창동 산 137-1	(435)	(435)												
휴게광장	나	16개소	5,723.01	5,723.01					2				나	15개소	4,049.61	4,049.61						2	감) 1,673.40
	나-4	월계 산63-4	(110.0)	(110.0)						나-4	월계 산63-4	(110.0)	(110.0)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대면적	연면적	비대면적	연면적	
기 반 시 설	휴 게 광 장	나-5	월계 산63-4	(40.0)	(40.0)					나-5	월계 산63-4	(40.0)	(40.0)									
		나-6	월계 산63-4	(47.0)	(47.0)					나-6	월계 산63-4	(47.0)	(47.0)									
		나-7	월계 산63-4	(326.0)	(326.0)					나-7	월계 산63-4	(326.0)	(326.0)									
		나-8	창동 194-2임 외	(732.0)	(732.0)					나-8	창동 194-2임 외	(732.0)	(732.0)									
		나-9	창동 163-7임	(467.0)	(467.0)					나-9	창동 163-7임	(467.0)	(467.0)									
		나-10	월계 산17-1임 외	(372.0)	(372.0)					나-10	월계 산17-1임 외	(372.0)	(372.0)									
		나-11	월계 산3-1임 외	(1,673.4)	(1,673.4)														폐지			
		나-12	창동 산 137-1임	(395.5)	(395.5)					나-12	창동 산 137-1임	(395.5)	(395.5)									
		나-13	창동 428	(979.0)	(979.0)					나-13	창동 428	(979.0)	(979.0)									
		나-16	창동 산157임	(188.0)	(188.0)					나-16	창동 산157임	(188.0)	(188.0)									
		나-17	창동 산157임	(24.18)	(24.18)					나-17	창동 산157임	(24.18)	(24.18)									
	나-18	창동 산157임	(137.0)	(137.0)					나-18	창동 산157임	(137.0)	(137.0)										
	나-19	창동 산157임	(93.73)	(93.73)					나-19	창동 산157임	(93.73)	(93.73)										
	나-20	창동 산189-1임	(93.9)	(93.9)					나-20	창동 산189-1임	(93.9)	(93.9)										
	나-21	창동 산183임	(44.3)	(44.3)					나-21	창동 산183임	(44.3)	(44.3)										
	만남의광장	너	창동 산177임	29.0	29.0					너	창동 산177임	29.0	29.0									
		열린광장	너	창동 산177-1임	505.0	505.0					너	창동 산177-1임	505.0	505.0								
			적은광장								노-1	월계 산 5-5 임	131.97	131.97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소계				20,086.31	11,995.7							61				18,707.35	11,770.74								59	감) 224.96	
조경시설	잔디광장	다	1개소		2,700	720								다	1개소		2,700	720										
		다-2	창동 산197-6임 외		(2,700)	(720)								다-2	창동 산197-6임 외		(2,700)	(720)										
	연못	러	창동 산48-12임 외		1,797.5	748.4								러	창동 산48-12임 외		1,797.5	748.4										
	피크닉장	머	창동 산107-22임 외		1,846.11	0.00								머	창동 산107-22임 외		1,846.11	0.00										
	지압보도	버	창동 산48-4임		278.57	278.57								버	창동 산48-4임		278.57	278.57										
	화계	서	창동 산48-4임		448.00	448.00								서	창동 산48-4임		448.00	448.00										
		서-2	창동 산157임		184.8	184.8								서-2	창동 산157임		184.8	184.8										
	야생조화원	까	5개소		4,944.23	4,944.23								까	5개소		4,944.23	4,944.23										
		까-1	월계 산63-4		(564.63)	(564.63)								까-1	월계 산63-4		(564.63)	(564.63)										
		까-3	창동 산137-임 외		(523.6)	(523.6)								까-3	창동 산137-임 외		(523.6)	(523.6)										
		까-4	창동 산197-1임 외		(2,236)	(2,236)								까-4	창동 산197-1임 외		(2,236)	(2,236)										
		까-5	월계 산17-1임 외		(1,361)	(1,361)								까-5	월계 산17-1임 외		(1,361)	(1,361)										
		까-6	창동 산163-2임		(259)	(259)								까-6	창동 산163-2임		(259)	(259)										
	생태육교	㉨	창동 산137-2임 외					콘크리트					1	㉨	창동 산137-2임 외					콘크리트							1	
생태계류	11	월계 산17-1임 외		1,622.9	507.3								11	월계 산17-1임 외		1,622.9	507.3											
생태습지	12	6개소		3,907.3	1,807.5								12	2개소		1,920.39	974.59											
	12-1	월계 산17-1임 외		(1,641.1)	(695.3)								12-1	월계 산17-1임 외		(1,641.1)	(695.3)											
	12-2			(1,639.2)	(485.2)								12-2	월계 산5-5임 외		(279.29)	(279.29)										감) 205.91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 축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 축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생태연못	커	3개소		387.93	387.93						커	3개소							
	커-1	창동 산157임		(100.53)	(100.53)						커-1	창동 산157임							
	커-2	창동 산 188임		(259.0)	(259.0)						커-2	창동 산 188임							
	커-3	창동 산 177-1임		(28.4)	(28.4)						커-3	창동 산 177-1임							
	상지	교	산 189-1임		128.1	128.1					교	산 189-1임							
하지	쿠	산 189-1임		56.3	56.3						쿠	산 189-1임							
	큐	산 189-1임		53.2	53.2						큐	산 189-1임							
	연결수로		4개소		777.31	777.31						4개소							
	계 류	터	창동 산157임		(509.91)	(509.91)						터	창동 산157임						
		터-3	창동440임		(78.9)	(78.9)						터-3	창동440임						
터-4		창동172-2임		(82.3)	(82.3)						터-4	창동172-2임							
터-5		창동산179-2임		(106.2)	(106.2)						터-5	창동산179-2임							
파고라			전지역									전지역						38	
파 고 라 A	①	월계 산63-4		72	72	탄소강					①	월계 산63-4						1	
	②	10개소		(207.3)	(207.3)	목재					②	10개소						10	
파 고 라 B	②-1	월계 산63-4		(20.25)	(20.25)						②-1	월계 산63-4						(1)	
	②-2	월계 산63-4		(20.25)	(20.25)						②-2	월계 산63-4						(1)	

조 경 시 설

구분	시설명	변경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조경	파고라 B	㉔-3	월계 산63-4		(20.25)	(20.25)						(1)	㉔-3	월계 산63-4		(20.25)	(20.25)							(1)		
		㉔-4	월계 산63-4		(20.25)	(20.25)						(1)	㉔-4	월계 산63-4		(20.25)	(20.25)							(1)		
		㉔-5	월계 산63-4		(20.25)	(20.25)						(1)	㉔-5	월계 산63-4		(20.25)	(20.25)							(1)		
		㉔-6	월계 산63-4		(20.25)	(20.25)						(1)	㉔-6	월계 산63-4		(20.25)	(20.25)							(1)		
		㉔-7	월계 산63-4		(20.25)	(20.25)						(1)	㉔-7	월계 산63-4		(20.25)	(20.25)							(1)		
		㉔-8	월계 산63-4		(20.25)	(20.25)						(1)	㉔-8	월계 산63-4		(20.25)	(20.25)							(1)		
		㉔-9	창동 산137-13		(20.25)	(20.25)						(1)	㉔-9	창동 산137-13		(20.25)	(20.25)							(1)		
		㉔-10	창동 산 167-1임		(25)	(25)						(1)	㉔-10	창동 산 167-1임		(25)	(25)							(1)		
		㉔	13개소		(325)	(325)						13	㉔	13개소		325	325							13		
		㉔-23	창동 산137-52임		(25)	(25)						(1)	㉔-23	창동 산137-52임		(25)	(25)								(1)	
시설	파고라 C	㉔-24	창동 산137-52임		(25)	(25)						(1)	㉔-24	창동 산137-52임		(25)	(25)								(1)	
		㉔-25	창동 산137-52임		(25)	(25)						(1)	㉔-25	창동 산137-52임		(25)	(25)								(1)	
		㉔-26	창동 산194-6임		(25)	(25)						(1)	㉔-26	창동 산194-6임		(25)	(25)								(1)	
		㉔-27	창동 산194-6임		(25)	(25)						(1)	㉔-27	창동 산194-6임		(25)	(25)								(1)	
		㉔-28	창동 산200-1임		(25)	(25)						(1)	㉔-28	창동 산200-1임		(25)	(25)								(1)	
		㉔-29	창동 산681-1전		(25)	(25)						(1)	㉔-29	창동 산681-1전		(25)	(25)								(1)	
		㉔-30	창동 산681-1전		(25)	(25)						(1)	㉔-30	창동 산681-1전		(25)	(25)								(1)	
		㉔-31	창동 산681-1전		(25)	(25)						(1)	㉔-31	창동 산681-1전		(25)	(25)								(1)	

구 분	시설명	본 경 전						본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구 조	규 모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파 고 라 C	㉔-32	창동 산681-1전	(25)	(25)	(25)										(1)	
	㉔-33	창동 산681-1전	(25)	(25)	(25)										(1)	
	㉔-34	창동 산681-1전	(25)	(25)	(25)										(1)	
	㉔-35	창동 산681-1전	(25)	(25)	(25)										(1)	
	㉔	2개소	(50)	(50)											1	
파 고 라 D	㉔-1	월계 산3-1임 외	(25)	(25)												폐지
	㉔-2	창동 산17-1임	(25)	(25)											(1)	
	㉔	9개소	(189)	(189)											9	
파 고 라 E	㉔-1	창동 산48-4임	(21)	(21)											(1)	
	㉔-2	창동 산352-3잡	(21)	(21)											(1)	
	㉔-3	창동 산352-3임	(21)	(21)											(1)	
	㉔-4	창동 산48-4임	(21)	(21)											(1)	
	㉔-5	창동 산352-3임	(21)	(21)											(1)	
	㉔-6	창동 산352-3임	(21)	(21)											(1)	
	㉔-7	창동 산352-3임	(21)	(21)											(1)	
	㉔-8	창동 산48-4임	(21)	(21)											(1)	
	㉔-9	창동 산48-12임	(21)	(21)											(1)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조 경 시 설	파 고 라 F	⑩	4개소	(56)	(56)					4								4		
		⑩-1	창동 산48-4임	(14)	(14)							⑩-1	창동 산48-4임	(14)	(14)				(1)	
		⑩-2	창동 산48-4임	(14)	(14)							⑩-2	창동 산48-4임	(14)	(14)				(1)	
		⑩-3	창동 산48-4임	(14)	(14)							⑩-3	창동 산48-4임	(14)	(14)				(1)	
	마곡조파교라	⑩-4	창동 산48-4임	(14)	(14)							⑩-4	창동 산48-4임	(14)	(14)				(1)	
		⑩	창동 산48-4임	(108)	(108)						1	⑩	창동 산48-4임	108	108				1	
		⑩	2개소	(164)	(164)						2	⑩	2개소	164	164				2	
		⑩-1	창동 산31	(82)	(82)						(1)	⑩-1	창동 산31	(82)	(82)				(1)	
	수목보호를 덮 게	⑩-4	창동 산194-2임	(82)	(82)						(1)	⑩-4	창동 산194-2임	(82)	(82)				(1)	
		⑩	16개소	(23.5)	(23.5)						16	⑩	16개소	23.5	23.5				16	
		⑩-1	창동 산353-2전	(1)	(1)						(1)	⑩-1	창동 산353-2전	(1)	(1)				(1)	
		⑩-2	창동 산353-2전	(1)	(1)						(1)	⑩-2	창동 산353-2전	(1)	(1)				(1)	
		⑩-3	창동 산353-2전	(1)	(1)						(1)	⑩-3	창동 산353-2전	(1)	(1)				(1)	
		⑩-4	창동 산353-2전	(1)	(1)						(1)	⑩-4	창동 산353-2전	(1)	(1)				(1)	
		⑩-5	창동 산353-2전	(1)	(1)						(1)	⑩-5	창동 산353-2전	(1)	(1)				(1)	
		⑩-6	창동 산353-2전	(1)	(1)						(1)	⑩-6	창동 산353-2전	(1)	(1)				(1)	
	⑩-7	창동 산48-4임	(1)	(1)						(1)	⑩-7	창동 산48-4임	(1)	(1)				(1)		
	⑩-8	창동 산48-4임	(1)	(1)						(1)	⑩-8	창동 산48-4임	(1)	(1)				(1)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조 경 시 설	수목보호를 돕 게	㉔-9	창동 산48-4임	(1)	(1)				(1)	㉔-9	창동 산48-4임	(1)	(1)				(1)	
		㉔-10	창동 산48-4임	(1)	(1)				(1)	㉔-10	창동 산48-4임	(1)	(1)				(1)	
		㉔-18	창동 산157임	(2.25)	(2.25)				(1)	㉔-18	창동 산157임	(2.25)	(2.25)				(1)	
		㉔-19	창동 산157임	(2.25)	(2.25)				(1)	㉔-19	창동 산157임	(2.25)	(2.25)				(1)	
		㉔-20	창동 산157임	(2.25)	(2.25)				(1)	㉔-20	창동 산157임	(2.25)	(2.25)				(1)	
		㉔-21	창동 산157임	(2.25)	(2.25)				(1)	㉔-21	창동 산157임	(2.25)	(2.25)				(1)	
		㉔-22	창동 산157임	(2.25)	(2.25)				(1)	㉔-22	창동 산157임	(2.25)	(2.25)				(1)	
		㉔-23	창동 산157임	(2.25)	(2.25)				(1)	㉔-23	창동 산157임	(2.25)	(2.25)				(1)	
		(1)	창동 산154-1임	29.02	29.02					(1)	창동 산154-1임	29.02	29.02					
	초정	(1)-1	창동 산154-1임	(14.51)	(14.51)					(1)-1	창동 산154-1임	(14.51)	(14.51)					
		(1)-2	창동 산154-1임	(14.51)	(14.51)					(1)-2	창동 산154-1임	(14.51)	(14.51)					
		관철테크 A	어-7	창동 산157임	39.18	39.18				어-7	창동 산157임	39.18	39.18					
	관철테크 B	어-8	창동 산157임	57.74	57.74					어-8	창동 산157임	57.74	57.74					
		전망테크 A	어-9	창동 산157임	70.0	70.0				어-9	창동 산157임	70.0	70.0					
		전망테크 B	어-10	창동 산157임	19.32	19.32				어-10	창동 산157임	19.32	19.32					
	목교	어-11	창동 산157임	4.4	4.4					어-11	창동 산157임	4.4	4.4					
어-12		창동 산157임	5.4	5.4					어-12	창동 산157임	5.4	5.4						
어-13		창동 산189-1임	12.7	12.7					어-13	창동 산189-1임	12.7	12.7						
									어-15	월계 산 3-1임	6	6					신설	
후계테크	어-14	창동 산 183임	148.5	148.5					어-14	창동 산 183임	148.5	148.5						
	물레방아								어-16	월계 산 3-1임						1	신설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 축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소 계	소 계			8,355.96	6,775.26	7동		331.0	529.0	402			10동	380.14	578.14	373	증 8,777.96	
	약수터	마	3개소	597	597						마	3개소	597				3	
		마-1	창동 산197-6임 외	(90)	(90)						마-1	창동 산197-6임 외	(90)	(90)				
마-2		월계 산5임	(90)	(90)						마-2	월계 산5임	(90)	(90)					
마-3		월계 산69임	(417)	(417)				(3)		마-3	월계 산69임	(417)	(417)			(3)		
휴게소	1	13지역	2,603.26	2,603.26						1	13지역	2,524.96	2,524.96					
	1-1	창동 681-1전 외	(870)	(870)						1-1	창동 681-1전 외	(870)	(870)					
	1-2	창동 산200-1임	(84.2)	(84.2)						1-2	창동 산200-1임	(84.2)	(84.2)					
	1-4		(445.0)	(445.0)						1-4		(445.0)	(445.0)					
	1-5		(78.3)	(78.3)						1-5							폐지	
	1-6	창동 산137-1	(83.0)	(83.0)						1-6	창동 산137-1	(83.0)	(83.0)					
	1-7	창동 산137-1임	(214.5)	(214.5)						1-7	창동 산137-1임	(214.5)	(214.5)					
	1-8	창동 산167-1임	(54.0)	(54.0)						1-8	창동 산167-1임	(54.0)	(54.0)					
	1-9	창동 200-1임	(66.5)	(66.5)						1-9	창동 200-1임	(66.5)	(66.5)					
	1-13	창동 산157임	(372.16)	(372.16)						1-13	창동 산157임	(372.16)	(372.16)					
	1-16	창동 산 189-1임	(14.6)	(14.6)						1-16	창동 산 189-1임	(14.6)	(14.6)					
	1-17	창동 산 189-1임	(6.0)	(6.0)						1-17	창동 산 189-1임	(6.0)	(6.0)					
	1-18	창동 산 189-1임	(21.0)	(21.0)						1-18	창동 산 189-1임	(21.0)	(21.0)					
	1-19	창동 산 189-1임	(11.0)	(11.0)						1-19	창동 산 189-1임	(11.0)	(11.0)					
	1-20	월계 산5임	(135.0)	(135.0)						1-20	월계 산5임	(135.0)	(135.0)					
	1-21	월계 산8-8임	(148.0)	(148.0)						1-21	월계 산8-8임	(148.0)	(148.0)					
	합 계																	

휴 양 시 절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노인정	정 자	2	1개소	781.70	126.00	조적조	1동	126	324		2	1개소	781.70	126.00	조적조	1동	126	324		
		2-2	창동 산194-2임	(781.7)	(126)	조적조	(1동)	(126)	(324)		2-2	창동 산194-2임	(781.7)	(126)	조적조	(1동)	(126)	(324)		
		3	7개소	4,319	3,359		6동	205	205	1	3	7개소	4,319	3,359		6동	205	205	1	
		3-1	창동 산137-8임 외	(720)	(720)	목조	(1동)	(36)	(36)		3-1	창동 산137-8임 외	(720)	(720)	목조	(1동)	(36)	(36)		
		3-2	창동 산194-6임 외	(225)	(225)	목조	(1동)	(36)	(36)		3-2	창동 산194-6임 외	(225)	(225)	목조	(1동)	(36)	(36)		
		3-3	창동 산189-3임	(196)	(196)	목조	(1동)	(36)	(36)		3-3	창동 산189-3임	(196)	(196)	목조	(1동)	(36)	(36)		
		3-4	월계 산5임 외	(900)	(900)	목조	(1동)	(36)	(36)		3-4	월계 산5임 외	(900)	(900)	목조	(1동)	(36)	(36)		
		3-5	월계 산82임	(2,070)	(1,110)	목조	(1동)	(36)	(36)		3-5	월계 산82임	(2,070)	(1,110)	목조	(1동)	(12636)	(36)		
		3-6	월계 산66-3임	(173)	(173)	목조	(1동)	(25)	(25)		3-6	월계 산66-3임	(173)	(173)	목조	(1동)	(25)	(25)		
		3-7	창동 산189-1임	(35.0)	(35.0)					(1)	3-7	창동 산189-1임	(35.0)	(35.0)					(1)	
목재쉼터 아외탁자 장의자 등의자 이동식의자 사각의자 앉음벽		4	창동 산177-1임	90	90					(1)	4	창동 산177-1임	90	90					1	
			잔디광장 전지역			목재				(64)		잔디광장 전지역			목재				64	
			전지역			목재				(145)		전지역			목재				145	
		③	전지역			목재				(72)	③	전지역			목재				72	
		④	전지역			목재				(7)	④	전지역			목재				7	
		⑤	전지역			목재				(14)	⑤	전지역			목재				14	
		⑩	전지역							(27)	⑩	전지역							27	

구 분	시설명	본 경 진						본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비대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비대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휴 양 시 설		㉑	휴게광장 외			목재				(39)							39	
	평의자	㉒	창동 산157임			목재				(25)							(25)	
		㉓	창동 산154-1임			목재				(4)							(4)	
		평 상	㉔															
	아영정1										4,484.52	4,484.52						신설
	아영정2										1,167.86	1,167.86						신설
	아영정3										2,710.56	2,710.56						신설
											292.46	292.46						신설
	부속4동										83.60	83.60	경량철골조	1동	16.38	16.38		신설(배민하우스)
	부속5동										71.74	71.74	경량철골조	1동	16.38	16.38		신설(배민하우스)
부속6동										45.52	45.52	경량철골조	1동	16.38	16.38		신설(배민하우스)	
유 의 시 설	소 계									1							4	증) 3개소
	조함돌이대	㉕	창동 산137-9임							(1)							1	
																	1	신설
	트리하우스																1	신설
사면슬라이드																1	신설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안 동 시 설	소 계			56,409.5	51,355.5		5동	4,405.33	7,571.40	50		56,409.5	51,355.5		5동	4,405.33	7,571.40	43	감) 7개소		
	풋살경기장		창동 산48-4임 외	1,150	1,150							1,150	1,150								
	테니스장	자	2개소	4,129.2	4,129.2		1동	72	72			4,129.2	4,129.2		1동	72	72				
		자-3	월계 산63-4	(2,405)	(2,405)							(2,405)	(2,405)								
		자-4	창동 산48-3임	(1,724.2)	(1,724.2)							(1,724.2)	(1,724.2)								
	농구장	빠	월계 산63-4	703	703							703	703								
	게이트볼장	차	1개소	1,180	1,180					1		1,180	1,180						1		
		차-2	월계 산69임	(1,180)	(1,180)					(1)		(1,180)	(1,180)						(1)		
		거	2개소	17,523	16,781					21		17,523	16,781						21		
	축구장	거-1	월계 산63-4	(7,020)	(6,278)							(7,020)	(6,278)								
		거-2	창동 산48-4임 외	(10,503)	(10,503)					(21)		(10,503)	(10,503)						(21)		
	다이나트랙	카	1개소	3,510	910							3,510	910								
		카-2	월계 산5임 외	(3,510)	(910)							(3,510)	(910)								
	골프연습장	6	2개소	13,870	13,676		2동	1,898.14	4,978.11			13,870	13,676		2동	1,898.14	4,978.11				
		6-2	창동 산126-1임	(5,920)	(5,726)		R,C	(732.50)	(2,303.67)			(5,920)	(5,726)		R,C	(732.50)	(2,303.67)				
		6-3	월계 산65-1임 외	(7,950)	(7,950)		R,C	(1,165.64)	(2,674.44)			(7,950)	(7,950)		R,C	(1,165.64)	(2,674.44)				
	배드민턴장	타	1개소	647.0	647.0							647.0	647.0								
타-14		창동 산48-4임 외	(647)	(647)							(647)	(647)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경				변 경				후 경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안 동 시 설	체력단련장	파	14개소	6,781.6	6,781.6					22	파	14개소	6,781.6	6,781.6						22	
		파-1	월계 산5임	(720)	(720)						파-1	월계 산5임	(720)	(720)							
		파-2	월계 산82임 외	(720)	(720)						파-2	월계 산82임 외	(720)	(720)							
		파-3	월계 산82임	(990)	(990)						파-3	월계 산82임	(990)	(990)							
		파-4	월계 산46-2임 외	(600)	(600)						파-4	월계 산46-2임 외	(600)	(600)							
		파-6	월계 산68임	(474)	(474)					(10)	파-6	월계 산68임	(474)	(474)						(10)	
		파-7	월계 산69임	(576)	(576)					(8)	파-7	월계 산69임	(576)	(576)						(8)	
		파-8	월계 8-7임 외	(450)	(450)						파-8	월계 8-7임 외	(450)	(450)							
		파-9	창동 산24임	(899)	(899)						파-9	창동 산24임	(899)	(899)							
		파-10	창동 산51-1임	(139)	(139)						파-10	창동 산51-1임	(139)	(139)							
		파-11	창동 산194-6임	(315)	(315)						파-11	창동 산194-6임	(315)	(315)							
		파-12	창동 산137-46임	(151)	(151)						파-12	창동 산137-46임	(151)	(151)							
		파-13	창동 산137-4임	(184)	(184)						파-13	창동 산137-4임	(184)	(184)							
		파-14	창동 산48-4임 외	(310)	(310)						파-14	창동 산48-4임 외	(310)	(310)							
		파-15	창동 산183임	(38.6)	(38.6)						파-15	창동 산183임	(38.6)	(38.6)							
		파-16	월계 산8-8임	(215.0)	(215.0)						파-16	월계 산8-8임	(215.0)	(215.0)							
	인라인 스케이트장	13	월계 산17-1임 외	2,975.0	1,457.0						13	월계 산17-1임 외	2,975.0	1,457.0							
㉔									10	㉔									3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안 통 시 설	윗몸이기	㉔-1	월계 산3-1임 외							(3)									폐지			
	하리돌리기	㉔-2	월계 산3-1임 외							(2)									폐지			
	야구야놀기	㉔-3	월계 산3-1임 외							(2)									폐지			
	하리버틀기	㉔-4	창동 산 183임							(1)								(1)				
	큰걸음걷기	㉔-5	창동 산 183임							(1)								(1)				
	엮파도타기	㉔-6	창동 산 183임							(1)								(1)				
	축구장	퍼	축구장	1,170.7	1,170.7																	
	실내 배드민턴장	허	2개소	2,770.00	2,770.00	2동		2,507.19	2,593.29					2동		2,507.19	2,593.29					
		허-1	월계 산63-1수	1,748.0	1,748.0	1동		1,522.11	1,522.11					1동		1,522.11	1,522.11					
	교 양 시 설	소 계	허-2	창동 410-5	1,022.00	1,022.00	1동		1,022.00	1,277.5				1동		1,022.00	1,277.5					
				10,807.48	9,187.48	1동		1,134.58	3,111.46	1				1동		1,134.58	3,111.46	1				
도 서 관		7	2개소	4,977.5	3,357.5									1동				1				
		7-1	창동 산137-5임 외	4,950.0	3,330.0		(1동)	1,134.58	3,111.46					(1동)		1,134.58	3,111.46					
자연학습장		7-2	창동 428-1 외 1	27.50	27.50					(1)								(1)	이동서비스서관			
		더	1개소	239	239																	
아외교실		더-2	창동 산137-2임	(239)	(239)																	
		저	창동 산137-1임	252.5	252.5																	
아외무대		처	창동 산203-4	463.5	463.5																	
		퍼-1	산154-1임	339.24	339.24																	
참여형 텃밭	퍼-2	산154-1임	2,756.85	2,756.85																		
	퍼-3	산154-1임	641.29	641.29																		
생태체험장	퍼-4	창동 산177-1임	1,137.6	1,137.6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주 차 장	소 계			7,646.63	7,376.63	5동		255.41	255.41	12		8,539.13	8,269.13	7동		445.43	445.43	25 증 889.50	
	하	3개소		7,049.8	6,779.8						하	3개소	7,049.8	6,779.8					
	하-2	창동 산126-1임	(1,313)	(1,119.0)							하-2	창동 산126-1임	(1,313)	(1,119.0)					
	하-4	월계 산65-1임	(3,200)	(3,200.0)							하-4	월계 산65-1임	(3,200)	(3,200.0)					
장애민주차장	하-8	창동 산107-225임	(2,536.8)	(2,460.8)							하-8	창동 산107-225임	(2,536.8)	(2,460.8)					
											하-9	월계 748-7답	546.88	546.88					신설
											노-2	월계 749-2전	34.76	34.76					신설
											8	1개소	180	180	1동	15.21	15.21		
화 장 실	8-2	월계 산68임	(180)	(180)	목조	(1동)	(15.21)	(15.21)			8-2	월계 산68임	(180)	(180)	목조	(1동)	(15.21)	(15.21)	
	9	3개소	372.2	372.2		4동	240.2	240.2			9	3개소	372.2	372.2	4동	240.2	240.2		
	9-3	월계 산96임	(90)	(90)	조적	(1동)	(30)	(30)			9-3	월계 산96임	(90)	(90)	1동	(30)	(30)		
	9-4	창동 산137-1임	(115.5)	(115.5)		(1동)	(79.5)	(79.5)			9-4	창동 산137-1임	(115.5)	(115.5)	(1동)	(79.5)	(79.5)		
스 톨 드	9-5	창동 428	(115.5)	(115.5)		(1동)	(79.5)	(79.5)			9-5	창동 428	(115.5)	(115.5)	(1동)	(79.5)	(79.5)		
	9-6	창동 산183임	(51.2)	(51.2)		(1동)	(51.2)	(51.2)			9-6	창동 산183임	(51.2)	(51.2)	(1동)	(51.2)	(51.2)		
	⑤	창동 산48-4임							(1)	⑤	창동 산48-4임						(1)		
	음 수 전	테니스장과 전지역			CON 'C				(8)		테니스장과 전지역			CON 'C			(8)		
세 축 대	⑥	월계 산63-4			스토펙스				(1)	⑥	월계 산63-4			스토펙스			(1)		
	⑦	월계 산63-4			스토펙스				(1)	⑦	월계 산63-4			스토펙스			(1)		
	②	창동 산48-4임			CON 'C				(1)	②	창동 산48-4임			CON 'C			(1)		
	석	창동 산157임	4.8	4.8							창동 산157임	4.8	4.8						
계 단	1	창동 산157임	7.4	7.4						⑨	창동 산157임	7.4	7.4						
	2	창동 산157임	13.86	13.86						⑩	창동 산157임	13.86	13.86						
	3	창동 산157임	14.97	14.97						⑪	창동 산157임	14.97	14.97						
	6	창동산189-1임	1.4	1.4						⑫	창동산189-1임	1.4	1.4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관 리 시 설	계 단 7	㉔	창동산189-1임	2.2	2.2						㉔	창동산189-1임	2.2	2.2						
	창동산189-1임										㉔-1	월계 750 대 외	170.62	170.62	조적조	1동	95.01	95.01	신설(부속1동)	
											㉔-2	월계 산 5-5 임	132.24	132.24	조적조	1동	95.01	95.01	신설(부속2동)	
	아워스파										㉔-1	월계 산 5-5임	8	8	반고정용				신설(1계=4㎡)	
	아워테이블A										㉔-2	월계 749-7전			반고정용				신설(파란색, 테이블세트)	
관 리 시 설	아워테이블B										㉔-3	월계 산 5-5임			반고정용				신설	
	소 계			554.00	361.86	R.C	2동	297.66	361.9	277			983.48	791.34		5동	427.93	492.13	299	증) 429.48
	10	2개소		554.00	361.86	R.C	2동	297.66	361.9		10	3개소	575.04	382.90	R.C	3동	303.66	367.86		
	관리사무소	10-2	월계 산63-4	(114.0)	(114.0)	R.C	(1동)	(114)	(114)		10-2	월계 산63-4	(114.0)	(114.0)	R.C	(1동)	(114)	(114)		
		10-3	창동 산48-4임	(440.00)	(247.86)	R.C	(1동)	(183.66)	(247.86)		10-3	창동 산48-4임	(440.00)	(247.86)	R.C	(1동)	(183.66)	(247.86)		
	방문자센터										10-5	월계 749-2전	(21.04)	(21.04)	목구조	(1동)	(6)	(6)		신설(부속7동)
	응접실										10-6	월계 749-7전 외	302.03	302.03	목구조	1동	75.85	75.85		신설(본동)
	안내판										10-7	월계 749-7전 외	80.68	80.68	조적조	1동	48.42	48.42		신설(부속3동)
	방향안내판		진입광장 등 전지역			목재				23		진입광장 등 전지역			목재				23	
			전지역			목재				4		전지역			목재				4	
충돌안내판		진입광장 등 전지역			목재				3		진입광장 등 전지역			목재				4	증) 1개소	
	⑧		월계 산63-4			목재				(2)	⑧	월계 산63-4			목재				(2)	

구 분	시설명	본 경 전						본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관 리 시 설	종합안내판		청동 산183임			목재			(1)		청동 산183임			목재			(1)	
										⑨-1	월계 749-2 전			목재			(1)	신설
	휴 지 통		전지역					24			전지역			목재			26	중) 2개소
		⑨	전지역			목재		(24)		⑨	전지역			목재			(24)	
	분리수거장									⑨-1	월계 748-7답 외			목재			(2)	신설(개≒4분류)
										⑨-2	월계 748-7답 외	25.73	25.73	목재				신설
	조 명 등		전지역					203			전지역						213	
			전지역			철재		(179)			전지역			철재			(179)	
			전지역			목재		(24)			전지역			목재			(34)	중) 10개소
	CCTV		전지역					20			전지역						22	중) 2개소
			전지역					(20)			전지역						(22)	
	웹스									15-1	월계 산 5-5 임 외			철재,목재			1	신설
	게이트									15-2	월계 산 5-5임 외			목재			4	신설
	주차 차단기									15-3	월계 749-2전			-			2	신설
	누 지 및 기타				1,411,701.21							1,401,917.97						감) 9,779.24

다. 도로조서

- 공원 내 도시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합계				2,057	47,190				
"	대로	계			1,640	41,550				
"	대로	3	38	25	450	11,250	도시계획도로	창동 산192-1 임	창동 산184-3 임	
"	"	2	74	30	110	3,300	"	대 3-61	창동 산163-1 임	
"	"	3	61	25	1,080	27,000	"	대 2-74	월계 산67 임	
"	중로	계			192	3,840				
"	중로	1	78	20	147	2,940	도시계획도로	창동 산418-3 도	대 3-38	
"	"	1	79	20	45	900	"	창동 산107-223도	창동 산107-223도	
"	소로	계			225	1,800	도시계획도로			
"	"	3	4	8	75	600	"	월계 산37-1 임	월계 산33-6 임	
"	"	3	5	8	123	984	"	대 3-38	창동산137-9임	
"	"	3	6	8	27	216	"	창동 산137-9 임	소 3-5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변경	계				(24,362.9) 25,128.80	(43,538.19) 45,938.13				증)2,399.94
당초 변경	소로	계			(3,295.50) 3,933.80	(14,408.29) 16,658.35				증)2,250.06
당초	소로	3	1	3	16	48	연결로	산 4-22	휴게광장 나-14	
당초	소로	3	2	3	61	183	연결로	휴게광장 나-14	진입광장 가-12	
당초	소로	3	7	3	77	231	부진입로	진입광장 가-3	지압보도 (세족대)	
당초	소로	3	8	5	70	350	연결로	지압보도(세족대)	진입광장 가-7	
당초	소로	3	9	6	106	636	부진입로	중 2-79	골프연습장 6-2	소형주차 20대포함
당초	소로	2	10	8	219	1,752	연결로	대 3-61	월계 산65-7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소로	2	11	8	273	2,184	"	대 3-61	축구장 거-1	
당초	소로	3	12	6	242	1,452	"	대 3-61	창동177-1	
당초	소로	3	14	6	23	138	"	소 3-10	주차장 하-4	
당초	소로	3	15	4	88	352	"	창동 410-5대	집입광장 가-4	
당초	소로	3	16	12	121	1,452	"	공원경계	진입광장가-9	
당초	소로	3	17	6	172	1,032	"	진입광장 가-8	휴게광장 나-10	
당초	소로	3	18	4	99	396	"	소 3-9	골프연습장 6-2	소형주차 3대포함
당초	소로	3	19	2	166	332	"	연못	진입광장 가-3	
당초	소로	3	20	2	15	30	"	풋살경기장	소로 3-17	
당초	소로	3	21	2	11	22	"	배드민턴장 타-13	연못	
당초	소로	3	22	3	40	104	"	소 3-21	소3-19	
당초	소로	3	23	3	128	384	부진입로	진입광장 가-6	진입광장 가-7	
당초	소로	3	24	2	15	30	연결로	소 3-22	연못	
당초	소로	3	25	2	52	104	부진입로	공원경계	진입광장 가-7	
당초	소로	3	26	2	21	42	부진입로	주차장 하-8	소로 3-23	
당초	소로	3	27	5.5	77.5	426.25				
당초	소로	3	28	5	97	485				
당초	소로	3	29	2	23.5	47	연결로	밤골어린이공원	나-19	
당초	소로	3	30	1.8	62	111.6	연결로	나-19	전망데크B	
당초	소로	3	31	2	26	52	연결로	나-19	전망데크A	
당초	소로	3	32	1.5	46.5	69.75	연결로	소 3-34	나-18	
당초	소로	3	33	3	9.5	28.5	연결로	산4-161		
당초	소로	3	34	1.5	43	64.5	연결로	밤골어린이공원	소 3-36	
당초	소로	3	35	2	16	32	연결로	소 3-36	밤골어린이공원	
당초	소로	3	36	4.15	51.5	213.73	연결로	공원경계	휴게광장 나-16	
당초	소로	3	37	3.5	20.5	71.75	연결로	휴게광장 나-16	휴게광장 나-18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소로	3	38	2	53.5	107	연결로	소 3-38	소 3-51	
당초	소로	3	39	2	12.5	25	연결로	어-11	나-17	
당초	소로	3	40	2	48.5	97	연결로	휴게광장 나-18	휴게광장 나-17	
당초	소로	3	41	1.5	96.5	144.75	연결로	소 3-51	전망데크A	
당초	소로	3	42	1.5	30.5	45.75	연결로	소 3-31	어-12	
당초	소로	3	43	2.5	84.5	210.59	연결로	산156-1임	산155-2임	
당초	소로	3	44	2.0	106	211.53	연결로	소 3-49	소 3-43	
당초	소로	3	45	1.5	26	38.65	연결로	소 3-48	소 3-49	
당초	소로	3	46	2.0	19	38.14	연결로	소 3-48	소 3-49	
당초	소로	3	47	2.0	12	24.04	연결로	대지경계	소 3-49	
당초	소로	3	48	2.0	104	207.25	연결로	소 3-49	퍼-3	
당초	소로	3	49	2.0	134.5	268.38	연결로	대지경계	소 3-43	
당초	소로	3	50	1.5	50.5	75.75	연결로	소 3-32	휴게광장 나-16	
당초	소로	3	51	2.0	9.5	19	연결로	소 3-38	어-11	
당초	소로	3	52	2.0	20.0	39.38	연결로	산156-1임	대지경계	
					3,295.5	14,408.29				
신설	소로	3	196	4.0	136.00	595.16	연결로	진입광장	작은광장	
신설	“	3	197	3.0	107.30	377.87	“	진입광장	소로 196	
신설	“	3	198	4.0	118.20	529.13	“	주차장	작은광장	
신설	“	3	199	4.0	68.40	343.29	“	작은광장	소로 200	
신설	“	3	200	3.0	44.30	153.19	“	소로 199	부속 6동	
신설	“	3	201	2.0	117.30	179.67	“	작은광장	소로 200	
신설	“	3	202	2.0	46.80	71.75	산책로	소로 200	산 5임	
					638.3	2,250.06				
당초 신설	산책로	계			(21,067.4) 21,195.00	(29,129.9) 29,279.78				증)149.88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산책로	4	1	1.2	350	420.00	산책로	창동 산25임	소 3-17	
당초	"	4	2	1.2	78	93.60	"	창동 산31임	산 4-1	
당초	"	4	3	1.2	121	145.20	"	산 4-3	산 4-4	
당초	"	4	4	1.2	44	52.80	"	창동 산51-1임	소 3-17	
당초	"	4	6	1.2	56	67.20	"	공원경계	소 3-20	
당초	"	4	7	1.2	49	58.80	"	산 4-3	산 4-1	
당초	"	4	8	1.2	94	112.80	"	산 4-6	산 4-4	
당초	"	4	9	1.2	42	50.40	"	창동 산126-1임	소 3-9	
당초	"	4	10	1.2	204	244.80	"	중 2-79	창동 산126-1임	
당초	"	4	11	1.2	56	67.20	"	어린이놀이터 바-3	배드민턴장 타-14	
당초	"	4	12	1.2	113	135.60	"	배드민턴장 타-14	정자 3-1	
당초	"	4	13	1.2	120	144.00	"	배드민턴장 타-14	창동 산137-9임	
당초	"	4	14	1.2	352	422.40	"	창동 산137-5임	정자 3-1	
당초	"	4	15	1.2	48	57.60	"	창동 산137-7임	산4-14	
당초	"	4	16	1.2	57	68.40	"	창동137-7임	산4-14	
당초	"	4	17	1.2	38	45.60	"	산4-14	창동 산137-6임	
당초	"	4	18	1.2	54	64.80	"	산4-14	창동 산137-6임	
당초	"	4	19	1.2	94	112.80	"	창동 산137-6임	산4-14	
당초	"	4	20	1.2	79	94.80	"	산 4-14	도 서 관	
당초	"	4	21	1.2	241	289.20	"	산4-95	산 4-30	
당초	"	4	22	1.2	227.5	273.00		산 4-24	중 2-78	
당초	"	4	23	1.2	73	87.60	"	창동 산157임	산 4-22	
당초	"	4	24	1.2	385	462.00	"	창동 산157임	창동 산159과	
당초	"	4	24	1.2	364.5	437.40	"	창동 산157임	진입광장 가-12	
당초	"	4	25	1.2	107	128.40	"	산 4-22	산 4-24	
당초	"	4	26	1.2	90	108.00	"	대 3-38	배드민턴장 타-3	
당초	"	4	26	1.2	90	108.00	"	대 3-38	배드민턴장 타-3	
당초	"	4	27	1.2	315	378.00	"	산 4-26	카-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	4	28	1.2	424	508.80	"	창동 산183임	정자 3-3	
당초	"	4	29	1.2	53	63.60	"	산 4-30	배드민턴장 타-3	
당초	"	4	30	1.2	213	255.60	"	대 3-38	카-1	
당초	"	4	31	1.2	103	123.60	"	산 4-32	카-1	
당초	"	4	32	1.2	265	318.00	"	정자 3-2	창동 산194-1임	
당초	"	4	33	1.2	389	466.80	"	산 4-86	산 4-28	
당초	"	4	34	1.2	123	147.60	"	산 4-33	정자 3-3	
당초	"	4	35	1.2	265	318.00	"	휴게광장 나-8	산 4-85	
당초	"	4	36	1.2	215	258.00	"	창동 산203-1임	산 4-39	
당초	"	4	39	1.2	395	474.00	"	월계912-9구	산 4-40	
당초	"	4	40	1.2	60	72.00	"	배드민턴장 타-6	정자 3-4	
당초	"	4	43	1.2	421	505.20	"	소 3-12	배드민턴장 타-12	
당초	"	4	47	1.2	165	198.00	"	약수터 마-2	산 4-44	
당초	"	4	48	1.2	200	240.00	"	산 4-41	약수터 마-2	
당초	"	4	50	1.2	255	306.00	"	축구장 거-1	정자 3-4	
당초	"	4	51	1.2	959	1,150.80	"	정자 3-4	체력단련장 파-4	
당초	"	4	53	1.2	118	141.60	"	월계산42임	체력단련장 파-4	
당초	"	4	54	1.2	388	465.60	"	전망대 8-2	산 4-99	
당초	"	4	55	1.2	323	387.60	"	월계 산74-2임	산 4-56	
당초	"	4	57	1.2	513	615.60	"	월계 산84임	전망대 8-2	
당초	"	4	58	1.2	141	169.20	"	임간휴게소 라-2	산 4-57	
당초	"	4	59	1.2	55	66.00	"	체력단련장 파-3	인간휴게소 라-2	
당초	"	4	60	1.2	182	218.40	"	월계 산82임	산 4-57	
당초	"	4	61	1.2	305	366.00	"	소 3-10	배드민턴장 타-9	
당초	"	4	66	1.2	315	378.00	"	산 4-67	산 4-54	
당초	"	4	68	1.2	180	216.00	"	산 4-108	민남의 광장 너	
당초	"	4	69	3.0	351	1,053.00	"	광장입구	광장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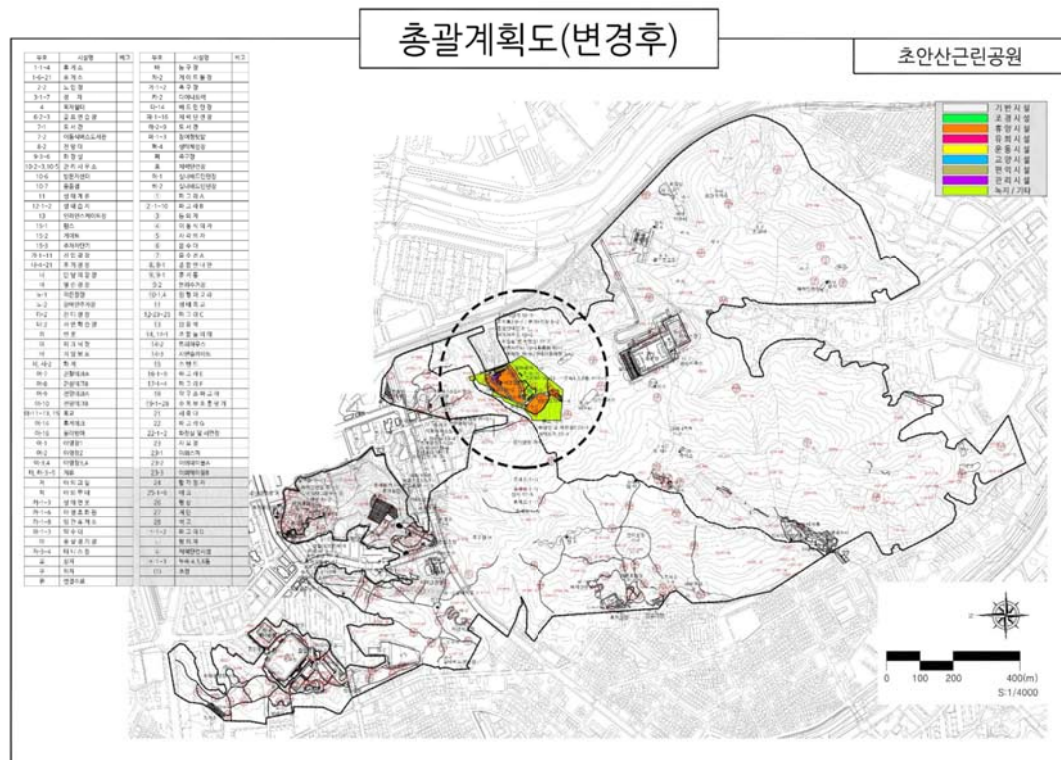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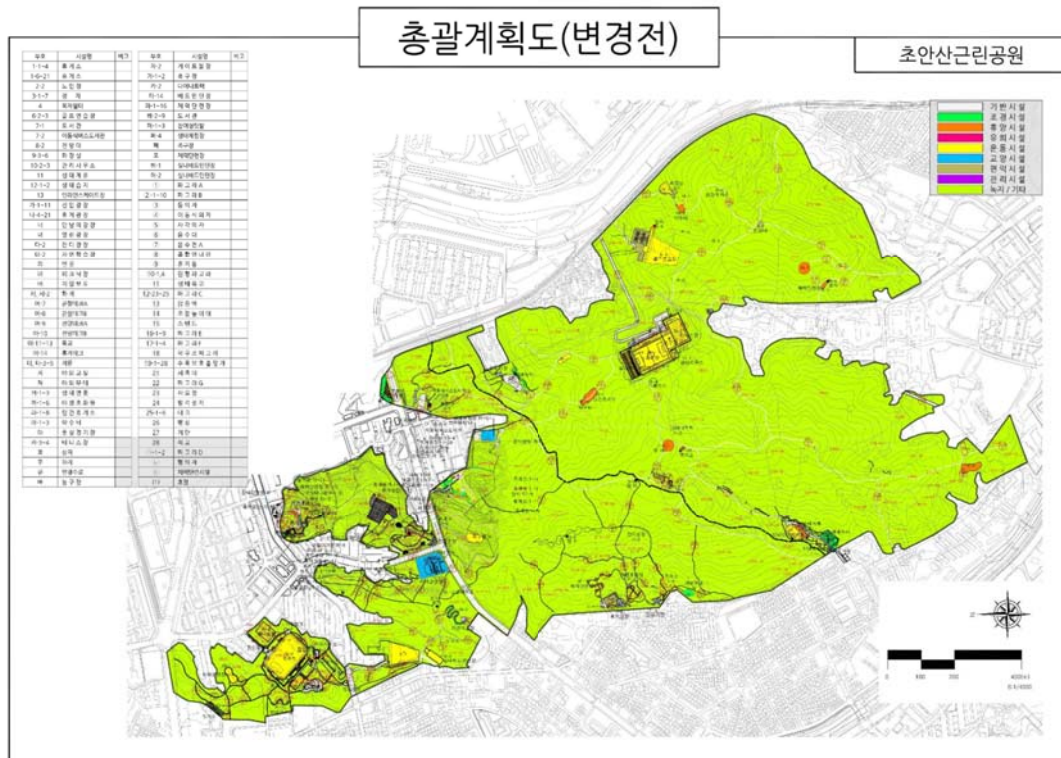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	4	70	3.0	69	207.00	"	집입광장 가-2	산 4-69	
당초	"	4	71	1.3	110	143.00	"	휴게광장 나-4	휴게광장 나-5	
당초	"	4	72	1.0	283	283.00	"	휴게광장 나-4	관리사무소	
당초	"	4	73	1.0	138	138.00	"	관리사무소	집입광장 가-2	
당초	"	4	74	4.0	82	328.00	"	산 4-70	관리사무소	
당초	"	4	75	3.0	76	228.00	"	휴게광장 나-4	배드민턴장 상부입구	
당초	"	4	80	1.2	134	160.80	"	소 3-15	산129-1임	
당초	"	4	81	1.2	195	234.00	"	산 4-12	자연학습장 더-2	
당초	"	4	82	1.2	48	57.60	"	자연학습장 더-2	대 3-38	
당초	"	4	83	2.0	30	60.00	"	휴게광장 나-8	휴게광장 나-8	
당초	"	4	85	2.0	241	482.00	"	휴게광장 나-8	산 4-33	
당초	"	4	86	2.0	186	372.00	"	진입광장 가-5	산 4-85	
당초	"	4	87	2.0	73	146.00	"	진입광장 가-5	산 4-86	
당초	"	4	88	2.0	31	62.00	"	휴게소 1-3	배드민턴장 타-15	
당초	"	4	89	1.2	102	122.40	"	산 4-85	산 4-86	
당초	"	4	90	1.2	34	40.80	"	창동 산197-1임	창동 산197-6임	
당초	"	4	91	1.2	7	8.40	"	산 4-85	산 4-89	
당초	"	4	92	1.2	199	238.80	"	산 4-85	산 4-32	
당초	"	4	93	1.2	149	178.80	"	산4-1	산 4-1	
당초	"	4	95	1.2	100	120.00	"	정자 3-1	대로 3-38	
당초	"	4	96	1.2	45	54.00	"	휴게광장 나-8	체력단련장 파-11	
당초	"	4	97	1.2	74	88.80	"	휴게소 1-1	산 4-1	
당초	"	4	98	1.2	16	19.20	"	산 4-2	휴게소 1-1	
당초	"	4	99	1.2	256	307.20	"	소 3-10	소 3-16	
당초	"	4	100	1.2	475	570.00	"	진입광장 가-9	산 4-51	
당초	"	4	101	1.2	178	213.60	"	공원경계	산 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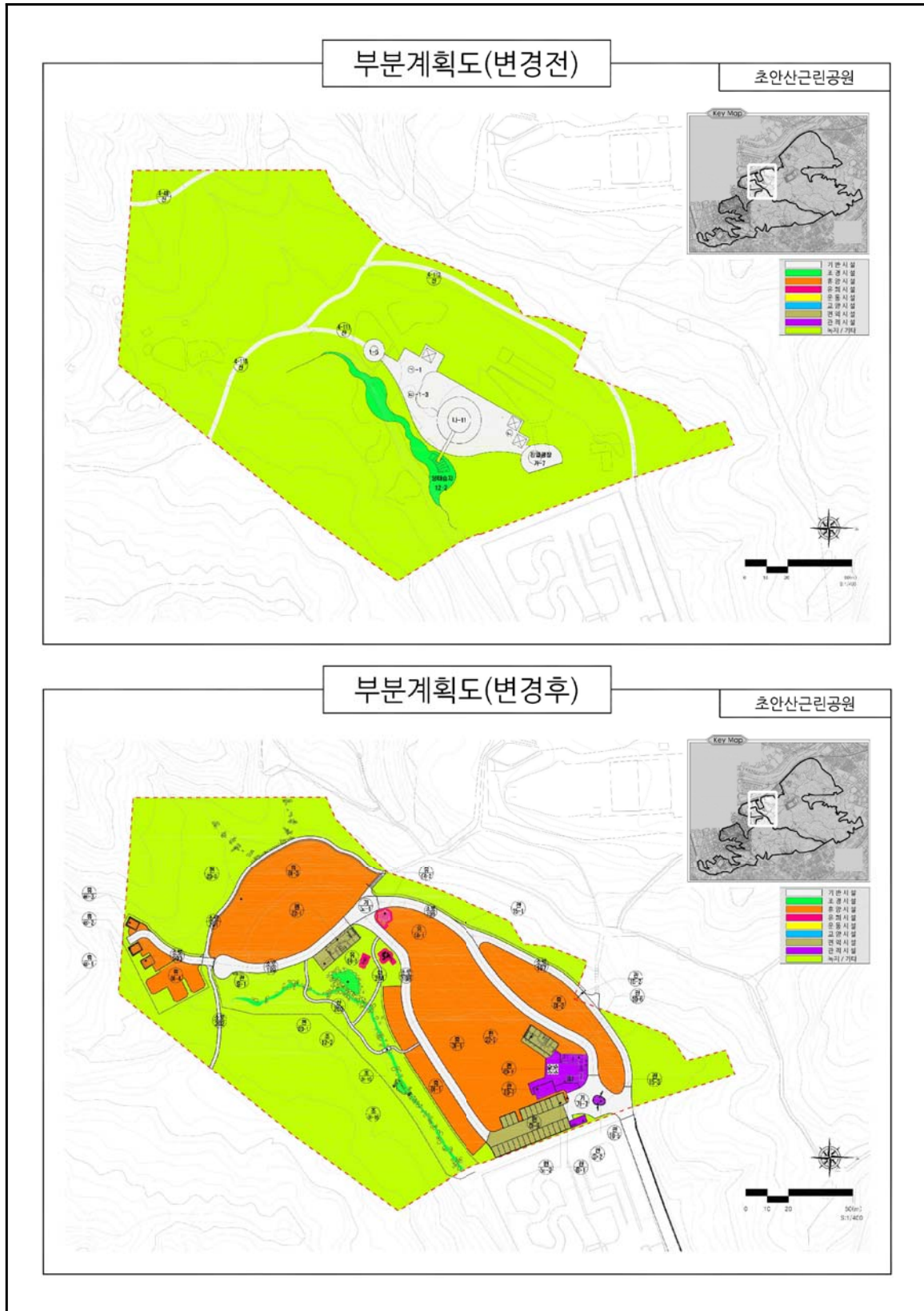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	4	102	1.2	225	270.00	"	공원경계	산 4-51	
당초	"	4	103	1.2	83	99.60	"	산 4-39	산 4-106	
당초	"	4	104	1.2	19	22.80	"	배드민턴장 타-5	산 4-106	
당초	"	4	105	1.2	528	633.60	"	공원경계	산 4-106	
당초	"	4	106	1.2	111	133.20	"	산 4-105	산 4-107	
당초	"	4	107	1.2	466	559.20	"	산 4-106	산 4-108	
당초	"	4	108	1.2	45	54.00	"	산 4-107	산 4-109	
당초	"	4	109	1.2	330	396.00	"	산 4-108	공원경계	
당초	"	4	110	1.2	260	312.00	"	산 4-43	산 4-108	
당초	"	4	111	1.2	36	43.20	"	산 4-110	휴게소 1-5	
당초	"	4	112	1.2	180	216.00	"	공원경계	산 4-110	
당초	"	4	113	2.5	69.5	173.75	"	진입광장 가-11	휴게광장 나-12	
당초	"	4	114	2.0	94.5	189.00	"	소로 3-28	산책로 4-115	
당초	"	4	115	2.0	98	196.00	"	휴게광장 나-12	야외교실 저	
당초	"	4	116	2.0	182.5	365.00	"	휴게광장 나-13	소로 3-23	
당초	"	4	117	2.0	40.5	81.00	"	휴게소 1-9	산 4-123	
당초	"	4	118	2.0	85	170.00	"	휴게소 1-9	창동 산200-1임	
당초	"	4	119	1.8	121.5	218.70	"	산 4-116	산 4-109	
당초	"	4	120	1.8	173.5	312.30	"	산 4-116	산 4-109	
당초	"	4	121	1.5	87	130.50	"	휴게소 1-6	소 3-28	
당초	"	4	122	1.5	12	18.00	"	산 4-121	소 3-28	
당초	"	4	123	1.3	73.5	95.55	"	야외무대 처	산 4-88	
당초	"	4	124	1.3	187	243.10	"	산 4-123	창동 산208-1임	
당초	"	4	125	4.0	114	456.00	"	산 4-114	진입광장 가-12	
당초	"	4	126	2.0	19	38.00	"	산 4-24	휴게광장 나-15	
당초	"	4	127	2.0	8	16.00	"	휴게광장 나-15	휴게광장 나-14	
당초	"	4	128	2.0	2	4.00	"	산 4-24	데크-2	
당초	"	4	129	1.5	32	48.00	"	휴게광장 나-15	소 3-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	4	130	1.5	31	46.50	"	휴게광장 나-15	소 3-2	
당초	"	4	131	1.5	69	103.50	"	소 3-2	소 3-1	
당초	"	4	132	1.5	10	15.00	"	데크-2	산 4-130	
당초	"	4	133	1.5	10	15.00	"	데크-3	데크-2	
당초	"	4	134	1.5	10	15.00	"	데크-2	산 4-131	
당초	"	4	135	1.5	10	15.00	"	데크-2	산 4-131	
당초	"	4	136	1.5	11	16.50	"	산 4-131	휴게광장 나-14	
당초	"	4	137	1.5	24	36.00	"	데크-3	산 4-131	
당초	"	4	138	1.5	10	15.00	"	데크-3	데크-2	
당초	"	4	139	1.5	10	15.00	"	데크-3	데크-2	
당초	"	4	140	1.5	17	25.50	"	진입광장 가-12	데크-3	
당초	"	4	141	1.5	11	16.50	"	산 4-143	데크-3	
당초	"	4	142	1.5	24	36.00	"	산 4-143	산 4-22	
당초	"	4	143	1.5	62	93.00	"	산 4-125	산 4-125	
당초	"	4	144	1.5	20	30.00	"	산 4-22	산 4-125	
당초	"	4	145	1.5	16	24.00	"	산 4-23	생태연못 커	
당초	"	4	146	1.5	125	187.50	"	산 4-125	데크-4	
당초	"	4	147	1.5	6	9.00	"	산 4-146	공원경계	
당초	"	4	148	1.5	15	22.50	"	데크-4	공원경계	
당초	"	4	149	1.0	12	12.00	"	산 4-130	데크-2	
당초	"	4	150	1.0	9	9.00	"	산 4-151	산 4-149	
당초	"	4	151	1.0	10	10.00	"	산 4-130	데크-2	
당초	"	4	152	1.0	4	4.00	"	데크-2	산4-151	
당초	"	4	153	1.0	8	8.00	"	데크-2	산 4-155	
당초	"	4	154	1.0	3	3.00	"	산 4-155	산4-130	
당초	"	4	155	1.0	14	14.00	"	산 4-130	데크-2	
당초	"	4	156	1.0	9	9.00	"	산 4-134	데크-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	4	157	1.0	6	6.00	"	산 4-131	소 3-2	
당초	"	4	158	1.0	1	1.00	"	산 4-131	산 4-157	
당초	"	4	159	1.0	11	11.00	"	산 4-157	데크-2	
당초	"	4	160	1.0	18	18.00	"	산 4-137	데크-2	
당초	"	4	161	1.5	101.5	152.25	"	소 3-51	소 3-33	
당초	"	4	162	1.5	14.5	21.75	"	산 4-165	산 4-164	
당초	"	4	163	1.5	23.5	35.25	"	전망데크 어-9	산 4-164	
당초	"	4	164	1.5	199.5	299.25	"	밤골어린이공원	소 3-33	
당초	"	4	165	1.5	35	52.5	"	밤골어린이공원	대지경계	
당초	"	4	166	2.8	26.0	72.8	"	대지경계	산-4 167	
당초	"	4	167	1.5	2.3	3.5	"	열린광장 녀	산-4-166	
당초	"	4	168	2.0	156.5	313.0	"	대지경계	산-4-169	
당초	"	4	169	1.2	63.0	75.6	"	산-4-168	산-4-170	
당초	"	4	170	6.0	55.0	330.0	"	산-4-169	연결수로 큐	
당초	"	4	171	2.5	18.2	45.5	"	하지 쿠	휴게데크 어-14	
당초	"	4	172	6.5	91.9	597.4	"	연결수로 큐	대지경계	
당초	"	4	173	1.5	17.0	25.5	"	대지경계	산-4-172	
당초	"	4	174	1.5	27.4	41.1	"	산-4-170	산-4-175	
당초	"	4	175	1.0	13.1	13.1	"	산-4-174	휴게소 1-19	
당초	"	4	176	1.2	30.0	36.0	"	휴게광장 나-20	산-4-178	
당초	"	4	177	1.0	17.0	17.0	"	산-4-176	휴게소-1-17	
당초	"	4	178	1.2	46.3	55.6	"	산-4-174	산-4-179	
당초	"	4	179	1.5	79.6	119.4	"	휴게소 1-19	목교 어-13	
당초	"	4	180	1.0	31.7	31.7	"	휴게광장 나-20	산-4-181	
당초	"	4	181	1.2	80.4	96.5	"	산-4-172	산-4-182	
당초	"	4	182	1.2	58.6	70.3	"	목교 어-13	산-4-186	
당초	"	4	183	1.2	89.8	107.8	"	산-4-181	산-4-184	
당초	"	4	184	1.2	50.2	60.2	"	산-4-183	산-4-188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	4	185	1.2	74.1	88.9	"	산-4-183	족구장 퍼	
당초	"	4	186	1.2	166.3	199.6	"	산-4-183	산-4-187	
당초	"	4	187	1.2	23.2	27.8	"	산-4-186	족구장 퍼	
당초	"	4	188	1.2	86.6	103.9	"	산-4-184	족구장 퍼	
당초	"	4	189	1.2	108.9	130.7	"	산-4-188	산-4-193	
당초	"	4	190	1.2	22.0	26.4	"	산-4-189	족구장 퍼	
당초	"	4	191	1.2	27.4	32.9	"	산-4-189	족구장 퍼	
당초	"	4	192	1.2	65.8	79.0	"	대로-3-28	산-4-193	
당초	"	4	193	1.2	161.6	193.9	"	대로-3-28	산-4-189	
당초	"	4	194	2.5	46.0	115.0	"	산-4-40	산-4-106	
당초	"	4	195	1.5	30.0	46.0	"	체력단련장 파-16	휴게소 1-2	
					21,067.4	29,129.9				
신설	"	4	203	1.2	82.90	95.61	"	소로 198	소로 199	
신설	"	4	204	1.2	44.70	54.27	"	소로 198	산책로 203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03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원)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위례신도시 지구북측도로 건설공사로 일부 해제된 공원에 대한 대체공원을 지정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근린공원	송파구 마천동 산1-1일원	182,267	증)153	182,420	건설부고시 제465호 '71.8.6.	천마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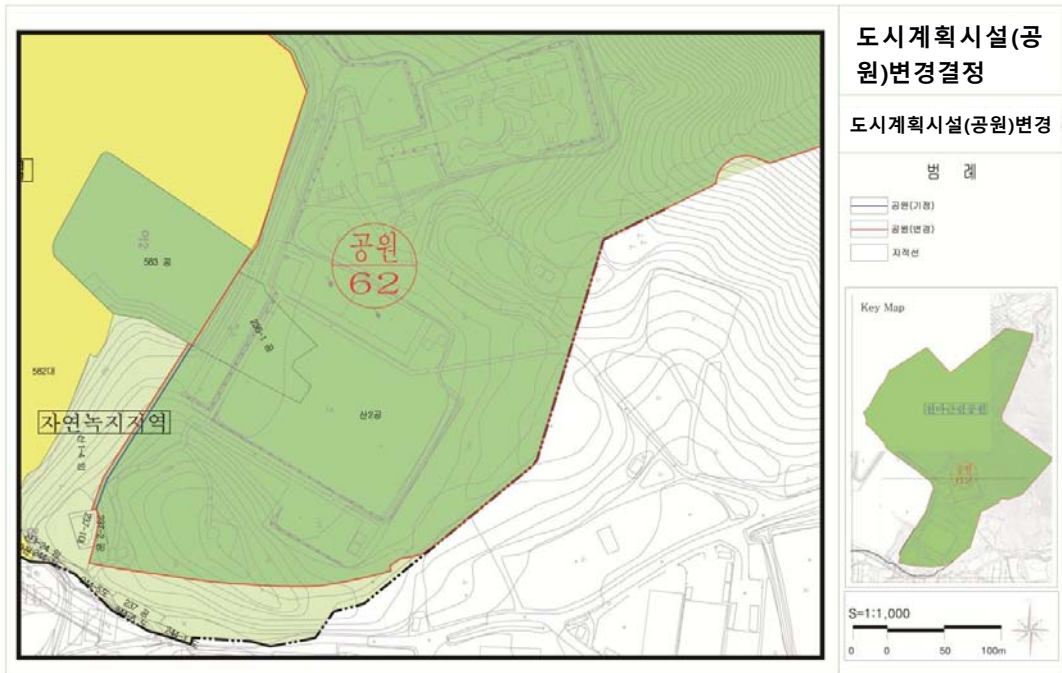
나. 지형도면 : 불임참조

※ 불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19) 및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 2147-2991)에 각각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04호

행정용어 순화어 고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행정용어 순화어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 행정용어 순화어

차 례	바뀌야 할 말 (순화대상어)	뜻풀이	권하는 말 (순화어)	사 유
1	해촉(解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위촉 해제 위촉을 끝냄	해촉, 위촉 해제, 위촉을 끝냄은 같이 쓸수 있음
2	병행하여	한꺼번에 같이, 또는 서로 더불어	함께, 동시에	병행하여, 함께, 동시에는 같이 쓸수 있음

차례	바뀌야 할 말 (순화대상어)	뜻풀이	권하는 말 (순화어)	사 유
3	(기한이) 도래(到來)하다	이제 새로운 국제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기한이) 이르다, 오다, 닥치다	
4	(기한이) 미도래(未到來)하다	이제 새로운 국제화 시대가 미도래한 것이다	오지 않다	
5	가급적(可及的)	될 수 있는 대로, 되도록(이면), 될 수 있으면	되도록	
6	대결(代決)	남을 대신하여 결재함	대리 결재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 (☎02-2133-6439)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05호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변경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사업구역” 변경고시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칭 :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사업
2. 시 행 자 : 성북구청장
3. 사업지구 : 성북구 성북동 168-276번지 일대(12,633.8㎡)
 - 면적 : 11,852㎡ → 12,633.8㎡ (△ 781.8㎡)
 - 필지수 : 64필지 → 76필지 (△ 12필지)
 - 사업기간 : 2015. 10~2016. 12 → 2017. 12(1년연장)
4. 변경고시일 : 2016. 10. 06.
5. 변경내역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필지수	64필지	76필지	△12필지
면 적	11,852㎡	12,633.8㎡	△ 781.8㎡
사업완료 기간	2016. 12	2017. 12	1년 연장

6. 재조사사업지구 추가 지번별 조서 : 해당 구청에 비치
7. 시 행 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지적재조사사업(추가)대상구역 지번별 조서

토지의 지번별조서									
토지소재			지번	지목	원면적 (㎡)	소 유 자			
시·군·구	읍·면	동·리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성북		돈암	616-825	대	20		서울시		
성북		돈암	616-826	대	98	39.88/335	권0진	72.05.06	성북동 179-100 성북동연립주택 0층 000호
						39.88/335	박0일	56.04.08	성북동 179-100 베스트빌 000호
						39.88/335	유0자	57.05.25	동선동2가 000
						39.88/335	전0	54.01.0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629 삼거마을삼성래미안1차@ 000-000
						27.44/335	이0용	51.07.1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12 주공@ 506-301
						15.26/335	이0지	76.03.23	강북구 삼양로74길 00 (수유동)
						15.26/335	정0화	77.06.22	성북구 선잠로 00 (성북동)
						37.76/335	오0미	71.08.10	성북동 179-100 성북동연립주택 00호
						39.88/335	김0남	62.10.04	길음동 1283 길음뉴타운 000-000
						39.88/335	문0환	48.03.06	성북동 179-100 성북동 연립주택 000호
성북		돈암	616-827	대	46		조0기	82.11.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00(성북동)
성북		돈암	616-828	대	36		서울시		
성북		돈암	616-829	대	13		서울시		
성북		돈암	616-832	공원	53		이0숙	55.09.2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29-3 래미안장안2차아파트 000-000
성북		돈암	616-845	대	23		김0원	73.09.16	용산구 한강대로00길 00(갈월동)

토지의 지번별조서									
토지소재			지번	지목	원면적 (㎡)	소유자			
시·군·구	읍·면	동·리				구분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성북		돈암	616-1049	대	15	20650/20683	000구역주택개량 재개발조합	114471-000	동소문동1가 000
						33/20683	윤이용	55.09.05	노원구 하계동 133블럭 한신아파트 0동000호
성북		돈암	616-1050	대	21	20650/20683	000구역주택개량 재개발조합	114471-0000	동소문동1가 000
						33/20683	윤용	55.09.05	노원구 하계동 133블럭 한신아파트 0동000호
성북		동소문동 1가	140-45	대	117.0	23.88/295	임영	87.01.12	성북구 성북로4길 52, 000동 000호(돈암동, 한진아파트)
						24.48/295	임미	90.05.29	성북구 성북로4길 52, 000동 000호(돈암동, 한진아파트)
						33.45/295	박제	59.03.28	성북구 선잠로 00 (성북동)
						23.88/295	이숙	59.02.25	동작구 상도동 408 삼호아파트 000-000
						24.48/295	송정	66.07.23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1 진달래아파트 000-000
						33.45/295	김미	79.07.29	동대문구 청량리동 000-000
						48.62/295	임진	73.01.09	성북구 성북동 000-000
						33.45/295	조희	73.04.2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000-00
						49.31/295	박호	57.06.26	성북동 609-1 한신아파트 000-000
성북		동소문동 1가	140-78	대	213.8	1/4	안규	57.11.20	강원도 춘천시 남춘천새길 11, 000동000호(퇴계동, 휴먼시아남춘천 1단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06호

천마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08.06.)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32호(2006.07.06.)로 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천마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천마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어린이안전교육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물을 수직증축(당초:2층 ⇒ 변경:4층)하여 항공, 선박, 철도 등의 교통안전체험 및 위기대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통종합안전체험관을 도입하고자함.

2.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산1-5 일대

3. 면적 : 182,420㎡

4. 조성계획 결정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74) 및 송파구 공원녹지과(☎ 2147-3394)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천마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 (위치 : 송파구 마천동 산1-5번지 일대)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 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 적 (㎡)				동수 (동)	바닥면 적(㎡)	연면적 (㎡)		
계		185,295	34,844.5	3	1,004	1,940	57	182,420	34,844.5	3	1,008	2,905.81	57	연면적: 증) 965.81㎡
기 반 시 설	소계	12,429.5	12,429.5					12,429.5	12,429.5					
	도로	11,790.5	11,790.5					11,790.5	11,790.5					
	광장	639	639					639.0	639.0					
조 경 시 설		4,576	4,576				14	4,576.0	4,576.0				14	
휴 양 시 설		8,095	8,095	1	172	274	4	8,095.0	8,095.0	1	172	274	4	
유 희 시 설		407	407				1	407.0	407.0				1	
은 통 시 설		2,532	2,532				9	2,532.0	2,532.0				9	
교 양 시 설		4,434	4,434	1	771	1,580	26	4,434.0	4,434.0	1	775	2,545.81	26	연면적: 증)965.81㎡
편 의 시 설		2,291	2,291	1	61	86	3	2,291.0	2,291.0	1	61	86	3	
관 리 시 설		80	80					80.0	80.0					
녹지 및 기타		150,450.5						147,575.5						감) 2,875㎡ 위례신도시 지구북측도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사항 반영

감) 2,875㎡
위례신도시 지구북측도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사항 반영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기	합계			185,295	34,844.5			1,004	1,940	57					182,420	34,844.5			1,008	2,905.81	57	건축물연면적 : 증965.81	
	계		전지역	12,429.5	12,429.5							전지역	12,429.5	12,429.5									
	도로		전지역	11,790.5	11,790.5							전지역	11,790.5	11,790.5									
	광장	가		639	639						가		639	639									
	시	가-1	산1-6임	(450)	(450)						가-1	산1-5공	(450)	(450)									
조경		가-2	산1-6임	(189)	(189)						가-2	산1-5공	(189)	(189)									
	계			4,856	4,856					14			4,576.0	4,576.0							14		
	파고라	①		(243)	(243)					12	①		(243)	(243)							12		
		①-1	산8임	(20.25)	(20.25)	목재				(1)	①-1	산8공	(20.25)	(20.25)	목재						(1)		
		①-2	산1-1임외1	(40.5)	(40.5)	목재				(2)	①-2	산1-1공외1	(40.5)	(40.5)	목재						(2)		
		①-3	산1-6임	(40.5)	(40.5)	목재				(2)	①-3	산1-5공	(40.5)	(40.5)	목재						(2)		
		①-4	산1-11임	(40.5)	(40.5)	목재				(2)	①-4	산1-8공	(40.5)	(40.5)	목재						(2)		
		①-5	산1-11임	(40.5)	(40.5)	목재				(2)	①-5	산1-8공	(40.5)	(40.5)	목재						(2)		
		①-6	산1-12임	(40.5)	(40.5)	목재				(2)	①-6	산1-8공	(40.5)	(40.5)	목재						(2)		
		①-7	산1-9임	(20.25)	(20.25)	목재				(1)	①-7	산1-8공	(20.25)	(20.25)	목재						(1)		
	연못	나	산1-6임	207	207						나	산1-5공	207	207									
	잔디광장	다	산1-8임외3	4,300	4,300						다	산1-8공외3	4,300	4,300									
	식수대	④	산1-6임	(25.8)	(25.8)						④	산1-5공	(25.8)	(25.8)									
	입구화단		산1-6임	69	69							산1-5공	69	69									

구분	시설명	본 경						전 경						본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 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 물 (기)	부호	위 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바닥 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 물 (기)				
휴 양 시 설	계			8,095	8,095			172	274	4			8,095	8,095			172	274	4				
	휠터	②		(64.8)	(64.8)					3	②		(64.8)	(64.8)					3				
		②-1	산2임외1	(21.6)	(21.6)	목재				(1)	②-1	산2공외1	(21.6)	(21.6)	목재				(1)				
		②-2	산3-5임	(21.6)	(21.6)	목재				(1)	②-2	산2-1공	(21.6)	(21.6)	목재				(1)				
		②-3	산1-9임	(21.6)	(21.6)	목재				(1)	②-3	산1-8공	(21.6)	(21.6)	목재				(1)				
	장의자	③	전지역	(48)		목재				1	③	전지역	(48)		목재				1				
	휴게소	라		922	922						라		922	922									
		라-1	산2임외1	(99)	(99)					(1)	라-1	산2공외1	(99)	(99)					(1)				
		라-2	산2임외1	(273)	(273)					(2)	라-2	산2공외1	(273)	(273)					(2)				
		라-3	산3-5임	(92)	(92)					(1)	라-3	산2-1공	(92)	(92)					(1)				
야 회 시 설		라-4	산1-11임	(50)	(50)					(2)	라-4	산1-8공	(50)	(50)					(2)				
		라-5	산1-8임	(99)	(99)					(2)	라-5	산1-8공	(99)	(99)					(2)				
		라-6	산1-12임	(97)	(97)					(2)	라-6	산1-8공	(97)	(97)					(2)				
		라-7	산1-9임	(82)	(82)					(1)	라-7	산1-8공	(82)	(82)					(1)				
		라-8	산1-9임외1	(96)	(96)					(1)	라-8	산1-8공외1	(96)	(96)					(1)				
		라-9	68-3전	(34)	(34)						라-9	68-3공	(34)	(34)									
	경로단	1	산3-3임외1	643	643	조적조	2층	172	274		1	산2-1공외1	643	643	조적조	2층	172	274					
	신발 욕장	마	산1-9임외1	6,530	6,530						마	산1-8공외1	6,530	6,530									
	계			407	407					1			407	407					1				
	어린이 놀이대	바	산2-1임외1	407	407					1	바	산2-1공외1	407	407					1				
조합 놀이대		산2-1임외1			목재				(1)		산2-1공외1			목재				(1)					

구분	시설명	전						후						비고							
		면			경			면			경										
		부호	위 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 면적	연면 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 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온 룽 시 설	계			2,532.0	2,532.0									2,532.0	2,532.0				9		
	배드 민턴장	사		826	826						사		826	826							
		사-1	68-3전	(314)	(314)		2면				사-1	68-3공	(314)	(314)				2면			
		사-2	산1-8임외1	(512)	(512)		4면				사-2	산1-8공외1	(512)	(512)				4면			
		농구장	아	산1-9임	714	714		1면			아	산1-8공	714	714				1면			
	게이트 볼장	자	산2-1임외1	536	536					자	산2-1공외1	536	536								
	체력 단련장	차	산1-1임외1	301	301					5	차	산1-1공외1	301	301					5		
	평행봉		산1-6임							(1)		산1-5공						(1)			
	오피드팔굽혀펴기		산1-1임							(1)		산2공						(1)			
	수평대		산1-1임							(1)		산2공						(1)			
교 양 시 설	다리틀어올리기		산1-1임외1							(1)		산2공						(1)			
	발목틀어올리기		산1-6임							(1)		산1-5공						(1)			
	의자검팔굽혀펴기		산8임							1		산8공						1			
	계			4,434	4,434	콘크리트조	지하1 지상2	771	1,580	26			4,434.0	4,434.0	콘크리트조 +철골조	지하1 지상4	775	2,545.81	26	연 면 적 : 증)965.81	
	자연 학습장	카	산1-11임	268	268						카	산1-8공	268	268							
	어린이 안전공원	하		2,916	2,916					25	하		2,916	2,916					25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교 양 시 설	어린이안전교 육장	3	산1-6임	1,250	1,250	콘크 리트조	지하1 지상2	771	1,580	1	3	산1-5공	1,250	콘크리트조 +철골조	지하1 지상4	775	2,545.81	1	연 면 적 : 증)965.81	
	기계실		지하1층						43			지하1층					43		기존시설	
	교육관		지상1층					771	775			지상1층				775	775		기존시설	
	교육관		지상2층						766			지상2층					766		기존시설	
	물탱크실		옥탑층						(78.24)			지상3층					(23.63)		기존시설 (연면적제외)	
	선박안전 체험관											지상3층					220.85			
	철도안전체 험관											지상3층					207.01			
	안전교육실											지상3층					55.70		복도, 화장실, 계단실,창고등	
	공용면적											지상3층					149.65			
	항공안전체 험관											지상4층					76.78			
	사무실											지상4층					89.67			
	공용면적											지상4층					162.15		기계실, 복도, 계단실 등	
	계				2,291	2,291		1층	61	86	3				1층	61	86	3		
	음수대	⑤	광장가-1내	(10.9)	(10.9)							⑤	광장가-1 내	(10.9)						
편 의 시 설	주차장	타		1,878	1,878						타		1,878							
	타-1	타-1	68-3전	(297)	(297)						타-1	68-3공	(297)							
	타-2	산3-5임	(448)	(448)							타-2	산2-1공	(448)							
	타-3	산3-5임	(446)	(446)							타-3	산2-1공	(446)							
	타-4	산1-6임	(687)	(687)							타-4	산1-5공	(687)							
	화장실	2	산1-3임	393	393	조적조	1층	61	86	1	2	산1-5공	393	조적조	1층	61	86	1		
	자전거 보관대	⑤	산1-3임	20	20						⑤	산1-5공	20					2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편익시설	계			2,291	2,291	1층	61	86	3		2,291	2,291	1층	61	86	3		
	음수대	⑤	광장가-1내	(10.9)	(10.9)					⑤	광장가-1내	(10.9)	(10.9)					
	주차장	타		1,878	1,878					타		1,878	1,878					
		타-1	68-3전	(297)	(297)					타-1	68-3공	(297)	(297)					
		타-2	산3-5임	(448)	(448)					타-2	산2-1공	(448)	(448)					
		타-3	산3-5임	(446)	(446)					타-3	산2-1공	(446)	(446)					
		타-4	산1-6임	(687)	(687)					타-4	산1-5공	(687)	(687)					
화장실	2	산1-3임	393	393	조적조	1층	61	86	1	2	산1-5공	393	조적조	1층	61	86	1	
관리시설	자전거 보관대	⑤	산1-3임	20	20				2	⑤	산1-5공	20	20				2	
	계			80	80							80	80					
	약수터	파	산1-1임	80	80					파	산2공	80	80					
녹지 및 기타	녹지			150,450.5								147,575.5						
	녹지 및 기타			150,450.5								147,575.5						

다.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 초	합 계				3,962	11,790.5				
당 초	소 로	계			1,601	8,080				
당 초		2류	1	9	358	3,222	진입로	산1-5공 남측진입부	주차장 카-5	
당 초		2류	2	8	123	984	진입로	산2-2임 남측진입부	주차장 카-2	
당 초		3류	1	6	13	78	진입로	68-4공 북서측진입부	주차장 카-1	
당 초		3류	2	4	153	612	진입로	섬터파-1	소로3-6시점	
당 초		3류	3	4	38	152	진입로	산2-1공 서측진입로	소로3-2	
당 초		3류	4	4	34	136	진입로	산2-1공 서측진입로	소로3-2	
당 초		3류	5	4	35	140	진입로	산2-1공 서측진입로	소로3-6	
당 초		3류	6	5	41	205	연결로	소로3-2종점	산책로14종점	
당 초		3류	7	3	10	30	진입로	산2-1공 서측진입로	주차장카-2	
당 초		3류	8	3	6	18	진입로	산2-1공 서측진입부	주차장 카-2	
당 초		3류	9	6	134	804	진입로	산1-5공 남측진입부	소로2-2시점	
당 초		3류	10	5	32	160	연결로	광장가-1	어린이 안전공원타	
당 초		3류	11	4	129	516	진입로	55도 동측진입부	광장가-1	
당 초		3류	14	2	46	92	연결로	소로3-11	산책로9시점	
당 초		3류	15	2	75	150	연결로	소로2-1종점	소로3-18시점	
당 초		3류	16	2	68	136	연결로	소로3-17종점	소로3-11시점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 초	소 로	3류	17	2	72	144	연결로	주차장카-5	휴게소-6	
당 초		3류	13	3	33	99	진입로	어린이안전교육 장복측진입부	어린이안전교육장 동측진입부	
당 초		3류	18	2	68	136	연결로	잔디광장	소로3-11 시점	
당 초		3류	19	2	124	248	연결로	소로2-1	휴게소다-6	
당 초		3류	20	2	9	18	연결로	소로2-1	휴게소다-6	
당 초		계			2,361	3,710.5				
당 초	산책로	산책로	1	1.5	236	354	산책로	쉼터파-1	소로3-6	
당 초		산책로	2	1.5	198	297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4	
당 초		산책로	3	2	134	268	산책로	소로2-2	휴게소다-2	
당 초		산책로	4	1.5	256	384	산책로	휴게소다-2	휴게소다-1	
당 초		산책로	5	1.5	182	273	산책로	휴게소다-1	산51-3임	
당 초		산책로	6	1.5	81	121.5	산책로	산책로9	산51-3임	
당 초		산책로	7	1.5	289	433.5	산책로	산책로9	산책로4	
당 초		산책로	8	1.5	101	151.5	산책로	산책로10	소로3-18	
당 초		산책로	9	1.5	293	439.5	산책로	소로3-16 종점	산책로5	
당 초		산책로	10	1.5	68	102	산책로	55도	휴게소다-6	
당 초		산책로	11	1.5	52	78	산책로	휴게소다-6	산책로12	
당 초		산책로	12	1.5	143	214.5	산책로	산책로13	산책로10	
당 초		산책로	13	1.5	124	186	산책로	소로3-19	휴게소다-8	
당 초		산책로	14	2	98	196	산책로	휴게소다-3	소로3-6	
당 초		산책로	15	2	52	104	산책로	산1-1공 남측진입부	휴게소다-2	
당 초		산책로	16	2	54	108	산책로	산책로10	소로 3-18	

천마근린공원 조성계획도(변경전)

천마근린공원



천마근린공원 조성계획도(변경후)

천마근린공원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07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사실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1. 문화재 지정 개요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소재지 (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93호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1책	25.9×17.5	1483년	서울시 중랑구 묵동 (도안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94호	현수제승법수 (賢首諸乘法數)	1책	25.7×17.5	1572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95호	독곡집 권상 (獨谷集 卷上)	1책	22.6×15.7	1456년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포방터 4안길 (김보경)

<지정하고자 하는 사유>

■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물과 땅에서 죽은 고혼(孤魂)들을 달래기 위해 평등하게 공양하며 재(수륙무차평등재)를 올릴 때의 의식절차를 요약한 의례서. 성화 19년 계묘년(성종14, 1483) 3월 전라도 진안의 중대사(中臺寺)에서 간행한 판본으로, 약간의 훼손 및 결락된 장이 있기는 하나,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의 15세기의 간본은 아주 드물게 전하고,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시유형 제318호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와 상호 보완될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현수제승법수

당나라 승려 현수(賢首 643~712)가 편찬한 『현수제승법수』는 숫자가 포함된 불교 요어(要語)를 설명하는 일종의 간이 사전(辭典). 간기를 통해 중국에서 편찬되어 1572년 용천사에서 간

행된 것을 알 수 있음. 이 책에는 기존에 지정된 건물인 봉서사본에는 없는 「장승법수초록」 이하가 부록되어 있으며, 여타의 다른 본들이 낙장이 있거나 개장된 것임에 반해,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음. 현재 지정된 건물이 모두 봉서사본(1500년)이고, 계통을 달리하는 용천사본은 자료가 증보되어 간행된 것으로서 자료적 가치가 높으므로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독곡집 권상

독곡(獨谷) 성석린(成石璘)의 문집으로서 2권 2책 중, 1456년 목판으로 간행된 권상 권1의 1책. 서문은 완전히 누락되었고 권상의 첫 번째 장과 행장의 맨 뒷장도 훼손이 심하여 보존상태가 좋은편은 아니나, 중간에 누락된 장이 없고 글자 획의 결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인출시기가 비교적 이른 것으로 판단됨. 본 서는 평양에서 간행된 초간본으로, 현재 일본 봉좌문고에 완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 국내에는 전존하는 본이 없음. 따라서 조선 초기 간행된 문집으로서 그 가치가 클 뿐 아니라, 저본(底本)의 서사자(書寫者)가 명기된 점과, 현재까지 알려진 국내 유일본이라는 점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사료됨.

2. 문화재 지정일자 : 서울시보 고시일자

3.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02-213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이 책은 수륙무차평등재(수륙재), 곧 물과 땅에서 죽은 고혼(孤魂)들을 달래기 위해 평등하게 공양하며 재를 올릴 때의 의식절차를 요약한 의례서이다.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와 “수륙재의 소방문첩절요(水陸齋儀疏榜文牒節要)”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전개는 윗부분에 수인(手印)을 두어 간략히 설명하고, 해당되는 진언을 함께 수록하였다. 처음 설회인유편(設會因由篇) 제1부터 봉송육도편(奉送六道篇) 제37까지 모두 37편이 수록되어 있다. 말미에는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一卷」이라는 동일한 제명 아래 “수륙재의소방문첩절요”가 있다. 여기에는 문방(門榜), 단방(檀榜), 욕실방(浴室榜), 간경방(看經榜), 소청사자소(召請使者疏), 개통오로소(開通五路疏), 소청상위소(召請上位疏), 소청중위소(召請中位疏), 소청하위소(召請下位疏), 원만회향소(圓滿廻向疏), 행첩(行牒), 제소수행봉피양(諸疏首行封皮樣) 등이 있는데 의식을 행할 때의 절차를 소개한 것이다. 마지막에는 “여러 경전을 판각하는 공덕으로 전 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함께 정토로 돌아가서 아미타불을 뵈고 진실한 가르침을 들어 중생을 동화시키기를 바란다.”는 글이 있다. 조선초기에는 왕실에서 수륙재를 개최한 기록이 제법 전한다. 현전하는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판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1470년(성종1)에 광평대군의 부인 신씨가 남편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것이며, 보물 제1105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책은 이보다 13년 뒤인 성화 19년 계묘년(성종14, 1483) 3월에 전라도 진안의 성수산(聖壽山)에 있던 중대사(中臺寺)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당시 연화질은 성경(性罔), 대화주는 승열(昇悅), 간선(幹善)은 대선사 성초(性招), 각수는 의경(義敬), 연관은 성민(性敏), 공양주는 수정(水澄)이 맡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동일한 판본인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이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18호로 지정(2011.9.8)되어 있다.

표지는 오래전에 개장된 것으로 보이고, 후인본이나 인쇄상태나 보존 상태는 좋은 편이다. 설회인유편 제1장은 후대에 보사(補寫)되어 있고, 제2장 가운데 아래 부분은 약간의 손상이 있다. 또 제20장의 후면, 제21 전후면, 제22장 전면 등이 결락되어 있다.

약간의 훼손 및 결락된 장이 있는 하나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의 간본 중에서 15세기의 간본은 아주 드물게 전하고,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과 상호 보완될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자료



■ 현수제승법수

『현수제승법수』는 숫자가 포함된 불교 요어(要語)를 설명하는 일종의 간이 사전(辭典)이다. 현수(賢首 643~712)는 당나라 승려로, 이 책을 처음으로 편찬했다고 전해진다. 제승(諸乘)이란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교리, 다시 말해 모든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법수(法數)란 불교의 진리를 뜻하는 법과 숫자가 합쳐진 요어를 말한다. 예를 들면 삼계(三界), 사체(四諦), 오온(五蘊), 십이인연(十二因緣), 칠십오법(七十五法)과 같은 어휘이다. 이 요어를 따라서 불법을 탐구하면 종지(宗旨)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제목의 뜻은 현수가 편찬한 모든 경전의 숫자가 들어간 불교의 진리를 말하는 중요한 단어들의 해설집이라는 말이다. 즉 이런 어휘를 모두 수집하여 숫자를 오름차순으로 배열하고 그 아래에 간단한 설명이나 도식을 붙인 것이다.

이 책의 편찬 간행 경위를 알 수 있는 서발문은 다음과 같다.

이름/내역	찬자	작성 시기	비고
서문	누락됨	1427년(선덕 정미)	편찬 및 간행 경위 언급(중국)
중편서문	天台 梵翱	1387년(홍무 정묘)	편찬 사실(중국)
발	戒嚴		간행사실(조선)
간기		1572년(융경 6년 임신)	용천사 간기

서문(1427년)과 중편서문을 통해서 본 중국에서의 편찬 및 간행 경위는 다음과 같다.

- 본초화상(本{初和尚)은 현수가 편찬한 『제승법수』가 실전(失傳)된 것을 개탄하던 중 1384년(홍무 갑자 춘) 봄에 잠계(潛溪) 심(深)법사에게 부탁하여 새롭게 『제승법수』를 편찬하

게 하였다.

- 잠계 심법사는 이름은 행심(行深) 자는 백연(伯淵), 잠계는 그의 별호이다. 중편서에 의하면 고소(姑蘇 강소성 오현) 송릉(松陵)의 잠계에 거주 하였으며, 보각(寶覺) 란(蘭)공에게 화엄의 종지를 배웠고, 서림(西林)의 행(行)공에게 가서 더욱 깨우침을 얻었다고 하였다.
- 행심(行深)은 1384년부터 1387년까지 이 책을 편찬하여 『현수법수(賢首法數)』라고 명칭하였는데, 이 책을 처음 편찬한 현수의 뜻을 계승한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따라서 범고의 서문도 거듭 편찬했다는 의미로 “중편(重編)”이라고 하였다. 권1의 앞에는 “고소동정사문행심편집(姑蘇洞庭沙門行深編集)”이라고 되어 있다.
- 서문에 의하면 이 책은 편찬이 완료된 후 40년이 지난 1427년 9월 난야(蘭若)에 머물고 있을 때 간행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 책에는 계엄(戒嚴)이 쓴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간기가 붙어 있는데 그를 통해 본 간행 경위는 다음과 같다.
- 계엄은 이 책을 우연히 발견하고 중간하였다. 그런데 다만 중간한 것이 아니라, 「장승법수초록(藏乘法數抄錄)」 이하를 부록으로 붙이는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첨부하였다.
- 따라서 이 용천사본은 중국에서 간행된 『현수제승법수』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를 증보한 본이다.
- 계엄의 발문에는 증보한 이유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장승(藏乘) 즉 대장경에 수록된 법수 중에 『현수제승법수』에 빠진 것이 있으므로 『장승법수(藏乘法數)』를 초록하여 붙였고, 「불사의화상귀적결」은 오랫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 세상에 간행되지 않은 것으로 후세의 귀감이 될 만하여 붙인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결자(闕字) 부분을 새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권에서 시작되는 항목과 끝나는 항목을 표기한 것이다.

목차/내용	自	至	비고
賢首諸乘法數序			
重編賢首法數序			
起教佛祖			
권1	一眞	三身本經說	권2표시 누락
권3	華嚴三聖	智論三種相	
권4	佛德四	四種偈	
권5	五乘	小乘五位	
권6	薄伽梵六義	六塵賊	
권7	華嚴經題七字	七難	
권8	八解脫	八貪	
권9	華嚴九會說	天子九寺	
권10	十法界	十化	
권11	十一智	八萬四千法門	

목차/내용	自	至	비고
沙門本勝讀法數銘			
八識心王諸門料簡	三性	五法攝三身	
	見惑八十八使	修惑八十一品	여타 본과 다름
藏乘法數抄錄	三身	眞如十一名	봉서사본에 없음
不思議和尚歸寂訣			이하 동일함.
歲旦五更看候法			
取後神光法七說中具子紐			
戒嚴 跋文			
刊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용천사에서 간행된 이 책은 「장승법수초록」 이하가 부록되어 있다. 이는 봉서사본 등에는 없다. 특히 「팔식심왕제문요간(八識心王諸門料簡)」의 맨 마지막 판의 내용이 전혀 다른데, 봉서사본을 비롯하여 확인한 모든 본에서는 이 판에 육도십팔임지상섭(六度十八任持相攝), 삼전사체십이행법륜(三轉四諦十二行法輪), 오온섭백법(五蘊攝百法)의 모두 세 항목이 수록된 반면에 이 책에는 견혹팔십팔사(見惑八十八使), 수혹팔십일품(修惑八十一品)의 두 항목으로 되어 있다. 이 부분의 판차가 56인데, 동일한 용천사 간행본에서도 이 부분만 다른 점은 매우 특이하다.

목록상에 나타난 조선에서 간행된 주요한 『현수제승법수』는 다음과 같다. (수록내용은 확인되는 것만 수록함)

구분 /내역	간행지	간행시기	수록내용	소장처
鳳栖寺本	합천 가야산 봉서사	燈谷 발문 1500(연산군6)	八識心王諸門料簡 까지 수록	하바드연칭, 국중(BA古朝21-298-2)
大山中庵本	황해도 수안 대산 중암	燈谷 발문 1566(명종21)	八識心王諸門料簡 까지 수록	송광사 성보박물관
龍泉寺本	전라도 담양 용천사	戒嚴 발문 1572(선조5)	56판 다름	국중(BA1703-15)
法住寺本	충청도 보은 법주사	1586(선조19)		계명대
開興寺本	전남 보성 개흥사	戒嚴 발문 1647(인조25)	용천사본과 동일	국중(BC古朝21-258)
肝月寺本	경상도 연양 간월사	1673(현종14)		U.C.버클리

이 책은 비교적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다. 여타의 다른 본들은 앞 뒤나 혹은 중간에 낙장이 있거나 (하바드 앤칭소사어이티 본) 개장된 것인데(국중 소장본) 반하여 이 책은 개장의 흔적이 없고, 낙장도 없으며, 서책의 상태로 비교적 좋은 편이다.

『현수제승법수』의 지정현황을 보면 경기도 시도유형문화재 제169호 및 219호, 충청북도 시도유형문화재 343호,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8호로 모두 네 건이 지정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1500년 봉서사에서 간행된 본이다. 따라서 이 봉서사본과 계통을 달리하는 용천사본은 여러 가지 자료가 증보되어 1572년에 간행된 것으로서 그 자료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사진자료



■ 독곡집 권상

이 책은 독곡(獨谷) 성석린(成石璘)의 문집으로서, 2권 2책 중 권1 1책이다. 성석린(1338:충숙왕 복위7~1423:세종5)의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자수(自修), 호는 독곡(獨谷)이다.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서 1357년(공민왕 6) 과거에 급제한 이후, 사관(史官)을 비롯하여 성균관사성(成均館司成), 정당문학(政堂文學), 지공거(知貢舉) 등 문한을 역임하였다. 조선의 역성혁명에 참여하여 단성보절찬화공신(端誠保節贊化功臣)의 녹권(錄券)이 내려지고 창성군(昌成郡) 충의군(忠義君)에 봉해졌다. 태조가 즉위하자 문하시랑찬성사가 되었고, 1393년(태조2) 개성부판사, 1398년 문하시랑찬성사·판호조사 등을 역임하였다. 정종이 즉위하자 서북면도순찰사·도절제사 문하시랑찬성사가 되었으며, 익대공신(翼戴功臣)의 녹권이 내려지고, 좌정승이 되었다. 태종이 즉위한 후 좌명공신(佐命功臣)이 되고 1402년(태종 2) 영의정부사를 거쳐, 이듬해 우의정, 그리고 1407년에 좌의정을 지냈고, 1415년 영의정이 되었다. 시호는 문경(文景)이다. 시풍은 이백을 주로 했고, 글씨를 잘 써서 태조의 건원릉 비문을 썼으며, 특히 초서에 능했다고 한다.

『독곡집』은 모두 2권으로 산문(散文)은 없고 오직 운문(韻文)만 수록되어 있다. 이는 당시에 비슷하게 활동한 권근의 『양촌집』처럼 운문과 산문을 모두 수록하고 그 양도 40권의 방대

한 분량인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한수(韓脩)의 『유항시집(柳巷詩集)』(불분권 1책, 1400년 간행), 정몽주(鄭夢周)의 『포은시고(圃隱詩藁)』(2권 1책, 1439년), 김구용(金九容)의 『척약재학음집(惕若齋學吟集)』(2권 1책, 1400년 간행)에서 알 수 있듯이 운문만을 편집하여 1책 정도의 문집으로 간행하는 것이 조선 초기 문집 간행에 있어 더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독곡집』의 간행 일지는 다음과 같다.

연도	내용	비고
1442년 (세종24)	왕명으로 경연에서 정리 편집	편찬자 진술
1456년 (세조2)	평안감사 孫堉 金連枝가 평양에서 간행 初刊本	일본 봉좌문고
1460년 (세조4)	김연지가 경상감사로 나가 진주에서 간행 重刊本	고대 만송문고
1919년	昌寧 鶴浦에서 부록을 넣어 活字로 간행 三刊本	

발문에 의하면 상권의 선사자(繕寫者)는 조근(趙瑾 1417~1475)으로, 조말생(趙末生)의 아들이다. 조근은 예조와 형조의 참의를 지냈고, 해서(楷書)에 능하여 외교 문서 등을 많이 선사하였다고 한다. 하권의 선사자는 당시 평양판관이었던 송수중(宋守中)이다.

초간본을 평양에서 간행한 후에 14년 만에 중간본을 진주에서 다시 간행한 것은 아마도 널리 보급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두 본을 비교하면 복각본으로 보이는데, 다만 초간본은 “사주쌍변”인데 비하여 중간본은 “사주단변”이다.

본서는 평양에서 간행된 초간본으로 전체 2권 2책 중 권상 1책이다. 중간본을 기준으로 그 내용의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내역	권수	권상	권하	권미	비고
내용	서문/ 행장	시	시	발문/ 간기	
장수	3 / 9	56	55	2 / 1	126장
本書	/ 9	56		(행장)	65장

전체 126장 중 현재 남은 것은 권수의 행장 9장과 권상 시 56장 도합 65장으로, 전체의 반 정도가 남아있다. 서문은 완전히 누락되었고, 권상의 첫 번째 장도 8할 정도가 훼손되었으며 행장의 맨 뒷장도 훼손이 심하다.

행장은 중간본에서 권수에 수록되어 있는 반면에, 본서에는 권미에 수록되어 있다. 당시 편집 관행상 행장과 같은 문집 저자의 전기 자료는 권수에 수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권상과 권하 사이에 행장을 편집하는 것은 사리로 보아 합당하지 않다. 따라서 본서는 한번 이상 개장된 것으로 보인다.

본서는 아래 사진에서 보이듯 보존상태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중간에 누락된 장이 없고, 글자 획의 결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인출시기도 비교적 이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봉좌문고에 완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 국내에는 전존하는 본이 없다.(봉좌문고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복사본이 있음) 따라서 본서는 조선 초기에 간행된 문집으로서 그 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저본(底本)의 서사자(書寫者)가 명기된 점과, 현재까지 알려진 국내 유일본이라는 점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사진자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08호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지정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9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사실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1. 문화재 지정 개요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소재지 (소유자)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제67호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1책	36.7×24.3	1593년 (선조 26)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운가사)

<지정하고자 하는 사유>

■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물과 땅에서 죽은 고혼(孤魂)들을 달래기 위한 수륙재(水陸齋)의 의식절차를 요약한 의례서로, 보통 『중례문(中禮文)』이라 함. 1593년(선조 26)에 전라도 담양(潭陽)의 용천사(龍泉寺)에서 간행한 목판본으로 총 54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인출 시기는 17세기로 보임. 근자에 원래의 표지 위에 다시 새로운 표지를 덧대어 개장해 놓았고, 표지부터 제8장까지는 가운데 아랫부분이 손상되어 있음. 이 용천사 간행 판본은 전 국토가 일본과의 전란중인 1593년 3월 상순에 완성된 판본으로, 비록 보존상태가 완전하지 못하나 임진왜란 중에 간행된 판본이라는 점과 용천사 판본으로는 처음 공개된다는 점에서 문화재자료로 지정 함.

2. 문화재 지정일자 : 서울시보 고시일자

3. 문화재자료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02-213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는 물과 땅에서 죽은 고혼(孤魂)들을 달래기 위한 수륙재(水陸齋)의 의식절차를 요약한 의례서이다. 보통 『중례문(中禮文)』이라고 한다. 수륙재는 양(梁)나라 무제(武帝) 때인 6세기 초반부터 시작되었고, 송나라 희령연간(熙寧年間)에 동천(東川)이 『수륙문(水陸文)』 3권을 지어 보급함으로써 크게 성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970년(고려 광종 21)에 갈양사(葛陽寺)에서 개설된 이후 조선시대에도 진관사(津寬寺)를 중심으로 계속되었다.

이 책은 1593년(선조 26)에 전라도 담양(潭陽)의 용천사(龍泉寺)에서 간행한 목판본으로 모두 54편이 수록되어 있다. 제1편인 설회인유편(設會因由篇)부터 엄정팔방편(嚴淨八方篇), 주향통서편(呪香通序篇), 주향공양편(呪香供養篇), 소청사[자편](召請使[者篇]), 안위공양편 제6(安位供養篇 第六), 봉[송사자편](奉[送使者篇]), 개벽오방편(開闢五方篇), 안위공양편 제9, 소청상위편(召請上位篇), 봉영부욕편 제11(奉迎赴浴篇 第十一), 찬탄관욕편(讚歎灌浴篇), 인성귀위편(引聖歸位篇), 헌좌안위편 제14(獻座安危篇 第十四), 찬례삼보편(讚禮三寶篇), 소청중위편(召請中位篇), 봉영부욕 제17, 가지조욕편 제18(加持澡浴篇 第十八), 출욕참성편 제19(出浴參聖篇 第十九), 천선예성편(天仙禮聖篇), 헌좌안위편 제21, 소청하위편(召請下位篇), 인예향욕편(引詣香浴篇), 가지조욕편 제24, 가지화의편(加持化衣篇), 수의복식편(授衣服飾篇), 출욕참성편 제27, 고혼예성편(孤魂禮聖篇), 수위안좌편(受位安座篇), 기성가지편(祈聖加持篇), 보신배헌편(普伸拜獻篇), 공성회향편(供聖廻向篇), 선밀가지편(宣蜜加持篇), 가지멸죄편(加持滅罪篇), 주식현절편(呪食現切篇), 고혼수향편(孤魂受饗篇), 설시인연편(說示因緣篇), 원성수은편(願聖垂恩篇), 청성수계편(請聖受戒篇), 참제업장편(懺除業障篇), 발홍서원편(發弘誓願篇), 사사귀정편(捨邪皈正篇), 석상호지편(釋相護持篇), 득계소요편(得戒逍遙篇), 득성십도편(修成十度篇), 의십획과편(依十獲果篇), 관행계찬편(觀行偈讚篇), 회향계찬편(廻向偈讚篇), 화재수용편(化財受用篇), 경신봉송편(敬伸奉送篇), 보신회향편(普伸廻向篇)까지 모두 54편의 의식에 대해 설명해 놓았다.

본문이 끝난 다음의 “萬曆二十一年癸巳(1593)三月上旬{畢全羅道潭陽地秋[月]山龍泉寺開}과 같이 이 책은 1593년 3월에 전라도 담양의 용천사에서 간행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용천사는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한 불서 중에서 현전하는 것만도 근 20종이나 되는 것으로 보아, 불서의 간행이 활발했던 사찰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인출 시기는 17세기로 보인다.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중에서 1529년 충청도 홍산의 무량사 판본과 용천사 판본은 행자수가 8행14자 형식인데 비해 나머지는 모두 7행17자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용천사 판본은 인근의 무량사 판본의 계통본으로 볼 수 있다.

앞표지 내면에는 “人生如幻又如夢, 樂日終時苦日長, 若也心頭無正慧, 死將何物答冥王”(『청허집』 권3의 「계쌍인소사(誡雙印小師)」, 쌍인 소사에게 훈계함), 뒤표지 내면에도 칠언시가 묵서되어 있다. 이전의 소장자가 쓴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다.

표지는 근자에 원래의 표지 위에 다시 새로운 표지를 덧대어 개장해 놓았다. 전의 앞뒤 표지에는 『중례문(中禮文)』이라는 서명이 묵서되어 있고, 이 표지부터 제8장까지는 가운데 아랫부분의 손상이 제법 큰데 복장되어 있을 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판심제는 『中』, 본문

이 끝난 뒤에는 간행기록이 있는 장이 있는데 다행이 1-2행이 남아 있어서 이 판본의 간행사실을 알 수 있다.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중에서 이 판본 이전에 간행된 판본으로는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58호로 지정된 15세기 합천 해인사 판본(1469년 김수운 발문)부터 1580년에 간행된 용인의 서봉사 판본까지 15종 이상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용천사 간행의 판본은 전 국토가 일본과의 전란중인 1593년 3월 상순에 완성된 판본이다. 비록 보존상태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임진왜란 중에 간행된 판본이라는 점과 용천사 판본으로는 처음 공개된다는 점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문화재자료로 추천할 만하다고 하겠다.

사진자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09호

경복궁 서측 특별건축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축법』 제7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경복궁 서측 특별건축구역(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지정 목적

- 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한옥건축을 통한 새로운 도시경관 창출, 한옥건설기술 및 디자인 수준 향상과 한옥건축 관련 제도개선 도모
- 나. 구역내 높이제한을 받는 비한옥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높이제한에 따른 개발규모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한옥과의 조화 및 공존을 위한 실질적 기반 형성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변경없음)

구역명	위치	범위	면적(㎡)	비고
경복궁 서측 특별건축구역	종로구 체부동 등 일대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582,216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보전산지 제외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가. 특례적용 규정 및 범위(기정)

특례적용 규정	특례적용 범위
대지의 조경 (건축법 제42조)	[적용완화] ▶ ‘대지의 조경’ 규정은 적용하지 않되, 대지면적의 5% 이상은 한옥과 어울리는 재료(투수성)를 사용하여야 함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법 제55조)	[적용완화] ▶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건폐율의 10%p 완화하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70%로 완화함(한옥건축물만 적용함) ※ 한옥과 비한옥이 혼재될 경우, 각 건축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적용함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58조)	[적용완화] ▶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한옥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외벽선의 경우 1미터 이상으로 하며, 처마선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음 ※ 「건축법」 제59조에 의한 맞벽 건축인 경우, 그 규정에 따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61조)	[적용완화] ▶ 한옥 건축물의 높이 9미터 이하의 부분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은 0.5미터 이상으로 함 ※ 「건축법」 제59조에 의한 맞벽 건축인 경우, 그 규정에 따름

나. 특례적용 규정 및 범위(변경)

특례적용 규정	특례적용 범위
대지의 조경 (건축법 제42조)	[적용완화] ▶ ‘대지의 조경’ 규정은 적용하지 않되, 대지면적의 5% 이상은 한옥과 어울리는 재료(투수성)를 사용하여야 함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법 제55조)	[적용완화] ▶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건폐율의 10%p 완화하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70%로 완화함(한옥 및 특례대상 비한옥건축물만 적용함) ※ 한옥과 비한옥이 혼재될 경우, 각 건축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적용함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58조)	[적용완화] ▶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한옥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외벽선의 경우 1미터 이상으로 하며, 처마선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음 ※ 「건축법」 제59조에 의한 맞벽 건축인 경우, 그 규정에 따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61조)	[적용완화] ▶ 한옥 건축물의 높이 9미터 이하의 부분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은 0.5미터 이상으로 함 ※ 「건축법」 제59조에 의한 맞벽 건축인 경우, 그 규정에 따름

다. 특례적용 대상 및 결정(변경)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의한 한옥을 건축할 경우와 ‘특례대상 비한옥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특례를 적용하되, 특례대상 비한옥건축물은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규정에만 특례규정을 적용함.

▶ ‘특례대상 비한옥건축물’이라 함은 ‘경북궁서측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층수제한을 받아 건축하게 되는 다음의 건축물을 말함.

- ‘한옥권장구역’에서 2층 이하 또는 3층 이하로 층수제한을 적용받아 건축하게 되는 비한옥건축물(4층 건축 시 제외)
- 한옥보전구역 외에서 ‘한옥보전구역 내 한옥지정구역’과 연결하여 3층 이하로 층수제한을 적용받아 건축하게 되는 비한옥건축물 (4층 건축 시 제외, 건축한계선과 고층부 벽면한계선이 함께 지정된 중대규모 필지의 건축물 제외)

※한옥보전구역, 한옥지정구역, 한옥권장구역 등에 관한 사항은 경북궁서측 지구단위계획 참조

- 특례적용 대상 및 범위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제1항제1호바목에 의하여 개별 건축물 특례적용 신청에 따른 시 또는 구 건축위원회 심의시 결정함

4.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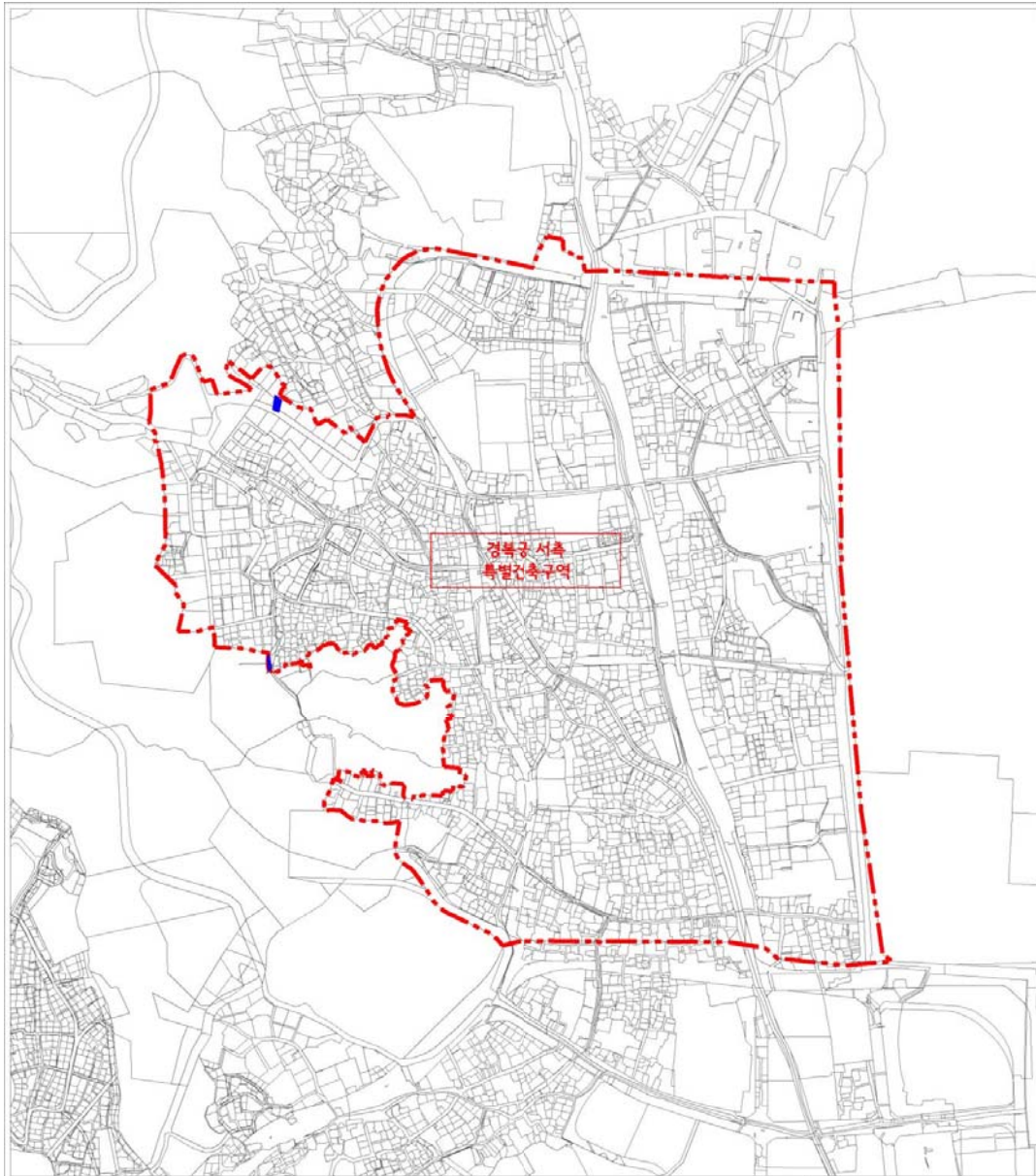
-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 「건축법」 제72조에 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6. 기타 사항

-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한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한옥조성과 ☎(02) 2133 -5578], 종로구 건축과 ☎(02)2148-2793]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형도면]

□ 경복궁 서측 특별건축구역



- 범 례 -

- 특별건축구역
- 계획구역
- 지적선

경복궁서측
특별건축구역

특별건축구역 결정도

scale 1:None
0 50 100 200 300m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0호

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3.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47호(2016.8.11)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의 을지로3가 일대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 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	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중구 수표동 35-13번지 일원	-	증) 42,641.6	42,641.6	-

다. 지정사유

- 대상지는 도심내 덕수궁~서울시청~명동~세운재정비촉진지구~동대문 역사문화공원으로 이어지는 을지로변에 입지하고 있으며, 또한 대상지 주변으로 수표·명동·저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개발 및 충무로 도시환경정비구역, 금융·인쇄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상지와 연결하여 시그니처타워·외환은행·하나은행 등 고층의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건축물에 대한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있음
- 이러한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대상지 내부는 저층의 노후불량 건축물(82.8%)이 다수 분포하여 도시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이에따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2. 도시환경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증)	42,641.6	42,641.6	100.0%	-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	증)	16,984.4	16,984.4	39.8%	-
	도 로	-	증)	12,471.4	12,471.4	29.2%	보행자 전용도로 포함
	공 원	-	증)	2,791.4	2,791.4	6.5%	공원1(1,240.4㎡),공원2(1,551.0㎡)
	공공청사	-	증)	736.5	736.5	1.7%	동주민센터(위치이전)
	청소년수련시설		증)	985.1	985.1	2.3%	존치
획지 (대지)	소 계	-	증)	25,657.2	25,657.2	60.2%	-
	제1지구	-	증)	2,230.0	2,230.0	5.2%	-
	제2지구	-	증)	1,645.8	1,645.8	3.9%	-
	제3지구	-	증)	1,078.9	1,078.9	2.5%	-
	제4지구		증)	1,567.1	1,567.1	3.7%	-
	제5지구	-	증)	1,651.5	1,651.5	3.9%	-
	제6지구	-	증)	4,156.4	4,156.4	9.7%	-
	제7지구	-	증)	2,013.3	2,013.3	4.7%	-
	제8지구	-	증)	2,000.1	2,000.1	4.7%	-
	제9지구	-	증)	1,619.5	1,619.5	3.8%	-
	제10지구		증)	1,916.6	1,916.6	4.5%	-
	제11지구		증)	1,356.9	1,356.9	3.2%	-
	제12지구		증)	2,845.5	2,845.5	6.7%	-
	제13지구		증)	1,575.6	1,575.6	3.7%	-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2,641.6	-	42,641.6	100.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2,641.6	-	42,641.6	100.0	-

2) 용도지구 결정조서

가) 미관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미관지구	중심지	청계천로변	9,240	770	12	1973.7.4 (건고 제290호)	
기정	①	미관지구	중심지	돈화문로변					
기정	①	미관지구	중심지	을지로변					

나) 방화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방화지구	-	수표동 27-1 일대	55,151 (42,641.6)	-	-	1973.8.1 (건고 제317호)	집단

주) ()는 구역 내의 면적임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

1)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3	30	주간선 도로	2,400 (386)	시청	동대문운동장	일반 도로	-	-	을지로
기정	중로	1	1	22~25	집산 도로	1,870 (50)	종로구 와룡동 5-14	중구 필동1가 40	일반 도로	-	2001.8.6 (서고 제646호 ¹⁾)	돈화문로
변경	중로	1	1	22~25 (25)	집산 도로	1,870 (50)	종로구 와룡동 5-14	중구 필동1가 40	일반 도로	-	-	도로폭원 일부변경
기정	중로	2	7	15	보조 간선 도로	850 (174)	을지로2가	낙원운동장	일반 도로	-	2005.8.25 (서고 제255호)	수표 다릿길
변경	중로	2	7	15	집산 도로	850 (174)	을지로2가	낙원운동장	일반 도로	-	2005.8.25 (서고 제255호)	도로기능 변경
기정	중로	3	1	12~18.5	집산 도로	5,390 (128)	세종로광장	고산자로	일반 도로	-	2003.5.28 (서고 제130호)	청계천로
변경	중로	3	1	12~27.0 (18.5~27)	집산 도로	5,390 (128)	세종로광장	고산자로	일반 도로	-	-	수표교지 선형조정
기정	중로	3	2	12	집산 도로	42	을지로 3가 104-2	을지로 3가 104-13	일반 도로	-	2005.8.25 (서고 제255호)	
기정	중로	3	3	13	집산 도로	87	을지로 3가 335-1	입정동 262	일반 도로	-	2010.8.26 (서고 제306호)	
변경	중로	3	3	13	집산 도로	177	을지로 3가 5-4	입정동 262	일반 도로	공공 청사	-	도로연장 변경
기정	소로	1	1	10	집산 도로	126	을지로 3가 104-13	을지로 3가 96-2	일반 도로	-	2010.8.26 (서고 제306호)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90	을지로2가 88-4	장교동 22-20	일반 도로	-	2007.5.17 서고제132호	
변경	소로	1	a	10	집산 도로	90	을지로2가 88-4	장교동 22-20	일반 도로	-	-	도로폭원 변경
기정	소로	2	-	8	집산 도로	103	수표동 56-4	수표동 56-11	일반 도로	-	2005.8.25 (서고 제255호)	
변경	소로	1	b	10	집산 도로	307	을지로3가 95-5	수표동 56-11	일반 도로	-		도로폭원 연장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108 (58)	수표동 50-1	장교동 22-4	일반 도로	-	2007.5.17 서고 제132호	
변경	소로	2	3	8	국지 도로	155 (105)	수표동 56-1	장교동 22-4	일반 도로	-	-	연장변경
신설	소로	3	a	6	국지 도로	99	수표동 11-3	수표동 11-8	일반 도로	청소년 수련관	-	노선신설
신설	소로	3	b	6	국지 도로	82	수표동 35-5	수표동 35-1	일반 도로	청소년 수련관	-	노선신설
신설	소로	3	a	6	특수 도로	42	을지로 3가 65-2	을지로 3가 65-19	보행자 전용도로	-	-	노선신설
폐지	소로	2	1	5~8.5	집산 도로	-	을지로23가, 장교동,수표동, 초동각 일부	을지로23가, 장교동,수표동, 초동각 일부	일반 도로	-	1964.6.11 (서공제354호 ²⁾)	기타도로 시설

※ ()는 구역 내의 폭원 및 연장임

주1) 종로1류(돈화문로)는 도로결정조서의 누락으로 도로인정공고(서울시공고 제2001-646호, 2001.8.6)의 도로연장 및 기종점을 기준으로 작성

주2) 서울시공고 제354호(64.6.11)는 을삼(중앙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기타도로시설로 결정된 사항임

2)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주차장	수표동 11-9 일대	1,368.8	감) 1,368.8	-	2005.8.25 (서고 제255호)	공원과 중복결정

3)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원	역사 공원	수표동 11-9 일대	1,368.8	감) 128.4	1,240.4	2005.8.25 (서고 제255호)	
신설	②	공원	역사 공원	을지로2가 101-43 일대	-	증) 1,551.0	1,551.0	-	

4) 공공공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공공공지	수표동 27-3 일대	200.3	감) 200.3	-	2005.8.25 (서고 제255호)	

5) 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 청사	동 주민센터	을지로3가동 65-10 일대	-	증) 736.5	736.5	60% 이하	600% 이하	70m 이하	-	-

6) 청소년수련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청소년 수련시설	시립서울 청소년 수련관	수표동 27-2 일대	-	증) 985.1	985.1	60% 이하	600% 이하	70m 이하	-	-

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담) 계획

1)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

구 분		시행 면적 (㎡)	대지 면적 (㎡)	정비기반 시설면적 (㎡)	계획기반 시설내 기공공용지 (㎡)	대지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	순부담 면적(㎡)	순부담율 (%)	비 고
을지로3가구역		42,641.6	25,657.2	16,984.4	11,304.1	732.7	4,947.6	16.2%	
사업 시행 지구	소계	31,609.3	25,657.2	5,952.1	271.8	732.7	4,947.6	16.2%	평균 순부담율 16.2% (3지구 제외시 16.8%)
	제1지구	2,678.8	2,230.0	448.8	-	-	448.8	16.8%	
	제2지구	1,977.0	1,645.8	331.2	-	-	331.2	16.8%	
	제3지구	1,078.9	1,078.9	-	-	-	-	-	
	제4지구	1,882.5	1,567.1	315.4	-	-	315.4	16.8%	
	제5지구	1,983.9	1,651.5	332.4	-	-	332.4	16.8%	
	제6지구	4,993.0	4,156.4	836.6	-	-	836.6	16.8%	
	제7지구	2,618.9	2,013.3	605.6	-	200.3	405.3	16.8%	
	제8지구	2,402.8	2,000.1	402.7	-	-	402.7	16.8%	
	제9지구	1,945.6	1,619.5	326.1	-	-	326.1	16.8%	
	제10지구	2,323.9	1,916.6	407.3	-	21.4	385.9	16.8%	
	제11지구	1,630.1	1,356.9	273.2	-	-	273.2	16.8%	
	제12지구	3,924.2	2,845.5	1,078.7	-	505.9	572.8	16.8%	
	제13지구	2,169.7	1,575.6	594.1	271.8	5.1	317.2	16.8%	
청소년수련시설		985.1	-	985.1	985.1	-	-	-	존치
기타 정비기반시설		10,047.2	-	10,047.2	10,047.2	-	-	-	존치

주1) 순부담율 = 순부담면적 / (시행구역면적 - 계획기반시설내 기존공공용지 - 대지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주2) 순부담면적 중 “공동분담” 면적의 확보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함

- 기준 : 1) 공원1 부지(공원 및 도로)를 우선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 공원부지를 2필지 이상 확보할 경우 청계천로변과 이면부 및 을지로변과 이면부의 필지를 함께 확보하고, 인접한 필지를 확보하여 집중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함.(산발적 확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청과 협의 후 확보)
- 3) 사업시행이 빠른 구역부터 “공동분담” 해당하는 필지는 선택적 확보 가능하되, 5,6,7,8,9지구는 공원1(수표교지복원)을 확보하고, 그 외 시행지구가 공원2(혜민서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함.
(단, 지구별 공동분담 면적 이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관리청과 협의 후 조정 가능)
- 주3) 제3지구는 기정 수표 지구단위계획 내용(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17호, 2012.8.9)에 따르되 원활한 교통개선을 위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하여 도로시설 조성

2) 정비기반시설 설치(확보)계획

가)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관리청으로 무상귀속)

구 분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제1지구	수표동	소계		—	증) 448.8	448.8	
		56-5	도로	—	증) 5.3	5.3	
		56-6		—	증) 6.5	6.5	
		56-7		—	증) 8.4	8.4	
		56-9		—	증) 11.1	11.1	
		56-10		—	증) 9.1	9.1	
		56-11		—	증) 42.5	42.5	
		56-12		—	증) 26.7	26.7	
		56-13		—	증) 22.6	22.6	
		56-16		—	증) 4.8	4.8	
		공동분담	도로 및 공원	—	증) 311.8	311.8	
제2지구	수표동	소계		—	증) 331.2	331.2	
		56-1	도로	—	증) 54.3	54.3	
		56-4		—	증) 26.3	26.3	
		56-17		—	증) 15.2	15.2	
		56-18		—	증) 10.0	10.0	
		56-22		—	증) 16.9	16.9	
		56-23		—	증) 5.3	5.3	
		공동분담	도로 및 공원	—	증) 203.2	203.2	
제4지구	을지로2가	소계		—	증) 315.4	315.4	
		101-27	도로	—	증) 9.3	9.3	
		101-24	도로 및 공원	—	증) 44.1	44.1	
		101-25		—	증) 38.7	38.7	
		101-31		—	증) 2.1	2.1	
		공동분담		—	증) 221.2	221.2	
제5지구	수표동	소계		—	증) 332.4	332.4	
		11-1	도로	—	증) 78.6	78.6	
		11-15		—	증) 65.9	65.9	
		11-17		—	증) 35.9	35.9	
		11-18		—	증) 37.8	37.8	
		11-19		—	증) 38.5	38.5	
		11-20		—	증) 38.7	38.7	
		11-25		—	증) 2.4	2.4	
		공동분담	도로 및 공원	—	증) 34.6	34.6	

구 분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제6지구	수표동	소계	-	증) 836.6	836.6	
		35-5	-	증) 11.5	11.5	
		35-6	-	증) 9.1	9.1	
		35-7	-	증) 11.0	11.0	
		35-8	-	증) 18.5	18.5	
		35-13	-	증) 8.8	8.8	
		공동분담 도로 및 공원	-	증) 777.7	777.7	
제7지구	수표동	소계	-	증) 605.6	605.6	
		27-1 도로	-	증) 86.5	86.5	
		공동분담 도로 및 공원	-	증) 519.1	519.1	
제8지구	을지로3가	소계	-	증) 402.7	402.7	
		5-6	-	증) 3.0	3.0	
		5-11	-	증) 25.1	25.1	
		5-12	-	증) 8.0	8.0	
		5-14	-	증) 0.9	0.9	
		5-15	-	증) 1.2	1.2	
		5-16	-	증) 19.6	19.6	
		5-17	-	증) 5.8	5.8	
		공동분담 도로 및 공원	-	증) 339.1	339.1	
제9지구	을지로3가	소계	-	증) 326.1	326.1	
		5-1	-	증) 26.7	26.7	
		5-2	-	증) 11.5	11.5	
		5-3	-	증) 3.7	3.7	
		5-4	-	증) 25.1	25.1	
		5-18	-	증) 9.0	9.0	
		5-19	-	증) 8.6	8.6	
		5-21	-	증) 15.1	15.1	
		5-31	-	증) 4.4	4.4	
		5-32	-	증) 3.0	3.0	
		5-33	-	증) 5.1	5.1	
		공동분담 도로 및 공원	-	증) 213.9	213.9	
제10지구	을지로3가	소계	-	증) 407.3	407.3	
		95-7	-	증) 6.9	6.9	
		95-9	-	증) 1.0	1.0	
		95-10	-	증) 3.8	3.8	
		95-11	-	증) 5.0	5.0	
		95-12	-	증) 75.0	75.0	
		95-13	-	증) 56.2	56.2	
		95-14	-	증) 47.7	47.7	
		95-31	-	증) 43.9	43.9	
		95-33	-	증) 30.3	30.3	
		공동분담 도로 및 공원	-	증) 137.5	137.5	

구 분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제10지구	을지로3가	소계		-	증) 407.3	407.3	
		95-7	도로	-	증) 6.9	6.9	
		95-9		-	증) 1.0	1.0	
		95-10		-	증) 3.8	3.8	
		95-11		-	증) 5.0	5.0	
		95-12		-	증) 75.0	75.0	
		95-13		-	증) 56.2	56.2	
		95-14		-	증) 47.7	47.7	
		95-31		-	증) 43.9	43.9	
		95-33		-	증) 30.3	30.3	
		공동분담	도로 및 공원	-	증) 137.5	137.5	
제11지구	을지로3가	소계		-	증) 273.2	273.2	
		95-5	도로	-	증) 33.2	33.2	
		95-6		-	증) 36.2	36.2	
		공동분담	도로 및 공원	-	증) 203.8	203.8	
제12지구	을지로3가	소계		-	증) 1,078.7	1,078.7	
		65-7	도로 및 공공청사	-	증) 183.1	183.1	
		65-8		-	증) 303.5	303.5	
		65-9		-	증) 93.2	93.2	
		65-6	공공청사	-	증) 45.0	45.0	
		65-10		-	증) 118.7	118.7	
		65-11		-	증) 37.5	37.5	
		65-12		-	증) 26.3	26.3	
		65-24		-	증) 96.5	96.5	
		공동분담	도로 및 공원	-	증) 174.9	174.9	
제13지구	을지로3가	소계		-	증) 322.3	322.3	
		118-1	도로	-	증) 114.9	114.9	
		공동분담	도로 및 공원	-	증) 207.4	207.4	

※ 필지의 일부가 정비기반시설로 계획되는 면적은 CAD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산출하였으며, 사업시행시 측량 등을 통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면적으로 재산정하여야 함

나) 계획공공용지내 기존공공용지 부담면적(공사시 공사비 적용)

구 분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제13지구	을지로3가	335-1	도로	-	증) 271.8	271.8	일부편입
소 계			-	-	증) 271.8	271.8	

※ 일부 편입되는 면적은 CAD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산출하였으며, 사업시행시 측량 등을 통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면적으로 재산정하여야 함

다) 사업시행지구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사업시행자에 무상양도)

구분	위 치		지목	면 적 (㎡)		무상양도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제7지구	수표동	27-3	공	200.3	200.3	200.3	중구청	
제10지구	을지로3가	335-1	도	12,183.1	21.4	21.4	국(국토교통부)	
제12지구	을지로3가	65-13	대	499.8	499.8	499.8	중구청	
		335-1	도	12,183.1	6.1	6.1	국(국토교통부)	
제13지구	을지로3가	335-1	도	12,183.1	5.1	5.1	국(국토교통부)	
소 계			-	12,883.2	732.7	732.7	-	

※ 일부 편입되는 면적은 CAD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산출하였으며, 사업시행시 측량 등을 통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면적으로 재산정하여야 함

※ 제12지구내 동주민센터 건축물은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현 건축물 연면적(1,256.4㎡)의 동일한 면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청과 협의에 따라 연면적이 추가 발생될 시 추가되는 면적만큼은 기부채납 한 것으로 본다.

라) 국·공유지 매입대상

구 분	위 치		지목	면 적(㎡)		관 리 청	비 고
				공부(공유지분)	편입(공유지분)		
제1지구	수표동	56-6	대	100.5(8.4/40)	100.5(8.4/40)	국(기획재정부)	전부
제4지구	을지로2가	101-31	도	101.5	4.6	국(기획재정부)	일부편입
제9지구	을지로3가	5-24	도	23.1	23.1	국(국토교통부)	전부
제10지구	을지로3가	246-1	도	527.9	27.3	중구청	일부편입
	을지로3가	95-11	대	103.5	103.5	국(기획재정부)	전부
제11지구	을지로3가	95-6	대	381.8(4.33/147.9)	381.8(4.33/147.9)	국(기획재정부)	전부
	입정동	246-5	대	24.2	24.2	중구청	전부
	입정동	246-1	도	527.9	75.5	중구청	일부편입
제12지구	을지로3가	65-7	대	183.1(5.14/69)	183.1(5.14/69)	국(기획재정부)	전부
	을지로3가	65-21	대	5.0	5.0	중구청	전부
정비기반 시설부지	을지로2가	101-31	도	101.5	96.9	국(기획재정부)	일부편입
	수표동	11-8	대	200.6(0.1/82)	200.6(0.1/82)	국(기획재정부)	전부
소 계			-	831.37	406.27	-	-

※ 일부 편입되는 면적은 CAD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산출하였으며, 사업시행시 측량 등을 통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면적으로 재산정하여야 함

※ 을지로2가 101-31, 을지로3가 5-24, 을지로3가 246-1번지는 법적근거 없이 설치된 도로로서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됨[도로의 정의 및 무상양도 기준_서울시 도로행정 담당관-17503호(2009.10.19) 참고]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 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 적(㎡)	명칭	면적(㎡)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축	철 거 이 주	
신 설	을지로3가 도시환경 정비구역	42,641.6	소 계	25,657.2	중구 수표동 35-13번지 일원	151	1	4	146	-	-
			제1지구	2,230.0							
			제2지구	1,645.8							
			제3지구	1,078.9							
			제4지구	1,567.1							
			제5지구	1,651.5							
			제6지구	4,156.4							
			제7지구	2,013.3							
			제8지구	2,000.1							
			제9지구	1,619.5							
			제10지구	1,916.6							
			제11지구	1,356.9							
			제12지구	2,845.5							
			제13지구	1,575.6							

※ 존치 : 청소년수련시설(현대건축물)

개수 : 명성TNC(근대건축물), 전기회관(현대건축물), 동화빌딩(현대건축물), 우리은행(현대건축물)

2)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기준/ 허용/ 상한) (%)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 칭	면 적 (㎡)	명칭	면 적 (㎡)						
신규	을지로3가 도시환경 정비구역	42,641.6	제1지구	2,230.0	수표동 56-9 일원	업무 · 숙박 · 주거		600/ 800이하 /-	기준 70m 최고 80m 이하	근대 건축물 보존
			제2지구	1,645.8	수표동 56-1 일원				최고 70m 이하	-
			제3지구	1,078.9	을지로1가 101-1 일원	숙박 시설			최고 50m이하	준공
			제4지구	1,567.1	을지로1가 101-2 일원	업무 · 숙박 · 주거	60이하 단, 저층부는 기부채납에 따라 완화 (최대80%) 근현대건축물 보존시 완화 (최대80%)	450/720 /800 600/ 800이하 /-	최고 70m이하	-
			제5지구	1,651.5	수표동 11-4 일원				기준 70m 최고 80m이하	현대 건축물 보존
			제6지구	4,156.4	수표동 35-10일원				최고 70m이하	-
			제7지구	2,013.3	수표동 27-1일원				기준 70m 최고 80m이하	현대 건축물 보존
			제8지구	2,000.1	을지로3가 5-6 일원				최고 70m이하	-
			제9지구	1,619.5	을지로3가 5-1 일원					-
			제10지구	1,916.6	을지로3가 95-12 일원					-
			제11지구	1,356.9	을지로3가 95-1 일원					-
			제12지구	2,845.5	을지로3가 65-14 일원					-
			제13지구	1,575.6	을지로3가 118-1 일원				기준 70m 최고 80m이하	현대 건축물 보존
			청소년 수련시설	985.1	수표동 27-2 일대	수련 시설	60 이하	600이하	최고 70m이하	-
			공공청사	736.5	을지로3가동 65-10 일대	업무 시설	60 이하	600이하	최고 70m이하	-

주1) 사업시행지구별 주된 용도는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부문)」에 따른 용도로서 “업무·숙박·주거”의 경우 도심부내 수요를 고려하여 단일용도로 계획 할 수 있음

주2)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등은 관계 법률 및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사항을 따름

주3) 획지3은 지정 수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결정함(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17호, 2012.8.9)

건축물 용적률 완화에 관한 계획	• 공공시설부지 제공시 - 1.3×(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3항에 의거 산정된 용적률)(%) • 지하철출입구 등을 건물 또는 대지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성권 설정시 - 대지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 × (지하철출입구등의 건폐면적 / 대지면적) 이내 - 건물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 × (지하철출입구등의 연면적 / 건물 연면적) 이내	
건축물 건폐율 완화에 관한 계획	•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건폐율 완화 1) 소단위 및 보전형 정비수법 적용시 건폐율 완화 - 지역의 특성과 장소성을 유지·보존하는 소단위 및 보전형 정비수법 적용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건폐율 범위 내에서 완화 가능 → 근현대 건축물 보존시 국토계획법상 건폐율 범위 내 완화 가능 2) 도심부의 기존 도시조직과 가로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 건폐율 완화 부위는 저층부(5층이하, 20m이하)에 한하여 적용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공공시설부지 제공시 (단, 근현대 건축물 보존하는 시행지구에 한함) - 기준높이×공공용지부담률[공공용지부담률=공공시설제공면적/당초대지면적]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청계천변 : 기존 대지경계선에서 20m (단, 전기회관 건물은 제외) - 수표로 : 서측 3m, 동측 5m - 이면부 : 2m	• 저층부 건축지정선 (건축물 외벽이 2/3이상 접하여 함) - 을지로변(3층) : 3m • 고층부 벽면한계선 - 을지로변 : 6m
용 도	• 허용용도 *시행지구별 유도지침 참고 - 저층부 : (지정)가로활성화 용도(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일용품점 등) (권장)기존산업 용도(타일·도기, 조명, 건축자재, 공구 등) - 상층부 : 업무시설, 주거복합, 숙박시설 ※제8시행지구내 입주하고 있는 생활문화유산(송림수제화)은 재입주가 가능하도록 우선 분양 또는 우선 임대권 부여	
대지내 공지	• 청계천로·을지로변에 대지내 조정 및 공개공지 집중배치 • 각 지구 내 전면공지를 포함하여 보행안전구간 최소 2m(권장 3m)를 확보 (무장애 디자인가이드라인 반영)	
에너지 등에 관한 계획	•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8%이상, 에너지 소비 총량제 280kwh/m²·y 이하로 계획 • 조명기기 전력부하량의 70%이상 LED 적용	
기 타	• 시행지구내 포함된 가로변 지장물(지하철 출입구, 변압기 등)은 획지 또는 건축물 내로 이전설치 • 문화재 발굴조사 시 시민들이 발굴조사 상황을 직접 볼 수 있도록 관람대 설치 및 매장문화재 전시공간 확보하고, 보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장문화재 보존비용 부담 • 구역내 조성되는 도로 내 보도 및 보도형 전면공지는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 및 '인도10계명'을 준수하여 설치	

※ 획지3은 지정 수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름(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17호, 2012.8.9)

3) 획지3의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

위치			권장용도 (전층)	지정용도		불허용도(전층)
				지정용도 (1층)	지정용도 (전층)	
수표동	을지로2가 101-1번지 외 1필지	UE-4	-	-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운동시설중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 위락시설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도박게임장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 자동차관련시설 (이면부에 한해 주차장제외) - 판매 및 영업시설중 백화점, 쇼핑센터

나) 건폐율 계획 : 60%이하

다) 용적률 계획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을지로2가 101-1번지 외 1필지	450%	720%	800%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20% 이하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음.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에 의거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의 경우 조례상 용적률의 20%범위내에서 완화받을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하고자 함.

라)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및 위치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업지역 (을지로2가동 101-1번지외 1필지)	450	720	800	-

※ 관광숙박시설 설치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 : 허용용적률 + (600%×20%) = 588.26 + 120% = 708.26%

마) 높이계획

구분	최고높이제한	적용대상
H - 2	50m이하	수표로변 및 돈화문로변 일대

바.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	-	-

3.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해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해제	수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원	71,353.0	감) 71,353.0	-	-

나. 해제사유

- 대상지는 중구 수표동 일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41호(2004.7.26) 수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55호(2005.8.25) 수표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이 결정·고시된 구역으로,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하므로, 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06)과 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구역에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 ※ 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에 기 결정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0-306)은 변경 없이 유지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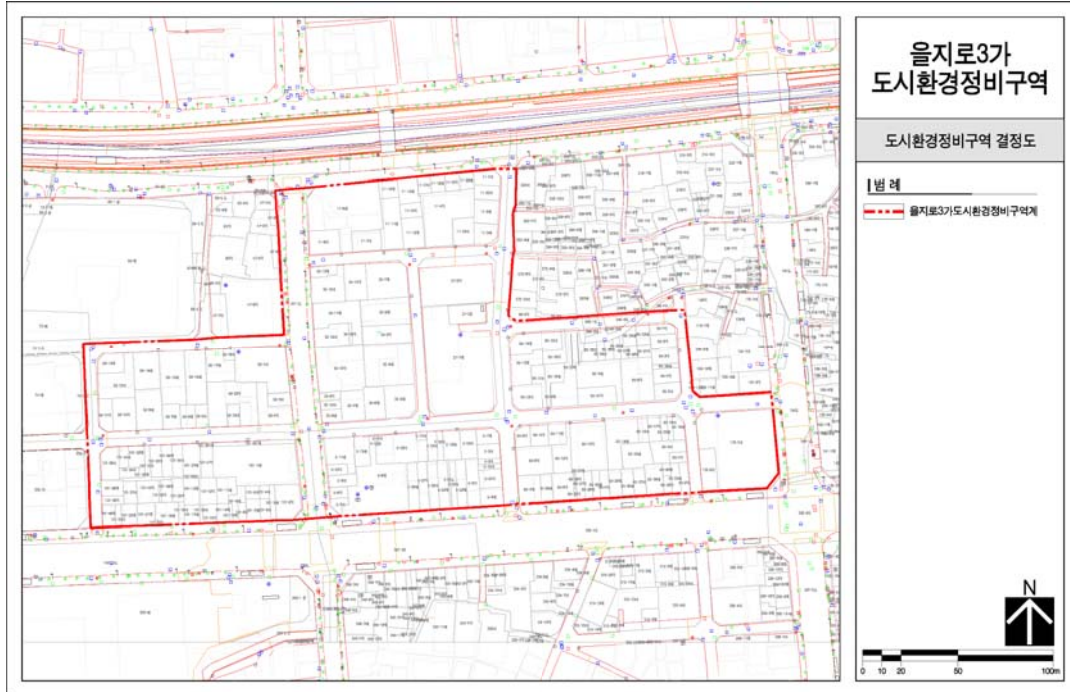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지형도면 및 정비계획결정도
 -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도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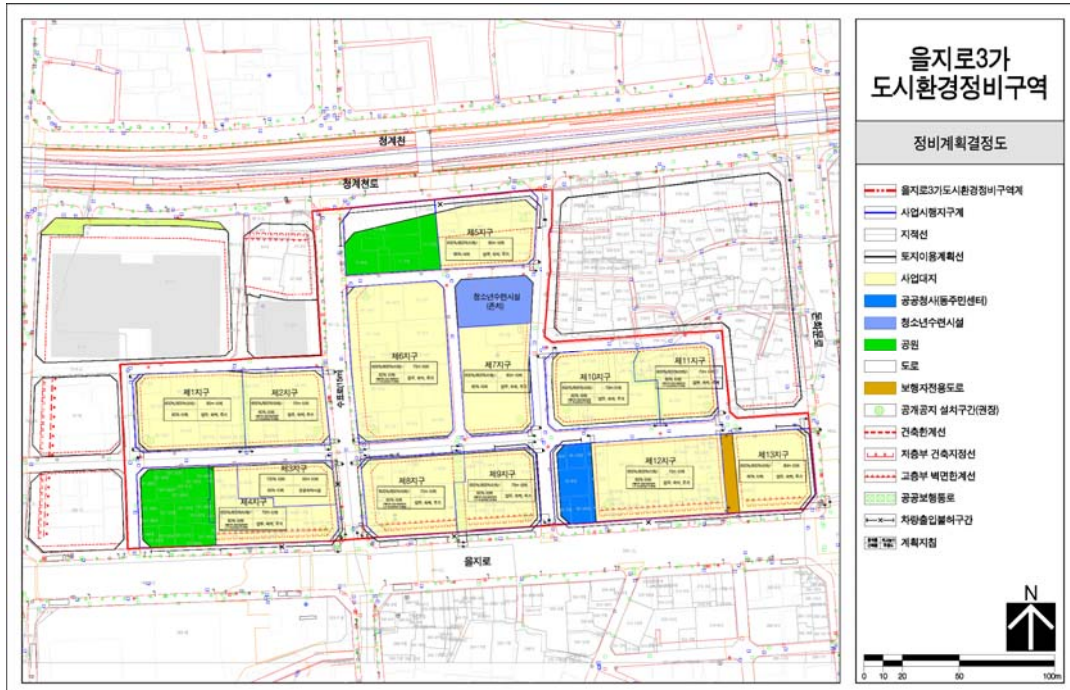
5.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2133-4633) 및 중구 도심재생과(☎ 3396-5775)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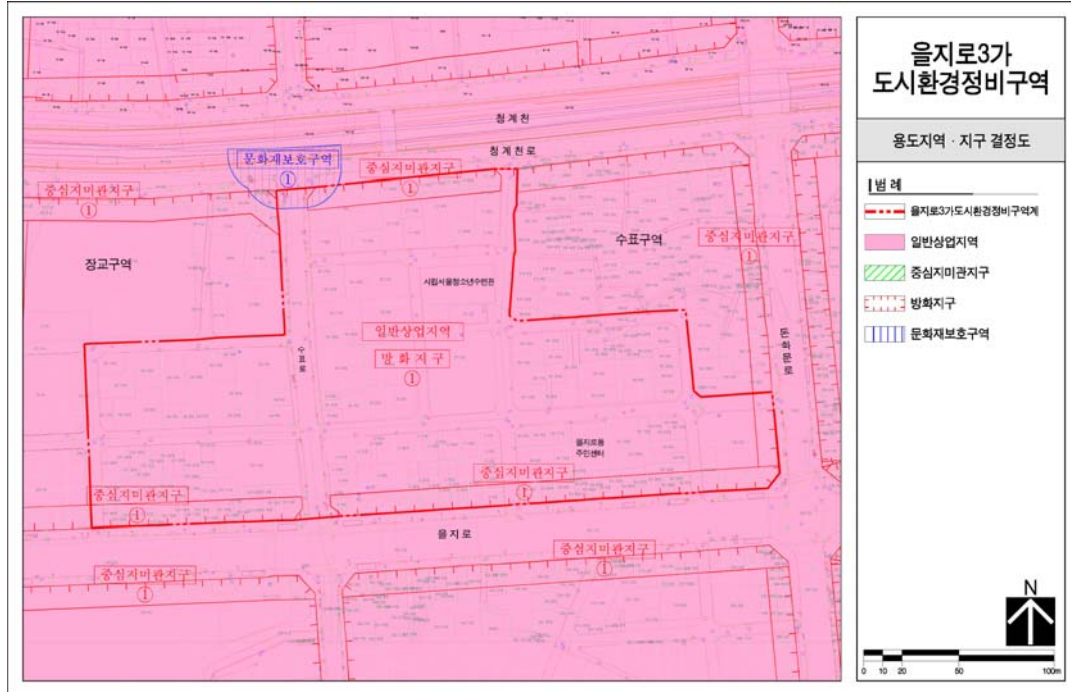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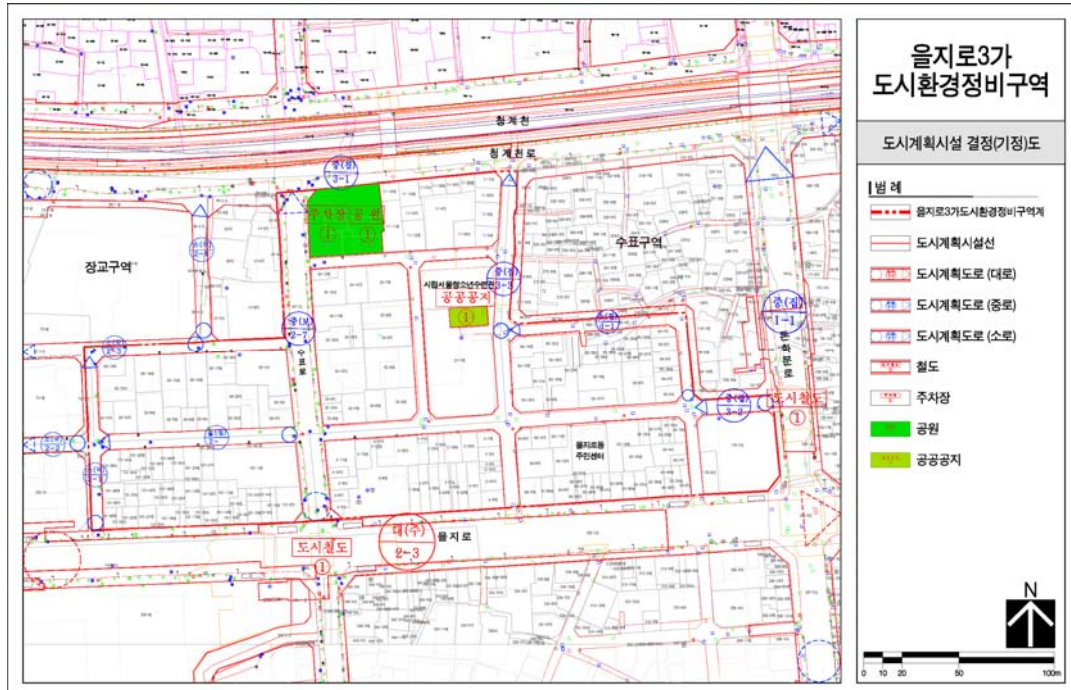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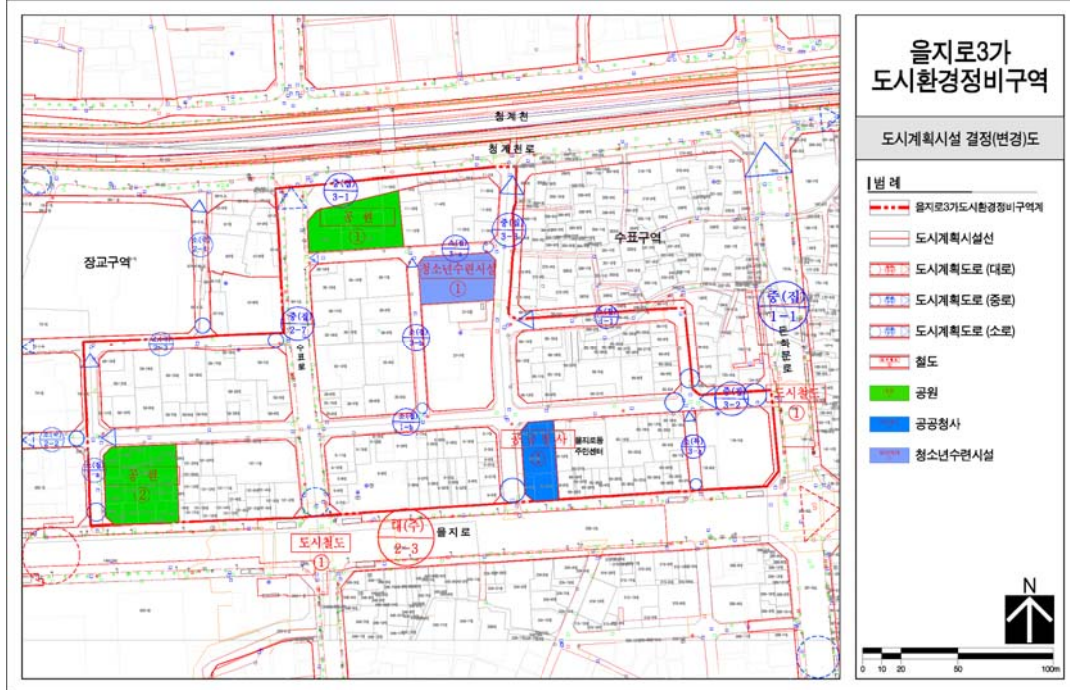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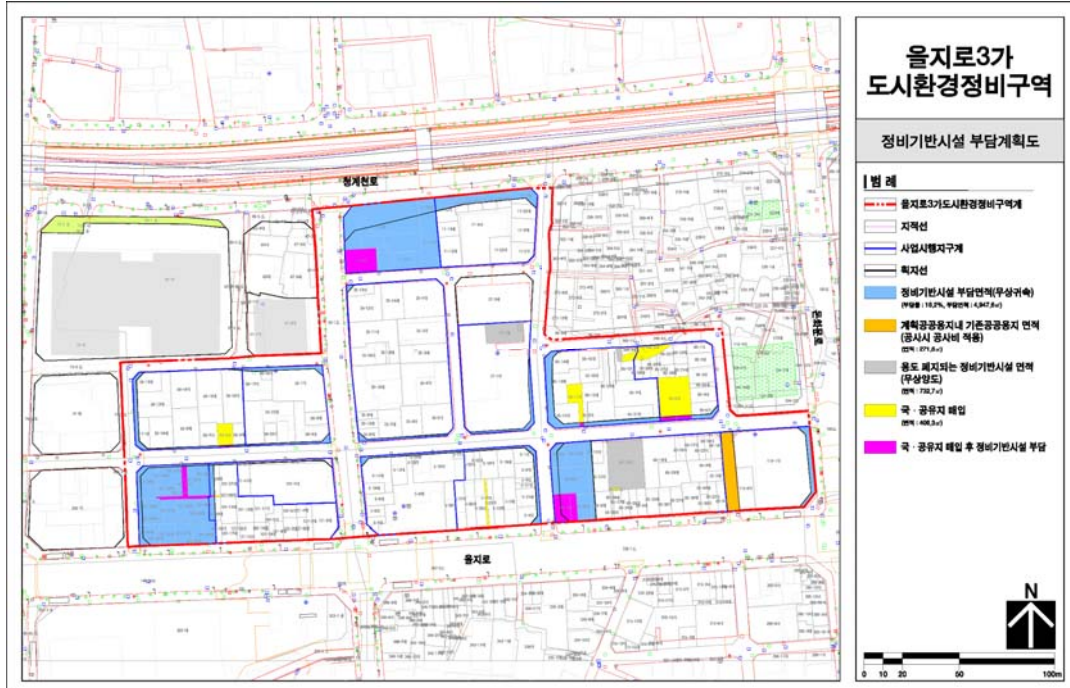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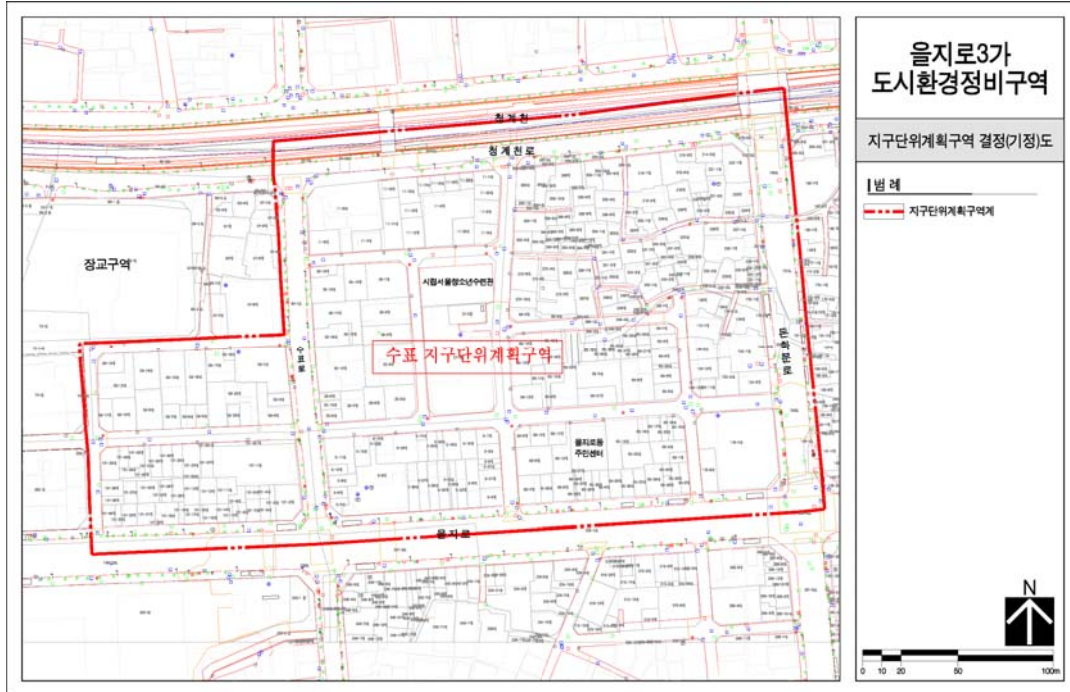
■정비기본시설(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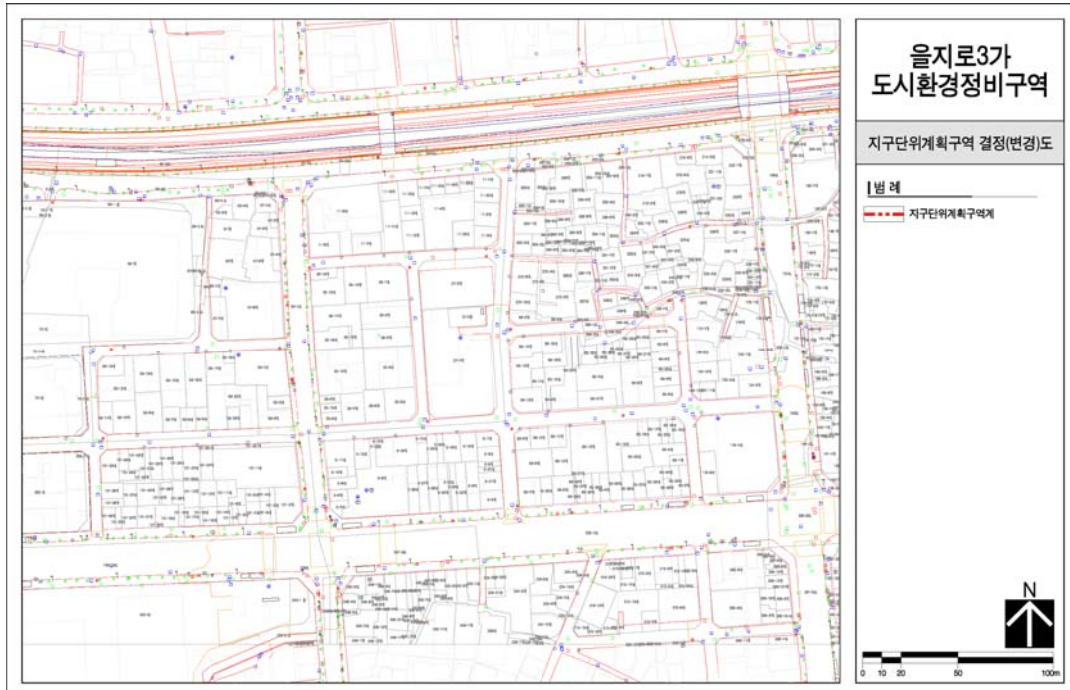
■정비기본시설 부담계획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구역해제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948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6-88	(사)부스러기사랑 나눔회 (대표 강명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6길 16	○ 국내 빈곤아동 지원 (생활, 교육, 문화, 의료부문)	800 (현금)	전국	'16.9.6. ~'17.9.5.
						'16.10.1. ~'18.12.31.
2016-89	재단법인 한국소방복지재단 (대표 최성룡)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419-3, 3층	○ 유병 소방관 지원 및 순직소방 관 가족 지원	15 (현금)	전국 및 해외	'16.9.6. ~'16.9.30.
						'16.10.1. ~'16.12.15.
2016-56-1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사회 복지협의회 (대표 김삼환)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9 한국기독교회관, 705호	○ 북한 취약계층 영양지원 및 최 빈국 영양지원	600 (현금)	전국	'16.6.10. ~'17.5.20.
			※ 변경내용 : 모집목적 변경 - 모집목적 : (당초) 북한 임신부 및 영유아 영양지원 (변경) 북한 취약계층 영양지원 및 최빈국 영양지원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961호

차량의 운행제한 변경 공고

도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운행을 제한하고자 같은 법 제77조 7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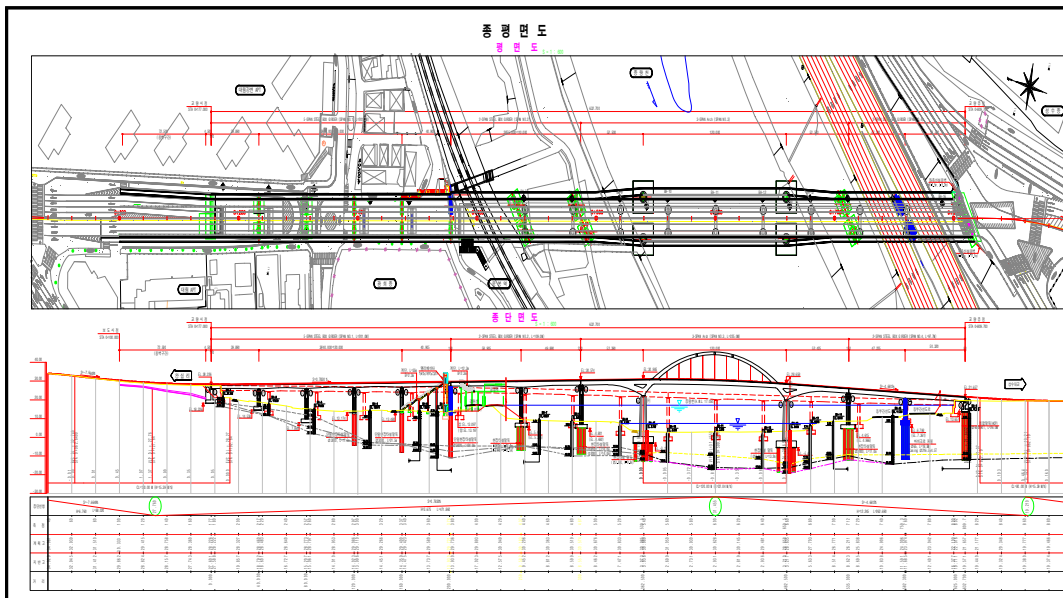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도로의 종류	서울특별시도	
노선명	고산자로 응봉교구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한의 대상	○ 총중량 32t을 초과하거나 축중량 10t을 초과하는 차량 ○ 차량제원 폭 2.5m, 길이16.7m, 높이 4.0m이상을 초과하는 차량 ○ 기타 도로의 구조 보존과 통행에 위험이 되는 차량(건설기계 포함)	○ 총중량 40t을 초과하거나 축중량 10t을 초과하는 차량 ○ 차량제원 폭 2.5m, 길이16.7m, 높이 4.0m이상을 초과하는 차량 ○ 기타 도로의 구조 보존과 통행에 위험이 되는 차량 (건설기계 포함)
구간	시설물명	응봉교
	위치	성동구 응봉동(응봉삼거리 ~ 성수1가 삼표레미콘)
	규모	B = 6차로, L = 633m
기간	2016. 10. 6. 00시 ~ 별도 공고시까지	
이유	○ 교량의 차량운행으로 인한 위험방지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결과 DB-24를 상회함	
문의처	○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2133 - 1976) ○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210 - 1525)	
위치도	○ (생략)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에 도면비치	

○ 응봉교 노선도



○ 응봉교 중평면도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967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업 체 명 : 엔텍이앤씨 (주)
2. 대 표 자 : 최근호(1958.7.29)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1(수서동 715) 수서오피스빌딩 10층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16호
6. 등록일자 : 2006. 11. 06.
7. 전화번호 : 02-2040-699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969호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1~2공구) 계획 승인을 위한 열람 공고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 구간 중 서울시 시행구간(1~2공구)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계획 개요

가. 도시철도 부지의 위치 및 규모

노선명	기 · 종점	정거장(위치)	차량기지(위치)
별내선 (1~2공구)	강동구 암사동 ~ 구리시 토평동 (L=3.72km)	BN1정거장 (아리수로 현대홈타운앞, 1k010)	모란차량기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철도사업
- (2) 명 칭 :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1~2공구)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 (1)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장
- (2) 성 명 : 서울특별시청

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1) 착 수 : 2015년 12월

(2) 준 공 : 2022년 12월

2.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20일간

3. 열람도서 : 계획평면도 및 종단면도(1/1,000), 토지 및 물건조서, 도시철도 용지도(1/1,200)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02-772-7140), 강동구청 도시계획과(☎02-3425-6024), 교통행정과(☎02-3425-6244), 구리시청 교통행정과(☎031-550-2794)

5. 기타사항 : 사업계획 변경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975호

종합공사시공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통지를 하고 이 사실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16.10.6.~2016.10.20.

2. 처분사전(등록말소)통지 사항

업체명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주)덕현건설 이재수	건축공사업 1316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 1209호	등록사항신고 불이행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 처분불응	등록말소 (2016.10.25.)	법 제83조 제7호

3. 공고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시설안전과 ☎(02)2133-82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985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원섭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마근포로106번길 ** (하성면)	일시: 2016-07-07 06:42 장소: 행주대교 북단 과적검문소 차량: *****5263 내용: 제한 총중량 1.76t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박성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24-14, ***동 ***호(서창동, 인천서창엘에이치1단지)	일시: 2016-07-29 16:29 장소: 행주대교 남단 과적검문소 차량: *****4145 내용: 제한 높이 0.11m 초과	과태료 30만원 부과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진술 안내

가. 의견진술 기한: 공고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20일

나.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서식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준용), 의견진술 시 의견진술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 또한, 의견진술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진술이나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진술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의견진술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988호

유 물 구 입 공 고

우리 시에서는 시민생활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유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박물관 전시 및 교육 등에 활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물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구입 분야

번호	구입 분야(주제)	구입대상유물
1	서울동북부 지역사	○ 서울 동북부 지역 도로·교통발달사 자료 - 상봉터미널 : 건축도면, 엽서, 사진 등 - 철도노선 : 중앙선·경원선·경춘선·망우선 건설지, 도면, 사진 등 - 주요도로 : 동부·북부 간선도로,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 동일로, 화랑로, 도봉로 등 관련문서, 홍보물, 도면, 사진 등 ○ 동북4구 지역사 및 중랑천 자료 - 조선시대 동북 4구 관련 고문서·전적 자료 - 도봉구 초안산 내시묘역 자료(내시 관련 자료)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민아파트, 신시가지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 관련 자료 - 삼각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용마산, 봉화산, 아리랑고개·미아리고개 자료 - 중랑천 치수사업 및 수리조합 관련 문서, 홍보물, 사진, 도면 등 ○ 동북4구(노원·도봉·강북·성북) 소재 학교·기관 자료 - 서울과학기술대(구 서울대 공과대학), 육군사관학교, 서울여대 등 학교앨범·교지·도면·사진 등 - 동북4구 학교 및 교육자료, 중계동 학원가 자료 - 태능선수촌 건립·운영 및 스포츠 관련 자료 ○ 동북4구 지역 인물 자료 - 조선시대 : 조광조, 유희경, 박세당, 홍봉한, 홍양호 등 - 근현대 : 한용운, 김병로, 송진우, 정인보, 함석헌, 계훈제, 천상병, 김수영 등
2	구 북부법원 및 구치감 자료	○ 구 북부법원 관련자료 - 주요 사건 및 관계자 자료 : 사건 판결문 및 관련 문서 등 기록자료, 판·검사 및 근무자 임명장 및 사용물품, 법복, 죄수복, 수갑 등 - 구 북부법원 사진 및 동영상 자료 : 북부법원 건물 및 관련 인물 사진 자료 및 동영상 자료 ○ 법원 및 구치감 관련 자료 - 법원 및 구치감 관련 근무자 임명장 등 사용물품 및 관련 기록 ○ 법원 및 헌정사 관련 서적 및 문서 - 고문서 및 고서적 등
3	어린이 놀이문화	○ 아동용 놀이용품 - 팽이, 칠교놀이 등 - 1960~80년대 아동용 장난감, 승용완구, 인형, 게임기 등

번호	구입 분야(주제)	구입대상유물
4	서울 서화	○ 실경 산수화 - 도봉산, 삼각산, 북한산, 한강 등 실경을 그린 산수화 - 한양도성, 궁궐, 관아 등 주요 건축물을 그린 서화 ○ 풍속화 : 세시풍속 관련 서화
5	일반 서울관련 유물	위의 구입분야(주제)에 포함되지 않으나 서울과 관련성이 높은 유물

2. 참가 자격 :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개인소장자 등
 - ※ 문화재매매업자는 반드시 등록된 상호명으로 매도신청해야 합니다.
 - ※ 문화재 관련사범은 참가할 수 없으며, 소유나 출처가 분명치 않은 유물 및 불법문화재는 매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준용)
3. 접수 기간 : 2016년 10월 6일(목) ~ 10월 20일(목)까지
4. 접수 방법 : 현장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중 택일
 - 가. 현장 접수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서울역사박물관 2층 신규박물관조성추진반
 - ※ 접수시간 : 오전 09:00~11:30, 오후 13:00~17:30(주말 제외)
 - 나. 이메일 접수 : utopian@seoul.go.kr
5. 제출 서류
 - 가. 현장 및 이메일 접수 : ①, ②번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유물사진과 함께 송부
 - ① 유물매도신청서(소정양식) 1통
 - 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 이미지 파일 송부
 - 매도신청 유물목록은 ②번 양식에 별도 작성
 - ② 유물목록(소정양식) 1통
 - 개별 유물목록 작성
 - ③ 유물사진(파일)
 - 파일명을 유물번호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송부
 - 파일형식 : JPG, GIF, PNG(1점 당 1매 이상, 1매 5MB 이하)
 - 사진파일이 많을 경우 압축파일로 변환하여 송부
6. 실물 접수 : 서류 심사 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에 대해 개별 통지하여 실물 접수
 - 가. 실물 접수시 제출 서류
 - 문화재매매업자 :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통
 - 법인 또는 단체 :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 1통
 - 개인 : 신분증 지참 또는 사본 제출(사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 대리접수시 위임인이 작성한 위임장 1부 와 위임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7. 유물 구입 가격 : 유물평가위원회 평가에 의함

8. 구입 결정

- 가. 유물평가위원회 및 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의 평가·심의에 의해 구입 대상 선정
- 나. 구입선정 유물에 대해서 인터넷 공개를 통해 불법문화재 여부 검증
- 다. 최종 선정된 유물의 평가금액에 매도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매매계약 체결

9. 소유권 이전 : 계약체결 이후 대금 지급과 함께 유물의 소유권은 서울시로 이전**10. 기타 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나. 출처 및 취득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자료는 구입하지 않음
- 다.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본인에게 통보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해 반환함
- 라. 유물 접수 및 반환으로 발생하는 운송비 및 제반 비용은 매도신청자 부담
- 마. 평가기간 중에도 도난문화재 여부 확인을 위해 인터넷 공개를 할 수 있음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역사박물관 신규박물관조성추진반(02-724-0186~7,) 서울시청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02-2133-4197)로 문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989호**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보완 공고**

「건축법」 제4조 내지 제4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5 내지 제5조의8,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4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4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3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및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운영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장

2015. 8. 6. 제정

2016. 9. 1. 개정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운영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건축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의5,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장 및 국토교통부 고시(2015.5.29.)(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와 「자치구 건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운영기준은 조례 제2장에 따른 시위원회와 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사항으로서 건축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3조(운영기준의 제·개정)

- ① 본 운영기준은 매년 1월중에 개정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에 대하여 별도 방침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치구에서 운영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말일까지 구청장의 방침을 득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 운영 및 심의대상**제4조(위원회 운영)**

-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매회 개최하는 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시위원회 구성은 18명 내외로 구성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위원장(1명) : 주택건축국장
 - 나. 내부위원(1명) : 건축기획과장
 - 다. 외부위원 : 학계, 산업계 등 건축·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15명 이상 및 시민대표(시의원) 1명
 2. 필요시 개최하는 소위원회 또는 해당분야 전문위원회는 5명 이상(내부위원 건축기획과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본위원회에서 위임한 경우(필요시 해당분야 위원 추가 가능)
 - 1) 위원장(1명) : 구성되는 위원 중에서 호선
 - 2) 건축기획과장, 계획분야 3명 이상, 구조분야 1명 이상, 교통분야 1명 이상
 - 나.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필요시 해당분야 위원 추가 가능)
 - 1) 위원장(1명) : 구성되는 위원 중에서 호선
 - 2) 건축기획과장, 계획분야 3명 이상, 구조분야 1명 이상, 설비(기계, 전기)분야 2명 이상
 - 다. 굴토분야 심의 소위원회(필요시 해당분야 위원 추가 가능)
 - 1) 위원장(1명) : 구성되는 위원 중에서 호선
 - 2) 건축기획과장, 토질 및 기초분야 3명 이상, 건축시공분야 1명 이상, 건축구조분야 1명 이상
 - 라. 구조안전분야 심의 소위원회(필요시 해당분야 위원 추가 가능)
 - 1) 위원장(1명) : 구성되는 위원 중에서 호선
 - 2) 건축기획과장, 건축구조분야 3명 이상, 건축계획·시공분야 1명 이상
 - 마. 공공건축물 경관전문위원회(필요시 해당분야 위원 추가 가능)
 - 1) 위원장(1명) : 구성되는 위원 중에서 호선
 - 2) 건축기획과장, 건축계획분야 6명 이상
-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매회 개최하는 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구위원회 구성은 18명 내외로 구성(자치구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위원장(1명) : 도시관리분야 국장
 - 나. 내부위원(1명) : 건축 관련 과장
 - 다. 외부위원 : 학계, 산업계 등 건축·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15명 이상 및 필요시 시민대표(구의원) 1명

2. 필요시 개최하는 소위원회는 5명 이상(내부위원 건축 관련 과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본위원회에서 위임한 경우(필요시 해당분야 위원 추가 가능)

- 1) 위원장(1명) : 구성되는 위원 중에서 호선
- 2) 건축 관련 과장, 계획분야, 구조분야, 교통분야(교통분야 전문가 포함)
- ※ 자치구에 교통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 한한다.

나. 자치구의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필요시 해당분야 위원 추가 가능)

- 1) 위원장(1명) : 구성되는 위원 중에서 호선
- 2) 건축 관련 과장, 계획분야, 구조분야, 기타분야

다. 국토분야 심의 소위원회(필요시 해당분야 위원 추가 가능)

- 1) 위원장(1명) : 구성되는 위원 중에서 호선
- 2) 건축 관련 과장, 토질 및 기초분야, 건축시공분야

라. 구조안전분야 심의 소위원회(필요시 해당분야 위원 추가 가능)

- 1) 위원장(1명) : 구성되는 위원 중에서 호선
- 2) 건축 관련 과장, 건축구조분야, 건축계획분야

마. 공공건축물 경관전문위원회(필요시 해당분야 위원 추가 가능)

- 1) 위원장(1명) : 구성되는 위원 중에서 호선
- 2) 건축 관련 과장, 건축계획분야

제5조(회의개최)

① 시위원회의 개최는 다음과 같다.

1. 본위원회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화요일에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상정안전 관련자 및 위원에게 알려야하며, 당일에 심의를 다 마치지 못하고 날짜를 정하여 속개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소위원회는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정안전의 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 요일에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위원회의 개최는 다음과 같다.

1. 본위원회는 각 자치구별로 별도 기일을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각 자치구별로 별도 기일을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작성 및 회의공개 등)

① 위원회의 심의 후에는 심의 일시·장소·안전·내용·결과 등이 수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회의록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의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까지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참관하고자 하는 건축주(조합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는 심의신청 시 다음 사항이 기재된 참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참관인 성명·주소·직위(직책이 있을 경우에 한함)·참관목적

④ 위원장은 참관신청자의 당해 안전에 대하여 참관을 허락할 수 있다.

제7조(심의대상)

- ① 시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조례에서 시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구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조례에서 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외에 다음과 같다.
 1. 고시 제6.2.2 다목에 따라 구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은 별표1과 같다.

제8조(심의의결 유형 등)

1. 원안의결 : 심의신청 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2. 조건부결 : 심의지적사항이 기본계획을 유지하는 경미한 변경으로 신청자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하는 의결
3. 재심의결 : 심의지적사항에 따라 재계획이 필요한 경우 (중대한 경우 소위원회 자문 선행)
4. 부결(반려) : 관련법규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의 의결
5. 보완의결 :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청자의 검토(의견)가 필요하거나 제출된 자료 외에 별도의 도면 등이 필요한 경우의 의결. 이 경우에는 심의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6. 보류의결 : 심의 중 타부서 협의 등이 필요하여 심의진행을 차기위원회로 이월하는 경우의 의결. 이 경우에는 심의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7. 조건부(보고)의결 : 사업 및 인허가 절차는 진행하되 조건의 반영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의결

제9조(이의신청 등)

- ①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서는 제목, 사업명, 건축주, 심의일자, 이의신청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이의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조건을 이행할 경우 과도한 기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2. 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반되는 경우
 3. 설계자의 설계의도와 전혀 상이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객관적 조건이 제시된 경우
- ⑤ 다음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심의(소위원회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상 명백한 경우
 2. 사업성 위주로 계획되어 도시미관 증진에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경우(디자인 모방 등)
 3. 기본계획의 변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공성 확보가 불가한 경우

제10조(심의신청 및 제출도서)

- ① 제7조에서 정한 심의대상 건축물의 심의 신청은 건축허가(또는 착공)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별표 2]에 따라 작성한 도서
 2. 골토분야 심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별표 2]에 따라 작성한 도서 및 [별지 제3호]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

3. 구조안전심의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고시 [별표 2]에 따라 작성한 도서
4.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심의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7-456호의 서식과 작성한 도서
5. 공공건축물 경관심의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별표 4]에 따라 작성한 도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건축물의 경관 체크리스트(사업자용)
- ②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계획 심의대상에 대한 제출서류 및 작성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③ 인·허가권자는 심의상정 전에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주관부서에서 심의 상정의뢰를 하여야 한다(시위원회에 한한다). 다만, 사업주관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곧바로 위원회에 심의 상정의뢰를 할 수 있다.
- ④ 사업주관부서(시위원회에 한한다)는 도시계획, 정비계획, 정책사항 등의 반영 여부를 확인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에서 건축법 제5조에 따른 건축기준의 적용완화에 대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완화를 받고자 하는 내용과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인허가권자는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에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우수디자인’ 등의 인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이 기준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8.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5. 8. 6)

제1조(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2015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9. 1)

제1조(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대상(제7조 관련)

< 중구 >

-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허가(신고)
- 필동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건축(신축·증축 등), 용도변경허가(신고) 및 건축물표시변경
- 고시원으로서 30실 이상 건축 및 용도변경(건축물 표시변경 포함)
- 지하(반지하 포함)층에 주택으로 건축 및 용도변경 하는 경우(침수 우려가 없는 지역 제외)
- 2층 이하 및 연면적 500㎡미만 건축물의 건축 및 5층 이하 건축물 중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유류소·가스충전소 등)에 대한 건축·대수선의 구조성능
- 중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신축
- 경관중점관리구역 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 지하에 객실을 설치하는 숙박시설[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설계변경 포함)]
- 재개발 등 해제지역 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 용산구 >

-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고시원 30실 이상 건축물
- 반지하주택이 포함된 건축허가대상건축물로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건축
- 뉴타운·재개발 등 해제지역 내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

< 성동구 >

-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300㎡이상 신축
- 공동주택(11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포함)의 건축허가. 단, 너비 4m미만의 도로에 접한 경우 10세대 이상의 건축허가(용도변경 등 포함)
-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허가(신고)
- 30실 이상의 고시원의 건축(용도변경 등 포함)
- 반지하주택이 포함된 건축허가, 신고
- 산업개발진흥지구 내 건축행위
- 미관지구 건축 및 대수선
-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내 신축허가 행위

< 광진구 >

-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자문
- 광진구 발주 건축물의 설계용역에 대한 자문
- 지상8층 이상 건축물 및 공동주택(아파트)의 자문
- 지하주택 포함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 자문

- 건축허가기준 강화구역 내 기준미달 계획
- 서울시 한옥 보전관리 강화계획에 따른 한옥 보전 필요성
-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 내 건축계획 자문
 - 주택 재건축사업 6개소 : 구의2동 72-3번지 일대 외 5개소
 - 주택 재개발사업 2개소 : 군자동 127-1번지 일대 외 1개소

< 동대문구 >

- 분양대상 건축물의 건축(연면적 3,000㎡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 건본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건축행위
- 재건축, 재개발 및 도시계획사업예정지(입안지역) 등에서 건축행위(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등)
- 지역정서에 상당한 저해요소가 있는 주민기피시설(장례식장, 변전소, 골프연습장 등)의 건축허가·신고 및 용도변경
-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굴토 10m이상, 옹벽 5m 이상, 장안동, 용신동 지하1층 이상 토목 자문
-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고시원 건축물(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 포함)
- 관광숙박시설 건축,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 다중주택 및 반지하 주택이 포함된 건축 행위
-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외부 형태변경)에 관한 사항

< 중랑구 >

- 주차대수 10대 이상 기계식·철골조립식 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 30실 이상 고시원의 건축 및 용도변경
- 경관중점관리구역 내 건축행위(지상6층 이상 또는 연면적2,000㎡이상)
- 반지하 주택이 포함된 건축물의 건축(단, 침수 우려 없는 지역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5,000㎡미만인 건축물
- 4m이하 도로에 접하여 6층 이상 신축

< 성북구 >

- 뉴타운해제구역 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뉴타운해제구역 내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적용)
- 아리랑길, 보국문길 20m 도로변(미관지구 미지정)의 건축
- 성북천 주변(동선동, 동소문동, 삼선동, 안암동, 보문동)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고시원의 건축(30실 이상 또는 고시원과 타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

- 한옥 건축물(민간, 공공)의 건축
- 한옥 건축물의 철거
- 반지하 주택이 포함된 건축

<강북구>

- 미관지구가 아닌 20m 이상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
- 도선사길, 4.19길, 우이동계곡 주변 건축물
- 30실 이상 고시원 및 20호 이상 다중주택
- 뉴타운 해제지역(1개 구역), 주택재개발 해제지역(3개 구역), 주택재건축 해제지역(13개 구역), 향후 해제지역
- 연약지반,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 및 인접대지와와의 거리 등 지역 여건상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굴착 건축물의 굴토

<도봉구>

- 20세대 이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7층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 일반건축물로서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3,300㎡ 이상 모든 건축물(증축 시 기존 건축물 포함하여 산정)
- 고시원 20실 이상 건축물
- 새동네·안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 구 발주 공공건축물 설계용역
- 반지하주택 건축물(침수 우려 없는 지역 제외)

<노원구>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복합용도로 신청하는 6층이상 건축물
- 공동주택
 - 7층 이상 15층 이하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아파트로서 주상복합 포함)의 건축허가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
 - 주택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도시형생활주택
- 10층 이상 15층 이하 모든 건축물
- 고시원 용도로 30실 이상인 건축물
- 주차대수 1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 주변지역 중점관리구역내 신축·리모델링하는 건축물
- 계단식 건축물(계단식 입면이 3개층 이상인 경우, 사선제한으로 경사 처리한 벽체부분이 3개층 이상인 경우) 및 연립, 다세대, 다가구 등의 옥상 경관(물탱크실)
-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건축허가
-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 내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

<은평구>

- 연면적 2,000㎡ 이상 건축에 관한 사항
- 비주거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과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 은평재정비촉진지구 3-2지구 내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내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 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20m이상 도로에 접하는 신축 및 증축허가 건축물
- 굴토 깊이 5m이상(굴토 깊이의 1.5배 내의 석축 높이 포함) 굴토에 대한 사항

< 서대문구 >

- 도시계획시설사업예정지 또는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예정지포함)안의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기재변경 및 전환포함)
- 10대 이상의 기계식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설치
- 고시원, 다중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용도인 건축물의 건축
- 자연경관지구 및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의 건축
- 지하층의 한면 이상을 4분의3 이상 노출되는 건축물의 건축

< 마포구 >

-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자문 : 공사비 5억 이상(설계경기 대상 제외)
- 주차 10대 이상인 기계식·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자문(단, 건물 내 지하에 설치되는 기계식 주차는 제외)
- 견고싶은 거리 건축물 자문
- 경인선 철도변 공원화사업(30m 이내) 인접 대지 건축물 자문
- 지하3층 부분을 거실로 사용하는 건축물 자문
- 상암 DMC 단지내 건축물 자문
- 부동산 투기방지 심의 : 개발 예정지내 호수를 증가하는 행위
- 고시원 및 다중주택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자문
- 반지하(지하) 주택 건축에 대한 자문
- 집단민원 등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 6층 이상 경관지역 자문
- 5층 이하 경관지역 자문
- 주거용 층고 3.5m이상, 비주거용 층고 4.5m이상으로 계획하는 건축물 자문
-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 건축에 대한 자문

< 양천구 >

- 고시원(30실 이상) 건축
-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미관지구 안에서 연면적 2,000㎡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도시미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시설물의 건축 등)

- 공동주택(주택사업승인 분)에 대한 토목(굴토)분야에 대한 기술적 사항
- 주차대수 1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 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에 관한 사항
- 기타 구 자체 시행공사 등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한 사항

<강서구>

- 고시원 및 지하층 주거용 건축물 건축(용도 및 표시 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 기계식주차장(주차 공작물,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건축에 관한 사항(건물내부 기계식주차 제외)
- 관광숙박시설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건축심의 제외 대상)
- 경관 중점 및 한강축 관리구역 내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 마곡지구 내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건축심의 제외 대상)
- 미관, 환경, 교육 및 교통 등 문제로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건축물(자동차 매매장, 정비공장, 정신병원, 장례식장 등) 건축에 관한 사항(용도 및 표시 변경 포함)

<구로구>

-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허가 및 신고 자문
- 지하 주택포함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 자문
- 20m이상 도로에 접하여 있는 건축물 건축(대수선 및 건축신고포함)계획에 대한 자문
- 주거환경저해시설[장례식장, 납골당, 묘지 관련시설, 골프연습장(옥외)]
-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이상 기존건축물의 대수선 및 증축에 관한 사항
- 굴토깊이 5m 이상 10m 미만 굴토에 대한자문(석축높이가 3m 이상인 경우 굴토깊이 포함 7m 이상인 경우)
- 균형재개발촉진지구 및 정비구역(예정구역 포함) 해제지역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

<금천구>

- 말미마을(독산동 1006, 1007, 1009, 1135번지 일대), 은행마을(시흥1동 492번지 일대) 및 우창연립(가산동 547, 614번지) 일대, 독산2정비해제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
- 고시원 용도로서 5개층 이상(필로티 층 제외)이거나 30실 이상 규모로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경우
- 15m 이상 도로변 신축·증축(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다목은 심의 제외)
- 필로티층을 제외한 지상5층 이상 신축(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와 제2호 다목은 심의 제외)
- 연면적 1천㎡ 이상 신축·증축(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다목은 심의 제외)
-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분양건축물(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의 자문
- 침수지역 또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지하(반지하 포함) 주택이 포함된 허가대상 건축물의 자문

< 영등포구 >

- 20미터이상 도로변에 접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 주차면 10면 이상의 옥외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 고시원 신축
- 반지하주택(준주택 포함)이 포함된 건축허가
- 한강축 기본관리구역 등에서의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포함)
- 여의도동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
- 영등포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
-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예정)구역 해제구역 내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

< 동작구 >

- 구 발주 건축물의 설계용역
- 30실 이상 고시원 건축에 관한 사항
- 미관지구 내 견본주택(모델하우스)
-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내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 서초구 >

- 20m이상 도로변 신축 및 증축허가 건축물
- 고시원(30실 이상) 용도 건축물(용도변경 포함)
- 지하 주거사용 건축물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1종전용주거지역(전원, 염곡, 성·형촌, 청룡·원터, 홍씨·능안·안골 마을)내 건축물로 6세대(가구) 이상 또는 1세대(가구)당 50㎡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 (미관지구 내, 견본주택) 가설건축물 신고 및 허가
- 주차대수 10대 이상의 옥외 기계식주차장·철골조립식주차장, 주차공작물, 주차전용건축물
- 이수역~서리풀터널구간의 서초대로변 보행환경 활성화를 위한 방배초교 인접지 구간 신축허가

< 강남구 >

-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차공작물, 기계식주차장(10대이상, 지하제외), 주차장 인근설치
- 가설건축물 중 아파트 견본주택 및 주차관리실
- 노인복지주택건축(실버주택)
-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내 위락시설 설치
- 주거지역내 주차전용건축물의 용적률 적용에 관한 사항
- 30실 이상의 고시원
- 반지하 주택

< 송파구 >

- 일반건축물 : 11층 이상 건축물 건축
- 공동주택 : 7층이상 아파트 건축
- 10대이상의 철골조립식·기계식(지하식 제외) 주차장 건축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20세대이상 30세대 미만 건축물 건축
- 다중주택·고시원(30실 이상) 등 준주택 용도 건축 및 용도변경
- 반지하주택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건축계획
- 거여·마천 뉴타운지역 등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 완화 심의

< 강동구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다중생활시설(고시원 30실 이상) 신축
- 건본주택(가설건축물)
- 지하층 주거용 건축물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 주거환경 저해시설[장례식장, 납골당, 묘지관련시설, 골프연습장(옥외), 자원순환관련시설, 사행성과 관련된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별표 2]

심의대상 제출서류 및 작성 방법

순서	도면목록	내 용	비고
1	표지	사업명, 사업위치, 재심의 여부 및 재심반영사항 등 기재 건축심의, 완화 심의 등 기재	
2	목차	1. 보고순서 기재 (도면 목록표 등)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1. 주변 1~2km정도 범위의 도로망, 주요건물, 지역여건 등 기재. 다만, 구위원회 심의 시에는 주변 300미터 내지 500미터 반경 범위로 할 수 있음.	
4	주변 현황도면	1. 주변(100~500m)이내 기존 대지의 건축선 후퇴 거리, 주차장입구, 공개공지 위치 및 규모 등 개략 기재. 다만, 구위원회 심의 시에는 주변(100m 반경)이내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음. 2. 인근 기존 건축물의 용도, 재료, 외관 디자인, 형태(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및 인접 아파트의 배치현황) 3. 신청계획과 비교 가능토록 기재	
5	사업 추진경위	1. 지구지정 일시, 자치구 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市도시 건축공동위원회/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전차 받은 건축위원회 심의 여부 및 결과 등 개략 내용 2. 사업 결정고시 내용(토지이용계획)	
6	도시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 결정사항	1.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정사항(고시) 2. 토지이용계획 현황	
7	타위원회 등 심의관련 도면	1.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재정비위원회 등 신청계획안/심의결과 및 조치결과를 건축심의 신청안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 2. 중요 고시내용 명기	
8	설계개요	1. 계획안의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구조, 용도별 면적, 세대수(평형별) 등 전반적인 사항 2. 계획안의 주요 디자인 컨셉 및 아이디어 창출 경위 등 3. 재심 또는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변경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편철	
9	경관에 관한 사항 (경관심의 대상에 한함)	1. 현황분석 2. 배치·규모 및 형태, 임면계획 3. 외부공간계획 4. 옥외광고물 계획(필요시) 5. 야간경관계획(필요시)	
10	투시도·조감도 (필요시)	1. 주요 조망축에서 본 조감도로 작성하되 신청대지와 접한 실제주변 대지, 건축물을 포함하여 작성 2. 공동주택의 경우 조감도 대신 mass 모형으로 대체(심의당일 모형 제출 - 배치, 매스의 형태 및 크기, 대지의 레벨 등이 읽힐 수 있도록 모형 제작) 가능	
11	배치도	1. 조정/공개공지 계획, 차량/보행동선/교통 처리계획 등 종합적으로 표기 2. 대지규모가 커 A3도면으로는 전체적인 표현이 어려울 경우 A2가능 3. 지붕층 배치도가 아닌 지반층 배치도 사용	

순서	도면목록	내 용	비고
12	총형단면도	1. 대지고저차를 자세히 표기(도로, 인접대지 레벨 포함) 2. 절,성도 부분을 전후 비교 가능토록 함 3. 인접지, 도로와의 레벨차이, 처리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작성 (필요시 확대단면도 첨부)	
13	공개공지	1. 1층 평면도에 공개공지 확대 평면도 작성(경계면 정확히 표시) 2. 공공에 제공하는 구체적인 공간계획 제시(예 : 공개공지 표지판, 그늘막, 수목식재 등)	
14	평면도	1. 1층 및 지하층, 기준층, 옥탑층 순으로 편철(각층이 비슷할 경우 기준층만 편철하고 공용공간 및 다중이용 시설이 있는 층 위주로 작성) 2. 필로티 설치 경우 1층 평면 작성 3. 삭제 4. 삭제	
15	입면도	1. 4면을 작성하되 정면도 수준으로 계획하며, 재료/색상 등 디자인적 측면에서 계획한 입면 표출 2. 특히 저층부의 현관부분, 옥상층 등은 시공 후 보여지는 재질감을 표현 3. 경사대지일 경우 입면도상 4면이 지표레벨부터 나타나도록 입면도를 작성 4. 대지 레벨차이로 인해 웅벽, 데크 등 형성 시 단면상세, 입면전개도 작성 5. 재료, 색채 등 명확히 표현(예 - 화강석물갈기) 6. 미관지구안, 4차선이상 도로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안, 공동주택단지의 상업용 건축물은 옥외 광고물 부착위치를 입면도에 표기 (옥외광고물관리법의 “간판설치기준” 준수)	
16	벽면을 산출근거 및 발코니 삭제비용 산출근거	1. 벽면을 산출근거 및 발코니 삭제비용을 도식화하여 표현 - 측벽, 공용코어 제외 -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사유 및 완화신청	
17	설비/전기/구조/방재/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등	1. 건축물의 구조(구조안전심의 대상 제외) / 설비 및 방재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서(도면) 1) 구조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 구조개요 - 제반 하중 조건에 대한 분석 - 구조 계획(지상층 구조계획, 지하층 구조계획) - 기초 구조계획[지내력 관련사항(가능한 토질 및 기초전문가 소견 필요)] - 하중 전이층(Load Transfer) 구조계획(해당사항 없을 경우 생략) - 각종 조인트(Expansion Joint, Seismic joint, Constraction Joint, Delay Joint) 계획 -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 · 횡력 (내진, 내풍) · 변위 검토(지진하중에 의한 층간 변위, 풍하중에 대한 최대 횡변위) - 골조계획(Typical층의 구조 평면도 및 단면계획) 2) 소방방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 피난이 중시되어야 하는 부분(예 : 지하멀티플렉스) - 피난 컨셉(중요부를 부각) - 구획방식과 피난로 보호대책(예 : 쇼핑물의 주통로 주변 구획방식, 에스컬레이터 구획 방식) - 면적이 대규모일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 - 비상 차량 이동 및 고정 위치	

순서	도면목록	내 용	비고
		- 특수한 시설이 존재하는 경우의 대책 - 방재 센터의 위치, 감지 및 통신시스템 개요 등 - 특별 피난계단 부속실 면적4㎡ 이상 확보 여부 3) 설비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 선근 외부에 면하는 부분에는 드렌처(수막) 설비 및 제연시스템 - 주소형 화재감지기 및 조기반응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여부 - 피난시 시야확보를 위한 유리방화문 설치 - 피난통로 바닥 또는 걸레받이에 피난 유도선 설치여부 - 예비전원은 30초 이내 가동 및 최대부하 대응 여부 - 지상층 배수펌프 전용 비상발전기 설치 유무(자치구 허가는 권장) 4)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내용	
18	기타	1. 우수디자인(필요시) 2.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필요시) 3. 건축심의 체크리스트	
	설계자 자유 제출 도면	1. 신청계획안에 대하여 설계자의 디자인 또는 설계의도 등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가능	

■ 작성요령

○ 심의도면

- A3 용지, 50매 내외로 구성(상단철)
- 겹표지는 청색 제본(검은색 테이프 사용금지)
- 도면 스케일은 도면 규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글씨가 보이도록 크기 조정)

○ 파워포인트 설명자료 : PPT 파일(100MB 이하로 작성)

[별표 3]

굴토심의 도서작성 및 제출서류

- 굴토심의 PPT 1부(도서, 보고서 주요내용 수록).
- 굴토심의 도서 2부.
 - 건축개요
 - 대지조성 및 토지굴착 계획
 - 지반조사 내용
 - 주변시설물 현황도(건물, 도로, 구조물 등) 및 영향검토서
 - 지하매설물 현황도(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 흙막이공법 선정사유
 - 흙막이 도면(평면도, 단면도, 전개도, 주요부분 상세도 등)
 - 굴착 및 해체시공 순서도, 시방서 및 계측계획서, 옹벽 구조도면(해당할 경우 작성)
 - 건축계획도면(지하층과 1층 구조평면도, 중·횡단면도, 건축물 지하외벽 배근도, 지하층 평면도)
- 지반조사 보고서 2부(양면인쇄 제본).
- 흙막이설계 보고서 2부(양면인쇄 제본).
 - ※ 파워포인트 설명자료 : PPT 파일(50MB 이하로 작성) 별도 제출

[별표 4]

건축물의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

항목	작성방법	
표지	○ 사업명, 재심 여부,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다.	
목차	○ 심의도서 내용의 순서를 기재한다.	
I. 건축물 개요	○ 건축물의 위치 및 규모, 용도 등을 기재한다. ○ 추진일정, 타 위원회 심의여부 및 결과 등 개략적인 추진 경위를 기술한다.	
II. 현황분석	경관 관련 계획	○ (분석항목 및 범위) 대지 및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 관련 계획을 조사·분석한다. - 해당 지자체의 경관계획, 경관미관지구의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경관중점관리구역의 관리계획 등 -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관설계지침 또는 디자인가이드라인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 경관, 건축 관련 계획 등 ○ (분석방법) 문헌조사 등을 통해 관련 계획 중에서 대상지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기술한다.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	○ (분석항목 및 범위) 주변 지역의 건축물, 지형, 가로 및 외부공간 등 건축물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주요 경관자원 및 경관 특성에 대해 조사분석한다. ○ (분석방법) 문헌조사, 현지조사 등을 통해 조사분석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현황분석도를 작성한다. -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지양한다. - 기존 자료 중 주변 지역의 현황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이를 최대한 활용하며, 이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며 그 출처를 표기한다. - 현황분석도는 2차원적인 지형도 또는 현황사진에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III. 배치·규모·형태 계획	○ (기재사항) 배치/규모/형태 계획에 있어서의 경관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아래의 예시 참고) - 주변의 경관 및 인접 건축물 등의 경관특성과의 조화(건축선, 높이, 형태, 재료 등) - 구릉지의 경우 지나친 옹벽발생을 지양하고 주변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 -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저층·중층·고층부로 구분한 건축계획을 통하여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 및 휴먼스케일의 보행환경 확보 - 연속적 가로경관 형성을 위한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 계획 - 획일적이거나 과장된 디자인, 자극적인 색채 등은 지양 -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동선 계획(차량, 주차, 보행) - 옥상설비 및 부속설비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 (기재방법) 배치/규모/형태 계획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을 기술하고 그 내용을 표현한 관련 도면을 첨부한다. - 배치도, 입면도, 스케치 등으로 설명하며,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표현한다. - 도면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을 선택하여 표현한다.	

항목	작성방법
IV. 외부공간 계획	○ (기재사항) 외부공간계획에 있어서의 경관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아래의 예시 참고) - 보행가로 및 인접한 외부공간과의 연속성·접근성 - 가로에서의 개방성 등 가로경관 고려 ○ (기재방법) 외부공간계획에 있어서의 경관을 위한 고려사항을 기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표현한 관련 도면을 첨부한다. - 배치도 등으로 설명하며,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표현한다. - 도면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을 선택하여 표현한다.
V. 옥외광고물 계획(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 (기재사항) 옥외광고물 계획에 있어서의 경관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아래의 예시 참고) - 건축물 입면과 옥외광고물의 통합적 계획을 통한 조화 -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크기, 위치, 소재, 색채 등) - 해당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등 준수 ○ (기재방법) 옥외광고물계획에 있어서의 경관을 위한 고려사항을 기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표현한 관련 도면을 첨부한다. - 옥외광고물의 위치 및 크기 등을 입면도에 표현하여 설명한다. - 도면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을 선택하여 표현한다.
VI. 야간경관 계획(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 (기재사항) 건축물 외부에 야간경관 조명 등을 설치하는 경우 경관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아래의 예시 참고) - 주변 경관특성을 고려한 계획 - 불필요한 조명 지양 - 해당 지자체의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등 준수 ○ (기재방법) 야간경관계획에 있어서의 경관을 위한 고려사항을 기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표현한 관련 도면을 첨부하도록 한다. - 조명의 위치 및 종류, 조도, 휘도, 색상 등을 기재한다. - 도면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을 선택하여 표현한다.
그 밖의 사항	○ 경관 사전 검토 결과 또는 이전 경관 심의 결과와 그에 대한 반영사항(경관 사전 검토를 거쳤거나 재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별지 제1호]

**건축위원회 [] 심의
[] 재심의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연번

건축종별	☐ 신축	☐ 증축	☐ 대수선	☐ 기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신청 여부	☐ 신청함		☐ 신청하지 않음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전자우편 주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관계전문 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사무소명	전화번호	주소
	() (서명 또는 인)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건축 또는 대수선 계획 내용

대지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연면적	m ²	건폐율	%	용적률	%
건물용도	구조		최고높이		m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세대수/동수	세대	동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m ²	대 m ²	대 m ²	
	기계식	대 m ²	대 m ²	대 m ²	대
건축기준 완화내용	관계법령 신청사유				

변경내용	
------	--

「건축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장·○○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간략설계도서(배지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하고,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2호]

건축(굴토)계획 심의 신청서

건축주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축 설계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토목 설계자	설계자	주소			기술용역 등록번호	제 호	
		사무소명		전화		대표	
		책임기술사	(인)	전문분야			
	지질 보고서 작성자	주소			기술용역 등록번호	제 호	
		사무소명		전화		대표	
		책임기술사	(인)	전문분야			
대지조건		위치					
		도시계획	지역 :		지구 :		기타 :
		대지면적	m ²		전면도로폭	m	
건축물 규모		용도	연면적		m ²	지하층 면적	m ²
		층수	지상 : 층, 지하 : 층			최고높이	m
공사내용		굴착깊이	m	흙막이 공법	벽체공법		
		옹벽높이	m		지보공법		
					차수 및 지반보강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6.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 00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굴토심의 PPT 1부.(도서 및 보고서 주요내용 수록)
 2. 굴토심의 도서 2부
 (건축개요, 대지조성 및 토지굴착계획, 주변시설물 현황도(건물, 도로, 구조물 등) 및 영향검토서, 지하매설물 현황도(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지반조사내용, 흙막이공법 선정사유, 흙막이도면(평면도, 단면도, 전개도, 주요부분 상세도 등), 굴착 및 해체시공 순서도, 시방서 및 계획계획서, 옹벽 구조도면(해당할 경우 작성)
 3. 지반조사 보고서 2부
 4. 흙막이 설계보고서 2부

[별지 제3호]

건축(굴토)계획 심의 검토의견서

대지위치					
건축주		지역·지구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율	%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하 층/지상 층
건물용도		공사종별	신축 등	굴착깊이 (옹벽높이)	m
이전심의사항 : 신규, 재심 등					
검 토 사 항					
대지현황	테헤란로와 영동대로의 교차지점인 지하철 삼성역에 접함				
건축규모	층수	지상 17층, 지하 5층	동 수	5개동	
			세대수	1,000세대	
최대굴착	28.2m				
암 반	풍화암 -17.4 ~ 28.9m, 연암 -18.8 ~ 30.0m 경암-				
지하수위	-12.4m (시추완료일 : 2004. 5.5)				
흙 막 이 공 법	벽체공법	Slurry Wall +R. C. D			
	지보공법	Top Down			
	차수 및 지반보강				
자치구 검토의견	○ 지하굴토의 Top down 공법의 굴토깊이, 시공성, 하중조건 등에 따른 건축 위원회 굴토심의(자문)상정 코자 합니다.				

[별지 제4호]

경관 심의 신청서

신청인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주 소(사무실)	(☎)		
사업구분	구 분	☐ 신규 ☐ 변경		
	대상시설			
	사 업 명			
	사업위치			
신청내용				
「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심의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 심의 도서 1부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별지 제5호]

건축물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

구분	검토항목	반영	미반영	해당 없음
배치·규모·형태·입면 계획	지역의 장소성 및 인접 건축물과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주변과 조화로운 계획(건축선, 스카이라인, 형태, 입면 등)			
	구릉지의 경우 지나친 옹벽발생을 지양하고 주변 지형에 순응한 배치			
	건축물로 인해 기존 보행자들의 통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변 가로체계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필요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기반부를 설치하거나 전면부를 분절하는 등 휴먼스케일의 보행환경 조성			
	획일적이거나 과장된 디자인, 자극적인 색채 등은 지양			
	옥상설비 및 부속설비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외부공간 계획	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 이용,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설계(Barrier free) 적용			
	담장, 울타리 등은 주변 건축물 및 지역특성과 조화되는 색채, 재료, 디자인 등 사용			
	건축물의 진입부 및 저층부는 가능한 경우 이용자·보행자를 위해 공원(쌈지공원, 도심형 공원 등), 광장 등으로 계획			
	건축물 진입부에 이용자의 시각을 방해하는 과도한 시설물 설치 지양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량주차보행 동선을 계획하고, 가로와 인접한 부분이나 주 보행로와 인접한 부분에는 주차장 설치 지양			
	공개공지의 경우 인접한 건축물 공개공지의 특성과 입지를 고려하여 통합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			
	공개공간은 보행로와의 연계 등 다양한 계획기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			
옥외광고물 계획 (필요시)	건축물의 입면과의 통합적 계획 및 해당 지역의 특성에 대한 배려			
	해당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지침 등 준수			
야간경관계획 (필요시)	건축물의 용도 및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도·휘도·색채 등을 계획하되, 과도한 연출은 지양			

[사업자 의견*]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작성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990호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보완 공고

「건축법」 제4조 내지 제4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5 내지 제5조의8,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4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4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3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및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장

2008. 6. 1. 제정
2009. 8. 1. 개정
2011. 1.20. 개정
2013. 5. 1. 개정
2015. 7. 30. 전부개정
2016. 9. 1. 개정

제1장 총 칙

서울은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역사도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생태도시, 천만 시민이 서로 존중받는 민주주의의 도시,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세계도시로서, 앞으로의 서울을 개발에서 지속으로, 채움에서 비움으로, 단힘에서 열림으로 바꾸어 가고자 하는 서울건축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공유와 열림, 안전과 환경, 역사와 창의, 커뮤니티를 지향하도록 서울특별시 건축심의를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심의기준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자치구 건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심의기준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의 건축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심의기준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심의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의무기준”이란 공동주택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의 공공적 가치증대 및 디자인 향상을 도모하고,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형 건축을 위해 공동주택 건축심의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 가. 제22조의 주동 형식의 다양화계획 기준

- 나. 제23조의 발코니 및 벽면율계획 기준
- 다. 제5조 제1호의 공공보행로계획 기준
- 라. 제34조 제10항 제4호의 지하주차장 내 비상벨 설치계획 기준
- 마. 제10조제10항의 보행동선계획 기준
- 바. 제26조의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계획 기준
- 2. “공동주택 권장기준”이란 의무기준 이외의 항목으로 위원회에서 창의, 역사성, 경관, 안전, 공공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 3. “벽면율”이란 외벽 전체면적에서 창이나 개구부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외벽의 전체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단, 개구부 등이 없는 벽면이나 측벽은 제외한다)
- 4. “주동”이란 단지 내 각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 5.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이란 제1호의 의무기준에 적합하고, 제2호의 권장기준을 고려한 계획으로서 위원회 참석위원 5분의 4 이상이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고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설계공모 및 공공건축가 자문과정을 거친 경우, 우선하여 인정할 수 있다.
- 6. “지속가능형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공동주택과 「주택법」 제21조의6에 의한 ‘장수명 주택’을 말한다.
- 7.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적합 여부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07-456호(2007.11.1.)를 기준으로 주요기둥의 경간, 벽체의 가변성 및 변경 후의 공간계획 등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8. ‘일반건축물’이란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하며, 주거와 비주거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비주거 부분을 말한다.
- 9. ‘개방형발코니’란 설치된 발코니의 직상에 슬래브가 없는 형태의 발코니를 말한다.
- 10. ‘돌출형발코니’란 주동 외벽면에서 일부 발코니가 돌출된 형태로서 폭 1미터 이상으로 직상에 슬래브가 있는 것을 말한다. 돌출형발코니는 수직으로 연속하여 3세대 이하로 할 수 있다.
- 11. ‘돌출개방형발코니’란 돌출형발코니로서 직상에 슬래브가 없는 형태의 발코니를 말한다.
- 12. ‘전이층’이란 상부와 하부의 구조형식이 달라지는 구조에서 상부층의 축력과 수평하중을 하부층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이보(Beam 또는 Girder)가 설치되는 층을 말한다.
- 13. ‘무량판구조’란 수직재의 기둥에 연결되어 하중을 지탱하고 있는 수평구조 부재인 보(Beam)가 없이 기둥과 슬래브(Slab)로 구성된 구조를 말한다. 아파트에 적용되는 무량판구조는 세대외부인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측벽, 세대간의 벽은 리모델링을 어렵게 하는 구조가 아닐 경우 무량판구조로 볼 수 있다.
- 10. ‘혼합구조’란 벽식구조에서 일부 벽체가 기둥으로 전환되며, 보의 부분적 활용이 가능한 구조를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 ① 위원회는 건축계획 심의 시 당해 건축계획이 이 심의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계획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디자인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선행절차 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시장정비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배치 및 주동계획은 가급적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선행절차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의 반영을 위한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역 사 성

제5조(기존 도시구조 및 역사자원의 보존 등)

주변 지역 및 기존 도시구조의 특성과 원지형 및 역사자원과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계획한다. 다만, 지형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다.

1. 기존의 도시구조 및 역사자원(기존 도로, 골목길, 한옥 등 건축물, 보호수, 우물, 기념비 등)을 파악하여 배치계획에 반영하고, 인근 주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주변 가로체계와 연결되는 공공보행로를 계획한다.
2. 과도한 절·성토를 지양하여 원지형을 최대한 보존한다.

제6조(서울한양도성 주변)

- ① 서울한양도성 주변은 원지형을 보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②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는 내사산 능선 위의 도성이 시가지 어디서나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며, 형태 및 재질은 도성의 역사적 상징성 및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3장 공공성 및 공동성(배려)

제7조(보행가로를 고려한 공간계획 등)

- ① 공동주택 단지 또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부에는 담장 등의 설치를 지양하고 상가, 커뮤니티시설 및 열린 조경시설 등을 배치하여 생활가로를 조성함으로써 주변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② 보행자 위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체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획한다.
 1. 광역교통체계(지하철, 버스, 근린공원, 학교 등)와의 연계, 공개공지·공공보행로·보행광장을 통한 보행자 위주의 접근체계로 공공성을 강화한다.
 2. 일반건축물의 저층부는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형태의 변화, 공간의 개방, 건축물의 후퇴 등을 주어 보행자의 쾌적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3.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보행 중심의 가로변에 연도형 건물 계획을 유도하고, 연도형 건물의 저층부는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형태의 변화, 공간의 분절, 공간의 개방, 건축물의 후퇴 등을 주어 보행자의 쾌적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 단지 내부로의 연결 보행로를 계획하여 보행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 ③ 주간선도로와의 연계성, 외부도로와 사업지 간 동선상의 안전성과 원활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제8조(미술작품의 설치)

- ①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계획 단계에서 미술작품의 종류와 설치위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미술작품은 공개공지, 전면공지, 커뮤니티 광장, 주출입구 광장, 공공보행통로, 인근 광장, 도로변 등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위치에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미술작품 설치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미술작품 설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옥상공간의 활용)

옥상의 사용가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옥상 공간에는 사용승인 이후에 조경, 텃밭, 태양광발전, 휴게, 공연, 운동 등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구조, 방수 등의 계획을 하여야 하며, 옥상 공간 활용계획안을 제시한다.

제10조(외부공간 및 조경)

- ① 외부공간은 주변단지 등의 외부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이용자를 위해 경사 및 단차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 ② 가로변에 면한 외부공간은 개방성을 고려하고, 보행자를 배려한 접근로 계획을 한다.
- ③ 단지(대지) 내부 및 외곽부에는 지형보호를 위하여 옹벽 설치를 지양하고, 경사면 처리 등 지형 순응형으로 계획하되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④ 주변 대지 및 도로와는 고저차가 최소화되도록 지형 순응형으로 계획한다.
- ⑤ 외부공간의 바닥포장 재료, 패턴 등은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계획한다.
- ⑥ 공공보행로는 건축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고, 필로티의 경우 높게 하여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한다.
- ⑦ 지하철과의 연결 등 건축물 입체개발 시, 환기구는 도로 중앙분리대 또는 대지 내 조경 공간 등에 설치하고, 지하철 출입구는 건축물 내부로 유도하되 장애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지상으로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한다.
- ⑧ 건축물 옥상 및 벽면에 녹화 도입을 권장하며, 옹벽 등의 벽면에는 덩굴식물 등을 이용하여 피복상태가 유지되도록 식재한다. 다만, 제반 여건상 옥상 및 벽면에 녹화가 불합리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구조나 용도분류상 발생하는 전이층에는 조경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한다.
- ⑩ 단지(대지) 내·외부의 동선계획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위주로 계획한다.
 1. 보행동선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차량으로 인해 보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2. 이면도로 및 차량진입로 등은 보도와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면과 단차가 없고 단절되지 않도록 험프(hump)형으로 한다. 또한, 재질은 보도와 유사한 포장재를 사용하며 차도와의 연결부위는 운전자가 보행자와 상충이 발생하는 공간임을 인지하도록 한다.
 3. 내·외부 보행로 및 도로는 자동차의 속도저감을 위해 교통정온화 기법(험프식 횡단보도, 고원식 교차로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보행의 안전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4. 단지(대지) 내 보행로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식수대를 제외한 유효보도폭원 2.0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여 경사도 1/18 이하로 계획한다. 부득이한

경우 1/12 이하로 계획하되 휠체어 이용자가 설 수 있도록 30미터 마다 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한다.

5. 공동주택 단지 내부를 통과하는 차량동선 계획을 지양하고 단지입구에서 지하주차장 입구까지의 차량동선은 짧게 계획한다.

⑪ 공동주택 단지의 외부공간(건축물을 제외한 옥외공간으로서 보행로, 공원, 공개공지, 조경 및 녹지, 2층 이상에 설치되는 테라스, 옥상, 선칸(침상형 공지) 등의 공간을 말한다)은 주거공동체로서 여러 활동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각 장소 및 시설의 규모에 맞는 디자인과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⑫ 공동주택 단지 외곽부분이나 공개공지에는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 등 외부와 단절을 야기하지 않도록 경계형 화단(가로수 제외),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가로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고 자연감시가 가능한 형태로 시설물(그늘식재, 휴게시설, 주변 공공시설 등)을 배치한다.

⑬ 공동주택 단지 외곽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음림을 식재하거나 벽화, 친환경 재료의 사용, 담쟁이덩굴 식재 등 디자인된 방음벽을 설치한다.

제11조(통경축, 바람길 등의 확보)

주요 조망점(공원, 교량, 조망명소 등 조망대상이 양호하게 보이는 지점, 주요 간선도로 및 주 진입로 등을 말한다)에서 주요 조망방향(건축계획적으로 설계자가 산, 강, 주변 역사자원 등 주요 조망축을 설정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방향을 말한다)으로의 통경축(시각적으로 개방된 통로 또는 공간을 말한다)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획한다.

1. 주동의 배치는 전체 동이 하천 또는 주 도로변과 평행 또는 직각 방향으로 일률적인 배치가 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주요 조망점에서 주요 조망방향으로의 통경축 및 바람길(단지 온도저감 계획)을 확보한다.
3. 단지가 주요 조망대상(산, 강, 하천 등 자연환경, 문화재 등 인공 환경으로서 위원회가 조망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을 말한다)과 인접할 때, 시민들이 주요 조망대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단지 내 공공보행로를 계획하고 상가 등 편의시설의 배치를 고려한다.

제12조(주변 환경, 건축물과의 조화)

①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는 주변의 경관자원(산, 강, 하천, 공원, 문화재 등) 및 지형 등 지역 특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시경관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스카이라인(sky line)을 형성한다.

② 건축물의 저층부 및 고층부는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③ 도시경관을 고려한 계획을 위해 개발 전·후 배치도, 단면도(현황고, 계획고, 층수, 높이 등), 경관시뮬레이션(simulation)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단, 경관시뮬레이션은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에 한해 의무적으로 제출한다.

④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심의대상 건축물은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17호 : 2015.7.30.]의 토지이용, 경관, 일조장해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한다.

제13조(임대주택계획)

- ① 임대·분양주택 혼합배치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1. 임대주택은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엘리베이터 코어 등을 공유하여 분양주택과 차별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하며, 일조 및 소음 등이 불리한 곳에 배치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2. 평면 및 건물형태 등으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구분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임대주택의 설계 및 마감자재는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단지진입로,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입주민의 편의를 동등하게 고려하여 동선을 계획하며 계층간 결합이 가능한 위치에 배치한다.
 4.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등 공공공간을 공유하고 공동생활공간을 적극 조성하여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② 소형 임대주택(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에 한함)의 경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평면을 정면 2구획(2-Bay) 이상으로 계획한다.
- ③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공공부문 공동주택은 "지속 가능형 공동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④ 노약자·장애인이 입주할 수 있도록 단지 내 1~2층에는 출입문 폭, 턱, 화장실 등의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설계하여야 한다.
- ⑤ 임대주택을 계획할 경우에는 심의 시 별표7의 검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무장애 공간 및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무장애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②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11조를 적용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설비 등은 사용자의 성별, 연령, 장애 유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한다.

제4장 공개공지와 커뮤니티계획

제15조(건축문화의 공공성)

건축물과 공간환경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주변지역의 문화와 환경에 어울리게 조성함으로써 건축의 문화적 가치가 향상되도록 계획한다.

제16조(공개공지)

- ① 공개공지는 개방성, 접근성, 친근성, 조화성, 장소성을 고려하여 가로휴게형, 정원형, 공원형, 광장형, 필로티/선큰형 등으로 계획하되, 별표1의 공개공지 계획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유니버설디자인으로 계획한다.

② 공개공지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지 않거나 위원회에서 공개공지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43조의 공개공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확보(실질적으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도로와 주요보행통로에 면하여 설치하고, 최소한의 일조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광장으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는 건물통로를 겹치지 아니한 가로환경과 연계하여 계획하고, 가능한 한 한 곳에 집중설치(지하철 역사, 지하도 등 공공시설 및 주변 외부공간과의 연계 설치를 우선 고려)함으로써 휴게공간의 연속성을 유도한다.
 3. 공개공지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계획하고, 바닥포장은 인접보도의 포장형식(바닥패턴 및 재료 등)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건물진입을 위한 통로부분은 공개공지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
 4. 공개공지에는 외부와 단절을 야기하는 경계형화단(가로수 제외), 시설물(담장 등)의 설치를 지양하고, 가로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시설(그늘식재, 휴게시설, 주변 공공시설 등)을 배치한다.
 5. 공개공지 등 옥외공간의 설계변경은 공공성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
- ③ 가로변에 조성되는 전면공지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이 편하고 쾌적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1. 보행자로 하여금 시각적 개방감을 주고 질서가 있는 가로경관을 형성한다.
2. 인접한 전면공지, 공개공지 간의 단절을 없애고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 디자인한다.
3. 건축물형태 및 재질, 주변가로현황, 가로시설물, 바닥 재질 등 각 요소들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한다.

제17조(연도형 건축물)

① 도로에 접한 상가 등 연도형 건축물의 경우 가로경관을 고려한 지형 순응형으로 계획하되 공공적 가치 증대를 위해 보행자 우선의 가로계획을 고려한다.

1. 도시경관과 단지 내 건축물 입면과 조화가 되는 상가 입면계획
2. 상가 분절 등을 통한 보행광장, 화장실, 휴게시설 등 상가활성화 편의시설 계획
3. 상가 지하 및 단지 지상으로 직접접근이 가능한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의 동선 계획
4. 가로변 경관을 고려한 상가실외기 등 시설물에 대한 차폐계획

②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도로에 접한 상가 등 연도형 건축물과 연계하여 단지 내 보행축을 중심으로 단지 주민의 이용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 배치한다.

제18조(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① 단지 내 경로당, 보육시설, 도서관(독서실) 등 복리시설은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주변 지역 커뮤니티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옥상 및 지상 등을 이용한 공동텃밭과 노인주간보호센터,

카셰어링(Car-Sharing), 알뜰장터 공간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③ 복리시설(경로당, 보육시설)과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능한 한 연계하여 계획한다.

1. 복리시설은 지상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하에 계획 시 자연환기 및 채광이 가능토록 계획하며, 광장·공원으로의 접근성 및 이용 동선을 고려한다.

2. 어린이놀이터는 보육시설과 연계,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감시가 가능한 위치로 주거소음 등을 고려하여 위치, 규모, 시설 등을 적절하게 분산 배치한다.

④ 단지 내 도서관, 경로당 및 보육시설은 단지주변(주거생활권 반경 1킬로미터 내외)에 대한 수요조사 후 설치규모를 별표2에 따라 결정한다.

⑤ 건식·습식쓰레기 및 분리된 재활용 쓰레기 등 각 세대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의 적정규모와 배치 및 배출동선 등을 계획한다.

⑥ 부대·복리시설의 세부계획은 별표3의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설계지침'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제5장 창의성(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등)

제19조(창의적인 건축물 건축)

건축물 형태 및 외관은 자연경관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서울의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등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우수디자인 공동주택)

①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5호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와 별지서식3의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권장기준 검토서를 관련 자료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등에 대한 지원)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공동주택,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지속가능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의 신청 시기는 정비계획 입안 시 인센티브 항목을 명기하여 해당 위원회에 심의 상정토록 하고, 인센티브 부여 시 인센티브 항목을 결정도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용적률 완화. 이 경우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별표4에 따른다.

2. 「건축법」 제8조에 따른 용적률, 높이제한, 일조제한 완화

3. 그 밖에 활성화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

제22조(공동주택 주동형식의 다양화)

① 대지의 형상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동의 형태 및 층수, 평면 및 단면 등을

다양화 하여야 한다. 단, 주동형식의 다양화가 어렵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주동별 연속 5세대 이내로 계획하되, 위원회가 주동별 연속 5세대 이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주동형식의 다양화에 대한 적합 여부는 별표5를 참고하여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

①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는 휴식·전망, 피난·방재, 열손실 저감 등 발코니 설치의 본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형태 및 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확장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별 각 외부 벽면 길이 또는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의 전체면적(계단실 등 공용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30%는 발코니 설치를 지양[1)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부분임대주택을 채택한 경우, 2)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하는 테라스하우스, 3) 주거전용면적 6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발코니의 본기능을 충실히 디자인에 반영하였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6에 따라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삭제 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주요 입면에 돌출형 또는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또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단, 개방형의 경우에는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상3층 이상 20층 이하에서만 적용한다.

2. 발코니 설치 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3.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4.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5.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③ 각 세대 평면에서 주거전용면적 대비 발코니 설치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한 오픈 발코니인 경우와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완화할 수 있다.

1.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은 25% 이하

2.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미만은 30% 이하

④ 공동주택 각 면의 벽면율은 40% 이상 확보한다. 다만, 위원회가 입면 디자인이 차별화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⑤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난간의 유효높이를 1.5미터 이상으로 하고, 강풍 등 풍압에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4조(평면 및 입면계획)

① 일반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대지 내 비상용 및 이삿짐차량공간을 확보하고 차량 주 진입로 부분은 가능한 한 완화차선 및 보행자 통로를 확보한다.

2. 주 출입구 전면 및 로비(Lobby)면적은 충분히 확보하고, 기준충복도 및 코어(Core)는 자연 환기 및 채광, 순환동선 계획을 한다.

3. 화장실은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하고, 남녀의 변기수는 동일(수용인원 1천명 이상의 공연장·관람장·전시장의 경우 여성의 변기수는 남성의 1.5배 이상 권장)하게 설치하며, 장애인의 출입(보조기구 포함)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4. 건축물의 상층부는 가능한 한 과도하게 꺾이는 부분이 없도록 계획하고, 가로변에서 옥탑 부분이 미려하게 보이도록 조형적으로 계획한다.
 5. 지하층은 가능한 한 자연환기와 자연채광이 되도록 계획하고, 접근이 용이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선큰(Sunken) 설치를 권장한다. 다만, 선큰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천창, 광덕트 등의 자연채광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 ②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각 세대는 자연통풍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 엘리베이터 코어, 직통계단 등은 자연채광·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이삿짐 운반, 비상시 등을 고려하여 고층의 계단실형은 승강기를 2대 이상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주동의 저층부는 보행동선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필요시 저층부의 일부를 필로티로 계획하되, 필로티 부분은 벽으로 인해 차폐되지 않고 충분히 개방되는 구조로 하고 용도(주거동 주출입구, 보행 및 휴게, 지하층 채광·환기 등)에 맞는 형태 및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다만, 필로티의 개방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구조안전에 지장이 있는 정도로 기둥의 간격이나 보의 춤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4. 주동의 측벽은 형태, 색채, 명암 등 디자인요소를 적극 도입토록 하되, 주동 측벽 등의 4층 이상 부분에는 공동주택의 브랜드가 표기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건축주가 표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지 주·부출입구에 면한 1개의 동 측벽 상부에 한하여 당해 측벽 폭의 2분의 1 이내 및 면적 5제곱미터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5. 지하층의 일부를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구성이 가능하지 않도록 전용 수전설치 및 지상으로의 직접 진출입이 되지 않는 구조로 계획한다.
 6. 거실의 유효폭은 실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2.1미터 이상으로 계획한다.
- ③ 주동의 지붕은 디자인을 차별화한 형태로 계획하되, 주거용도와 무관한 장식구조물의 부가적 설치나 과도한 색채사용을 지양한다.
- ④ 옥상공간은 옥상녹화(텃밭), 교목식재, 태양광패널 설치 등 친환경계획과 경사지붕, 펜트하우스, 전망대 등 디자인 특화계획 및 조형적 요소를 도입하여 주변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계획한다.
1. 평지붕으로 계획할 경우에는 헬리포트 및 설비공간 이외에는 옥상 공원화를 적극 검토한다.
 2. 옥탑의 엘리베이터실은 No-Tower[별도의 기계실이 없는 MRL(Machine Roomless)식 설치]를 권장하며, 물탱크실은 급수방식을 개선(고가수조방식보다 부스터방식 권장)하여 설치토록 계획한다.
 3. 옥상공간에 설치하는 건축설비 등은 높은 곳에서의 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시각적인 노출을 지양하고 건축물 디자인(형태, 재료)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⑤ 건축물의 외장재료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재료 사용을 권장하며, 지나치게 눈에 띄거나 부조화 되는 재료(지나친 투명, 반사, 발광소재 등)의 사용을 지양한다.
- ⑥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색채 사용을

권장하며, 지나치게 눈에 띄거나 부조화 되는 색채(지나친 발광, 원색, 고채도 및 명도 등) 사용을 지양한다. 단 건축물의 디자인 차별화를 위한 강조색은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⑦ 바닥충격음이 저감되도록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97호(2015.12.30.)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06호(2015.6.4.)의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준수한다.

⑧ Y자 형태의 주동은 접합부가 횡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구조체 사이를 충분한 강성으로 연결하되, 사공간과 요철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제25조(특별건축구역)

① 「건축법」 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심의 또는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를 요청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서울시의 ‘사람과 장소중심의 창조적 정비계획 운영지침 및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창조적 정비계획 관련 ‘특별건축소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심의와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제6장 지속성(친환경)

제26조(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

①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건축물 설계는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친환경 및 에너지성능을 별지서식2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인센티브를 받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은 최우수등급으로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건축물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건축물 규모별 요구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②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는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해당연도 및 규모별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설치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절약 성능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

1.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규모·용도별 1차에너지소요량보다 에너지를 더 낮게 소비하는 건물로 설계한 경우 그 차이를 구간별로 구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 성능대체비율로 인정한다.
2. 1호의 1차에너지소비 감축량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연간 에너지소비량 산출 프로그램에 따라 산정한다.
3. 위 각 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성능대체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성능대체비율 산출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부 창호계획은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자연채광이 가능한 구조로 하고 블라인드(Blind), 덧창, 어닝(Awning), 루버(louver)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

용한다.

④ 냉·난방시스템은 전력수요 감축을 위하여 전기 냉·난방기(EHP) 설치를 지양하고, 가스 냉·난방기(GHP) 설치를 권장한다.

⑤ 건축물 내부의 자연채광이 어려운 곳은 천창, 아트리움, 광덕트 등 자연채광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제27조(내구연한 증대)

①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향상 등을 통해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증대시켜 자원의 절약 및 건설폐기물 최소화 등 친환경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및 ‘장수명 주택’으로 계획하는 것을 권장한다.

②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2007-456호; 2007.11.1.)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을 따르되 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28조(물순환 빗물관리 및 저류·침투시설)

① 개발에 따른 물순환 영향의 최소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물순환 빗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존 하수관거에 의한 관리방식과 단지 내 소규모·다기능 빗물관리시설과의 조합을 고려한다.

1. 자연지반의 투수율 유지 및 물순환 회복을 위한 계획으로 수립한다.
2. 불투수 포장을 최소화 하고, 투수포장 설치 시 자연지반과 연계하여 빗물의 흐름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3. 지역단위 유역관리 및 자치구 물순환 계획을 참조하여, 지역계획과 연동한 단지 내 자연물순환 계획을 수립한다.
4. 대지(단지) 내 공간의 시설특성 및 적정 규모를 고려한 빗물관리를 계획하되, 옥상 및 지하주차장에 임시 저류시설을 고려한다.
5. 빗물정원 등 자연구조를 활용하는 계획을 적용하여 소규모 분산형 시설계획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빗물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② 물순환 빗물관리 및 저류·침투시설의 세부계획은 서울시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제7장 안전성과 피난·방재계획

제29조(건축물 내진성능 등 안전 확보)

건축물은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내진성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30조(건축물 피난성능 등)

①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거주민의 생명, 신체 등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피난성능, 소방성능 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② 지하 주차장 등에 소화기 등 소화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된 기둥, 벽 등의 색채를 달리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다중이용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면적은 4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 지상층에 배수펌프 전용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제31조(범죄예방설계)

단지(대지) 및 건축물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2015.4.1.)에 따라 범죄예방설계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일반건축물 지하층의 거실용도 허용기준)

원칙적으로 지하 2층까지만 거실설치를 허용한다. 다만 채광·환기 및 피난·안전을 위한 선 큰(직통계단 포함)을 '지하3층에 거실설치 시 선 큰 설계기준'(별표8)에 적합하게 계획하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하3층의 거실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제33조(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계획한다.

1. 1층 필로티의 천정은 비가연성재료로 마감하고, 필로티층 상부(2층 바닥)는 내단열로하거나 외단열로 계획할 경우에는 비가연성재료를 사용한다.
2. 삭제
3.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직접 진입하는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하고, 1층 내부에는 열·연기감지기를 설치한다.
4. 6층 이상(필로티 층 포함)으로 계획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5. 입주민의 커뮤니티를 고려하여 20㎡ 이상 또는 세대당 0.5㎡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를 검토한다.
6.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주차장

제34조(주차장 계획)

- ① 주차계획은 운전자 및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 특히 장애인·여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주차구획 및 보행로를 계획한다.
- ② 주차 진입로는 운전자의 시야확보(코너부분 수목식재, 시설물 설치 등 지양)를 고려하고, 차량 대기공간(평탄부 6미터 이상)을 충분히 확보하며, 주차 진입동선은 가급적 짧게 한다.
- ③ 차량 진출입로 계획 시 차량의 전조등이 공동주택 세대 전용부분을 직접 비추지 않도록 유의하여 계획한다.
- ④ 주차장 내부 차로운영은 다음 각 호를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다.
 1. 주차장 내부 차량동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층간 이동램프는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2. 주차장 이동통로는 가급적 간선 주차통로와 지선 주차통로로 분리 계획한다.
3. 간선주차통로는 순환형으로 계획하며, 간선주차통로에는 가급적 주차면을 설치하지 않는다.
4. 주차통로는 차량이동 및 보행이 원활하도록 충분한 통로 폭을 확보하고, 노면에 차량통행 및 보행자 통로임을 인지하도록 한다.
5. 양방교행 시 회전부는 충분하게 회전반경을 확보하고, 램프 주변부 등은 주차면을 삭제하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한다.
6. 대규모 지하주차장은 운전자가 쉽게 식별 및 이동할 수 있도록 구획별로 차별화된 주차구역(Zoning) 계획을 수립한다.
- ⑤ 주차장 내부의 보행동선은 건축물로의 출입이 편리하고, 차량동선과 직각으로 만나지 않도록 분리시설을 설치하며, 특히 휠체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 ⑥ 주차장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층별로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동일층에 계획할 수 있으며, 동일층 계획 시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분리하는 주차구역 계획을 한다.
- ⑦ 이삿짐차량이나 소방차량 등의 하역 및 조업에 필요한 공간과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⑧ 자전거주차시설은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계획한다.
 1. 자전거주차장은 접근성이 좋도록 계획하고, 보행인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엘리베이터나 계단의 인근 공간, 주출입통로 주변 등 주민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설치)
 2. 자전거거치대, 공기주입기 등의 주차편의시설 등은 유지관리가 가능한 공간에 배치한다.
- ⑨ 지하주차장은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계획한다.
 1. 지하주차장에는 자연채광, 환기 및 시야 확보가 용이하도록 썬큰, 천창, 외부 지상으로의 피난계단 등을 설치한다.
 2.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은 기둥과 벽면의 가시권을 늘리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한다.
 3. 지하주차장의 감시를 위한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로와 함께 주차구획 부분도 감시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4. 지하주차장에는 경비실(관리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되 차로 또는 통로에 25미터 이내 마다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며, 비상벨이 설치된 기둥 등은 색채를 달리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지하 최상층, 출입구 근접지역에 장애인 및 여성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한다.
- ⑩ 화물조업주차면의 설치를 다음과 같이 고려한다.
 1.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2면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면적 2,000㎡ 이상인 일반건축물은 부설주차장의 5%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정한 대수가 10대를 넘는 경우에는 10대까지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한다.
 3. 화물조업주차면의 설치 위치는 상·하역작업 전·후에 발생하는 화물의 이동편의를 위해 가급적 엘리베이터·계단, 무인택배함 주변, 사업장으로의 최단경로 상에 배치한다.
 4. 화물조업주차의 동선체계는 화물자동차가 원활히 도착·출발할 수 있도록 수립한다.
 5. 조업주차면의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조업주차구획임을 식별 가능하도록 구획 내 ‘화물조업’ 노면표시 및 ‘화물조업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수량은 규모, 위치,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이 기준 공고 이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8. 6. 1)

제1조(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심의기준 시행 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2008.12.31까지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심의기준 중 의무기준을 권장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존속기한) 이 심의기준은 201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9. 8. 1)

제1조(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심의기준은 201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1. 1. 20)

제1조(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2011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심의기준 시행 전에 심의를 완료하거나, 2011. 7. 21까지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제3조제1호 나목 규정에 대해서는 의무기준을 권장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존속기한) 이 심의기준은 2013년 1월 1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3. 5. 1)

제1조(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심의기준 시행 전에 시 또는 자치구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과 비교하여 유리한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15. 8. 06)

제1조(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2015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심의기준 시행 전에 시 또는 자치구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과 비교하여 유리한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16. 9. 1)

제1조(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심의기준 시행 전에 시 또는 자치구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과 비교하여 유리한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

공개공지 계획기준 (제16조제1항 관련)

<세부항목 체크리스트>

구 분	공개공지 계획기준
접근성	○ 주변의 건축물, 가로, 공원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가? ○ 단차, 담장, 방음벽 등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는 없는가? ○ 주변가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 등 목적별 동선은 분리되었는가? ○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가?
안전성 편의성	○ 방법, 범죄예방 등 치안 및 보안에 안전한가? ○ 야간이용을 위한 적절한 조명계획은 반영되었는가? ○ 경사로의 미끄럼 방지시설 등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였는가? ○ 장애인·노약자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과 공간의 디자인을 고려하였는가? ○ 에어컨 실외기, 환기구, 기계설비 등은 공개공지와 분리되어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하였는가?
활동성	○ 공개공지의 유형별 적절한 활동이 발생할 수 있는가? ○ 기능에 맞게 규모와 크기는 적절한가? ○ 공간구성 및 시설배치는 이용자 편의를 중점 고려하였는가? ○ 서비스 시설과 연계성은 고려하였는가?
정체성 지역성	○ 지역의 역사·문화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되었는가? ○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재료 및 색채로 설계되었는가? ○ 벤치, 가로등, 조형물 등 설치시설물의 디자인은 건물과 어울리도록 설계되었는가?
지속 가능성	○ 주변의 향후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였는가? ○ 장소의 특징과 도시환경을 고려하였는가? ○ 내구성 있고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친환경적(투수성)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였는가?

〔별표2〕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유(Sharing) 커뮤니티계획 기준

(제18조제4항 관련)

검토기준

- 조사대상 :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 조사범위 : 주거생활권 기준(반경 약 1km) 내 행정동 합산
 - 행정동의 일부가 걸치는 때에는 걸쳐지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 산정방법 : 조사대상 각 시설에 대한 세대 및 인구별 소요면적 산출
- 산출기준 :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인구통계 중 세대수 및 인구수
- 적용방법 : 조사대상 시설의 소요면적을 우선 확충하고, 나머지는 주민운동시설,
 - 휘트니스센터, 입주민회의실 등의 시설 설치
 - 조사결과 부족시설은 법정면적 이상 설치 권장
 - 과다 및 충족시설은 법정면적 만큼 설치

☐ 작은 도서관

산정방법	○ 예상인원 = (신축 세대수 + 기존 행정동 전체 세대수) x 1.5 x 4% ○ 산출면적 = 예상인원 x 2.5㎡ - 기 설치된 시설면적 ※ 주거생활권 내에 기 설치된 작은 도서관의 면적과 비교 검토
------	---

☐ 어린이집(보육시설)

산정방법	○ 예상인원 = (구별 영유아인구수 ÷ 구별 세대수) x (신축 세대수 + 기존 행정동 전체 세대수) x 80%(예상취학률) ○ 산출면적 = 예상인원 x 6.6㎡ ※ 주거생활권 내에 기 설치된 어린이집의 면적과 비교 검토
------	---

☐ 경로당

산정방법	○ 산출면적 = 50㎡ + (0.1㎡ x 주거생활권내 세대수) ※ 주거생활권 내에 기 설치된 경로당의 면적과 비교 검토
------	---

[별표3]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설계지침(제18조 제6항 관련)

구 분		설 계 지 침
부대시설	자전거보관소	1. 각 동별 주출입구 근처 등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비에 맞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되, 주변경관 또는 조경과 어울리게 한다. 2. 필로티 내 설치 시 주출입구 잔·출입구 이용 및 피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3.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실과 연계하여 공기주입 도구를 비치토록 한다.
	쓰레기 분리 수거시설	1. 쓰레기 수거 동선 및 단지현황에 따라 적절한 수로 계획하고 비에 맞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되, 주변경관 또는 조경과 어울리게 한다. 2. 냉·온수전 설치 및 바닥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계획한다. 3. 각 구청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의 진입이 원활하고,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4.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건물주동과 3미터이상 이격하여 계획한다.
	관리사무소	1.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2. 공간은 관리사무소를 포함한 숙직실, 탕비실, 주민상담실, 창고, 집중구내 통신실, 종합방재실, 그리고 방범시스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한다. 단, M.D.F(통신주단자함)실은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종합 방재실은 피난층에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비실	1. 단지출입구 경비실, 주동경비실 또는 통합경비실로 계획한다. 2. 통합경비실은 지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소를 설치한다. 3. 위치는 아파트 단지 주출입구와 주동출입구의 출입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한다. 4. 경비실은 택배물보관실 등 다용도시설 공간과 연계하여 계획할 수 있다. 5. 주변 조경은 관목위주로 식재하여 경비실내에서 외부를 조망할 때 시야를 차단하지 않도록 한다. 6. 창문은 감시가 필요한 각 방향으로 설치하고, 시야확보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계획한다. 7. 경비실이 없는 고립 또는 사각지대에는 CCTV를 설치한다.

구 분		설 계 지 침
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1. 각 세대에서 관찰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하거나 CCTV를 설치토록 계획한다. 2. 친환경, 천연 자연자재를 사용한다. 3.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어린이 놀이공간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공간이 되도록 조성하며, 녹지 및 조경과 어우러지도록 계획한다.
	실외 주민운동시설	1.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주위에 상록수를 심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시설과 구분되도록 한다.
	경로당	1. 자연채광과 자연환기가 잘 되도록 계획한다. 2. 친환경자재 사용 및 에너지절약형 건축물로 계획한다. 3. 노인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옥외활동이 가능하도록 옥외휴게공간 및 산책공간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4. 복리시설(경로당, 교육시설)과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는 가능한 연계하여 계획한다. 5. 접근성, 안전성이 양호한 지상에 계획하며, 내·외부 공간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6. 할아버지, 할머니방 이외에도 다목적실, 의료 및 간호실, 작업실, 오락실 및 노인회 사무실 등의 공간이 포함될 수 있다. 7. 다목적 공간 내에는 간이 싱크대를 설치하여 회의뿐만 아니라 식사준비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8.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화장실의 변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1:1 또는 1:1.5의 비율로 검토한다. 9. 전체 구역을 무장애 공간으로 계획한다.
	보육시설	1. 자연채광과 자연환기가 잘 되도록 계획한다. 2. 친환경자재 사용 및 에너지절약형 건축물로 계획한다. 3. 입주민 또는 고령자시설 어르신들의 보호가 가능한 위치에 계획한다. 4. 접근성, 안전성이 양호한 지상에 계획하며, 내·외부 공간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5. 주출입구는 타용도의 출입구, 복도와 분리하여 계획한다. 6. 성인에 비해 신장이 매우 작고 동작범위가 크지 않으므로 연령대별 신체 및 동작치수를 고려하여 공간크기 및 가구를 계획한다. 7. 화장실, 샤워실을 포함하여 보육시설 전체를 무장애 공간으로 계획한다. 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기준을 준수한다.
	도서실 또는 독서실	1. 자연채광과 자연환기가 잘 되도록 계획한다. 2. 친환경자재 사용 및 에너지절약형 건축물로 계획한다. 3. 전체 구역을 무장애 공간으로 계획한다. 특히 열람석 하부공간이나 책장의 도달높이 등도 휠체어장애인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독서실이 지식정보 습득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문고, 인터넷실, 주민휴게실, 상담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5. 타용도시설 간의 방음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별표4〕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제21조 관련)

항 목		인센티브	
우수디자인		15 %	최대 20% 이내
장수명주택	• 우수등급 이상	10 %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등급	6% 이상 12% 이하	
	•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녹색건축 인증 우수등급	4% 이상 8% 이하	
	•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등급	4% 이상 8% 이하	
	•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 인증 우수등급	2% 이상 4% 이하	
제로에너지빌딩	•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15 % 이하	
지능형 건축물	• 1등급	15 %	
	• 2등급	12 %	
	• 3등급	9 %	
	• 4등급	6 %	
역사문화보전	• 지정 및 등록 문화재 보전 옛길/물길 등 복원(재현) 등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5 %	

※ 허용용적률은 최대 20%까지로 한다.

[별표5]

공동주택 디자인 다양화 판단기준

(제22조 내지 제24조 관련)

구 분		세부항목	적용방법(단위 : 유형)
			최소기준
주동형식의 다양화 계획 (제19조 관련)	1. 주동의 형태를 다양화 하여 주동의 형식을 다양화 한다. (1가지 유형이 전체 세대수 또는 동수의 10% 이상일 것)	가. 3백 세대 미만이고 5개 동 미만인 경우	-
		나. 3백 세대 또는 5개 동 이상인 경우	2 이상
		다. 1천 세대 또는 10개 동 이상인 경우	3 이상
		라. 1천5백 세대 또는 15개 동 이상인 경우	4 이상
	2. 주동의 높이가 일률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층수 변화를 다양화 한다. (1가지 유형이 전체 세대수 또는 동수의 10% 이상일 것)	가. 3백 세대 미만이고 5개 동 미만인 경우	-
		나. 3백 세대 또는 5개 동 이상인 경우	2 이상
		다. 1천5백 세대 또는 15개 동 이상인 경우	3 이상
	3. 하나의 주동 및 단지 내에서도 다양한 평면 및 단면 형태로 계획 한다. (1가지 유형이 전체 세대수 또는 동수의 10% 이상일 것)	가. 단위주거 평면크기 변화	
		나. 단위주거 평면형태 변화	
		다. 단위주거 단면형태 변화 (복층형, 디자인된 혼합형이 있는 경우)	
입면의 다양화계획 (제20조 및 제21조 관련)	4. 입면 디자인을 다양화 한다.	가. 벽면율	40% 이상
		나. 디자인 다양화 정도	
	5. 발코니 형태를 다양화 한다.	가. 세대별 외부 벽면 길이의 30% 발코니 설치 지양	30% 이상
		나. 발코니 형태 다양화 정도(돌출형, 개방형 등)	

〔별표6〕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삭제비율 차등적용 세부기준

(제23조제2항 관련)

- 제23조제2항 단서 조항에 대하여 입면이 차별화 되었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삭제 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되, 건축위원회에서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한다.

완화범위	완화세부기준	완화항목
5% 완화 (기준 전체의 25% 삭제)	완화항목 1, 2, 3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1. 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 (20층 이하)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피난방재) 2. 발코니 설치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디자인) 3.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에너지) 4.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에너지, 탄소절감) - '100년 아파트' 5.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10% 완화 (기준 전체의 20% 삭제)	완화항목 1, 2, 3 중 2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15% 완화 (기준 전체의 15% 삭제)	완화항목 1, 2, 3 중 3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완화항목 4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20% 완화 (기준 전체의 10% 삭제)	완화항목 4와 1, 2, 3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25% 완화 (기준 전체의 5% 삭제)	완화항목 4와 1, 2, 3의 기준 중 2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30% 전체 완화 (기준 전체의 0% 삭제)	완화항목 4와 1, 2, 3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완화항목 5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별표7]

임대주택 건축계획 검토서(제13조제5항 관련)

구 분	검 토 항 목	반영	미 반영	해당 없음
배치·규모· 형태·평면·입 면계획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소셜믹스(Social mix)는 고려하였는가?			
	건물형태나 평면형태에서 분양주택과 차별화되지 않았는가?			
	임대주택 사용자재(마감자재)는 분양주택과 동일한 재질·재료로 계획되었는가?			
	임대주택의 세대별 일조량은 고려되었는가?			
	임대주택이 소음 등으로 불리한 주동 배치가 된 것은 아닌가?			
	소형 임대주택(전용면적 40㎡ 초과에 한함)의 평면을 정면 2구획(2-Bay) 이상으로 계획하였는가?			
	노약자·장애인이 입주할 수 있도록 단지 내 1~2층에는 출입문 폭, 턱, 화장실 등의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였는가?			
외부공간 계획	임대주택 배치에 대한 대중교통의 접근성은 고려하였는가?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과의 보행동선계획 상 임대주택이 소외된 것은 아닌가?			
	임대주택의 승강기 설치계획은 분양주택과 차별화되지 않았는가?			
	단지진입로,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및 단지 내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게 계획되었는가?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등 공공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가?			

[사업자 의견*]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은 부연 설명을 작성

[별표8]

지하3층에 거실설치 시 선큰(Sunken) 설계기준(제32조 관련)**1. 선큰 및 직통계단의 규격**

가. 지하3층 거실까지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선큰을 설치하고 공개공지 등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직통계단 설치

나. 선큰의 규격

1) 매장 등(백화점, 마켓, 목욕장, 음식점, 게임제공업소 등 인구밀도가 유사한 용도)

: 지하3층 거실면적의 7퍼센트 이상

2) 집회장 등(집회장, 공연장, 관람장, 학원, 무도장 등 인구밀도가 유사한 용도)

: 지하3층 거실면적의 21퍼센트 이상

3) 사무실, 기타 : 지하3층 거실면적의 3퍼센트 이상

다. 선큰은 거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9미터 비율 이상 거실부분에 접하여야 하고 0.6미터 비율 이상의 출입문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직통계단(참)의 너비는 18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설비 기준

가. 선큰 외부에 면하는 부분에는 수막[드렌처(Drencher)]설비 및 공조시스템과 별도로 운영하는 제연시스템 설치

나. 주소형 화재감지기 및 조기반응(Quick Responsible Type) 스프링클러헤드(Sprinkler head)설치

다. 피난 시 시야확보를 위한 유리방화문 설치

라. 피난통로 바닥 또는 걸레받이에 피난 유도선(점멸조명 등) 설치

마. 예비전원은 30초 이내 가동 및 최대부하에 대응할 것

[별지서식1]

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기준 검토서(제3조 관련)

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기준 검토서						
☐ 의무기준						
구 분		산 출 근 거		산 출 값	적합여부	
		유형 분류	동수 또는 세대수			
주동 형식의 다양화 계획 기준 (제19조)	주동 형식의 다양화		A	(A/Z*100)%		
			B	(B/Z*100)%		
			C	(C/Z*100)%		
			D	(D/Z*100)%		
			E	(E/Z*100)%		
			F	(F/Z*100)%		
			G	(G/Z*100)%		
		합계	Z	100%		
	주동 층수의 다양화		A	(A/Z*100)%		
			B	(B/Z*100)%		
			C	(C/Z*100)%		
			D	(D/Z*100)%		
		합계	Z	100%		
	주동 평면 및 단면형태의 다양화	단위주거 평면크기 변화		반영 / 미반영		
		단위주거 평면형태 변화		반영 / 미반영		
단위주거 단면형태 변화		반영 / 미반영				
발코니 및 벽면율계획 기준 (제20조)	벽면을 확보	동 수	각 면별 산출값			
		※각동별 기록				
	발코니 비율 (세대별 외벽길이 등의 30% 설치지양)	동 수	각 면별 산출값			
		※ 각동별 기록				
입면 및 발코니 형태의 다양화						
공공보행로 계획 기준(제5조)	기존의 도시구조 및 역사자원(기존 도로, 골목길, 한옥 등 건축물, 보호수, 우물, 기념비 등)을 파악하여 배치계획에 반영하고, 인근 주민이 사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주변 가로체계와 연결되는 공공보행로 계획					
지하주차장 비상벨설치 (제31조)	지하주차장 내 25미터마다 비상벨 설치					
보행동선계획 기준(제8조)	이면도로 및 차량진입로 등은 보도와의 연속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보도면과 단차가 없고 단절되지 않도록 협프형으로 하며, 재질은 보도와 유사한 포장재를 사용하며 차도와의 연결부위는 운전자가 보행자와 상충이 발생하는 공간임을 인지하도록 계획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기준 (제23조)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 심의기준에 검토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 (유도기준 포함)						

[별지서식 2]

친환경·에너지절약 분야 건축심의기준 검토서(제26조 관련)

1. 신청 구분

구 분		적 용 여 부 (■ 표시)			
적용규모		☐ ㉠ 서울시 심의대상	☐ ㉡ 자치구 A형	☐ ㉢ 자치구 B형	☐ ㉣ 그 외 제출대상
성능	환경·건강	☐ 녹색건축인증		☐ 환경기술	
	에너지	☐ 에너지소비총량제	☐ 에너지효율등급인증		☐ 에너지절감기술
	신재생에너지	☐ 의무공급비율	☐ 성능대체형 공급비율		

2. 신·재생에너지 적용수준

항 목			적용 수준		근 거
			적용기준	설계내용	
신재생	원별 설치 규모	태양광(BIPV) (kW)			
		태양광(PV) (kW)			
		태양열 (㎡)			
		지열 (kW)			
		연료전지 (kW)			
		집광채광 (set)			
	신재생에너지공급률 (%)				

3. 성능 적용 수준

항 목			적용 수준		근 거
			적용기준	설계내용	
환경	녹색건축인증				
	환경 기술	유효자원 재활용 친환경인증제품 (평점)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 (평점)			
		생태면적률 (%)	10% 이상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평점)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평점)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평점)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평점)			
에너지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e-BESS (kWh/m ² ·y)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급)				
	절감 기술	외피 평균 단열성능*	외벽 (배점)		
			지붕 (배점)		
			바닥 (배점)		
		기밀성능*	창 및 문 (배점)		
		창면적비* (%)			
		결로방지			
		개폐가능한 외기 면한 창 (배점)			
		냉·난방 열원설비*	난방 (배점)		
			냉방 (배점)		
		폐열회수 환기장치 (배점)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배점)			
		대기전력차단장치* (배점)			
	에너지관리		에너지사용량 표출장치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스마트 계량기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대기전력 저감용 고효율 변압기		

※ 에너지소비총량제 혹은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인증 시 절감 기술 중 * 사항은 '적용기준' 을 법적기준으로 작성

[별지서식 3]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권장기준 검토서(제20조 관련)

항 목	세 부 기 준	반영	미 반영	해당없 음
역사성 (제2장)	◦과도한 절·성토 지양(제5조 제2호)			
	－ 원지형과 비교하여 절·성토높이가 과도하지 않은가?			
	◦한양도성과의 조화(제6조)			
	－ 한양도성 주변에 위치할 경우 한양도성과의 조화를 고려하였는가?			
공공성 및 공동성 (제3장)	◦보행가로를 고려한 공간계획(제7조)			
	－ 담장 설치 지양 및 생활가로를 조성하였는가?			
	－ 보행자 위주 보행체계로 계획하였는가?			
	－ 외부도로와의 연계성 및 안전성이 고려되었는가?			
	◦외부공간 및 조경(제10조)			
	－ 지형순응형으로 계획(옹벽 지양)하였는가?			
	－ 지하철역과 인접한 경우 지하철역 출입 연계계획을 고려하였는가?			
	－ 옥상 및 벽면녹화는 고려하였는가?			
	－ 전이층을 설치할 경우 전이층의 공간 활용(조경, 휴게)을 하였는가?			
	－ 보행동선은 연속성이 있도록 계획되었는가?			
	－ 단지 주변 가로는 교통정온화 기법을 고려하였는가?			
	－ 단지 내 도로는 교통약자를 배려하였는가?			
	－ 단지 내 차량동선이 최소화하도록 계획되었는가?			
	－ 주거공동체 활동이 원활하도록 커뮤니티시설이 계획되었는가?			
	◦통경축 및 바람길 등의 확보(제11조)			
	－ 주요 조망점에서 주요 조망방향으로의 통경축 및 바람길을 확보하였는가?			
	－ 주요 조망대상과 인접한 경우 접근 보행로를 고려하였는가?			
	◦주변환경, 건축물과의 조화(제12조)			
	－ 주변의 경관자원 및 지역특성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계획되었는가?			
	－ 저층부 및 고층부가 주변과 조화가 되도록 계획하였는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반영	미 반영	해당없 음
	◦임대주택 계획(제13조)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화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임대주택 건축계획 체크리스트' 를 검토 반영하였는가?			
	◦무장애 공간 및 유니버설 디자인(제14조)			
	- 관계 법령에 따라 무장애 공간이 되도록 계획되었는가?			
공개공지와 커뮤니티 계획 (제4장)	◦공개공지(제16조)			
	- 주요도로와 주보행통로에 면하여 설치하였는가?			
	- 건물통로 부분이 제외되고 가능한 한 한 곳으로 집중 설치되었는가?			
	- 보도와의 단차가 없고 포장형식의 연속성이 고려되었는가?			
	- 외부와의 단절 없이 그늘식재, 휴게시설이 계획되었는가?			
	-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계획되었는가?			
	◦연도형 건축물(제17조)			
	- 도로에 접한 상가 등은 가로경관을 고려한 지형순응형 및 보행자 우선의 가로계획을 하였는가?			
	- 단지 내 건축물 입면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였는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제18조)			
창의성 (제5장)	- 복리시설(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은 주변지역 커뮤니티시설과의 연계성 및 이용 동선을 고려하였는가?			
	- 복리시설은 자연환기 및 채광이 원활하게 계획되었는가?			
	- 어린이놀이터는 안전, 보육시설과의 연계, 주거소음 등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되었는가?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제19조)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이 자연경관 및 주변지역과 조화를 고려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계획되었는가?			
	◦평면 및 입면계획(제24조)			
	- 각 세대와 승강기 코어 및 직통계단은 자연채광·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었는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반영	미 반영	해당없 음
	- 저층부의 필로티 계획은 충분히 개방되는 구조로 계획되었는가? - 주동의 축벽은 형태·색채·명암 등 디자인요소를 적극 도입하였는가? - 주동의 지붕은 디자인을 차별화한 형태로 계획하되, 과도한 장식구조물 등을 지양하였는가? - 옥상공간은 녹화, 태양광패널 등 친환경계획과 경사지붕, 펜트하우스 등 디자인 특화계획이 고려되었는가?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외장재료 및 색채 계획이 되었는가?			
지속성 (제6장)	◦내구연한 증대(제27조) -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또는 장수명주택 기준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는가?			
	◦물순환 빗물관리 및 저류·침투시설(제28조) - 자연지반의 투수율 유지 및 물순환 회복을 위한 계획이 되었는가?			
안전성과 피난·방재계획 (제7장)	◦건축물 피난성능 등(제30조) -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안전하도록 피난성능·소방성능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범죄예방설계(제31조) -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으로 계획되었는가?			
	◦주차장(제34조) - 장애인·여성 등을 우선 고려하여 계획하였는가? - 차량 진입동선이 단축되도록 계획되었는가? - 주차장 내부 차로는 순환동선 체계로 계획되었는가? - 차량 통로 폭과 회전반경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 대규모 주차장인 경우 조닝계획이 되었는가? - 주차장 내부의 보행자 동선이 확보되었는가? - 주거용과 비주거용 주차구역이 분리되었는가? - 이삿짐차량이나 하역·조업·소방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는가? - 지하주차장은 자연채광·환기 및 시야확보가 용이하게 계획되었는가?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992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귀사에 대해 처분근거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문(의견진술 기회부여)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문알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2016. 10. 6(목) ~ 2016. 10. 19(수), 2주간
2. 공고대상

업체명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위반내용	예정처분
(주)백향개발 (정구성)	건축공사업 01-3688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11, 702호(서초대우디오빌)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 실효)	영업정지 6개월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4. 공고내용

가. 청문일자 : 2016. 10. 26(수), 14:00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0층]

다. 진 술 자 : 대표자 또는 대리인(임직원 등)

라. 준비서류 : ①참석자신분증, ②법인인감증명서, ③법인인감도장, ④대리인선임통지서(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⑤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⑥기타 이견 처리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마.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 ☎ (02)2133-82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993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귀사에 대해 처분근거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문(의견진술 기회부여)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문알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2016. 10. 6(목) ~ 2016. 10. 20(목)
2. 공고대상

업체명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위반내용	예정처분
(주)형진조경 (강이호)	조경공사업 01-0265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92, 240호(대우프라자상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 실효)	영업정지 6개월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4. 공고내용

가. 청문일자 : 2016. 10. 28(금). 14:00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0층]

다. 진 술 자 : 대표자 또는 대리인(임직원 등)

라. 준비서류 : ①참석자신분증, ②법인인감증명서, ③법인인감도장, ④대리인선임통지서(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⑤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⑥기타 이견 처리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마.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 ☎ (02)2133-82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997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계획

○ 문화재 지정 개요

지정예정 종별	지정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도선사 석조관음보살좌상 (道詵寺 石造觀音菩薩坐像)	1구	높이 61.5 너비 35	1670년 (현종 11년)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173길 504 (이정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보제존자삼종가 (普濟尊者三種歌)	1책	23.5×16.3	1435년 (세종 17년)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 (최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대혜보각선사서 (大慧普覺禪師書)	1책	26.8×17.2	1573년 (선조 6년)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441 재(선학원) 천개사

○ 공고 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고함

<지정하고자 하는 사유>

■ 도선사 석조관음보살좌상

도선사 석조관음보살좌상은 양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있는 선정인으로 중앙에 화불이 새겨진 보관을 착용하고 있으며, 법의는 양어깨를 다 덮은 통견의 대의에 승각기와 편삼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조선 후기 불상 착의법을 보여준다. 복장공에서 확인된 조성발원문과 중수발원문을 통해 조각승 승호가 조성한 작품임을 알 수 있으며, 원 봉안처의 추정도 가능하다. 즉 석조관음보살좌상을 조각한 조선 후기 대표 작가 승호의 공백기 시절 활약상을 알 수 있으며, 불상의 이운과정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불상이라 할 수 있다.

■ 보제존자삼종가

『보제존자삼종가』는 보물 제697호에 지정된 『나옹화상어록』 및 『나옹화상가송』의 개판본으로서 <가송>부분만 전라도 순천의 송광사에서 책으로 간행한 것이다. 표제 서명이 ‘나옹법가(懶翁法歌)’로 묵서되어 있으나, 권수의 제목은 ‘보제존자삼종가(普濟尊者三種歌)’로 기입되어 있다. 본 내용은 특별한 표시가 없이 바로 「백납가(百納歌)」, 「고루가(枯體歌)」, 「완주가(翫珠歌)」의 3수가 실려 있으며, 이어서 「임종계(臨終偈)」와 「십종가(十種歌)」, 그리고 별도의 구분 없이 「송(頌)」이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는 원간본과 그 내용이나 체제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한 후대 병풍암본과도 상이한 내용을 보이고 있으므로 학술적 연

구에 가교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지정 관리가 요망된다.

■ 대혜보각선사서

「대혜보각선사서」는 송나라 임제종 승려인 대혜종고(大慧宗杲)가 간화선법을 물어온 42인에게 사악한 견해를 깨뜨리고 정법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보낸 62통의 편지글을 후에 그의 문인 혜연(慧然)이 기록하고 황문창(黃文昌)이 거듭 엮은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사찰의 강원 교육에서 학습 교재로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에 전국에 널리 유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본 전적은 임진왜란 이전인 선조 년(1573)에 간행된 희귀본으로 불교학 및 서지학 분야의 고판본 연구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표지가 종이표지로 개장된 것만 제외하면 거의 온전하게 남아있고, 현재 공개되어 전하는 동일한 판본으로는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1부만 확인되어 희소성까지 갖추고 있어 지정 관리가 요망된다.

2. 의견제출 방법 안내

-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 ① 전화 : (02) 2133-2632 ② 팩스 : (02) 768-8873
 - ③ 우편 :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강북구청 문화체육과 (도선사 석조관음보살좌상)
 - ① 전화 : (02) 961-6208
 - ② 우편 : (02071)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 서초구청 문화체육관광과 (보제존자삼중가, 대혜보각선사서)
 - ① 전화 : (02) 2155-6204
 - ② 우편 : (0675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서초동)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팩스나 우편 제출
-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별첨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및 입증자료
 - 문화재 지정에 대한 찬반의견 및 그 사유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02-213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도선사 석조관음보살좌상

도선사 석조관음보살좌상은 양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있는 선정인으로 중앙에 화불이 새겨진 보관을 착용하고 있으며, 법의는 양어깨를 다 덮은 통견의 대의에 승각기와 편삼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조선 후기 불상 착의법을 보여준다. 머리는 약간 앞으로 숙이고 있으며 보발(寶髮)이 귀를 가로질러 어깨에서 세 가닥으로 나뉘며, 전반적으로 개금(金)이 되어 있다.

불상 하부에 폭 20.5×14cm, 깊이 24.5cm 크기의 복장공이 있다. 복장공에서 조성발원문 1매와 중수발원문 1매, 후령통 1개, 분철된 『법화경』 2매가 복장물로 발견되었으나 현재 중수발원문은 도난당한 상태이다.

조성발원문을 통해 석조관음보살좌상은 1670년 조성되었으며 1733년 진관사에서 중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성발원문을 통해 승호(勝浩)가 수화승을 맡아 조성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승호는 불석(沸石, zeolite)을 이용해 17세기 후반부터 활발하게 불상을 조성한 조각승으로 1640년부터 1688년까지 불상 조성에 참여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승호가 수화승이 되어 조성한 첫 번째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선사 석조관음보살좌상은 발원문을 통해 원봉안처를 추정할 수 있는데 발원문에 등장하는 인물과 발원문에 적힌 다라니를 분석하면 이 불상의 원봉안처가 대구와 칠곡 접경지역의 사찰로 추정된다.

도선사 석조관음보살좌상을 조각한 승호는 1655년부터 1678년간 기록의 공백이 보이는데 도선사 석조관음보살좌상은 공백기에 승호의 활약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불상이다. 또한 복장물을 통해 구체적인 조성시기와 중수시기를 파악할 수 있으며 원 봉안처를 추정할 수 있다. 이밖에 도선사 석조관음보살좌상은 불상의 이운 과정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불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비록 보관 중앙부 일부가 파손되어 있으며 중수발원문을 도난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성발원문]

康熙九年庚戌七月十五日 新造相 觀音菩薩奉安 獨當施主崔日英兩主 寺衆助緣秩 太信 勝倫 天真 祖良 靈俊 法澄 法輪 勝嚴 大裕 住持 禪雲 持事 德林 首僧 沖輝 三剛 道信 緣化秩 持殿 弘彦 上畫工 勝湖 兼化主 副畫工 尙倫 兼化主 慈運 應眞 卓梅 供養主 慧行 時道主 閔公時重 時城主 權公大載 際

사진자료



■ 보제존자삼종가

이 불교전적은 조선 세종17(1435)년에 전라도 순천의 송광사에서 개관한 판본이다. 표제 서명이 '나옹법가(懶翁法歌)'로 묵서되어 있으나, 권수의 제목은 '보제존자삼종가(普濟尊者三種歌)'로 기입되어 있어 기준에 따라 이를 서명으로 채택한다.

이 자료의 원간본으로 이미 보물로 지정된 고려본(보물697호)은 본래 2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려 왕사 혜근(惠勤)의 어록을 그의 제자 각운(覺雲)이 편집한 <어록(語錄)>과 시자 각뢰(覺雷)가 집록하고 환암(幻菴)이 교정한 <가송(歌頌)>을 1379년에 함께 간행하였다. 그러나 이 중 송광사본은 법장이 <가송>부분만을 다시 편찬하여 1435년에 송광사에서 단 책으로 간행한 것이다.

먼저 이 책의 권수에는 '普濟尊者三種歌'라는 제목이 보이고 그 다음 행에 불광산(佛光山) 대원암(大源菴)의 승려인 법장(法藏, 1350-1428)이 편찬[足]했다는 일종의 저자표시가 보이고 있다. 원간본에는 각뢰가 집록하고 환암이 교정하였던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또한 후대본인 병풍암본(1479년간)에는 권수제 아래에 '道菴足'으로 기재되어 있어 편자가 서로 다르다. 법장은 바로 나옹의 법맥을 이은 수선사 11세주로 법호를 고봉(高峰)이라하며, 말년을 송광사에 머물면서 중창불사를 주도했던 인물로 이 때 송광사본을 재판 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 내용은 특별한 표시가 없이 바로 <백납가(百納歌)>, <고루가(枯體歌)>, <완주가(翫珠歌)>의 3수가 실려 있으며, 이어서 임종개(臨終偈)와 십종가(十種歌), 그리고 별도의 구분 없이 송(頌)이 수록되어 있으나, 원간본과는 편찬체제나 내용상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삼종가(三種歌)의 내용을 보면, <백납가>는 출가와 수행의 공덕을 찬미한 노래로서, 100번이나 꿰맨 누더기를 걸치고 수행하는 행자의 무소유(無所有)를 270여 자로 노래한 것이다. 그리고 <고루가>는 인생의 무상함을 알아 참된 도를 깨달을 것을 권고하는 노래로 수없이 많은 생(生)을 자각 없이 살다가 마른 뼈로 변하여 진흙 속에 버려져 있는 해골을 통하여, 무상의 이치를 밝히고 불도를 수행하도록 권하는 내용을 담은 350여 자로 된 노래이다.

끝으로 <완주가>는 신령하고 영롱한 구슬이 인간 속에 본래 갖추어져 있음을 읊은 것으로, 구슬을 불성(佛性)에 비유해서 노래하였다. 사람이 스스로 그 빛을 가리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만 본래 구족한 불성을 되찾을 때 무명(無明)을 벗어나게 됨을 밝히고 있는 400여 자로 된 노래이다.

본 자료의 서지적 특징을 살펴보면, 이 책은 근래 선장(線裝)으로 개장한 것으로 장철법(裝綴法)이 5침(針)으로 되어 있다. 책의 전체 크기는 23.5×16.3cm이며, 변란은 사주단변(四周單邊)으로 반곽의 크기는 17.3×13.5cm이다. 반엽을 기준으로 전체 8행으로 되어 있는데, 한 행의 경문은 15자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의 판심부에는 어미(魚尾)는 없으나, 그 사이로 판심제와 장수 표시가 나타나 있다. 자체는 해정한 해서체로 쓰여 있는데, 원간본과는 매우 다르다.

권말에는 본문의 내용이 끝나고 한 행을 비우고 '宣德10年乙卯(1435)2月日 松廣寺開板'이라는 간기가 기재되어 있어 이 책이 1435년에 전라도 순천의 송광사에서 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 면에 연화와 시주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판독이 곤란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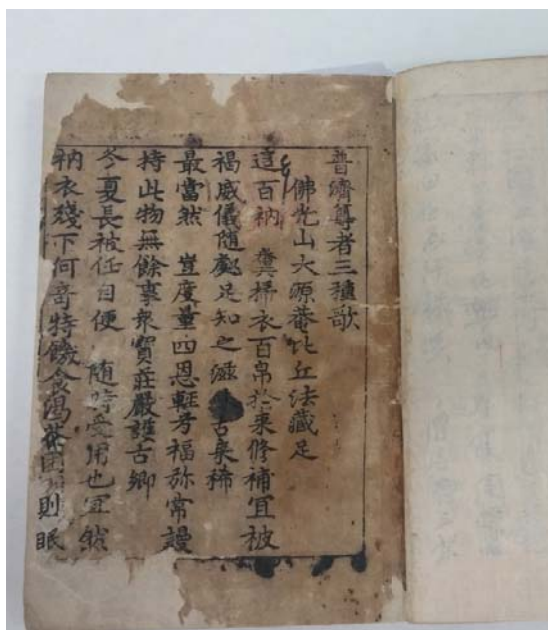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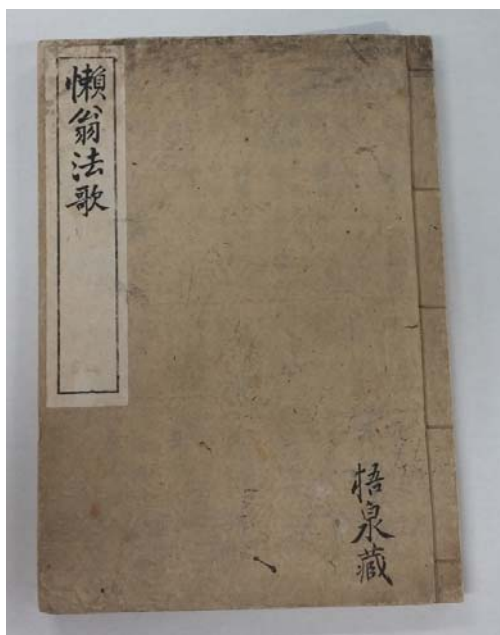
이 책은 표지가 근래 새로 개장되어 있는 것으로 본래 복장에서 수습한 전적으로 보이며, 수리과정에서 1장(장38)이 잘못 제책되어 상단부가 절단된 부분이 보이고 있다. 전후에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배접한 상태이나 본문의 내용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이와 동일본이 유일하게 성암문고에만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매우 귀중한 전

적문화재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자료는 고려본과 그 내용이나 체제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한 후대 병풍암본과도 상이한 내용을 보이고 있으므로 학술적 연구에 가교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지정 관리가 요망된다.

사진자료



■ 대혜보각선사서

『대혜보각선사서』는 송나라 임제종 승려인 대혜(大慧) 종고(宗杲, 1089~1163)의 편지 글들을 혜연(慧然)이 모으고, 황문창(黃文昌)이 거듭 엮은 것이다. 종고선사는 호가 대혜, 시호는 보각(普覺)으로 간화선을 집대성한 인물이다. 이 책의 내용은 선법에 대해 당대의 명사 42인에게 보낸 편지 62통이다. 『대혜어록(大慧語錄)』 30권 중에서 25~30권에 해당되며, 줄여서 『대혜서』, 『대혜서장』, 『서장』 등으로도 일컫는다.

처음 『대혜보각선사서』는 송나라 건도(乾道) 2년(1166) 8월에 칙명으로 경산(徑山)의 묘희암(妙喜菴)에서 간행되었다. 이후 이 판본은 지눌(知訥, 1158~1210)이 활동하던 1200년경에 국내에 전래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8세기까지 줄곧 여러 사찰에서 간행하였다. 현재 간기가 확인되는 것으로는 약 30종이 있다. 천개사 소장의 이 판본은 10행18자본으로 모두 109장이다. 이 계통본은 임진왜란 이전에 판각되어 17세기 중기까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현사와 말사에서 간행한 불서 중에서 임진왜란 이전의 간본만도 보현사에서는 『치문경훈』(1549), 『발심수행장』(1566), 『벽송당야로행록』(1569), 『선가귀감언해』(1569), 『선종영가집』(1573), 『간화결의론지눌』(1578), 말사에서는 『조동오위』(내원암, 1416), 『몽산법

어』(심원사, 1525), 『몽산화상법어약록』(빙발암, 1535),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심원사, 1553), 『반야바라밀다심경』(백운사, 1568), 『대혜보각선사서』(보운암, 1573.6), 『고봉화상선요』(보운암, 1573.7) 등을 간행하는 등 본사와 말사가 협력하여 많은 불서를 간행하였다.

권말에는 황문창의 후기와 1166년의 원간기가 그대로 남아 있다. 이어 고려본에 있었던 홍무 20년(우왕 13) 10월에 한산부원군 이색(李穡, 1328~1396)이 지은 발문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이색은 발문에서 “보조국사 지눌이 일찍이 『법보단경』을 스승으로 삼고, 『서장』을 벗으로 삼았다.”면서 이 책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 장에는 이 판본의 간행에 도움을 준 시주질과 연화질(緣化秩)이 있다. 당시 서사(書寫)는 의천(義天), 판각(刊字)은 학조(學祖), 법명(法明) 등 4인, 연관은 도현(道軒), 화사(化士)는 영준(靈俊)이었다.

이 판본은 새긴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찍은 후인본으로 추정되며, 앞의 몇 장은 일부 가필이 있다. 그런데 제77-94장은 세로길이가 짧은 책지의 윗부분을 이어 붙여 다른 장과 길이를 맞추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전장(全張)에는 구결이 있어서 학습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뒤는 비취색 종이표지로 개장되었고, 제1-3장은 손상으로 배접되어 있다. 권수제면 오른쪽 아래에는 소장자의 것으로 보이는 장서인이 있는데 확인하기가 어렵다. 마지막 2-3장은 누습의 흔적이 보인다.

『대혜보각선사서』는 조선시대 사집과의 강원교재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행되었고, 현재 간기가 확인되는 판본만도 약 30종이 확인된다. 지정대상인 천개사 소장본은 임진왜란 이전인 선조 6년(1573)에 묘향산 보현사의 산내말사인 보운암에서 간행한 판본으로 표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온전하게 전한다. 현재 공개되어 전하는 동일한 판본으로는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1부(청구기호: 육당 貴70)만 확인될 뿐이다. 이렇게 고간본으로 온전한데다 희소성까지 갖추고 있으므로 시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자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998호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지정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지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지정 계획

○ 문화재 지정 개요

지정예정 종별	지정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봉황무늬 자수방석 (鳳凰文 刺繡方席)	1점	82×93	조선후기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89-4 한국자수박물관 (박영숙)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봉황무늬 자수방석 (鳳凰文 刺繡方席)	1점	87×110	조선후기	

지정예정 종별	지정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봉황무늬 자수방석 (鳳凰文 刺繡方席)	1점	70.5×63	1842년 이후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89-4 한국자수박물관 (박영숙)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아미타 자수불번 (阿彌陀 刺繡佛幡)	1점	41×160	조선 후기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현우경 자수표지 (賢愚經 刺繡表紙)	1점	37×28	조선 후기	

○ 공고 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서울시 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고함

<지정하고자 하는 사유>

■ 봉황무늬 자수방석

중앙에는 모란병풍과 민화풍 화조화를 결합시켜 괴석 위에 모란꽃 3송이를 좌우에 배치하고 안쪽에 연꽃을 배치하고, 그 위쪽에는 매화와 패랭이와 나비가 날고 있다. 그 위를 1쌍의 봉황이 서로 마주보는 포치여서 전체적으로 “연생귀자(連生貴子)”라는 길상적 주제가 강조되고 있다. 가장자리에는 모란과 석류, 국화와 연꽃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현재 직물이 많이 훼손되어 수리가 시급하고, 이 때 원형과 수리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방석 위의 봉황무늬는 궁궐 내 상의원 소속 수방 나인이 제작한 최고 수준의 궁궐 자수유물로서 공예사적으로나 자수기술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봉황무늬 자수방석

중앙에는 괴석과 모란, 연꽃, 매화, 영지 및 봉황과 원앙을 빈틈없이 포치하고 전통 자릿수와 자련수로 수놓고 있다. 가장자리의 상하에는 모란꽃과 1쌍의 새를, 좌우에는 모란과 매화를 수놓고 그 사이에 1쌍의 새가 마주함. 방석의 뒷면에 못으로 박아서 액자에 고정하여 직물의 손상이 많이 진행되고, 유리액자 안에 유물을 넣어두어 섬유가 숨을 쉬지 못하고, 직물의 온습도 조절이 안되어 건조해지고 습도가 배출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말 궁중의 수방 나인이 제작한 최고 수준의 자수유물로 공예사적인 의미를 지니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봉황무늬 자수방석

중앙쪽 홍색 공단 위에는 십장생과 연화봉황무늬를, 가장자리 녹색 공단에는 모란당초와 연화당초를 배치한 전형적인 형식에 명문을 수놓은 작품이다. ‘상궁청신녀 임인생 리씨정희행 생전무병소원 사후왕생 극락발원’ 명문이 수놓여 있어, 제작자와 제작시기 및 제작목적의 추정 가능하다. 본 유물은 명문에 의해 제작자와 제작시기를 알 수 있고, 문양의 소재가 복온공주의 길례용 궁중 양식의 방석과 유사하여 궁중의 수방나인이 제작한 것으로 여겨지는 등 공예사적

으로 의미를 지녀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아미타 자수불번

‘아미타 자수불번’은 번신(幡身)과 번두(幡頭)에만 자수가 놓여 있는 가운데, 번신은 붉은 비단 바탕 위에 “나무도사아미타불(南無導師阿彌陀佛)”이라는 글자를 평수로 수놓고 있다. 글자 주위에는 당초문을 액자형으로 수놓아 마감하고 있다. 자수의 상태는 낡았지만, 조선후기에 유행한 길상적인 꽃모양이 자릿수와 자련수로 수놓은 자수의 숨씨가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어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

■ 현우경 자수표지

‘현우경 자수표지’는 자수로 수놓은 직물로 경전의 표지를 쓴 유물이다. 책표지에 묘사된 주문양은 모란, 매화, 복숭아, 연꽃, 석류 등으로서 부귀영화, 자손창성, 극락장생 등 길상적인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 유물의 상태는 자수를 수놓은 바탕천이 낡은 데다가 뒷면의 훼손이 심하고 자수가 탈락되고 있어 시급한 보존처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유행한 길상적인 꽃문양이 자련수나 자리수 등으로 수놓여 있어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으므로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

2. 의견제출 방법 안내

-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 ① 전화 : (02) 2133-2632 ② 팩스 : (02) 768-8873
 - ③ 우편 :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강남구청 문화체육과
 - ① 전화 : (02) 3423-5935
 - ② 우편 : (02043)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삼성동)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팩스나 우편 제출
-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별첨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및 입증자료
 - 문화재 지정에 대한 찬반의견 및 그 사유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02-213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봉황무늬 자수방식

전체 형태는 82x93cm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직사각형이다. 그러나 현재의 유물은 보자기의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본래는 붉은색 무늬가 있는 화문단으로 만든 보료방식의 형태였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인가 가장자리에 쪽빛 용문라를 덧대고 뒷면 전체를 용문라로 덧대어 수보자기이자 겹보자기 형태로 변형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존하는 유물이 본래 보료방식이었다고 분석하는 이유는 가장 안쪽에 중앙사각형이 있으며, 그 네 모서리를 45도씩 모접기를 하였으며, 방식의 형태에 해당되는 부분을 따라 황색 실로 면을 구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래 방식이었던 것을 잘라내고 그 가장자리를 얇은 쪽빛 용문라로 감싸고, 뒷부분 전체를 폭이 넓은 93cm로 마감하여 2겹의 보자기로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본 유물은 원래 방식이던 것을 어느 때인가 방식이 헤져서 윗부분을 잘라내고 가장자리나 헤진 곳마다 여러 종류의 서로 다른 천을 덧대어 수리하고 있으며, 뒷쪽은 쪽빛 용문라를 덧대어 겹보자기 형태로 만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유물의 가치는 보자기로 바뀐 것보다 조선시대 본래의 형태인 자수방식 부분에 있다고 여겨진다.

본 유물은 붉은색 비단으로 만든 방식 중앙과 가장자리의 자수가 수준이 높다. 자수의 소재는 중앙과 가장자리가 약간 다르다. 중앙의 경우 모란병풍과 민화풍 화조화를 결합시켜 괴석 위에 모란꽃 3송이를 좌우에 배치하고 안쪽에 연꽃을 배치하고, 그 위쪽에는 매화와 패랭이와 나비가 날고 있다. 그 위를 1쌍의 봉황이 서로 마주보는 포치여서 전체적으로 “연생귀자(連生貴子)”라는 길상적 주제가 강조되고 있다. 가장자리에는 모란과 석류, 국화와 연꽃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소재는 모란, 연화, 석류, 국화, 매화 패랭이 등 꽃이 강조되면서 백색의 봉황 1쌍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각의 경물은 자릿수와 자련수 기법을 사용하여 정교하고 치밀하게 수놓고 있다. 앞쪽 뿐 아니라 뒤쪽까지도 거의 앞과 동일하여 궁궐 상의원 내 수방 나인들의 뛰어난 궁수의 전형적인 솜씨를 엿볼 수 있다. 이와 비교되는 솜씨를 보이는 자수 작품은 세종대 소장 복원공주의 자수작품이 있다. 그만큼 이 작품은 궁수의 우수성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수이다.

본 유물은 방식을 겹보자기로 만들면서 수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방식 가장자리의 헤진 부분에 여러 종류의 천을 덧대고 있는데, 궁궐에서 민간처럼 이렇게 천을 대었을리 만무하다. 둘째 수리를 하면서 덧댄 천의 경우 조선시대보다 시대가 내려가는 천을 사용한 것이 엿보여 유물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셋째 방식의 윗부분만 남기고 아래쪽을 제거한 후 가장자리나 헤진 곳마다 여러 종류의 서로 다른 천을 덧대어 수리하면서 들성들성 대충 꿰매고 있어, 궁궐 침방의 솜씨로 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현재 직물이 많이 훼손되어 수리가 시급하고, 이때 원형과 수리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유물의 겹감과 안감 사이의 천 조각에 “孝宗癸巳十月”이라는 명문이 써 있다. 이 때문에 1653년 10월(효종4년, 계사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지만, 이 또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이 천이 본래 보료방식의 것이 아니라는 점, 나중에 방식을 보자기로 만들 때 덧댄 천에 파란실로 꿰매져 있는 점, 일반적으로 제작일을 표기할 때 조선시대의 관례라면 “孝宗癸巳十月 日”이라고 표기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효종대의 제작이라는 것은 방식을 보자기로 바꾼 언젠가의 시점이라고 판단하여 후일에 추가된 것으로 판단하여 논외로 하고자 한다.

본 유물은 본래 보료방식에서 겹보자기로 후일 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석 위의 봉황무늬는 전통적인 자련수와 자릿수로 치밀하고 정교한 자수 솜씨를 보여주며, 궁궐 내 상의원 소속 수방 나인이 제작한 최고 수준의 궁궐 자수유물로서 공예사적으로나 자수기술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사진자료



■ 봉황무늬 자수방석

전체적으로 훼손이 심하고, 부분적으로 직물이 탈락하고 구멍이 있고 자수의 박락도 많이 되어 있는 편이나 궁수의 솜씨가 엿보인다.

유물은 방석의 형태로 중앙의 홍색 운보문단과 가장자리의 녹색 연화문단을 배치시켜 적녹 보색대비가 강조되어 있다. 중앙은 괴석과 모란, 연꽃, 매화, 영지 및 봉황과 원앙을 빈틈없이 포치하고 전통 자릿수와 자련수로 수놓고 있다. 가장자리의 상하에는 모란꽃과 1쌍의 새를, 좌우에는 모란과 매화를 수놓고 그 사이에 1쌍의 새가 마주하고 있다. 특히 네 귀퉁이에는 마름모꼴 무늬의 금지를 망으로 엮어서 뜨는 납사수 기법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탈락된 부분이 많다. 중국 스타일의 한말에 유행한 문양적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위아래에 자수를 놓은 솜씨가 차이를 보여, 2명 이상의 자수 작업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유물은 본래 방석이었으나 전시의 편리성과 유물의 훼손 방지를 위해서 유리액자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다. 방석의 뒷면에 못으로 박아서 액자에 고정함으로 직물의 손상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유리액자 안에 유물을 넣어두어 섬유가 숨을 쉬지 못하고 직물의 온도도 조절이 안되어 건조해지고 습도가 배출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여겨짐.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존처리가 시급하다.

본 유물은 보료방식으로서 비록 유리액자에 넣어져 있으나 방석 위의 봉황무늬가 치밀하고 정교하여 한말 궁중의 수방 나인이 제작한 최고 수준의 자수유물로 공예사적인 의미를 지녀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사진자료



■ 봉황무늬 자수방석

가운데 홍색 공단 위에는 십장생과 연화봉황무늬를, 가장자리 녹색 공단에는 모란당초와 연화당초를 배치한 전형적인 형식에 “상궁청신녀” 등의 명문을 수놓은 작품이다.

본 유물의 명문은 “상궁청신녀 임인생 리씨정회행 생전무병소원 사후왕생극락발원”이라고 수놓여 있어, 제작자와 제작시기 및 제작목적의 추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우선 제작자는 상궁이며 ‘청신녀’라 부르고 범명은 ‘정회행’이어서 불교 신자임을 알 수 있다. 다음 ‘임인생’이라는 명문으로 미루어 보아 그녀가 태어난 해는 1782년, 1842년, 1902년이며, 본 유물이 19세기 초 순조와 순원왕후의 둘째딸인 복원공주(福溫公主, 1818 ~ 1832)가 길례 때 사용한 방석과 유사하나 좀더 도식화된 점으로 미루어볼 때 1842년생으로 추정된다. 한편 제작목적의 경우 “생전무병소원”과 “사후왕생극락발원”이라고 수놓고 있어 불법에 귀의하여 부처에게 보시한 작품으로 여길 수 있다.

본 유물의 자수 소재는 가운데 부분과 가장자리가 각기 다르다. 홍색 공단을 바탕으로 삼은 가운데 부분의 하단에는 오색 물결, 수파, 영지, 바위 등의 십장생문양과 중앙에 3송이의 연꽃이 피어오르고, 그 좌우로 매화꽃이 활짝 핀 위에 1쌍의 봉황이 마주 서있는 모습이 포치되어 있다.

녹색 공단을 바탕으로 삼은 가장자리 부분은 상하에는 3송이 연꽃과 2개의 연밥이 당초와 어우러진 연당초 문양이고, 좌우에는 모란꽃 3송이를 장식적인 잎사귀로 둘러싸 보문(寶紋)처럼 묘사한 문양이다. 자수는 자릿수와 자련수를 사용하여 소박하게 수놓았고, 징검수로 선적인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

본 유물의 자수실이나 자수기법 등을 보면 수를 놓은 솜씨는 대체로 고졸한 편이어서 궁중 자수로 보기 어렵다. 실의 꼬임도 약하고 가장자리의 징금수 또한 정교하지 않아 혼련된 수방나인 정도의 솜씨로 보기 어렵다.

본 유물은 명문에 의해 임인생(1842년경) 상궁이 무병장수와 영생극락을 기원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아 제작자와 제작시기를 알 수 있고, 자수의 솜씨나 바느질이 소박한 편이나 방식의 형식이나 문양의 소재가 복온공주의 길례용 궁중 양식의 방식과 유사하게 궁중의 수방나인이 제작한 것으로 여겨지는 등 공예사적으로 의미를 지녀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사진자료



■ 아미타 자수불번

아미타 자수불번은 불번에 아미타불을 수놓은 유물이다. 불번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불구(佛具)로서 염직물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 많이 현존한다. 그중 번은 불전(佛前)에 내려뜨리거나 법회가 진행될 때 당단에 매달아 뜰 가운데 세워 수많은 사람들을 불교에 귀의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번의 형태는 인간의 신체와 흡사하여 삼각형의 뾰족한 번두(幡頭), 몸체에 해당되는 번신(幡身), 좌우로 늘어뜨리는 번수(幡手), 다리에 해당되는 번미(幡尾)로 구성되어 있다. 본 유물은 마찬가지로 번두와 번신, 번수 및 간략화된 번미로 되어 있다. 번수는 직금직물로 되어 있으

나 박락이 심한 편이고, 번두 위 조륜(弔輪)부터 끈목으로 매듭을 지어 번수 위로는 유소형 매듭이 좌우로 늘어뜨려져 있다.

본 유물의 번신과 번두에만 자수가 놓여 있다. 번신은 붉은 비단 바탕 위에 “나무도사아미타불(南無導師阿彌陀佛)”이라는 글자를 평수로 수놓고 있다. 글자의 주위로 당초문을 액자형으로 수놓아 마감하고 있다.

상부의 삼각형 번두는 검은 공단 바탕 위에 복연(覆蓮)의 형태를 수놓고 있다. 바탕직물은 훼손이 심하나 뒤쪽에 종이로 배접하고 있어 형태는 유지하고 있다. 번두의 가장 꼭대기에는 붉은색의 보주형 꼭지를, 그 아래 연잎은 녹색으로 뒤집힌 부분은 자릿수로 연녹색으로 처리하고 있다. 앞맥은 그보다 밝은색으로 간결한 자수로 수놓고 있다.

본 유물은 자릿수와 자련수로 수놓은 자수의 솜씨가 좋으며 비교적 연대가 올라가는 유물로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번두의 바탕이 되는 흑색 공단의 훼손이 가장 심하게 훼손되었고, 번수의 직금직물도 탈락이 심한 편이다. 매듭의 장식끈은 전체적으로 탈색이 진행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색상이 고르지 못한 경향이다.

유물은 전체적으로 상태는 좋지 않다. 바탕직물의 훼손이 심하고 자수의 탈락이 많은 편이다. 뒷면은 다듬이질한 홍색 명주로 되어 있는데, 탈색이나 변색 및 훼손이 되어 있고, 보수를 여러 번 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

현존하는 유물의 상태는 자수를 수놓은 바탕천이 낡은 데다가 뒷면의 훼손이 심하고 자수가 탈락되고 있어 시급한 보존처리가 요구된다.

조사유물은 제작연대나 제작자는 밝혀져 있지 않고 자수의 상태가 낡았지만, 조선후기에 유행한 연화나 모란 및 석류 등 길상적인 꽃문양이 자련수나 자리수 등으로 수놓여 있어 자수기술로 의미가 있어,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

■ 현우경 자수표지

『현우경』은 자수로 수놓은 직물로 경전의 표지를 쓴 유물이다. 명문이 없어 제작 시기나 제작자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불경의 표지를 수놓은 직물로 쓴 유물로는 내소사에서 전해오는 ‘자수표지 법화경’이 있어 비교된다. 이 유물은 조선 전기 1415년(태종 15) 유근(柳瑾)의 부인이씨가 남편의 상을 당하여 명복을 빌기 위해 불경을 만들었으며 그 표지에 수를 놓아 내소사에 시주하였다는 내용이 써 있어, 작가와 연대 및 제작동기가 분명하게 밝혀진 작품이다.

본 유물에는 물 위에 떠서 노니는 물오리, 풀과 구름, 나무와 학 등의 문양이 당초 무늬와 함께 표현되어 있다. 바탕천은 녹색의 명주이고, 연꽃이나 모란, 석류와 매화 및 복숭아 등의 문양이 자련수로 수 놓여 있고, 줄기와 잎은 자리수와 가름수 및 이음수가 사용되었다.

책표지에 묘사된 주문양은 모란, 매화, 복숭아, 연꽃, 석류 등으로서 부귀영화, 자손창성, 극

사진자료



락장생 등을 길상적인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길상적 문양은 조선 후기에 유행하는 것이어서 시대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문양을 통해 본 유물의 제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경전 표지의 자수 유물은 전체적으로 훼손이 심한 편이고, 자수의 탈락도 심한 편이다. 특히 뒷면의 훼손도 심하고, 밀납칠을 한 흔적도 있다.

현존하는 <현유경> 유물의 상태는 자수를 수놓은 바탕천이 낡은 데다가 뒷면의 훼손이 심하고 자수가 탈락되고 있어 시급한 보존처리가 요구된다.

조사유물은 제작연대나 제작자는 밝혀져 있지 않고 자수의 상태가 낡았지만, 조선후기에 유행한 연화나 모란 및 석류 등 길상적인 꽃문양이 자련수나 자리수 등으로 수놓여 있어 자수기술로 의미가 있어,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

사진자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999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과태료 사전통지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3. 공시송달내용(총66건)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	90러5233	(주) 여의도한국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7-3, 지상2,3층(여의도동)	2016-06-20 16:30:31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160,000원)
2	서울85구5592	(주)신성크린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3 (당산동6가)	2016-07-20 17:14:45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1차로	"	"
3	93나4547	(주)주태건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447번지 9호	2016-07-19 06:08:56	강변북로 구리방향 4차로	"	"
4	80오3815	(주)카넥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226, 417호 (서초동, 서초오피스텔)	2016-07-14 14:03:42	서부간선도로 성산방향 2차로	"	"
5	80나1520	(주)태성기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 로139길4-0 (문래동2가)	2016-07-15 15:27:26	서부간선도로 성산방향 2차로	"	"
6	90두5596	LIU ZHITAO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21길 41, (정릉동)	2016-06-19 12:37:52	강변북로 일산방향 3차로	"	"
7	서울73더1065	강경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중로17길 20-10 (신길동)	2016-07-24 10:10:18	강변북로 구리방향 3차로	"	"
8	88서3332	강왕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은10길 23, 101호 (신림동)	2016-07-24 08:19:56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1차로	"	"
9	서울85다1356	강재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25길 34, 101호 (화곡동, 두암리버빌)	2016-07-08 07:00:28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4차로	"	"
10	80고5317	금덕현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로 29, 408동 802호 (천왕동, 천왕이펜하우스 4단지)	2016-07-20 17:23:28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1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1	80구4610	김경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61길 8-9, 301호 (마천동)	2016-06-21 11:30:27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1차로	"	"
12	서울85거9068	김귀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57, E동 4706호 (도곡동, 타워펠리스아파트)	2016-07-11 16:16:39	강변북로 일산방향 4차로	"	"
13	70더9223	김동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19가길 25 (구로동)	2016-07-26 17:18:38	서부간선도로 성산방향 1차로	"	"
14	84러1687	김동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35, 2층 (성수동2가)	2016-06-28 01:18:04	강변북로 구리방향 1차로	"	"
15	90루2004	김상환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8길 130-3, 나동 (오류동)	2016-07-25 06:49:07	강변북로 일산방향 2차로	"	"
16	80서2305	김세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8길 35-16, 201호 (삼전동)	2016-07-26 16:30:45	강변북로 구리방향 1차로	"	"
17	89버2149	김용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51길 4-5 (중곡동)	2016-07-08 15:21:26	강변북로 구리방향 2차로	"	"
18	86무6094	김은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40길 167, B동 201호 (시흥동, 두솔그린빌라)	2016-07-25 14:46:36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2차로	"	"
19	80구5296	김정훈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5길 31, 101호 (석촌동)	2016-07-18 17:05:36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2차로	"	"
20	80로4324	김종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20나길 5 (노량진동)	2016-07-17 06:29:02	강변북로 구리방향 1차로	"	"
21	90러5445	김종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79-3 (염창동)	2016-07-20 16:29:46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1차로	"	"
22	82구2035	김태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54길 18-4 (제기동)	2016-07-26 08:36:07	강변북로 일산방향 4차로	"	"
23	80고3820	박성숙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31길 5 (사당동)	2016-07-18 13:17:58	강변북로 구리방향 1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24	서울85거7563	박성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57길 16, 1202호 (마천동, 마천금호아파트)	2016-07-20 15:37:03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1차로	"	"
25	90더3897	박준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 72-13 (자양동)	2016-07-14 21:24:13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1차로	"	"
26	80거3198	송운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55길 5 (수유동)	2016-07-14 13:15:24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3차로	"	"
27	70거2547	송평숙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35길 16-1 (신정동)	2016-07-23 14:17:11	강변북로 구리방향 1차로	"	"
28	86머3448	신상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24-8, 302호 (송파동)	2016-07-20 06:17:19	강변북로 일산방향 2차로	"	"
29	95수4753	신운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산9가길 57-2, B01호 (금호동2가)	2016-07-25 17:36:30	강변북로 구리방향 1차로	"	"
30	81부3370	심성식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26길 103, 102동 804호 (방화동, 푸르미마을청구아파트)	2016-06-23 12:37:38	강변북로 구리방향 2차로	"	"
31	81부4091	안재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길 31, 301호 (신길동, 스카이빌)	2016-07-23 08:36:49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4차로	"	"
32	서울80자9482	양상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 382 (번동)	2016-06-05 16:27:46	강변북로 구리방향 3차로	"	"
33	서울86나1135	엄대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525, 103동 1105호 (풍납동, 현대APT)	2016-07-22 11:02:27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1차로	"	"
34	서울83나4785	오정석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9, 111동 302호 (사당동, 극동아파트)	2016-07-26 06:52:07	강변북로 구리방향 1차로	"	"
35	80두9502	원영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1길 32, 101동 605호 (당산동3가, 당산동쌍용에가클래식아 파트)	2016-07-14 04:44:01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3차로	"	"
36	77다8166	유익현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3가길 18 (가산동)	2016-06-22 19:48:39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3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37	90부8305	유진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길 28-1 (신정동)	2016-06-09 16:52:08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3차로	"	"
38	서울86라1283	이동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52길 53 112동 204호(고척동, 고척대우아파트)	2016-07-18 17:54:51	올림픽대로 공향방향 1차로	"	"
39	90루5436	이민영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51-2, 지중동 2호 (역촌동)	2016-07-22 10:52:43	강변북로 구리방향 4차로	"	"
40	96로6455	이삼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55길 27, B2호 (압사동)	2016-06-21 05:08:25	서부간선도로 성산방향 1차로	"	"
41	80보1381	이세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35가길 23 (시흥동)	2016-07-14 06:49:12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2차로	"	"
42	서울83머2692	이순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2길 36-1 (도선동)	2016-07-23 08:03:24	강변북로 구리방향 3차로	"	"
43	75부4521	이영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13길 11 (풍납동)	2016-07-15 19:19:13	강변북로 구리방향 1차로	"	"
44	88머8972	이준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46가길 34, 9동 502호 (상계동, 한신아파트)	2016-07-22 15:46:23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4차로	"	"
45	80마2905	이해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43길 122-3, 301호 (중곡동, 대호아트빌)	2016-06-10 16:15:17	올림픽대로 공향방향 2차로	"	"
46	80고5881	이형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39가길 57, 106동 405호 (홍제동, 홍제현대아파트)	2016-06-30 14:12:55	강변북로 일산방향 4차로	"	"
47	80고1587	이훈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7길 110 (화곡동)	2016-06-01 14:59:04	강변북로 구리방향 2차로	"	"
48	서울89자5018	전경복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27나길 28-18, 202호 (방화동, 인덕빌라)	2016-07-25 10:01:37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1차로	"	"
49	80머3881	정기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15길 52 (길동)	2016-07-16 14:00:14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1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50	91저4889	정병균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37길 11 (신정동)	2016-07-21 11:36:31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2차로	"	"
51	80저1761	정영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앙천로 218 402호(중화동, 백운빌라)	2016-07-22 09:46:10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2차로	"	"
52	97로7760	정판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8길 52, 2호 (홍은동, 2층)	2016-06-14 12:35:05	강변북로 일산방향 2차로	"	"
53	서울85자5701	조옥화	서울특별시 강북구 송인로3길 14 (미아동)	2016-07-25 10:22:59	강변북로 일산방향 2차로	"	"
54	80러3609	주-명강전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45번지 100호	2016-07-08 12:48:54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3차로	"	"
55	80구8340	주현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75길 20-13 (효창동)	2016-07-25 09:53:08	강변북로 구리방향 2차로	"	"

4. 공고 기 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16.10.14(금)

나. 본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
라오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의견제출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관리과(운행차관리팀)
- 담당 : 이동선(Tel 02-2133-3659, Fax 02-2133-1025)

붙임 : 의견 제출서(서식)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00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통지 및 등록취소 전 청문 통지서

당 사 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1	202191	(주)제이앤유글로벌	김대영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가산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효력상실)	영업정지 1개월 처분 통지 2016.9.28 ~ 2016.10.27
2	200252	유경(주)	윤성호	서울 노원구 월계로44길 51, (월계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계2인, 기능계1인 부족)	영업정지 15일처분 통지 2016.9.28 ~ 2016.10.12
3	110614	세담정보통신(주)	최동대	서울 구로구 고척로52길 112, 2층(개봉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계2인, 기능계1인 부족, 자본금실효)	등록취소 처분 통지 (2016.10.25.)
4	201822	(주)컨벡스	박기호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409호(구로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1차)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계1인 부족)	등록취소 전 청문 통지 (2016.10.25.)
5	110269	(주)해진테크	김명철	서울 송파구 중대로 277, 3층(오금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계1인, 기능계1인 부족)	등록취소 전 청문 통지 (2016.10.25.))
6	200708	유큐브 주식회사	허창용	서울 강남구 논현로28길 56, 5층(도곡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계3인, 기능계1인 부족)	등록취소 전 청문 통지 (2016.10.25.)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제66조제13호, 동법시행령 제21조, 제50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및 별표8의13

3. 공고기간 : 2016.10. 03. ~ 2016.10. 27.

4. 문의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담당자: 조용성 ☎(02)2133-2897, 전자우편 q369369@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004호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장

1. 승인일자 : 2016. 9. 30.
2. 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주요내용

시설명	사업시행자	위치	형질변경 면적(㎡)			건축 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국군 제8090부대	국방부장관	서초구 내곡동 산12-555 일원	32,222	31,530	감 692	26,362	25,822	감 540
중앙보훈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강동구 둔촌동 6-2	66,520	66,234	감 286	143,278.16	143,253.12	감 25.04

※ 국방·군사시설의 세부내용은 열람을 제한할 수 있음

3.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2133-2040),
서초구 공원녹지과(2155-6892), 강동구 푸른도시과(3425-6473)
4. 열람기간 : 시보게재 다음일로부터 14일간
5. 관계도서 : 게재생략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005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장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1) 후원방문판매업 변경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LG생활건강 성동지사	서울 후- 제473호	전병옥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48길 6, 2층 (금호동4가) (070-7768-1008)	상 호 (‘16.08.16.)	성동지사	LG생활건강성동지사
				소재지 (‘16.08.16.)	서울시 성동구 장터길 35, 2층 (금호동)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48길 6, 2층(금호동4가)
마임 신림남부지사	서울 후- 제239호	유정자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61, 4층(신림동) (02-875-3207)	소재지 (‘16.09.05.)	서울시 관악구 문성로 240, 2층(신림동)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61, 4층(신림동)
다은대리점	서울 후- 제623호	김주현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32, (행당동) (02-938-0777)	소재지 (‘16.09.01)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3길 50, 상가동 107호(상계동, 노원현대아파트)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32, (행당동)
(주)엔엠씨 화장품	서울 후- 제555호	김재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28, 6층 (역삼동, 충암빌딩) (02-1600-4279)	소재지 (‘16.09.05)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424, 4층 (역삼동, 진영빌딩)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28, 6층 (역삼동, 충암빌딩)
(주)브랜드 에셋	서울 후- 제398호	오현철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56, 202호 (영등포동7가,오성빌딩) (02-2633-2257)	상 호 (‘16.09.06)	대명스테이션 공식총판(주)	(주)브랜드에셋

2) 다단계판매업 변경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주)위즈앤 코리아	서울- 제828호	김점용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30길 73, 3층 (역삼동) (02-587-9609)	상 호 (‘16.08.31)	(주)비앤지네트웍	(주)위즈앤코리아
				소재지 (‘16.08.31)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97, 5층 (방배동, 이창빌딩)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30길 73, 3층(역삼동)

3) 후원방문판매업 폐업사항

신 고 인				신고사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폐업일자	폐업사유
이대건강생활	서울 후-제582호	이균희	서울시 마포구 송문로 182, 2층(염리동) (02-704-8777)	'16.09.02.	영업부진
유니베라 (남양알로에)성 동행복대리점	서울 후-제316호	김명기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 285, 2층(금호동4가) (02-2299-0388)	'16.09.08.	영업부진
정호대리점	서울 후-제573호	김윤희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84, (서초동, 주구센터) (02-762-9866)	'16.08.30.	영업부진
오휘신설점	서울 후-제649호	김희재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2길 23-3 (신설동) (02-2236-4979)	'16.09.09.	개인사정
오휘성수점	서울 후-제650호	김영숙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147 209호(성수동2가,아이에스비즈타워) (02-462-4979)	'16.09.09.	개인사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17) 또는 민생경제과(☎ 02-2133-5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006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영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 ***호 (오포읍)	일시: 2016.07.25 10:14 장소: 은평구 진관동 통일로 구파발시계 내용: 축하중 11.1t(1.1t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6.08.29. 납기일: 2016.10.31.
김진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당로 ** ***호 (토당동)	일시: 2016.08.05 11:12 장소: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수색119안전 센타앞 내용: 축하중 11.75t (1.75t 초과, 적발횟수:3회)	과태료: 100만원 부과 처분일: 2016.08.29. 납기일: 2016.10.31.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2016. 10.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가.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라.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자우편: bis8810@seoul.go.kr
 - 전화번호: 02-300-8347, 팩스번호: 02-300-833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007호

2016년도 제16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제16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장

- 가. 심의일시 : 2016. 9. 28.(수) 10:00 ~ 12:30
 나. 심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회의실
 다. 심의작품 : 총 7건 8작품 (조각 8점)
 라. 심의결과 : 승인 5작품, 부결 3작품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제1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16년 제1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부결	
1	강서구 동익 드 미라벨	조각	안녕하세요		○	조형성 결여 (유사성 문제)
2	동대문구 현대썬앤빌딩계	조각	먼저할일부터		○	주제의 의미전달 부정확, 조형성 결여
3	광진구 강변 SK VIEW	조각	꽃을 주는 사람	○		
4-1	강서구 마곡나루역 캐슬파크	조각	모던보이		○	환경과의 부조화, 예술성 부족
4-2		조각	확장	○		
5	서초구 서초신라stay호텔	조각	하모니	조건부 ○		전체적으로 크기를 10% 키울 것
6	은평구 KT21	조각	Happy Time	○		
7	은평구 엘크루 주상복합	조각	행복을 품다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008호

2016년도 제17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제17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장

- 가. 심의일시 : 2016. 9. 29.(목) 10:00 ~ 12:30
 나. 심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회의실
 다. 심의작품 : 총 1건 17작품 (조각 3점, 회화 12점, 사진 2점)
 라. 심의결과 : 승인 14작품, 부결 3작품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제17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16년 제17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부결	
1-1	송파구 서울동부지방 검찰청사	조각	정의의 가족	○		
1-2		조각	진실의 물방울	○		
1-3		조각	정의의 여신상		○	- 검찰청 이미지와 부합되지 못함 - 여신상이미지의 크기가 부각되지 못함
1-4		회화	푸른매화	○		
1-5		회화	청계		○	- 독창적인 회화성 부족 - 메인 홀의 환경과 부조화
1-6		회화	만남	○		
1-7		회화	상상된 기억들	○		
1-8		회화	생명-어울림	○		
1-9		회화	여름강변	○		
1-10		회화	한산행담	○		

2016년 제17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16년 제17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부결	
1-11	송파구 서울동부지방 검찰청사	회화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		
1-12		회화	오색물고기	○		
1-13		회화	070416	○		
1-14		회화	사랑합니다	○		
1-15		회화	제주사랑		○	- 환경과 부조화
1-16		사진	끊임없는 감정	○		
1-17		사진	오색찬란	○		

※전체 의견 : 승인작품은 검찰청의 이미지를 고려, 작품배치를 전문가의 자문 후 의견수렴 권고

1-4번 작품인 '푸른매화' 관련, 심사위원들이 소송중임을 인지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소송결과 후 검찰청측에서 판단함을 요구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013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
열람공고(한국체육대학교)**

1. 건설부고시 제326호(1984.8.25)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으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9호(2010.3.25.)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일대 한국체육대학교에 대하여, 대학의 입지특성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안)이 제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시 시설계획과 및 송파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시청 시설계획과(☎ 2133-8412, fax : 2133-0739)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2147-2994, fax : 2147-3879)

다.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취지

○ 대학이 갖는 도시적 의미와 역할을 고려하여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외부공간의 역할 증대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 대학의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구역별 관리계획(일반관리, 녹지보존, 외부활동)을 수립하여 지역과 연계된 대학의 도시적 성장기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구현

라.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안)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사항 : 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학교	대학 (한국체육대학교)	송파구 양재대로 1239(오륜동)일대	111,902.3	-	111,902.3	건설부고시 제326호 (1984.8.25)	변경없음

○ 세부시설조성계획 주요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 토지이용계획 중심관리(5개로 결정) (건축, 조경, 운동장, 도로, 주차장) - 건물별 높이 결정	- 지역 입지특성을 반영한 구역 결정 (일반관리, 녹지보존, 외부활동) - 구역별 높이·밀도 결정

마. 구역별 관리계획 및 관련도면 : 생략(열람장소 비치)

구 고 시

◆ 중랑구고시 제2016-52호

도시계획시설사업(봉화산근린공원 조성-화랑마을뒤)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1. 봉화산근린공원은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08.06)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 고시 되었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392호(1998.12.05)로 최종 결정고시 되었으며,
2. 이 공원의 조성계획은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24호(1997.02.13)로 최초 결정 고시된 다음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0호(2013. 11. 21.)로 최종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3. 봉화산근린공원의 일부인 서울시 중랑구 묵동 산46-1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6-9호(2016.2.18)로 최초 인가 고시하였습니다.
4. 사업추진중 감정평가 결과 토지분할에 따른 토지이동 및 사업면적 변경이 있어 같은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고시 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중 랑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당 초 :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산46-1
 - 변 경 :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산46-27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봉화산근린공원조성(화랑마을뒤)
 - 3) 사업의 면적
 - 당 초 : 133,953㎡ 중 10,000㎡
 - 변 경 : 10,000㎡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중랑구청장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 5) 사업의 내용 : 공원의 조성
 - 6)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별표 4의 제10호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 2) 서울특별시의 사무위임을 받아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의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수용(매수)되는 토지는 서울특별시(장)에 귀속됨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랑구청(공원녹지과 ☎02- 2094-2356 주무관 이재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 사업명 : 봉화산근린공원조성(화랑마을지구)
☐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당 초】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중랑구 묵동 신46-1	임야	133,953	10,000	한상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3-4				

【변 경】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중랑구 묵동 신46-1	임야	94,386	94,386	한상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3-4				제외
2	중랑구 묵동 신46-26	임야	29,567	29,567	한상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3-4				제외
3	중랑구 묵동 신46-27	임야	10,000	10,000	한상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3-4				

◆ 중랑구고시 제2016-53호
도시계획시설사업(봉화산근린공원 조성-구청사뒤)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1. 봉화산근린공원은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08.06)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 고시 되었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392호(1998.12.05)로 최종 결정고시 되었으며,
2. 이 공원의 조성계획은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24호(1997.02.13)로 최초 결정 고시된 다음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0호(2013. 11. 21.)로 최종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3. 봉화산근린공원의 일부인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138-1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6-10호(2016.2.18)로 최초 인가고시하였습니다.
4. 사업추진중 감정평가 결과 토지분할에 따른 토지이동 및 사업면적 변경이 있어 같은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고시 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중 랑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당 초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산138-1
- 변 경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산138-5번지등 2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봉화산근린공원조성(구청사뒤)

3) 사업의 면적

- 당 초 : 32,727㎡중 9,000㎡
- 변 경 : 4,341㎡(감4,65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중랑구청장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5) 사업의 내용 : 공원의 조성
6)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별표 4의 제10호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 서울특별시의 사무위임을 받아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의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수용(매수)되는 토지는 서울특별시(장)에 귀속됨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랑구청(공원녹지과 ☎02-2094-2356 주무관 이재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 사업명 : 봉화산근린공원조성(구청사위)
☐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당초】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중랑구 신내동 산138-1	임야	32,727	9,000	윤석준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87 석탑A 102-704				

【변경】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중랑구 신내동 산138-1	임야	23,727	23,727	윤석준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87 석탑A 102-704				제 외
2	중랑구 신내동 산138-5	임야	3,597	3,597	윤석준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87 석탑A 102-704				
3	중랑구 신내동 산138-6	임야	744	744	윤석준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87 석탑A 102-704				
4	중랑구 신내동 산138-7	임야	4,659	4,659	윤석준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87 석탑A 102-704				제 외

◆ 강북구고시 제2016-145호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381호(1982.9.20)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서울시 고시 제2008-428호(2008.11.2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공원) 결정으로 공원결정 및 변경결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32호(2013.12.19)로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6-439호(2016.04.28)로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6-87호(2016.05.26)로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6-1000호(2016.09.13)로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한 오동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인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북구청 푸른도시과(☎ 901-692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 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2016년 10월 6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강북구 번동 산9-3번지 외 5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2016년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조성)사업

다. 사업의 내용 : 공원 조성(토지보상)

라. 규모 변경 : 당초 - 토지보상 16,411㎡ → 변경 - 10,077㎡ (감 6,334㎡)

※ 변경사유 : 감정평가 결과 보상금 산정액 증액으로 예산범위 내 협의가능
대상지부터 보상추진

마. 사업의 시행자 : 강북구청장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2년간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및 물건조서 : 별첨 조서

아. 토지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 조서

자. 열람장소 : 강북구청 푸른도시과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푸른도시과(901-6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2016년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조성)사업
(변경전)

연 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일 면적 (㎡)	지분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관리의 내 용	
1	6필지 번동 산9-3	임야	20,837	16,411			용산구 한강대로205(한강로1가) 용산파크자이디동2624호	영형철	인천광역시서구경명대로683번지6-6 동성빌2동402호	백금희	근저당	
2	번동 산23-8	임야	1,605	1,605	2분의1		노원구 상계로35길 60(상계동)	서호본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42	구례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구례농업 협동조합
3	번동 산23-9	임야	1,372	1,372	2분의1		노원구 상계로35길 60(상계동)	서호본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42	구례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구례농업 협동조합
4	번동 산23-10	임야	5,072	5,072	5072분의2536		노원구 상계로35길 60(상계동)	서호관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42	구례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구례농업 협동조합
					5072분의1036							
					5072분의1000			김인선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42	구례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구례농업 협동조합
					5072분의500							

영 편	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지분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관 리 의 내 용	
5	분동 신23-11	임야	772	772	2분의1		노원구 상계로35길 60(상계동)	서호문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42	구례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공동담보
					2분의1		노원구 상계로35길 60(상계동)	김인선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42	구례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공동담보
					5390분의2695		노원구 상계로35길 60(상계동)	서호문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42	구례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공동담보
6	분동 신23-12	임야	5,390	5,390	5390분의695		노원구 상계로35길 60(상계동)	김인선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42	구례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공동담보
					5390분의2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55 권선자이이 편한세상아파트 105동1004호	이영재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42	구례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공동담보

(변경후)

연 번	소 제 지	지 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지 분	이용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 리의 내 용	
1	6필지 1 번 동 산9-3	임야	20,837	10,077			용산구 한강대로205(한강로1가) 용산파크자이디동2624호		염형철			
2	번 동 산23-8	임야	1,605	1,605	1				서울특별시			
3	번 동 산23-9	임야	1,372	1,372	1				서울특별시			
4	번 동 산23-10	임야	5,072	2,000	5072분의2536		노원구 상계로35길 60(상계동)		서호관			
					5072분의1036							
					5072분의1000							
					5072분의500							
5	번 동 산23-11	임야	772	772	1		경기도광명시디지털로64 철산한신아파트109동2004호		배세영			
6	번 동 산23-12	임야	5,390	2,128	5390분의2695		노원구 상계로35길 60(상계동)		서호관			
					5390분의695							
					5390분의2000							
					경기도 수원시권선구관광로55 권선자이이편한세상아파트 105동1004호							
									이영재			

◆ 도봉구고시 제2016-12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일부폐지)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89호(1972.6.30.)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일부폐지)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도 봉 구 청 장

1. 변경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폐지 구간은 급경사 지역으로 도로개설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이 예상되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시점(2020년)까지 예산확보 및 사업진행이 불확실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미개설 구간을 폐지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368	쌍문동 524-19	쌍문동 산281-1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89호 (1972.6.30.)	
변경	소로	3	-	6	국지 도로	303	쌍문동 524-19	쌍문동 471-1	일반 도로		쌍문동 471-1~ 산281-1 도로구간 폐지 (B=6m, L=65m)

3. 관계도면 : 따로붙임(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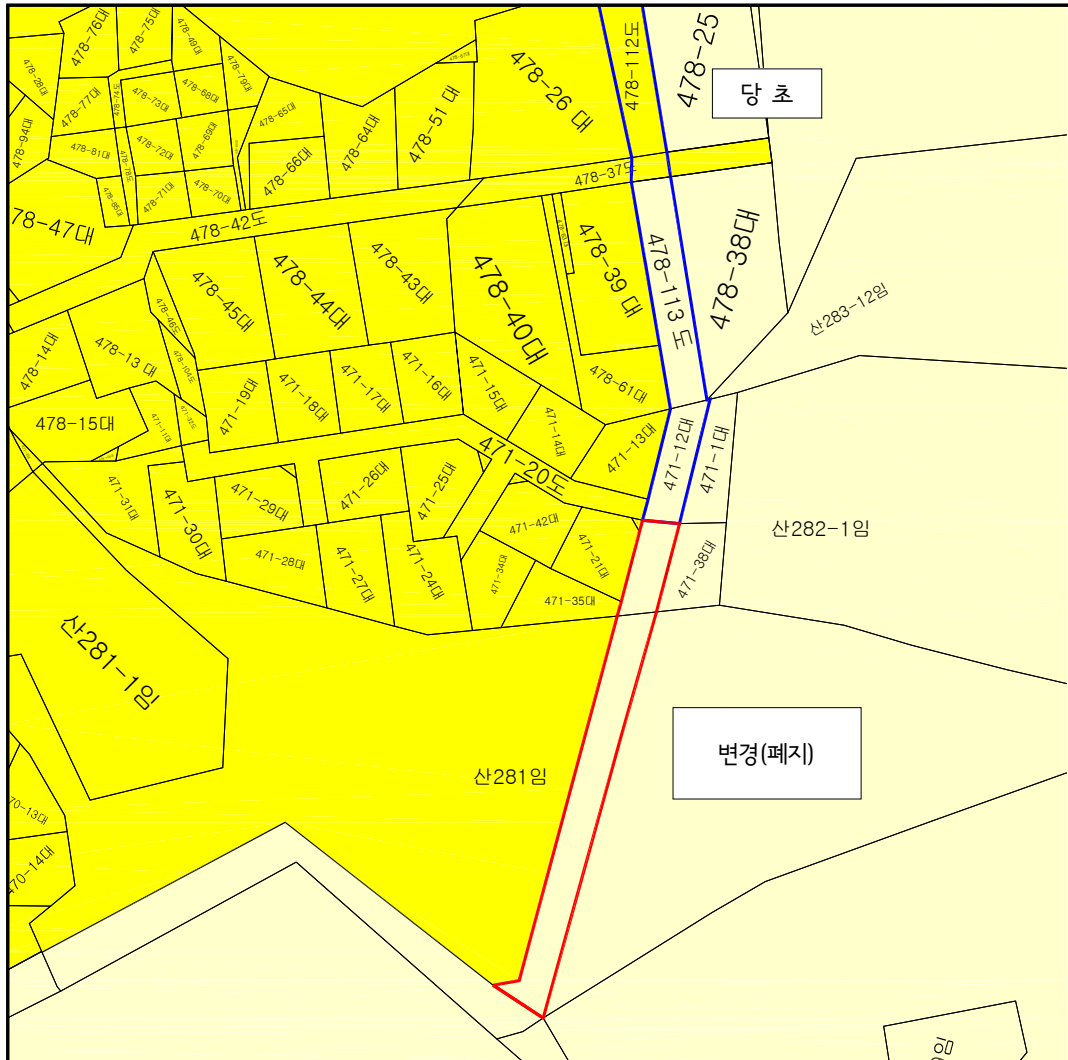
-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붙임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과(☎ 2091-3555)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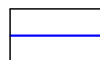
-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 적 고 시 도 면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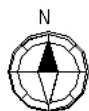
범 례



당 초



변경(폐지)



Scale = 1 : 1,000

구분	입안 및 결정권자		
	작성자	1차확인자	2차확인자
소속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직위	담당	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직명	시설주사	시설주사	행정사무관
성명	이충열	정성수	홍문덕
확인인			

◆ 노원구고시 제2016-90호

전통사찰 등록 고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통사찰을 등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노 원 구 청 장

1. 등록일자 : 2016년 9월 30일
2. 등록목적 :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
3. 등록사찰 개요

등록번호	사찰명	소속종단	주지(법명)	소재지
제 노원 9- 4 호	도안사	대한불교조계종	안봉수(혜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145길 99(상계동)

◆ 노원구고시 제2016-91호

도시계획시설(마을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16-65호(2016. 7.21)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노원구 공고 제2016-720호(2016. 9.13) 및 노원구 공고 제2016-721호(2016. 9.13)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마을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 및 의견청취, 사업인정의제 사업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회신을 받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996-21의 1필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마을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노 원 구 청 장

2.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996-21, 996-10
3. 사업시행자
 - 성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701-1)
4.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사회복지시설)
 - 사업의 명칭 : 마을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
5. 사업의 내용

- 면 적 : 299m²
- 사업규모 : 대지 299m², 건물연면적 332.6m² (지상2층)
-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간
-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물건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따로 붙임
- 8. 고시방법: 서울시보 및 노원구보
- 9. 토지·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 10.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행정과(☎02-2116-3123)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마을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내용	
1	노원구 상계동 996-21	대지	186	161	주거	노원구청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혜로 437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26길 20, 102동 601호(대동청솔아파트)	박연홍		기존무허가 건축물	39.66㎡
2	노원구 상계동 996-10	대지	138	138	나대지	서울특별시장	-	-	-	-	-	-
							-	이 하 여	-			

물 건 조 서

■ 사업명 : 마을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종 류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면적㎡)	권리의 종류와내용	
1	노원구 상계동 996-21	건축물	세멘조	61	주거	박연홍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26길 20, 102동 601호 (대동청솔아파트)	정영자	상계동 996-21 (31)	세입자	무허가건축물
								고성권	상계동 996-2 (30)	세입자	무허가건축물
2	노원구 상계동 996-21	건축물	세멘조	111	영업	박연홍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26길 20, 102동 601호 (대동청솔아파트)	정영자	상계동 996-21 (22)	세입자	무허가건축물
								고성권	상계동 996-2 (89)	세입자	무허가건축물

물 건 조 서

■ 사업명 : 마을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종 류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와내용	
3	노원구 상계동 996-21	냉장고	철	1	영업	정영자	상계동 996-21					
			철	3	영업	고성권	상계동 996-2					
			철	1	주거	정영자	상계동 996-21					
			철	1	주거	고성권	상계동 996-2					
		에어컨	철	1	영업	정영자	상계동 996-21					
			철	2	영업	고성권	상계동 996-2					
			철	1	주거	정영자	상계동 996-21					
			철	1	주거	고성권	상계동 996-2					
			유리 등	4	영업	정영자	상계동 996-21					
			수목	2	대지	최용호	상계동 1005-1					
4	노원구 상계동 996-10	수목	향나무	2	대지	최용호	상계동 1005-1					
		수목	목련나무	2	대지	최용호	상계동 1005-1					
		수목	산수유나무	1	대지	최용호	상계동 1005-1					
		수목	수수꽃다리	1	대지	최용호	상계동 1005-1					
		담장	세멘조	8 (1*8)		최용호	상계동 1005-1					
		대문	철	2.25		최용호	상계동 1005-1					
		통행로 응양로 포장	세멘조	23	통행로	최용호	상계동 1005-1					
		건축물	세멘조	15	창고	최용호	상계동 1005-1					

■ 상계동 996-21/ 상계동 996-10

■ 위 치 도



■ 현장사진



◆ 은평구고시 제2016-83호

도시관리계획(독바위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49호(1996.06.10)로 구역결정 및 서울시고시 제2002-60호(2002.03.05.)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05호(2011.04.28.)로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변경(재정비) 결정된 독바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불광동 238-15 외 2필지의 소유자로부터 공동개발(지정)변경 제안이 있어,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6.09.22.) 결과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독바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은 평 구 청 장

가. 변경결정 사유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1필지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연접 2필지를 공동개발에 의한 건축행위가 가능토록 변경하는 것임.

나. 도시관리계획(독바위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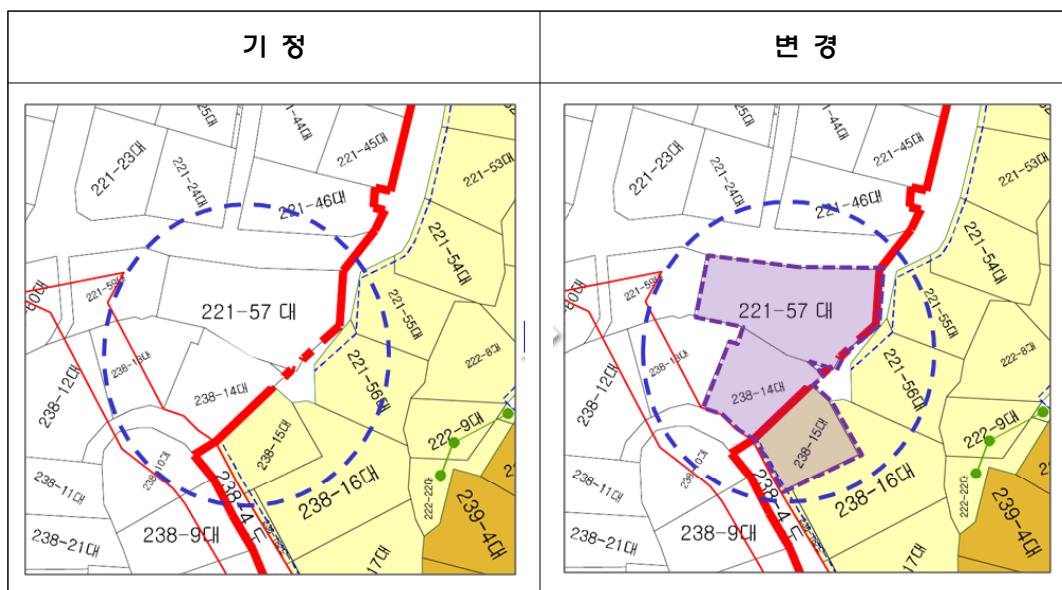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조서

구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불광동	221-57	459.0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기정	불광동	238-14	238.0	•지구단위계획구역 연접 토지
		238-15	202.0	
변경	불광동	221-57	899.0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 238-15 •지구단위계획구역 연접 토지 : 238-14, 221-57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율적(선택적)공동개발 1필지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연접 2필지를 포함한 3필지는 공동개발(건축행위) 가능함
		238-14		
		238-15		

다. 기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 변경내용 없음

라.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도시계획과(☎351-7412, 741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마. 도시관리계획(독바위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공동개발 가능토지(3필지) : 불광동 221-57, 238-14, 238-15 - 면적 : 899m²)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강서구고시 제2016-84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1호(2007.12.28)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8호(2008.12.30)호, 제2012-270호(2012.10.11), 제2013-379호(2013. 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3호(2014. 5. 8)로 구역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 가 된 마곡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른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의거 의제처리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738-3번지 일원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내 주차장용지(II블록))
(예정지번 : 강서구 마곡동 738-3)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명 칭 : 강서구 마곡지구 내 주차장용지(II블럭) 주차전용건축물 신축 사업

다. 사업의 규모

구분	내용	비고
대지면적	2,835.0㎡	
건축면적	2,094.0㎡	
건축연면적	16,725.96㎡	
용적률	334.07%(법정 400% 이하)	
건폐율	73.86%(법정 90% 이하)	
규모	지하3층, 지상5층	
주차계획	차량 221대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시제이오건설(주) 외 2개 법인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210호
(도선동, 성동삼성쉐르빌)

마. 사업기간 : 2016. 10. ~ 2017. 12.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권·권리권자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토지계약자)		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 외의권리 의종류및 내용	
1	강서구 마곡동	368일원	대	2,835	1,417.50	시제이오건설 (주)	서울시 성동구 무학로6길50,101동210호 (도선동,성동삼성쉐르빌)				50%
2					1,134.00	주보성글로벌 트레이딩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2-191 골든타워빌딩 1504				40%
3					283.50	㈜빅추리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7, 1112호				10%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기타 관계도서 : 강서구청 건축과(☎ 2600-6873)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구로구고시 제2016-153호

도시계획시설사업(온수도시자연공원-벽산지구)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66호(2015.9.10)로 온수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지적승인 되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2015-51호(2015.4.9)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사업(온수도시자연공원-벽산지구) 실시계획 변경인가(변경)를 위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장
(위임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로구 온수동 산4-2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명칭 및 사업내용

○ 사업의 종류,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온수도시자연공원(벽산지구) 조성사업

○ 사업내용 : 사유토지보상

다. 사업의 면적 : 18,010㎡ 중 1,342㎡

라. 사업시행자 등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구로구청장**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435)

마. 사업 착수·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변경)일로부터 2년간

바. 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조서 : 따로붙임

사. 사용·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구분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계				49,896	33,228						
1	변경 없음	온수동 9-49	임야	8,064	8,064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기매수]
2	변경 없음	온수동 9-44	임야	170	170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기매수]

연 번	구 분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3	변경 없음	온수동 9-50	임야	1,794	1,794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기매수]
4	변경 없음	온수동 산1-1	임야	3,687	3,687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기매수]
5	변경 없음	온수동 산3	임야	8,908	8,908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기매수]
6	변경없음	온수동 산4-19	임야	2,600	2,600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기매수]
7	변경없음	온수동 산4-20	임야	45	45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기매수]
8	변경없음	온수동 산4-21	임야	2,600	2,600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기매수]
9	변경없음	온수동 산4-22	임야	4,018	4,018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기매수]
10	변경	온수동 산4-2	임야	당초: 18,010 변경: 16,668	1,342	이현○ (12/22)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산4-22로 토지분할하여 지적면적감소
						이완○ (4/22)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이영○ (8/22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승○ (28/22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64길				
						이찬○ (4/22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이봉○ (8/220)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이종○ (4/220)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연 번	구 분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이철○ (4/220)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이용○ (4/220)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 서초구고시 제2016-94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60호(2012.12.28)로 결정되고 서초구고시 제2013-125호(2013.10. 7)로 실시계획인가된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내 내곡동 368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하여 시행자(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 초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36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 명칭 :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주차장2용지 주차전용건축물 신축공사
3. 사업의 규모(변경)
 - 대지면적(변경없음) : 3,618㎡
 - 건축면적 : (기존) 2,926.98㎡ → (변경) 2,937.67㎡(건폐율 81.20%)
 - 연 면 적 : (기존) 19,440.50㎡ → (변경) 19,758.60㎡(용적률 229.97%)
 - 층수(변경없음) : 지하4층/지상3층
 - 주차대수 : (기존) 425대(지하 305대, 지상 120대) → (변경) 414대(지하 303대, 지상 111대)
 - 변경된 시설별 면적

구 분		점유비율(%)	전용면적(㎡)	공용면적(㎡)	시설면적(㎡)
주차장		70.36	12,785.21	1,116.83	13,902.04
부대 시설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소매점)	27.06	4,427.97	918.24	5,346.21
	화장실, 창고 등	2.58	510.35	0	510.35
	소계	29.64	4,938.32	918.24	5,856.56
합계		100.00	17,723.53	2,035.07	19,758.60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성명 : (기존) (주)엘에스디(대표자 기세도)
(변경) (주)위본(대표자 기민영)
- 주소 : (기존)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92(쌍촌동)
(변경)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92-1(쌍촌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기존)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4개월 → (변경) 실시계획인가일 ~ 2017. 7.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토 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1	서초구 내곡동	368일 원	전	-	3,618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92-1 (쌍촌동)	(주)위본	-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8. 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 : 관련부서 등 협의사항 준수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초구고시 제2016-95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작성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4(2016.06.15)호로 서울내곡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이 결정되고, 서울내곡공공주택지구 내 사회복지시설부지에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해 서초구 공고 제2016-1044호(2016.09.08)호로 열람공고를 시행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공공주택지구 내 사회복지시설용지(신원동 340-3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 명칭 : 내곡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구 분	내 용		
대지면적	1,322㎡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도로현황	북동측 12m도로, 남동측 12m도로		
용 도	노유자시설		
건축면적	749.29㎡	건폐율	56.67% (법정 : 60% 이하)
연 면 적	4,034.12㎡		
용적률산정연면적	2,465.96㎡	용적률	189.92% (법정 : 200% 이하)
층 수	지하2층/지상4층 (법정: 5층 이하 지구단위계획)		
주차시설	18대(법정 18대)		

- 층별면적개요

구 분	주요용도	층별면적	비고
지상4층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548.21㎡	
지상3층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671.24㎡	
지상2층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659.04㎡	
지상1층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587.47㎡	
지상층 소계		2,465.96㎡	
지하1층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주차장	787.94㎡	
지하2층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기계실, 발전기실	780.22㎡	
합 계		4,034.12㎡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초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공 일 : 2015.08월
- 준공예정일 : 2018.06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	서초구 신원동 340-3일원	답	1,322	-	SH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건축과(02-2155-68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남구고시 제2016-13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철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1호(1995.2.11.)로 결정된 도시철도 분당선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철도)을 결정(변경)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강 남 구 청 장

- 결정(변경)취지 : 선릉역외 2개소 정거장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철도) 결정(변경) 조서
 -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조서
 - 본 선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규모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도시 철도	본 선 (분당선)	왕십리역 구내	송파구 장지동 596-21일대		B=11~23m L=17,912m A=191,733㎡	서울시고시 제1995-31호 (1995.2.11.)	

○ 정거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도시 철도	선릉정거장 (분당선)	강남구 역삼동 305-2일대	강남구 역삼동 305-2일대		210	9,083.0	서울시고시 제1995-31호 (1995.2.11.)	
변경	1	도시 철도	선릉정거장 (분당선)	강남구 역삼동 305-2일대	강남구 역삼동 305-2일대		210	9,125.6		증)42.6㎡
기정	1	도시 철도	개포2정거장 (분당선)	강남구 개포동 181-2일대	강남구 개포동 181-2일대		210	8,749.0	서울시고시 제1997-130호 (1997.4.30.)	
변경	1	도시 철도	개포동정거장 (분당선)	강남구 개포동 181-2일대	강남구 개포동 181-2일대		210	8,836.2		증)87.2㎡
기정	1	도시 철도	개포3정거장 (분당선)	강남구 일원동 700일대	강남구 일원동 700일대		210	8,241.0	서울시고시 제1995-31호 (1995.2.11.)	
변경	1	도시 철도	대모산입구역 정거장 (분당선)	강남구 일원동 700일대	강남구 일원동 700일대		210	8,400.3		증)159.3㎡

나.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도시철도 선릉정거장 (분당선)	· 변경 연장 : 210m(변경없음) 면적 : 9,083㎡ → 9,125.6㎡ 증) 42.6㎡	- 선릉역 6번, 9번 출입구에 승강편의 시설(에스컬레이터) 설치
1	도시철도 개포동정거장 (분당선)	· 변경 연장 : 210m(변경없음) 면적 : 8,749.0㎡ → 8,836.2㎡ 증) 87.2㎡	- 개포동역 6번, 7번 출입구에 승강편의 시설(에스컬레이터) 설치
1	도시철도 대모산입구 정거장 (분당선)	· 변경 연장 : 210m(변경없음) 면적 : 8,241.0㎡ → 8,400.3㎡ 증) 159.3㎡	- 대모산입구역 3번, 7번 출입구에 승강 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설치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남구 도시계획과(☎3423-610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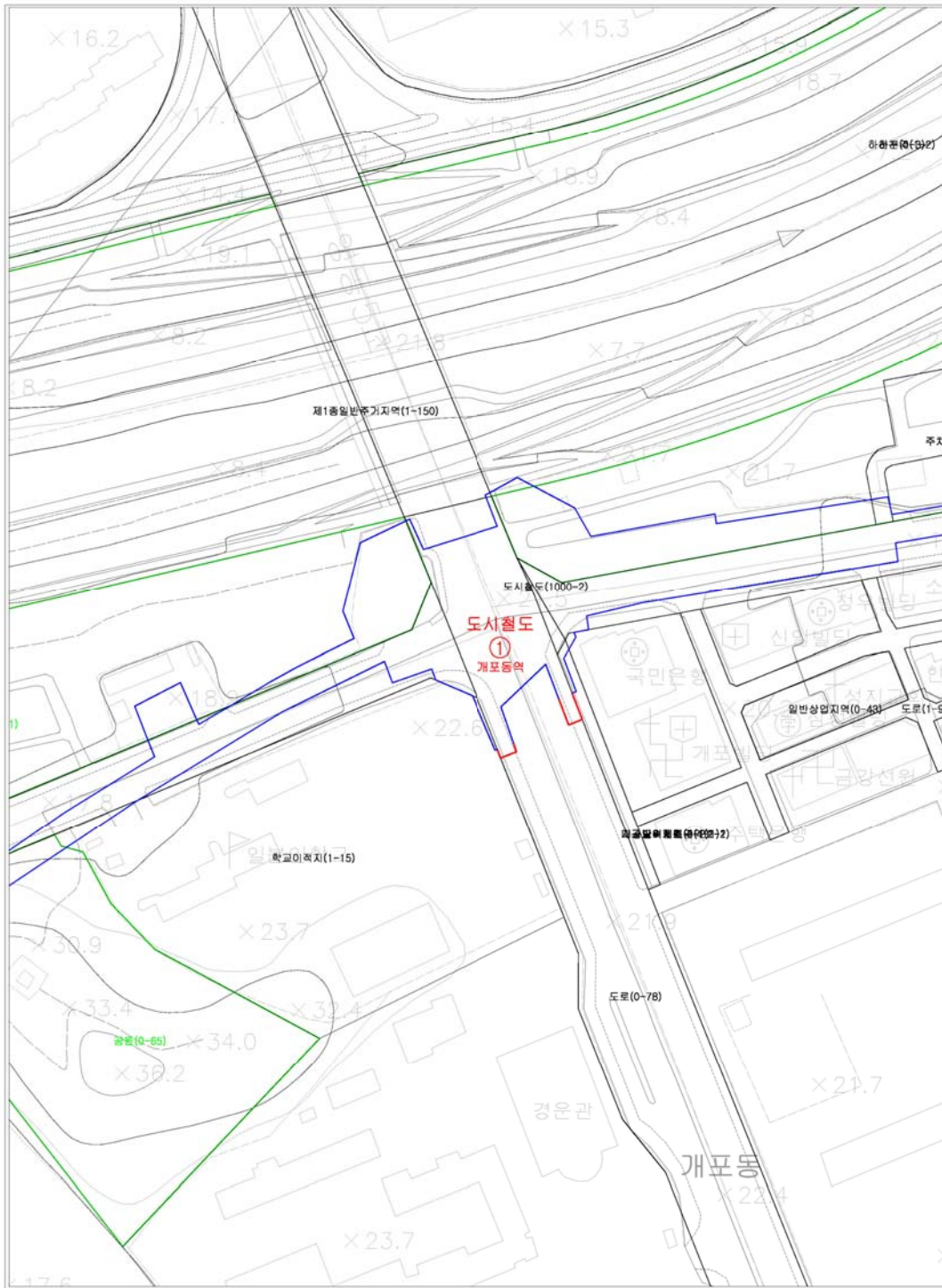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도 (개포동역)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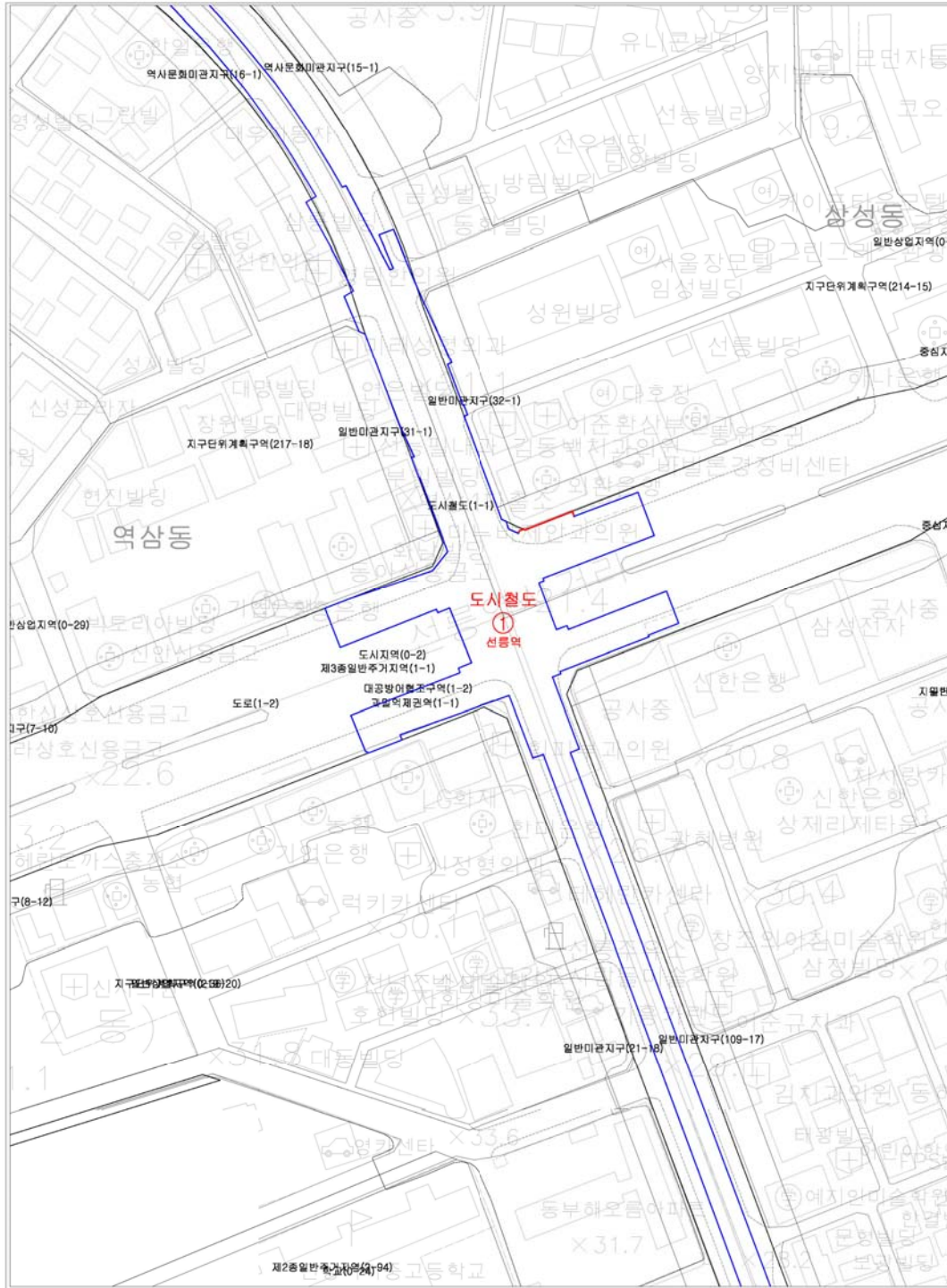
[S=1:1,000]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도 (선릉역)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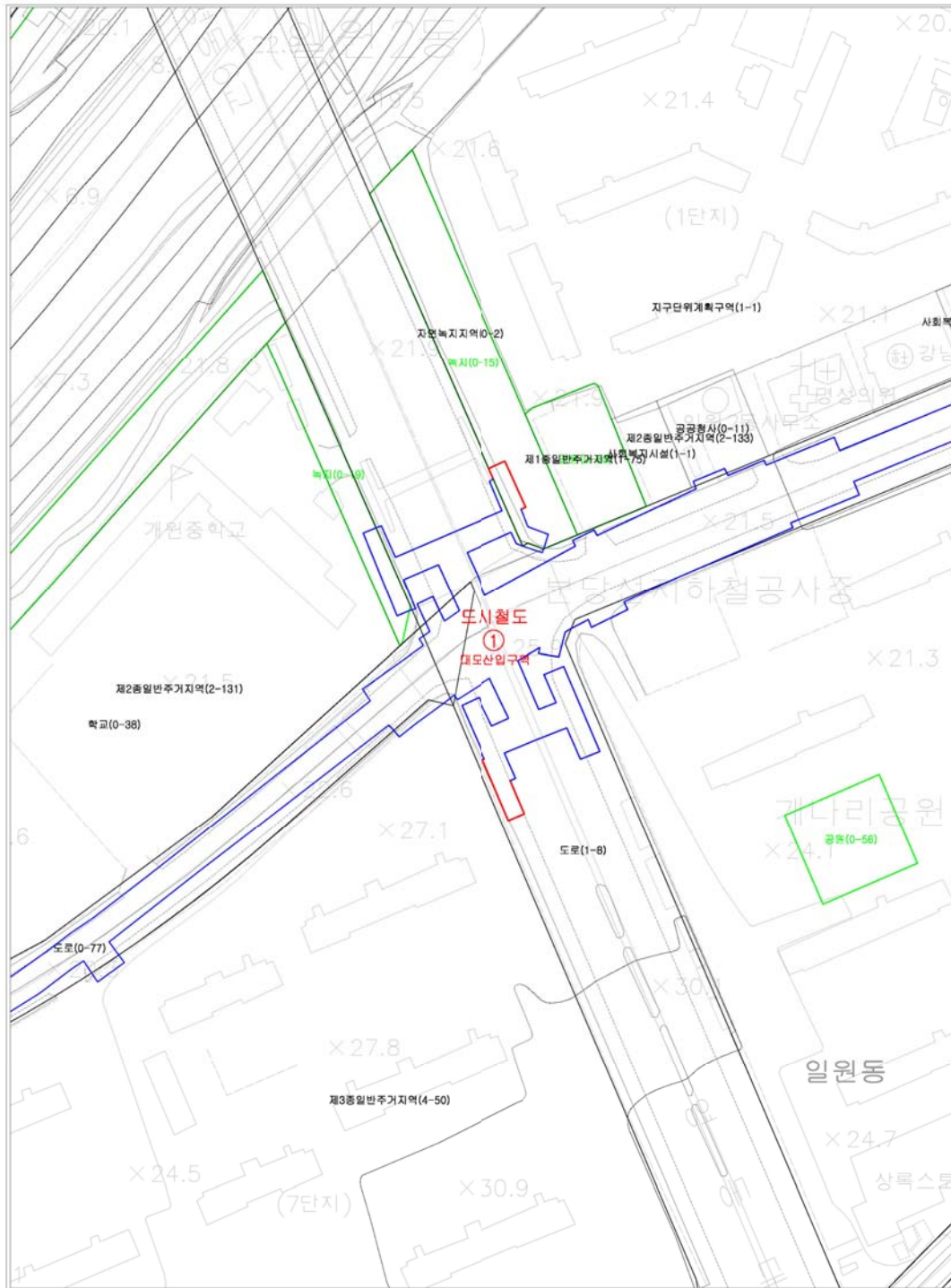
[S=1:1,000]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도 (대모산입구역)

[변경]

[S=1:1,000]



◆ 송파구고시 제2016-107호

도시관리계획(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50호(2012.06.07)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96호 (2015.09.24)로 결정된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송 파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송파노인회관으로 이용 중에 있는 송파대로 38길 1(송파동 97-41번지)에 대하여, 이용현황과 목적에 맞는 용도로 관리하고자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을 결정코자 함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②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용도 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다. 공공 · 문화체육시설

1) 사회복지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건축제한)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사회복지시설	송파대로 38길1 (송파동97-41)	-	303.3	303.3	-	건폐율 : 50% 용적률 : 250% 높 이 : 30m

- 사회복지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①	사회복지시설	신설:303.3㎡	· 이용현황과 목적에 맞는 용도로 관리하고자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을 결정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3. 관계도면 : 별첨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송파구청 도시계획과(☎2147-299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고시 도면

(축척 : 1/1,000도)



구 공 고

◆ 종로구공고 제2016-856호

도시관리계획(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 창신·송인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와 동시에 동대문지구단위계획 해제로 종로변 도시관리수단의 부재로 간선가로변 도시환경개선 및 지역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동대문 지구 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6일

종로구청장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창신동, 송인동 일대	-	증) 39,154	39,154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

구분	구역명	내 용	결정사유
신설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위치 : 종로구 창신동, 송인동 일대 - 면적 : 39,154.0㎡	· 창신·송인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와 동시에 동대문 지구단위계획 해제로 종로변 도시관리수단의 부재 - 간선가로변 도시환경개선 및 지역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발전적·유도적 도시관리수단 마련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3)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나)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	공공공지	창신동 266-2	-	증) 43.7	43.7	-	일반상업지역

- 공공공지 결정 사유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위치 : 창신동 266-2 - 면적 : 43.7㎡	· 지붕로변 보행결절점상에 대중교통 이용객 및 주인을 위한 보행공간 확보 및 일시적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공공공지 신설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5)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결정조서 등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다.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국 건축과(☎ 2148-2812)

라. 관련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자료와 같음)

◆ 성동구공고 제2016-785호

**도시관리계획(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안) 재
열람공고**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82호(2011.7.7.)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공고 제2015-706호(2015.8.6.)로 열람공고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공고 제2016-518호(2016.6.23.)로 재 열람공고한 우리 구 성수동1가 670-27 일대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 열람공고 합니다.
-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6일

성 동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성동구청 도시계획과 (☎02-2286-5561)

다. 열람내용 :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1)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2에 관한 결정사항

가) 특별계획구역2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성동구 성수동1가 670-27번지일대	27,341	-	27,341	서고 2011-182호 (2011.07.07.)	

주)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2) 토지이용에 및 시설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7,341	—	27,341	100	
주거지역	소 계	23,346	—	23,346	85.4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	40	—	40	0.2	
	준주거지역	23,306	—	23,306	85.2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995	—	3,995	14.6	

(2)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구의로 지 구	중심지 미관지구	성동교 ~잠실교	141,600 (2,154)	5,900 (180)	12	서고 제164호 (1982.4.22.)	

주) (괄호)는 특별계획구역내 사항임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 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16	35	주간선 도로	5,910	행당동 (제39광장)	자양동강변	일반 도로	건고 2493 (‘66.6.21)	왕십리길, 구의로
변경	대로	1	16	35 (40)	주간선 도로	5,910 (171)	행당동 (제39광장)	자양동강변	일반 도로	건고 2493 (‘66.6.21)	왕십리길, 구의로
기정	중로	1	133	20	집산 도로	2,270	성동교	성수동1가	일반 도로	건고198 (‘71.4.7)	광나룻길
변경	중로	1	133	20 (30)	집산 도로	2,270 (165)	성동교	성수동1가	일반 도로	건고198 (‘71.4.7)	광나룻길
기정	소로	3	—	6	집산 도로	258	성수동1가 674-12	성수동1가 685-199	일반 도로	서고 1994-30 (‘94.5.13)	유수지길
변경	중로	3	1	12	집산 도로	258 (151)	성수동1가 674-12	성수동1가 685-199 (671-289)	일반 도로	서고 1994-30 (‘94.5.13)	유수지길
신설	중로	2	1	15	집산 도로	144	성수동1가 670-155	성수동1가 671-289	일반 도로	—	하수도 1-1과 일부 중복결정

주) (괄호)는 특별계획구역내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 1-16	대로 1-16	◦ 특별계획구역2 구역내 도로 폭원 증가 - 폭원 : 35m → 40m	◦ 특별계획구역2 구역의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도로 확폭
중로 1-133	중로 1-133	◦ 특별계획구역2 구역내 도로 폭원 증가 - 폭원 : 20m → 30m	◦ 특별계획구역2 구역의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도로 확폭
소로 3-	중로 3-1	◦ 특별계획구역2 구역내 도로 폭원 증가 - 폭원 : 6m → 12m	◦ 특별계획구역2 구역의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도로 확폭
-	중로 2-1	◦ 특별계획구역2 구역내 도로 신설 - 폭원 : 15m / 연장 : 144m	◦ 특별계획구역2 구역의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나) 철도 : 변경없음

(2) 공공 · 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공공청사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①	공공청사	복합청사	성수동1가 670-27번지 일원	면적(㎡)	-	증) 2,226	2,226	-	
					높이	-	증) 지하2층부 ~지상2층부 까지	지하2층부 ~지상2층부 까지		

주) 입체적 결정하는 공공청사 면적은 수평투영 면적이며, 공공청사 연면적은 전용 · 공용 · 부대시설을 합한 면적이고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순부담률 기준(20% 이상)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음. 또한 제공위치, 성능수준, 설비 등은 향후 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시 확정하여 준공시 기부채납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공공청사	공공청사 신설	◦ 성수동 일대의 사회적경제와 토달패션사업을 결합하여 사회적 가치를 육성할 수 있도록 공공청사 입체적 결정

(3) 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

▪ 가구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호	가구번호	면 적(㎡)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SR-Ⅰ	SR-Ⅰ	23,370	증)98	23,468	◦ 특별계획구역②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 가구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가구번호	면적(㎡)	변경사유	비 고
변경	SR-①	SR-①	23,468	◦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반영한 특별 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가구면적 변경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건폐율 : 변경없음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준주거지역	60% 이하	60% 이하	
자연녹지지역	20% 이하	20% 이하	

(나) 용적률

▪ 용적률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주거 지역	기준용적률	300%	
	허용용적률	320%	
	상한용적률	400% 이하	
자연녹지지역	50% 이하	50% 이하	

▪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변경)

구 분		완화량	완화조건		
인센티브	우수디자인 (지역특성반영)	10%	◦ 주변지역과 연계한 동선계획 수립시(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등) ◦ 저층부와 고층부의 용도를 분리할 수 있는 배치계획 수립 ◦ 저층부 붉은벽돌을 활용한 디자인 계획 수립 ※ 공공건축가 자문을 거친 경우 우수디자인 인센티브를 인정함		
	장수명주택	3%	우수등급 이상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최대 12%	구 분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에너지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12%	8%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8%	4%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최대 3%	20% 초과	20%이하 15%초과	15%이하10%초과
			3%	2%	1%
허용용적률 최대		☐ 최대 20%이내에서 적용			

▪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항목 변경	◦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반영에 따른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항목 적용	

(다) 건축물 높이 : 변경

▪ 건축물 높이 결정(변경)조서

구 분	최 고 높 이			비 고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특별계획구역2	90m 이하	준주거지역	110m 이하	◦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적용
		자연녹지지역	4층 이하	◦ 도시계획조례 적용

▪ 건축물 높이 결정(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 준주거지역 최고높이 변경	◦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최고높이 변경	
◦ 자연녹지지역 최고층수 적용	◦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최고층수 적용	

다)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건축선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 배치 : 변경

(가)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 결정(변경)조서

구 분		건축한계선		비 고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간선부	간선도로변 (왕십리길)	5m	5m	◦ 주요 간선도로변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상징성 있는 가로경관 형성
이면부	유수지	10m	6m	◦ 서울숲과 연계한 보행 및 녹지의 연속성 확보 ◦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이면도로변	3m	6m	◦ 안전한 보행공간 조성 ◦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 유도

▪ 건축한계선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이면부	유수지	◦ 특별계획구역2 유수지변 건축한계선 폭원 변경	◦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반영한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건축한계선 폭원 변경
	이면도로변	◦ 특별계획구역2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 폭원 변경	

라)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 공지 및 통로 : 변경

(가) 공공보행통로

▪ 대지내 통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공공보행통로	- 원활한 보행흐름 유도 및 보행우회 방지 - 주요 녹지체계와의 연계성 고려 - 특별계획구역② : 폭 8m	공공보행통로 계획 폐지	

▪ 대지내 통로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공공보행통로	유수지변 공공보행통로 계획 폐지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반영한 특별계획 구역2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공공보행통로 계획 폐지	

4)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구역면적의 총 20% 이상 순부담

구 분	산출값	산출식
공공청사	대지지분	1,160.63㎡ 공동주택 대지면적 : 23,468㎡ 공공청사 전용면적 : 3,233.34㎡ (4.95%) 공공청사 대지지분 : 23,468㎡ X 4.95% = 1,160.63㎡
	연면적	5,957.75㎡ 준주거지역 : 4,401.47㎡, 자연녹지지역 : 1,556.28㎡
	건축비	2,267,000원/㎡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마련(안) 공공업무사무소 적용
	부지가액	8,843,190원/㎡ 준주거지역 : 성수동1가 670-155 4,580,000원/㎡ X 2 = 9,160,000원/㎡ 자연녹지지역 : 성수동1가 674-45 2,930,000원/㎡ X 2 = 5,860,000원/㎡ 공동주택부지내 용도지역별 면적대비 가중평균 (9,160,000원/㎡ X 21,215㎡ + 5,860,000원/㎡ X 2,253㎡) / 23,468㎡ = 8,843,190원/㎡
	환산부지면적	1,527.30㎡ 연면적 X 건축비 ÷ 부지가액 = 5,957.75㎡ X 2,267,000원/㎡ / 8,843,190원/㎡
	기부채납	2,687.93㎡ 대지지분 + 환산부지면적 = 1,160.63㎡ + 1,527.30㎡
도로	3,612㎡	총 도로면적 : 3,873㎡ (준주거지역 : 2,091㎡, 2종(7층) : 40㎡, 자연녹지지역 : 1,742㎡) 도로내 국공유지 제외면적 : 261㎡ (준주거지역 : 56㎡, 자연녹지지역 : 205㎡) 도로 기부채납면적 : 3,612㎡
합계	6,299.93㎡	= 6,299.93㎡ / 27,080㎡ X 100% = 23.3%

주) 공공청사 연면적은 전용·공용·부대시설을 합한 면적이고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순부담률 기준(20% 이상)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음 또한 제공위치, 성능수준, 설비 등은 향후 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시 확정하여 준공시 기부채납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동구공고 제2016-786호**

**도시관리계획(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안) 재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82호(2011.7.7.)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공고 제2016-517호(2016.6.23.)로 열람공고한 우리구 성수동1가 671-178 일대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6일
성 동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성동구청 도시계획과 (☎02-2286-5561)

다. 열람내용 :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1)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1에 관한 결정사항

가) 특별계획구역1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성동구 성수동1가 671-178 일대	17,329	-	17,329	서고 2011-182호 (2011.07.07.)	

주)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7,329	-	17,329	100.0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7,329	-	17,329	100.0	

(2)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구의로 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성동교 ~잠실교	141,600 (1,216)	5,900 (101)	12	서고 제164호 (1982.4.22.)	

주) (괄호)는 특별계획구역내 사항임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16	35	주간선 도로	5,910	행당동 (제39광장)	자양동강변	일반 도로	건고 2493 (‘66.6.21)	왕십리길, 구의로
변경	대로	1	16	35 (35~40)	주간선 도로	5,910 (108)	행당동 (제39광장)	자양동강변	일반 도로	건고 2493 (‘66.6.21)	왕십리길, 구의로
기정	소로	3	-	6	집산 도로	258	성수동1가 674-12	성수동1가 685-199	일반 도로	서고 1994-30 (‘94.5.13)	유수지길
변경	중로	3	1	12	집산 도로	258 (107)	성수동1가 674-12 (671-289)	성수동1가 685-199	일반 도로	서고 1994-30 (‘94.5.13)	유수지길
신설	중로	2	1	15	집산 도로	144	성수동1가 670-155	성수동1가 671-289	일반 도로	-	하수도 1-1과 일부 중복결정
신설	중로	3	2	12	집산 도로	157 (108)	성수동1가 656-741	성수동1가 685-62	일반 도로	-	하수도 1-3과 일부 중복결정

주) (괄호)는 특별계획구역내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 1-16	대로 1-16	◦ 특별계획구역1 구역내 도로 폭원 증가 - 폭원 : 35m → 40m	◦ 특별계획구역1 구역의 세부개발계획수 립에 따른 도로 확폭
소로 3-	중로 3-1	◦ 특별계획구역1 구역내 도로 폭원 증가 - 폭원 : 6m → 12m	◦ 특별계획구역1 구역의 세부개발계획수 립에 따른 도로 확폭
-	중로 2-1	◦ 특별계획구역1 구역내 도로 신설 - 폭원 : 15m / 연장 : 144m	◦ 특별계획구역1 구역의 세부개발계획수 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 3-2	◦ 특별계획구역1 구역내 도로 신설 - 폭원 : 12m / 연장 : 157m(구역내 108m)	◦ 특별계획구역1 구역의 세부개발계획수 립에 따른 도로 신설

(2) 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
 ▪ 가구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호	가구번호	면 적(㎡)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SR-㉒	SR-㉒	24,928	감)1,365	23,563	◦ 특별계획구역① ③, 획지계획	준주거지역

- 가구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가구번호	면적(㎡)	변경사유	비 고
변경	SR-㉒	SR-㉒	23,563	◦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반영한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가구면적 변경	

-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건폐율 : 변경없음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준주거지역	60% 이하	60% 이하	

- (나) 용적률

- 용적률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기준용적률	300%	300%	
허용용적률	320%	320%	
상한용적률	400% 이하	400% 이하	

-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변경)

구 분		완화량	완화조건		
인 센 티 브	우수디자인 (지역특성반영)	10%	◦ 주변지역과 연계한 동선계획 수립시(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등) ◦ 저층부와 고층부의 용도를 분리할 수 있는 배치계획 수립 ◦ 저층부 붉은벽돌을 활용한 디자인 계획 수립 ※ 공공건축가 자문을 거친 경우 우수디자인 인센티브를 인정함		
	장수명주택	3%	우수등급 이상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최대 12%	구 분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에너지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12%	8%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8%	4%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최대 3%	20% 초과	20%이하 15%초과	15%이하 10%초과
			3%	2%	1%
허용용적률 최대		최대 20%이내에서 적용			

▪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항목 변경	◦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반영에 따른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항목 적용	

(다) 건축물 높이 : 변경

▪ 건축물 높이 결정(변경)조서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준주거지역	90m 이하	110m 이하	◦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적용

▪ 건축물 높이 결정(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 특별계획구역1 최고높이 변경	◦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최고높이 변경	

다)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건축선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 배치 : 변경

▪ 건축한계선 결정(변경)조서

구 분		건축한계선		비 고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간선부	간선도로변 (왕십리길)	5m	5m	◦ 주요 간선도로변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상징성 있는 가로경관 형성
이면부	유수지	10m	6m	◦ 서울숲과 연계한 보행 및 녹지의 연속성 확보 ◦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이면도로변	3m	중로2-1호변 6m 중로3-2호변 3m	◦ 안전한 보행공간 조성 ◦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 유도

▪ 건축한계선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이면부	유수지 ◦ 특별계획구역1 유수지변 건축한계선 폭원 변경	◦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반영한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건축한계선 폭원 변경	
	이면도로변 ◦ 특별계획구역1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 폭원 변경 - 중로2-1호변 : 6m / 중로3-2호변 : 3m		

라)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 공지 및 통로 : 변경

▪ 대지내 통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공공보행 통로	- 원활한 보행흐름 유도 및 보행우회 방지 - 주요 녹지체계와의 연계성 고려 - 특별계획구역① : 폭 8m	- 유수지변 공공보행통로 폐지 - 특별계획구역①과 SR-②-1 획지 연결부에 왕십리로로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신설(폭15m) - 특별계획구역① : SR-②-1 획지와 연결부 12m, 그 외 : 15m - SR-②-1 획지 : 건축한계선 내 3m	

▪ 대지내 통로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공공보행 통로	- 유수지변 공공보행통로 계획 폐지 - 특별계획구역①과 SR-②-1 획지 연결부에 공공보행통로 신설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반영한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유수지변 공공보행통로 계획을 폐지하고 왕십리로로 연결되는 가로활성화촉에 공공보행통로 신설	

4)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구역면적의 총 14% 이상 순부담

구 분	산출값	산출식
공 공 청 사	대지지분	788.21㎡ 공동주택 대지면적 : 13,590㎡ 공공청사 전용면적 : 2,325.28㎡(5.80%) 공공청사 대지지분 : 13,590㎡ X 5.80% = 788.21㎡
	연면적	4,858.16㎡
	건축비	2,313,000원/㎡
	부지가액	12,294,000원/㎡
	환산부지면적	914.02㎡
	기부채납	1,702.23㎡
도로	1,178㎡	총 도로면적 : 3,739㎡ 도로 기부채납면적 : 1,178㎡ (도로내 국공유지 제외면적 : 2,561㎡)
합계	2,880.23㎡	(공공청사 + 도로) / 구역면적 → (1,702.23㎡ + 1,178㎡) / 14,768㎡ X 100% = 19.5%

주1) 공공청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로 공공기여

주2) 공공청사 연면적은 전용·공용·부대시설을 합한 면적이고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순부담률 기준(14% 이상)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음. 또한 제공위치, 성능수준, 설비 등은 향후 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시 확정하여 준공시 기부채납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봉구공고 제2016-942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변경(안) 열람공고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08.06.)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08호(2012.05.03.)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도봉구 쌍문동 산240-5 일대 쌍문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6년 10월 6일

도 봉 구 청 장

1. 공 원 명 : 쌍문근린공원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산240-5번지 일대
3. 변경규모 : 1,841㎡
4. 주요시설 변경내용

<신설>

- 조경시설 : 관찰데크(2) 329㎡ (3,476㎡ → 3,805㎡)
- 교양시설 : 이동식도서관(13) 28.56㎡ (2,422㎡ → 2,450.56㎡)
- 편의시설 : 주차장(거-4) 961㎡ (777㎡ → 1,738㎡)
- 유흥시설 : 놀이터(사-2) 880㎡ (1,162㎡ → 2,042㎡)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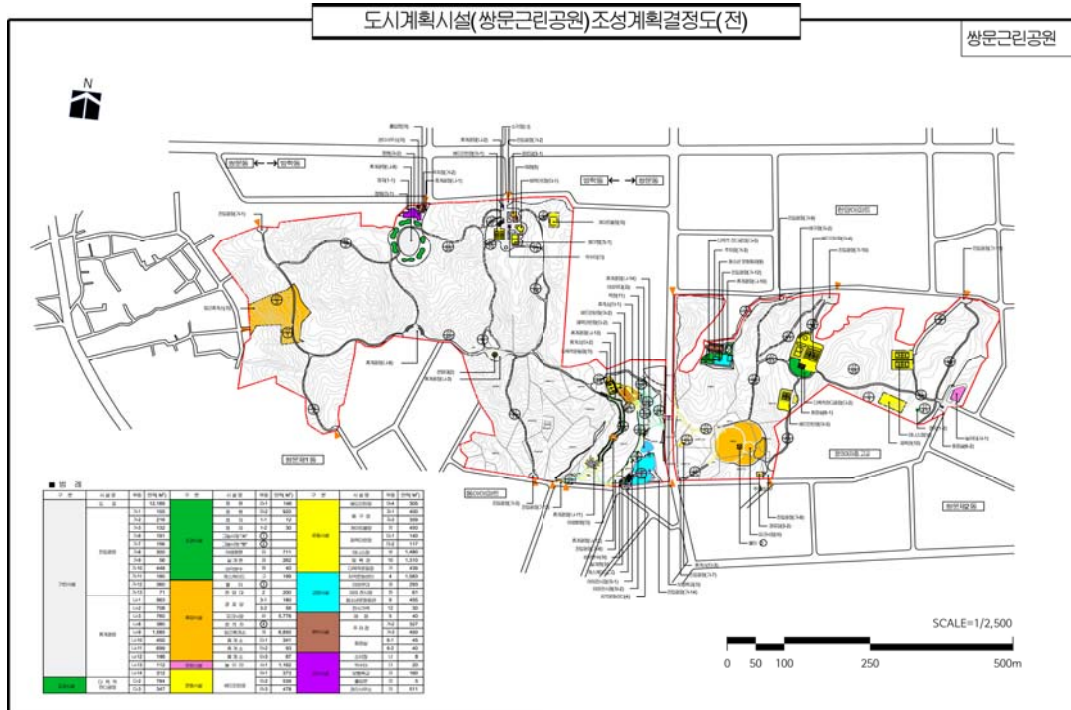
- 휴양시설 : 피크닉장(바) (감) 28.56㎡ (5,778㎡ → 5,749.44㎡)
휴게소(터) (감) 341㎡ (501㎡ → 160㎡)
- 운동시설 : 배드민턴장(아) (감) 539㎡ (1,695㎡ → 1,156㎡)
- 녹 지 : (감) 1,290㎡ (278,942㎡ → 277,652㎡)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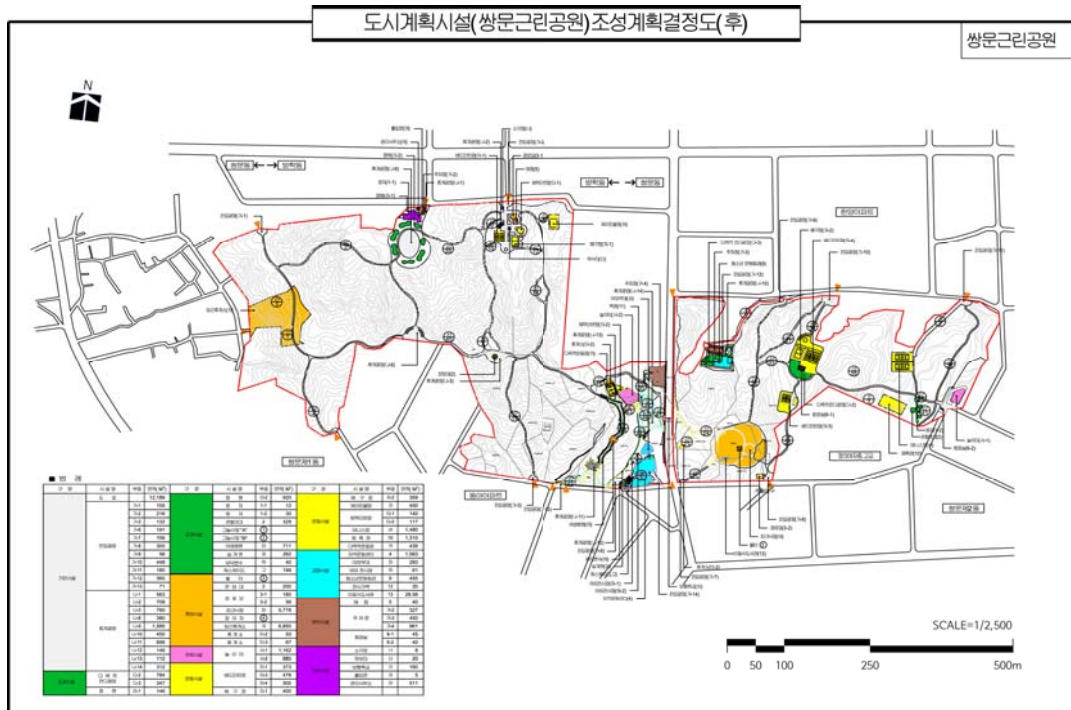
- 휴양시설 : 휴게소(터-1) 341㎡
- 운동시설 : 배드민턴장(아-2) 539㎡

5.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18:00)
6. 열람장소 : 도봉구청 공원녹지과(☎ 02-2091-3754/도봉구 마들로 656)
7. 본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공원녹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계획도(조성전)



☐ 조성계획도(조성후)



쌍문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도봉구 쌍문동 산 240-5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기반 시설	계	328,018.00	48,370.00	14	3,579.59	7,304.57	39	328,018.00	49,660.00	15	3,608.15	7,333.13	39	시설면적 증가 1,290m2			
	소 계	20,455.00	20,455.00					20,455.00	20,455.00								
	도 로	12,170.00	12,170.00					12,170.00	12,170.00								
	광 장	8,285.00	8,285.00					8,285.00	8,285.00								
조 경 시 설	조 경 시 설	3,476.00	3,476.00	2	23.36	23.36	15	3,805.00	3,805.00	2	23.36	23.36	15	증329㎡			
	휴 양 시 설	13,565.00	13,412.00	3	283.00	353.00	23	13,195.44	13,042.44	3	283.00	353.00	23	감369.56㎡			
	유 희 시 설	1,162.00	1,162.00					2,042.00	2,042.00					증880㎡			
	운 동 시 설	6,390.00	6,060.00	2	1,110.00	1,110.00		5,851.00	5,521.00	2	1,110.00	1,110.00		감539㎡			
편 의 시 설	교 양 시 설	2,422.00	2,234.00	3	1,701.77	5,356.75		2,450.56	2,262.56	4	1,730.33	5,385.31		증28.56㎡			
	편 의 시 설	902.00	867.00	3	106.00	106.00		1,863.00	1,828.00	3	106.00	106.00		증961㎡			
	관 리 시 설	704.00	704.00	1	355.46	355.46	1	704.00	704.00	1	355.46	355.46	1				
	녹 지 및 기타	278,942.00						277,652.00						감1,290㎡			
시 설 을 (법정 40%)		48,370m2 / 328,018m2 x 100 = 14.75%						49,660m2 / 328,018m2 x 100 = 15.14%									
건 폐 을 (법정 10%)		3,579.59m2 / 328,018m2 x 100 = 1.09%						3,608.15m2 / 328,018m2 x 100 = 1.10%									

2. 시설조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비면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합 계			328,018.00	48,370.00		14	3,579.59 7,304.57	39	
소계			20,455.00	20,455.00					
도로		39개 노선	12,170.00	12,170.00					
소계			8,285.00	8,285.00					
기 반 시 설	가	12개소	2,570.00	2,570.00					
	가-1	방학 신88-5 외 1	(155.00)	(155.00)					
	가-2	방학 신90-31 외 1	(216.00)	(216.00)					
	가-3	쌍문 신248-3	(132.00)	(132.00)					
	가-6	쌍문 267답	(191.00)	(191.00)					
	가-7	쌍문 신238-1	(156.00)	(156.00)					
	가-8	쌍문 신83-4 외 2	(300.00)	(300.00)					
	가-9	쌍문 신83-2	(56.00)	(56.00)					
	가-10	쌍문 신83-2	(448.00)	(448.00)					
	가-11	쌍문 신83-1	(180.00)	(180.00)					
	가-12	쌍문 신80	(360.00)	(360.00)					
	가-13	쌍문 신276	(71.00)	(71.00)					
		쌍문 신240	(305.00)	(305.00)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대면적	연면적								비대면적	연면적						
유계광장	나	10개소	5,715.00	5,715.00						나	10개소	5,715.00	5,715.00										
	나-1	방학 신90-14	(563.00)	(563.00)						나-1	방학 신90-14	(563.00)	(563.00)										
	나-2	방학 신90-31 외 1	(708.00)	(708.00)						나-2	방학 신90-31 외 1	(708.00)	(708.00)										
	나-3	쌍문 신249 외 2	(760.00)	(760.00)						나-3	쌍문 신249 외 2	(760.00)	(760.00)										
	나-8	방학 신90-39	(380.00)	(380.00)						나-8	방학 신90-39	(380.00)	(380.00)										
	나-9	방학 신90-35	(1,585.00)	(1,585.00)						나-9	방학 신90-35	(1,585.00)	(1,585.00)										
	나-10	쌍문 신80	(450.00)	(450.00)						나-10	쌍문 신80	(450.00)	(450.00)										
	나-11	쌍문 신241	(699.00)	(699.00)						나-11	쌍문 신241	(699.00)	(699.00)										
	나-12	쌍문 신241	(146.00)	(146.00)						나-12	쌍문 신241	(146.00)	(146.00)										
	나-13	쌍문 신241-1	(112.00)	(112.00)						나-13	쌍문 신241-1	(112.00)	(112.00)										
	나-14	쌍문 산 240	(312.00)	(312.00)						나-14	쌍문 산 240	(312.00)	(312.00)										
	소계			3,476.00	3,476.00		2	23.36	23.36	15			3,805.00	3,805.00		2	23.36	23.36	15	증329㎡			
	다목적잔디광장	다	2개소	1,131.00	1,131.00						다	2개소	1,131.00	1,131.00									
		다-2	쌍문 신83-3 외 1	(784.00)	(784.00)						다-2	쌍문 신83-3 외 1	(784.00)	(784.00)									
다-3		쌍문 신80	(347.00)	(347.00)						다-3	쌍문 신80	(347.00)	(347.00)										
라		2개소	1,066.00	1,066.00						라	2개소	1,066.00	1,066.00										
라-1		방학 신90-35 외 1	(146.00)	(146.00)						라-1	방학 신90-35 외 1	(146.00)	(146.00)										
정원	라-2	방학 신90-35 외 1	(920.00)	(920.00)						라-2	방학 신90-35 외 1	(920.00)	(920.00)										
	조경시설																						

구 분	변 경						전						변 경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정자	1	2개소	42.00	42.00		2	23.36	23.36		1	2개소	42.00	42.00		2	23.36	23.36			
	1-1	방학 산 90-14	(12.00)	(12.00)	목구조 (초정)	(1)	(6.36)	(6.36)		1-1	방학 산 90-14	(12.00)	(12.00)	목구조 (초정)	(1)	(6.36)	(6.36)			
	1-2	쌍문 산83-1	(30.00)	(30.00)	목구조	(1)	(17.00)	(17.00)		1-2	쌍문 산83-1	(30.00)	(30.00)	목구조	(1)	(17.00)	(17.00)			
	관찰데크	2	쌍문 산83-1							2	쌍문 산83-1	329.00	329.00	목재					감329㎡ (신규)	
그늘시렁" A"	①	10개소			목재				10	①	10개소			목재					10	
	②	5개소			목재			5	②	5개소			목재					5		
	마	쌍문 산 241	711.00	711.00						마	쌍문 산 241	711.00	711.00							
	퍼	쌍문 산 241	262.00	262.00						퍼	쌍문 산 241	262.00	262.00							
비덕분수	허	쌍문 담 267	40.00	40.00						허	쌍문 담 267	40.00	40.00							
	벽천	11	쌍문 산 241	25.00	25.00	철근콘크리트조				11	쌍문 산 241	25.00	25.00	철근콘크리트조						
	캐스케이 드		쌍문 산 240-5	199.00	199.00	철근콘크리트조				고	쌍문 산 240-5	199.00	199.00	철근콘크리트조						
	소계			13,565.00	13,412.00		3	283.00	353.00	23			13,195.44	13,042.44		3	283.00	353.00	23	감369.56㎡
후 양 시 설	쉼터	③	쌍문 산82		목재					③	쌍문 산82			목재						
	전망대	2	쌍문 산249	200.00	110.00	목구조	1	110.00	180.00	2	쌍문 산249	200.00	110.00	목구조	1	110.00	180.00			
		3	2개소	236.00	173.00		2	173.00	173.00	3	2개소	236.00	173.00		2	173.00	173.00			
	경로담	3-1	방학 산90-31	(180.00)	(117.00)	조적조	(1)	(117.00)	(117.00)	3-1	방학 산90-31	(180.00)	(117.00)	조적조	(1)	(117.00)	(117.00)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구조	건축물 (㎡)			공작물 (기)	
							비대면적	연면적			비대면적	연면적			
피크닉장	3-2	쌍문 산238-7	(56.00)	(56.00)	조적조	(1)	(56.00)	(56.00)			(1)	(56.00)	(56.00)		
	바	쌍문 산82	5,778.00	5,778.00						5,749.44					감28.56㎡
	④	전지역			목재										
	저	쌍문 산283-10, 11	6,850.00	6,850.00					정지2 의자21					정지2 의자21	
	터	3개소	501.00	501.00						160.00					감341㎡
휴게소	터-1	쌍문 산79-6	(341.00)	(341.00)											감341㎡
	터-2	쌍문 산79	(93.00)	(93.00)					(93.00)						
	터-3	쌍문 산238-13	(67.00)	(67.00)					(67.00)						
	소계			1,162.00	1,162.00					2,042.00					증880㎡
놀이터	사	1개소	1,162.00	1,162.00						2,042.00					증880㎡
	사-1	쌍문 산152-2	(1,162.00)	(1,162.00)					(1,162.00)						
	사-2	쌍문 산79-6외 1							(880.00)						증880㎡ (신규)
	소계		6,390.00	6,060.00		2	1,110.00			5,521.00		2	1,110.00	1,110.00	감539㎡
베드민턴장	아	4개소(15면)	1,695.00	1,695.00						1,156.00					감539㎡
	아-1	방학 산90-31 외 1	(373.00)	(373.00)					(373.00)						
	아-2	쌍문 산79-6 외 1	(539.00)	(539.00)											
	아-3	쌍문 산83-3	(478.00)	(478.00)					(478.00)						감539㎡
	아-4	쌍문 산 83-2	(305.00)	(305.00)					(305.00)						

구 분	변 경						전 경						변 경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배구장	자	2개소	759.00	769.00						자	2개소	759.00	769.00						
	자-1	방학 산90-31	(400.00)	(400.00)						자-1	방학 산90-31	(400.00)	(400.00)						
	자-2	쌍문 산 83-2	(369.00)	(369.00)						자-2	쌍문 산 83-2	(369.00)	(369.00)						
	차	방학 산90-3	450.00	450.00						차	방학 산90-3	450.00	450.00						
게이트볼 장																			
다목적은 동장	카	쌍문 산79-6 외 1	439.00	439.00						카	쌍문 산79-6 외 1	439.00	439.00						
체력단련 장	타	2개소	257.00	237.00		1	120.00	120.00		타	2개소	257.00	237.00		1	120.00	120.00		
	타-1	방학 산90-31	(140.00)	(120.00)	철골조	(1)	(120.00)	(120.00)		타-1	방학 산90-31	(140.00)	(120.00)	철골조	(1)	(120.00)	(120.00)		
	타-2	쌍문 산79-6외2	(117.00)	(117.00)						타-2	쌍문 산79-6외2	(117.00)	(117.00)						
	버	쌍문 산83-1	1,480.00	1,480.00						버	쌍문 산83-1	1,480.00	1,480.00						
테니스장																			
체육관	10	쌍문 산83-1, 83-18	1,310.00	990.00	철골조	1	990.00	990.00		10	쌍문 산83-1, 83-18	1,310.00	990.00	철골조	1	990.00	990.00		
소계			2,422.00	2,234.00		3	1,701.77	5,356.75				2,450.56	2,262.56		4	1,730.33	5,385.31		증28.56㎡
지역문화 센터	4	쌍문 산240-5	1,583.00	1,395.00	철근콘크 리트조	2	1,247.00	4,160.00		4	쌍문 산240-5	1,583.00	1,395.00	철근콘크 리트조	2	1,247.00	4,160.00		
아외무대	파	쌍문 산240	293.00	293.00						파	쌍문 산240	293.00	293.00						
	하	쌍문 267 담	61.00	61.00						하	쌍문 267 담	61.00	61.00						
	하-1	쌍문 267 담	(30.00)	(30.00)						하-1	쌍문 267 담	(30.00)	(30.00)						
	하-2	쌍문 267 담	(31.00)	(31.00)						하-2	쌍문 267 담	(31.00)	(31.00)						
전시7벽	12	쌍문 산241	30.00	30.00						12	쌍문 산241	30.00	30.00						
청소년문 화화관	9	쌍문 산80	455.00	455.00	철근콘크 리트조	1	454.77	1,196.75		9	쌍문 산80	455.00	455.00	철근콘크 리트조	1	454.77	1,196.75		

교 양 시 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편의시설	이동식 도서관	13	쌍문 산82						13	쌍문 산82	28.56	28.56	경량 철구조	1	28.56	28.56	증28.56㎡ (신규)	
	소계			902.00	867.00		3	106.00	106.00			1,828.00		3	106.00	106.00	증961㎡	
	매점	5	방학 산90-31	40.00	20.00	조적조	1	36.00	36.00	5	방학 산90-31	40.00	20.00	조적조	1	36.00	36.00	
	주차장	거	2개소	777.00	777.00					거	3개소	1,738.00	1,738.00					증961㎡
		거-2	방학 산90-14	(327.00)	(327.00)					거-2	방학 산90-14	(327.00)	(327.00)					
		거-3	쌍문 산80	(450.00)	(450.00)					거-3	쌍문 산80	(450.00)	(450.00)					
		거-4	쌍문 산79							거-4	쌍문 산79	(961.00)	(961.00)					증961㎡ (신규)
	화장실	6	2개소	85.00	70.00		2	70.00	70.00	6	2개소	85.00	70.00		2	70.00	70.00	
	관리시설	화장실	6-1	쌍문 산83-2	(45.00)	(35.00)	조적조	(1)	(35.00)	(35.00)	6-1	쌍문 산83-2	(45.00)	(35.00)	조적조	(1)	(35.00)	(35.00)
			6-2	쌍문 산152-2	(40.00)	(35.00)		(1)	(35.00)	(35.00)	6-2	쌍문 산152-2	(40.00)	(35.00)		(1)	(35.00)	(35.00)
소계					704.00	704.00		1	355.46	355.46	1		704.00	704.00		1	355.46	355.46
소각장		너	방학 산90-31	8.00	8.00					너	방학 산90-31	8.00	8.00					
악수터		더	방학 산90-31	20.00	20.00					더	방학 산90-31	20.00	20.00					
보행육교		러	쌍문 산240-외2	160.00	160.00	철근콘크리트조				러	쌍문 산240-외2	160.00	160.00	철근콘크리트조				
출입문		머	방학 산90-14	5.00	5.00				1	머	방학 산90-14	5.00	5.00				1	
관리사무소		어	방학 산90-14외 1	511.00	511.00	SRC	1	355.46	355.46	어	방학 산90-14외 1	511.00	511.00	SRC	1	355.46	355.46	
소계				278,942.00								277,652.00						감 1,290㎡
녹지 및 기타				278,942.00								277,652.00						감 1,290㎡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5,175.00	12,170.00				
변경					5,175.00	12,170.00				
당초		소 계			458.00	2,787.00				
변경					458.00	2,787.00				
당초	소로	3	1	6	134.0	958.00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청소년문화의집 (9)	구거부지 288㎡ 포함
당초		3	2	6	254.0	1,528.00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체육관(10)	
당초		3	4	1.5	14.0	21.00	진입로	산책로-44	지역문화 센터(4)	
당초		3	5	4.5- 6.5	40.0	220.00	연결로	진입광장 (가-14)	캐스케이드 (고)	
당초		3	6	1.5	8.0	12.00	진입로	721-2도	캐스케이드 (고)	
당초		소 계			4,717.00	9,383.00				
변경					4,717.00	9,383.00				
당초	산책로	-	1	1.5	433.0	649.00	산책로	진입광장 (가-1)	휴게광장 (나-8)	
당초		-	2	1.5	351.0	527.00	연결로	산책로-1	산악자전거 코스(저)	
당초		-	3	1.5	106.0	159.00	진입로	임간휴게소 (저)	산책로-1	
당초		-	4	1.5	112.0	168.00	산책로	-	산책로-1	
당초		-	7	1.5	37.0	55.00	연결로	산악자전거 코스(저)	산악자전거 코스(저)	
당초		-	9	1.5	45.0	67.00	산책로	진입광장 (가-2)	산악자전거 코스(저)	
당초		-	10	1.5	31.0	46.00	산책로	배드민턴장 (아-1)	산악자전거 코스(저)	
당초		-	12	1.5	57.0	85.00	연결로	배구장	산악자전거 코스(저)	
당초		-	13	1.5	24.0	36.00	산책로	산악자전거 코스(저)	게이트볼장	
당초		-	14	1.5	66.0	99.00	연결로	산악자전거 코스(저)	산악자전거 코스(저)	
당초		-	16	2.5	144.0	360.00	산책로	산책로-19	-	
당초		-	17	1.5	233.0	349.00	산책로	진입광장 (가-3)	산악자전거 코스(저)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	19	2	367.0	734.00	산책로	진입광장 (가-6)	산책로-17	
당초		-	20	2-3	40.0	123.00	연결로	산책로-16	산책로-46	
당초		-	21	2.5	56.0	140.00	연결로	진입광장 (가-7)	산책로-24	
당초		-	24	2-5	311.0	997.00	산책로	진입광장 (가-8)	보행육교 (러)	
당초		-	25	1.5	181.0	271.00	산책로	진입광장 (가-8)	배드민턴장 (아-3)	
당초		-	26	1.5	243.0	364.00	산책로	진입광장 (가-9)	산책로-24	
당초		-	27	1.5	167.0	250.00	산책로	진입광장 (가-10)	산책로-26	
당초		-	33	1.5	58.0	87.00	연결로	산책로-26	다목적광장 (다-2)	
당초		-	34	1.5	71.0	106.00	산책로	진입광장 (가-10)	배드민턴장 (아-4) 진입로	
당초		-	35	1.5	128.0	192.00	연결로	다목적광장	소로(소-3)	
당초		-	36	1.5	60.0	90.00	연결로	소로(소-3)	산책로-38	
당초		-	38	1.5	270.0	405.00	산책로	진입광장 (가-11)	정의여중고	
당초		-	39	2	610.0	1,220.00	산책로	휴게광장 (나-8)	휴게광장 (나-3)	
당초		-	40	4-5	120.0	459.00	산책로	휴게광장 (나-8)	산책로-7	
당초		-	41	2	17.0	34.00	산책로	산책로-38	정자(1-2)	
당초		-	42	2	30.0	60.00	진입로	진입광장 (가-13)	휴게광장 (나-11)	
당초		-	43	2.5	10.0	25.00	연결로	산책로-19	배드민턴장 (아-2)	
당초		-	44	4	193.0	772.00	산책로	-	산책로-19	
당초		-	45	2	35.0	70.00	연결로	산책로-44	휴게광장 (나-14)	
당초		-	46	2	30.0	60.00	연결로	휴게소 (터-1)	휴게광장 (나-14)	
당초		-	47	4	81.0	324.00	산책로	산책로-16	보행육교 (러)	

◆ 노원구공고 제2016-78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42호(2016.8.11.)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하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6-24호(2016.3.24.)로 실시계획인가고시(최초),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6-69호(2016.7.28)로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최종)한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산110번지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 동네뒷산 공원조성]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편입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련내용은 노원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공고 기한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6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산110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2) 명 칭 : 불암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 3) 사업내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다. 사업규모 : 500㎡(당초 708㎡)

라.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공고방법 : 시보게재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노원구청 공원녹지과(☎2116-3943)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등 권리명세 : 별첨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불암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최초 실시계획인가고시 : 2016. 3. 24.

기 정										변 경				
소제지 연번	소재지	지목	이용 상황	지적 (㎡)	편입면적 (공유자분)	관 계 인			소유자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목	이용 상황	지적 (㎡)	편입면적 (공유자분)	성 명	성 명	주 소
1	중계동 산110	임야	임야	8,926	708							이회경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61길 19, 502호(정답동, 이니그마빌2차)
						1	중계동 산110	임야	임야	8,926	500	이회경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61길 19, 502호(정답동, 이니그마빌2차)

◆ 노원구공고 제2016-786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초안산 근린공원 내 사적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토지보상)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문화재청고시 제2002-14호(2002.3.9)로 문화재 지정 결정되고, 문화재청고시 제2008-160호(2008. 12. 10)호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변경 결정된 사적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보호구역내에 편입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 24-13번지의 2필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련내용은 노원구청 문화체육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 기한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6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 24-13외 2필지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초안산 근린공원 내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토지보상

다. 사업규모 : 4,998㎡

라. 사업의 내용 : 토지보상

마.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바. 사업착수 및 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7. 12. 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자 등 권리명세 : 별첨 조서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자. 열람장소 : 노원구청 문화과 (☎ 2116 - 3787)

차. 공고방법 : 시보게재

토지조서 (2016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 구역 사유지 토지보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전체면적 (㎡)	편입면적 (㎡)	2016년도 보상대상면적 (㎡)	소유자 성명	주 소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비고
3	월계동	산24-13	임야	2,753	2,753	2,753	한영자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25길 ** (쌍문동)				
12	월계동	산47-13	임야	450	450	450	김정심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67길 56, ****동***호 (염정동, 이너스내에아파트)				
							류창수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64길 15, ****동****호 (이촌동, 엘지한강자이아파트)				
							유세준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67, ***동 ****호 (용산동5가 파크타워)				
							은영례	인천시 연수구 해송로30번길 19, ****동***호 (송도동, 송도웰카운티3단지아파트)				
13	월계동	산68-2	임야	1,795	1,795	1,795	조재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75, ****동 ****호 (반포동, 래미안포스티지)				
							영화기업㈜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2로 ** (당산동5가)				
							조영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70, ****동 ***호 (반포동, 반포자이 아파트)				
							조승현	서울 강남구 학동로11길 **, ***호 (논현동, 브라운스톤 로얄스위트논현)				
							조동현	서울 강남구 학동로11길 **, ***호 (논현동, 브라운스톤 로얄스위트논현)				
							조주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29길 **, ***호 (압구정동, 대림빌라트)				
							조상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29길 **, ***호 (압구정동, 대림빌라트)				

◆ 노원구공고 제2016-787호
도시계획시설사업(광장 조성) 실시계획 인가 추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67호(2016.09.01)로 (변경)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광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광장 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저촉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련내용은 노원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공고 기한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6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9-61번지 외 7필지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광장 조성)

다. 면 적 : 7,535㎡

라. 사업의 내용 : 토지 및 물건보상, 광장조성

마.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바. 사업착수 및 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8. 12. 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등 조서 : 별첨

아.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14일간

자. 열람장소 : 노원구청 공원녹지과(☎ 2116-3964)

차. 공고방법 : 시보게재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주 소	성명		
계			7,535.0	7,535.0							
1	공릉동 39-2	철	63.0	63.0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2	공릉동 38-5	철	456.0	456.0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3	공릉동 39-63	철	7.0	7.0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1	한국철도공사					
4	공릉동 37-2	철	1,308.0	1,308.0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공사					
5	공릉동 37-5	철	438.0	438.0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3	한국철도공사					
6	공릉동 29-61	철	804.0	804.0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4	한국철도공사					
7	공릉동 38-13	철	532.0	532.0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5	한국철도공사	노원구 노원로 62, 310동202호(공릉동, 효성화이트빌@)		유남규	임차인	
8	공릉동 29-51	철	3,927.0	3,927.0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노원구 노원로 62, 310동203호(공릉동, 효성화이트빌@)		유남규	임차인	

별첨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공릉동	38-13	사무실	컨테이너	21	㎡	유남규	노원구 공릉로 62, 310동202호 (공릉동, 효성화운트빌@)			
2	공릉동	38-13	사무실	컨테이너	21	㎡	유남규	노원구 공릉로 62, 310동203호 (공릉동, 효성화운트빌@)			
3	공릉동	38-13	사무실	컨테이너	42	㎡	유남규	노원구 공릉로 62, 310동203호 (공릉동, 효성화운트빌@)			
4	공릉동	38-13	수도시설		1	식	유남규	노원구 공릉로 62, 310동203호 (공릉동, 효성화운트빌@)			
5	공릉동	38-13	전자저울		1	개소	유남규	노원구 공릉로 62, 310동203호 (공릉동, 효성화운트빌@)			
6	공릉동	38-13	가림막	비계/철판	100	㎡	유남규	노원구 공릉로 62, 310동203호 (공릉동, 효성화운트빌@)			
7	공릉동	38-13	공병		1	식	유남규	노원구 공릉로 62, 310동203호 (공릉동, 효성화운트빌@)			
8	공릉동	38-13	공피		1	식	유남규	노원구 공릉로 62, 310동203호 (공릉동, 효성화운트빌@)			
9	공릉동	29-51	공작물	목조	25	㎡	유남규	노원구 공릉로 62, 310동203호 (공릉동, 효성화운트빌@)			
10	공릉동	29-51	바닥	시멘트	1	식	유남규	노원구 공릉로 62, 310동203호 (공릉동, 효성화운트빌@)			
11	공릉동	29-51	골재		1	식	유남규	노원구 공릉로 62, 310동203호 (공릉동, 효성화운트빌@)			
12	공릉동	29-51	시멘트		1	식	유남규	노원구 공릉로 62, 310동203호 (공릉동, 효성화운트빌@)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관리내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3	공릉동	29-51	레미탈		1	식	유남규	노원구 공릉로 62, 310동203호(공릉동, 효성화운트빌@)			
14	공릉동	29-51	벽돌		1	식	유남규	노원구 공릉로 62, 310동203호(공릉동, 효성화운트빌@)			
15	공릉동	29-51	벽시멘트		1	식	유남규	노원구 공릉로 62, 310동202호(공릉동, 효성화운트빌@)			
16	공릉동	39-2	담장	메쉬웬스	1	식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17	공릉동	39-2	항나무		2	주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18	공릉동	39-2	측백나무		9	주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19	공릉동	38-5	담장	비계/철판	1	식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20	공릉동	38-5	담장	메쉬웬스	1	식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21	공릉동	38-5	항나무		1	주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22	공릉동	38-5	벚나무		3	주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23	공릉동	38-5	산수유		1	주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24	공릉동	38-5	측백나무		51	주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25	공릉동	37-2	벚나무		4	주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관리내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26	공릉동	37-2	은행나무		2	주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27	공릉동	37-2	느릅나무		1	주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28	공릉동	37-2	양버즘나무		2	주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29	공릉동	37-2	향나무		14	주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30	공릉동	37-2	단풍나무		2	주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31	공릉동	37-2	측백나무		55	주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32	공릉동	38-13	벗나무		1	주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33	공릉동	38-13	목련		1	주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34	공릉동	29-51	화장실	블록	58.6	㎡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35	공릉동	29-51	출입문	주철	1	식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36	공릉동	29-51	담장	콘크리트	20	m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37	공릉동	29-51	담장	비계/철판	1	식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38	공릉동	29-51	비단	블록	1	식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관리내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39	공릉동	29-51	비담	콘크리트	1	식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40	공릉동	29-51	은행나무		4	주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41	공릉동	29-51	단풍나무		1	주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42	공릉동	29-51	목련		1	주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43	공릉동	29-51	향나무		9	주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44	공릉동	29-51	수수꽃다리		1	주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45	공릉동	29-51	복자기		1	주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46	공릉동	29-51	단풍나무		1	주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47	공릉동	29-51	측백나무		4	주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48	공릉동	29-51	구상나무		3	주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49	공릉동	37-5	화단	자연석	1	식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50	공릉동	37-5	비담	콘크리트	1	식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51	공릉동	37-5	심화배		1	주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52	공릉동	37-5	항나무		1	주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53	공릉동	29-61	구화랑대역사	블록	154.9	m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54	공릉동	29-61	수도시설		1	식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55	공릉동	29-61	전기시설		1	식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56	공릉동	29-61	담장	콘크리트	7	m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57	공릉동	29-61	비단	블록	1	식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58	공릉동	29-61	비단	콘크리트	1	식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59	공릉동	29-61	싯화백		2	주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60	공릉동	29-61	항나무		4	주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61	공릉동	29-61	무궁화		1	주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62	공릉동	29-61	목련		1	주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63	공릉동	29-61	측백나무		1	주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64	공릉동	29-61	독일가문비		1	주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 감정평가 실시 결과 물건의 내용 변동될 수 있음

◆ 양천구공고 제2016-1053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를 위한 열람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1. 양천구고시 제2016-46호(2016.7.21)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 공고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를 합니다.
3. 토지(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4.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6일
양 천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나. 사업개요

- 사업의 명칭 : 신월동 어르신복지관 건립
- 사업의 위치 : 신월3동 158-4 ~ 7,8
신월3동 158-9 ~ 10
신월3동 158-32 ~ 34
신월3동 158-48
- 사업의 규모 : 면적 1,556.4㎡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양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신정동, 양천구청)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 6개월

마.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 :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바.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사. 열람장소 : 양천구청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과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2620-33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 적 (㎡)	소 유 권			이해관계인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1	신월동 158-4 복지다세대 라동 제1층 제1호	대	26.82	26.82	허복순	서울시 양천구 가로공원로60가길 12-3, 라동 101호 (신월동, 복지다세대)	170.9분의 26.82	강서농업 협동조합	강서구 금남화로 127(방화동)(양천지점)	근저당권 설 정
2	신월동 158-4 복지다세대 라동 제1층 제2호	대	30.14	30.14	나문채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25길 46 (방배동)	170.9분의 30.14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중구 을지로 29 (을지로1가)	근저당권 설 정
3	신월동 158-4 복지다세대 라동 제2층 제1호	대	26.83	26.83	방승만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20길 43-9, 2층 (북기좌동)	170.9분의 26.83			
4	신월동 158-4 복지다세대 라동 제2층 제2호	대	30.15	30.15	김래연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28길 15, 402호 (구의동)	170.9분의 30.15	주식회사 우리는행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분당금곡지점)	근저당권 설 정
5	신월동 158-4 복지다세대 라동 제2층 제1호	대	26.82	26.82	정명자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310, 27동 504호 (개포동, 주공아파트)	170.9분의 26.82	주식회사 우리는행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분당금곡지점)	근저당권 설 정
6	신월동 158-4 복지다세대 라동 제2층 제2호	대	30.14	30.14	변용구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230, 6동 405호 (대치동, 우성아파트)	170.9분의 30.14	주식회사 우리는행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수지지점)	근저당권 설 정
7	신월동 158-5 복지다세대 나동 제1층	대	34.57	34.57	박선홍	서울시 종로구 동망산길 19, 104동 306호 (창신동, 쌍용아파트)	103.7분의 34.57	주식회사 우리는행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동백역지점)	근저당권 설 정
8	신월동 158-5 복지다세대 나동 제2층	대	34.57	34.57	연춘홍	서울시 양천구 가로공원로60가길 14, 2층 (신월동, 복지다세대)	103.7분의 34.57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9-1 (신월북지점)	근저당권 설 정
9	신월동 158-5 복지다세대 나동 제2층	대	34.56	34.56	정재현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7길 13 (풍납동)	103.7분의 34.56	잠실세무서	송파구 강동대로 62	압류
10	신월동 158-6 복지다세대 마동 제1층 제1호	대	34.85	34.85	최세라	서울시 성동구 무학봉길 88(하왕십리동)	209.1분의 34.85	도림신용 협동조합	영등포구 신길로 149 (신길동)	근저당권 설 정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역면적 (㎡)	편입면 적 (㎡)	소 유 권			이해관계인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관리내용
11	신월동 158-6 복지다세대 마동 제1층 제2호	대	34.85	34.85	이승준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3길 26, 201호 (역삼동, 역삼한스빌아파트)	209.1분의 34.85			
12	신월동 158-6 복지다세대 마동 제2층 제1호	대	34.85	34.85	이승규	서울시 양천구 달맞이길 32-2(신월동)	209.1분의 34.85	양동새마을 금고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5-83	근저당권 설 정
13	신월동 158-6 복지다세대 마동 제2층 제2호	대	34.85	34.85	임시복	서울시 양천구 가로공원로60가길 14-1, 마동 202호 (신월동, 복지다세대)	209.1분의 34.85	박월기	강서구 염창동 290 벽산 늘푸른아파트 102-1210	근저당권 설 정
14	신월동 158-6 복지다세대 마동 제지하층 제1호	대	34.85	34.85	김덕영	강남구 역삼로14길 6-5, 301호(역삼동)	209.1분의 34.85			
15	신월동 158-6 복지다세대 마동 제지하층 제2호	대	34.85	34.85	김태호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201, 1018호 (자곡동, 강남 더샵리크고)	209.1분의 34.85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수지지점)	근저당권 설 정
16	신월동 158-7,8 복지다세대 가동 제1층 제1호	대	38.29	38.29	김금영	서울시 양천구 가로공원로60가길 16, 가동 101호(신월동, 복지다세대)	243분의 38.29			
17	신월동 158-7,8 복지다세대 가동 제1층 제2호	대	42.70	42.70	윤지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0길 19-16, 101호 (대치동)	243분의 42.70			
18	신월동 158-7,8 복지다세대 가동 제2층 제1호	대	38.29	38.29	이강윤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135, 215동 2503호 (잠실동, 리센츠)	243분의 38.29	중원 세마을금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81 (여수동)	근저당권 설 정
19	신월동 158-7,8 복지다세대 가동 제2층 제2호	대	42.73	42.73	강희순	서울시 양천구 가로공원로60가길 16, 가동 202호(신월동, 복지다세대)	243분의 42.73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회곡동지점)	근저당권 설 정
20	신월동 158-7,8 복지다세대 가동 제지하층 제1호	대	38.29	38.29	이근수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5길 55, 108동 1702호 (가양동, 강서한강저어)	243분의 38.29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분당금곡지점)	근저당권 설 정
21	신월동 158-7,8 복지다세대 가동 제지하층 제2호	대	42.70	42.70	김태은	서울시 송파구 바라드리10길 6-1(풍납동)	243분의 42.7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 적 (㎡)	소 유 권			이해관계인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22	신월동 158-9	대	121.4	121.4	김 현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서로 8, 4층(목동)	121.4	노원 새마을금고	노원구 한글비석로24길 7 (상계동)	근저당권 설 정
23	신월동 158-10	대	115	115	김민섭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83길 23, 303호(장안동, 평산하우스)	115	노원 새마을금고	송파구 종대로 24, 229동 201호(문정동, 헤밀리아파트)	근저당권 설 정
24	신월동 158-32	대	210.8	210.8	채정자 차중협	서울시 구로구 구일로4길 65, 104동 1107호(구로동, 주공아파트)	공유자 지분2분의 1	노원 새마을금고	노원구 한글비석로24길 7 (상계동)	근저당권 설 정
25	신월동 158-33	대	148.1	148.1	김정우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10길 3 612호 (성수동2가, 성수동2차우방아파트)	공유자 지분2분의 1	이상원	송파구 종대로 24, 229동 201호(문정동, 헤밀리아파트)	근저당권 설 정
26	신월동 158-34	대	139.7	139.7	박환순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길 21, 101동 3001호 (서초동, 더샵 서초)	148.1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판교테크노밸리금융센터)	근저당권 설 정
27	신월동 158-48 복지다세대 다동 제1층	대	34.9	34.9	김성남	서울시 송파구 종대로 24, 210동 901호 (문정동, 올림픽해미리타운아파트)	139.7	대림동 새마을금고	영등포구 디지털로 417 (대림동)	근저당권 설 정
28	신월동 158-48 복지다세대 다동 제2층	대	34.9	34.9	민두홍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16번길 45-30 (금광동)	104.7분의 34.9	삼성화재해상 보험주식회사	중구 을지로 29(을지로1가)	근저당권 설 정
29	신월동 158-48 복지다세대 다동 제지하층	대	34.9	34.9	김지애	경기도 화성시 동탄시범한빛길 31, 201호 (반송동)	104.7분의34.9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신월복지점)	근저당권 설 정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53길 67, 201호 (역삼동, 라미스타)	104.7분의 34.9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수지점)	근저당권 설 정

물 건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용할 면적(㎡)	실 제 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관리내용
1	신월동 158-4 복지다세대 리동 제1층 제1호	건물	벽돌조	39.00	다세대주택	허복순	서울시 양천구 가로공원로60가길 12-3, 라동 101호 (신월동, 복지다세대)	강서농업 협동조합	강서구 김양화로 127(방화동)(양천지점)	근저당권 설 정
2	신월동 158-4 복지다세대 리동 제1층 제2호	건물	벽돌조	43.20	다세대주택	나문채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25길 46 (방배동)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중구 을지로 29 (을지로1가)	근저당권 설 정
3	신월동 158-4 복지다세대 리동 제2층 제1호	건물	벽돌조	39.00	다세대주택	방승만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20길 43-9, 2층 (북가좌동)			
4	신월동 158-4 복지다세대 리동 제2층 제2호	건물	벽돌조	43.20	다세대주택	김래연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28길 15, 402호 (구의동)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분당금곡지점)	근저당권 설 정
5	신월동 158-4 복지다세대 리동 제지하층 제1호	건물	벽돌조	39.00	다세대주택	정영자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310, 27동 504호 (개포동, 주공아파트)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분당금곡지점)	근저당권 설 정
6	신월동 158-4 복지다세대 리동 제지하층 제2호	건물	벽돌조	43.20	다세대주택	변용구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230, 6동 405호 (대치동, 우성아파트)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수지지점)	근저당권 설 정
7	신월동 158-5 복지다세대 나동 제1층	건물	벽돌조	48.78	다세대주택	박선홍	서울시 종로구 동망산길 19, 104동 300호 (창신동, 쌍용아파트)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동백역지점)	근저당권 설 정
8	신월동 158-5 복지다세대 나동 제2층	건물	벽돌조	48.78	다세대주택	연춘홍	서울시 양천구 가로공원로60가길 14, 2층 (신월동, 복지다세대)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9-1 (신월북지점)	근저당권 설 정
9	신월동 158-5 복지다세대 나동 제지하층	건물	벽돌조	48.78	다세대주택	정재현	서울시 송파구 바라드리17길 13 (풍납동)	잠실세무서	송파구 강동대로 62	임류
10	신월동 158-6 복지다세대 마동 제1층 제1호	건물	벽돌조	41.06	다세대주택	최세라	서울시 성동구 무학봉길 88(하왕시리동)	도림신용 협동조합	영등포구 신길로 149 (신길동)	근저당권 설 정
11	신월동 158-6 복지다세대 마동 제1층 제2호	건물	벽돌조	41.06	다세대주택	이승준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3길 26, 201호 (역삼동, 역삼한스빌아파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용할 면적(㎡)	실 제 이용상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12	신월동 158-6 복지다세대 마동 제2층 제1호	건 물	벽돌조	41.06	다세대주택	이승규	서울시 양천구 달맞이길 32-2(신월동)		양동새마을 금고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5-83	근저당권 설 정
13	신월동 158-6 복지다세대 마동 제2층 제2호	건 물	벽돌조	41.06	다세대주택	임시복	서울시 양천구 가로공원로60가길 14-1, 마동 202호 (신월동, 복지다세대)		박월기	강서구 염창동 290 벽산 블루아파트 102-1210	근저당권 설 정
14	신월동 158-6 복지다세대 마동 제지하층 제1호	건 물	벽돌조	41.06	다세대주택	김덕영	강남구 역삼로14길 6-5, 301호(역삼동)				
15	신월동 158-6 복지다세대 마동 제지하층 제2호	건 물	벽돌조	41.06	다세대주택	김태호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201, 1018호 (자곡동, 강남 다산리그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수지점)	근저당권 설 정
16	신월동 158-7,8 복지다세대 가동 제1층 제1호	건 물	벽돌조	48.60	다세대주택	김금영	서울시 양천구 가로공원로60가길 16, 가동 101호(신월동, 복지다세대)				
17	신월동 158-7,8 복지다세대 가동 제1층 제2호	건 물	벽돌조	53.61	다세대주택	윤지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0길 19-16, 101호 (대치동)				
18	신월동 158-7,8 복지다세대 가동 제2층 제1호	건 물	벽돌조	48.60	다세대주택	이강운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135, 215동 2503호 (잠실동, 리센츠)		중원 새마을금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81(여수동)	근저당권 설 정
19	신월동 158-7,8 복지다세대 가동 제2층 제2호	건 물	벽돌조	53.61	다세대주택	강희순	서울시 양천구 가로공원로60가길 16, 가동 202호(신월동, 복지다세대)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 84 (을지로2가)(회곡동지점)	근저당권 설 정
20	신월동 158-7,8 복지다세대 가동 제지하층 제1호	건 물	벽돌조	48.60	다세대주택	이근수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5길 55, 108동 1702호 (기양동, 강서한강자이)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문당금곡지점)	근저당권 설 정
21	신월동 158-7,8 복지다세대 가동 제지하층 제2호	건 물	벽돌조	53.61	다세대주택	김태은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0길 6-1(풍납동)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용할 면적(㎡)	실 제 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22	신월동 158-9	건물	연외조 세멘외증	52.89 2.88	주택	김현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서로 8, 4층(목동)	노원 새마을금고	노원구 한글비석로24길 7 (상계동)	근저당권 설 정
23	신월동 158-10	건물	연외조, 벽돌조 세멘외증	1층 52.89 1.73 1층 2.88	주택	김민섭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83길 23, 303호(장안동, 풍산하우스)	노원 새마을금고	노원구 한글비석로24길 7 (상계동)	근저당권 설 정
24-1	신월동 158-32	건물	연외조 세멘외증	43.24 지하실 7.80	주택	채정자	서울시 구로구 구일로4길 65, 104동 1107호(구로동, 주공아파트)	노원 새마을금고	노원구 한글비석로24길 7 (상계동)	근저당권 설 정
24-2	신월동 158-32 제1호	건물	연외조 세멘외증	39.40	주택	차중협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10길 3, 612호 (성수동2가, 성수동2차우방아파트)	이상원	송파구 중대로 24, 229동 201호(문정동,해밀리아파트)	근저당권 설 정
25	신월동 158-33	건물	세멘 벽돌조	1층59.6 7 지층5.3 9	주택	김정우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길 21, 101동 3001호 (서초동, 더샵 서초)	노원 새마을금고	노원구 한글비석로24길 7 (상계동)	근저당권 설 정
26	신월동 158-34	건물	연외조 세멘외증 및세멘벽 돌조스라 브즘	68.84 지하실1 1.87	주택	박환순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4, 210동 901호 (문정동, 올림픽해미리타운아파트)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판교테크노밸리금융센터)	근저당권 설 정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용할 면적(㎡)	실 제 이용상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관리내용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27	신월동 158-48 복지다세대 다동 제1층	건 물	벽돌조	48.78	다세대 주택	김성남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16번길 45-30 (금광동)		삼성화재해상 보험주식회사	중구 을지로 29(을지로1가)		근저당권 설 정
28	신월동 158-48 복지다세대 다동 제2층	건 물	벽돌조	48.78	다세대 주택	민두홍	경기도 화성시 동탄시범한빛길 31, 201호 (반송동)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신월북지점)		근저당권 설 정
29	신월동 158-48 복지다세대 다동 제지하층	건 물	벽돌조	48.78	다세대 주택	김지애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53길 67, 201호 (역삼동, 라미스타)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수지지점)		근저당권 설 정

◆ 구로구공고 제2016-1214호

천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213-1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하여 주민 제안에 의한 천왕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6일

구로구청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

나.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구로구청 도시계획과(☎02-860-3249)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제출

라.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예정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구역 지정절차 이행과정(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 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

마. 공람내용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	천왕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구로구 오류동 213-1번지 일대	-	10,451.4	10,451.4	-

※ 향후 측량성상에 따라 면적변동 가능

2) 정비계획(안)

①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10,451.4	100.0	-
획 지	소 계	10,240.9	98.0	건축물 기부채납 (도서관, 어린이집 일부)
	획 지	10,240.9	98.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10.5	2.0	-
	도 로	210.5	2.0	기부채납

②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0,451.4	-	10,451.4	100.0	-
주거지역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10,356.4	감) 10,356.4	-	-	-
	준주거지역	-	증) 10,356.4	10,356.4	99.1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95.0	-	95.0	0.9	-

-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오류동길	일반 미관지구	오류동 297-10~ 오류동 118-2	10,376	707	양측 12	2007. 9. 13. (서울특별시 고시 제319호)	동부철강 부지측 제외

③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관련)

-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247 (52)	오류동 217-1	오류동 산42-29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2	(1)	8~12	국지 도로	247 (52)	오류동 217-1	오류동 산42-29	일반 도로	-	-	일부 구간 확폭

※ ()는 사업지내 연장임

- 학교시설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학교	중학교	구로구 오류동 산39-40 일대	9,267	감) 22	9,245	서고시 제50호 (82.2.3)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④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동이용시설	경로당	지상 1층	-	300	300	
	어린이놀이터	지상층	-	570	570	
	주민운동시설	지상층	-	650	650	
	휘트니스 센터	지상 1,2층	-	1,350	1,350	커뮤니티시설:공동주택 지상연면적 3%이상

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후 이 주
-	천왕역세권 도시환경정 비구역	10,451.4	획지	10,240.9	오류동 213-1번지일원	31	-	-	31	-

-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	천왕역세권 도시환경 정비구역	10,451.4	획지	10,240.9	오류동 213-1번지 일원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	60% 이하 (40.77%)	495.9% 이하 (469.57%)	83.8m (83.4m) /지상 28층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 분			세대수		비 고		
			합 계			481세대	100.0			
			분 양	계		330세대	68.6			
				전용면적 60㎡이하		155세대	32.2			
				전용면적 85㎡이하		175세대	36.4			
				전용면적 85㎡ 초과		-	-			
			장기전세	계		151세대	31.4			
				전용면적 60㎡이하		147세대	30.6			
				전용면적 85㎡이하		4세대	0.8			
				전용면적 85㎡ 초과		-	-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오리로변 : 건축한계선 3m ●오리로9길 : 건축한계선 3m							
비고			●공공기여 － 어린이집 : 연면적 총 632.7㎡ 중 218.9㎡ 기부채납 － 도서관 : 1,798.76㎡ 기부채납(토지지분 : 316.77㎡) ※ 추후 인허가 과정(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시 변동 될 수 있음.							
심의완화 사항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 제3절 용적률 적용체계 상 패키지 허용용적률 적용을 위한 사항							
			구분		계획내용		비고			
			필수항목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		추후 적용			
				커뮤니티 지원시설	●계획 : 1,350㎡ (3.06%)		적용			
				에너지효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이상 인증		추후 적용			
				친환경건축물	●우수등급 이상의 친환경 예비인증 후 예비인증서 제출 및 관련기준들에 적합하도록 계획		추후 적용			
			선택항목 (1가지)	신재생 에너지 사용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추후적용)		1개 항목 선택 적용			
(패키지)허용용적률		●426.6%		－						

※ 상기 평형배분은 인허가시 조정될 수 있음

⑥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주)이레 H&C	481세대	－

⑦ 임대주택, 소형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 해당사항 없음
- 장기전세주택

구 분	기 준		전용면적				비 고
			60㎡이하	60㎡~80㎡이하	80㎡초과	합계	
장기전세 주택	기준	완화된 용적률의 50% (11,674.62㎡)	60%내외	30%내외	10%내외	100%	-
	계획	12,426.24㎡	147세대 (97.4%)	4세대 (2.6%)	-	151세대 (100.0%)	-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정비계획(안) 참조

바. 관련도서 : 생략 (기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같음)

◆ 동작구공고 제2016-85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서울특별시고시 제54호(1973.4.22)로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를 합니다.
-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다만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열람공고로 같음합니다.

2016년 10월 6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1) 동작대로 29길(사당동 128-48)
- 2) 사당로 30길(사당동 147-95)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동작대로 29길(사당동 128-48)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토지2필지 15㎡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동작구청장(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17. 2. 28.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사. 열람기간 : 2016.10.6 ~ 2016.10.19(14일간)

아.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로관리과(☎820-9903)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74 유한빌딩 10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단위 : m²)

연 번	지 번	지 목	공부상 면적	편 입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사당동128-48	대지	8	8	강성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63-18			
2	사당동147-95	도로	7	7	장경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7 여의도자이 201-1304호			
					배보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7 여의도자이 201-1304호			
					배영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석동 108-16			
계	2필지		15	15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19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계 내 한강 (광진교)	선박 2척 (기선 1척, 부선 1척)	광진교 보수공사	2016.10.4 ~ 2016.10.13	2016. 9.29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23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영흥중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8길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96-119	선박 13척 (기선 8척, 부선 5척)	공사 투입 대기를 위한 수상 정박대기	2016.10.1 ~ 2016.10.31	2016. 9.30
			선박 21척 (기선 3척, 부선 18척)	공사 투입 대기를 위한 수상 정박대기	2016.10.16 ~ 2016.10.3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23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한화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가양대교 ~ 한강철교	선박 23척 (기선 3척, 부선 20척)	2016 서울세계불꽃축제	2016.10.1 ~ 2016.10.15	2016. 9.30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23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메트로 토목사업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	잠실철교 하부	선박 2척 (기선1척, 부선1척)	잠실철교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선박 운항	2016.10.1. ~ 2017.7.6	2016. 9.30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347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4-9(여의도 물빛광장 하류)
 - 면 적 : 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인어동상 설치
 - 내 역 : 인어동상 1개소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6.10.04.~2021.10.03.(2016.10.04~2016.11.03)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